

연구총서 20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안중철 지음

이 책은 두레교회(담임목사 : 김진홍)의 출판후원금으로
간행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간행사

최근 한국교회사 연구 성과는 연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사 연구의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는가 하면, 연구가 미진했던 주제나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일제 말기와 미군정 시기에 미국 복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전개한 활동을 분석하는 이 책도 그 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점에서 최근의 연구경향을 보여주는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사를 전공한 저자가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와 연관된 다른 논문을 추가해서 펴내는 것이다. 이 책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복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있지만, 선교사들의 교회내 활동만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연구가 아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한 기독교학교의 존속문제, 태평양전쟁 시기 선교사들의 미국의 대일전 협력, 해방후 미군정과의 밀접한 관계 같은 주제를 고찰하는 점에서 이 책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종교와 국가 관계에 대한 소중한 연구서이기도 하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들은 1970년대부터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로부터 한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술로 역사편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자칫하면 한국기독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선교사 연구에 흥미를 잃거나 이를 도외시킬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 연구소는 선교사들이 남긴 수많은 문서를 국내외에서 수집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선교사 연구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공부하기 힘든 주제와 시기를 택해 한국기독교회사 연구의 폭을 넓힌 저자와 함께 이 책의 간행을 기뻐하며, 이 책의 출판을 지원해 준 두레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2010년 4월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김홍수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을 적고 있는 저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흥분됩니다. 돌이켜보니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엄청난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필자는 역사공부를 하기에 그리 끈기가 강하지 못하면서도 호기심에 충만해서 이곳저곳 새로운 것을 찾아 기웃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역사적 사실과 가치판단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해왔습니다. 그것은 ‘열린 자세’로 좋게 볼 수 있지만 우유부단한 태도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담겨진 사실과 해석들이 비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은 2008년 1학기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 대부분과 이후에 발표한 논문들 중 일부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학위논문에서 비록 많은 자료를 다루었지만 여전히 실증에서 미숙한 점이 많고 어떤 부분은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제가 신학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연구자들에게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어떻게 비추어질 지도 기대와 함께 걱정이 됩니다.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책을 출간할 용기를 낸 것은 식민지 말과 해방 직후 선교사와 한국과의 관계, 그것이 한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다룬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안내서가 된다면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논문을 쓰고 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성함을 적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학부 때부터 그리고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이태진 선생님(학술원 회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주제만 아니라 장소를 옮기면서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온 저를 친자식처럼 너그럽게 봐주시면서 격려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의 선생님들, 특히 시대를 불문하고 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셨던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장이셨던 노태돈 선생님, 매끄러운 문장과 박학한 한국현대사 자료에 대한 감각 등으로 후배들에게 도전을 주시면서도 늘 편하게 찾아볼 수 있었던 정용욱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히 정 선생님이 주도하셨던 ‘한국현대사’ 수업이나 세미나에 함께 했던 선후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 ‘한국근대사’ 세미나를 이끄시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환경을 조성해주신 권태익 선생님과 선후배들께도 함께 했던 시간들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공부를 하도록 줄곧 격려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역사공부가 힘들어서 다른 분야로 ‘도망’가려 했을 때 간곡한 호소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기대에 이 책이 얼마나 부응할 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비록 이 책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전통사회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도 한국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사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보다는 좀 더 쉬운 길을 가라고 늘 저의 건강을 걱정해주신 어머니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내인 저를 늘 챙겨주신 영순 누나, 종창 형에게도 이 책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를 창립하시고 오랫동안 기독교사 연구자로서, 또 한국사회에서 실천적 지식인으로 살아오신 이만열 선생님(전 국사편찬위원장)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대학에 막 들어온 1980년대 후반, 소심한 성격에 시위대에 몸을 완전히 맡길 수 없어 도서관을 기웃기웃하던 제가 우연히 발견한 선생님의 한국기독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책은 너무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80년대 학생들 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학부시절 찾아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기독교역사를 공부해볼 것을 권했지만 결국 박사과정에서야 시작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연구를 통해 보답하고자 합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식구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은 학문적으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을 만큼 잔인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개인적으로 대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묘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늦게 이 부대에 합류한 제계 무임승차에 가까운 특혜를 베풀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부처럼 후배들의 앞날을 진지하게 걱정해주시는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김홍수 선생님, 그리고 후배를 따듯이 격려해주시는 서정민 선생님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오신 김승태 선생님께 비록 논점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음을 밝혀둡니다. 늘 학문적 꼼꼼함과 유려한 문장력을 가지신 류대영 선생님은 저의 벤치마킹 대상일 것입니다. 또 날카로운 비평으로 식민지시기 한국사와 기독교사에 대해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해 오신 장규식·한규무 두 선생님, 그리고 형님들같이 저를 대해주시는 최기영·신광철·송현강·이진구 선생님 등과 함께한 자리는 저에게 많은 즐거움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이순자·박혜진 두 선생님, 그리고 연구활동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송은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 이영호 선생님은 한국사에서 서구인들의 역할에 주목하시고 저의 연구를 늘 격려해주셔서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구소의 동아시아 전공 여러 선생님들께로부터 한국과 동아시아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많은 자극을 받고 배우게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사수료 후 무엇을 논문주제로 삼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헤맬 때 혜성처럼 나타나 저를 이 분야로 인도해준 조지 맥쿤(Geroge M. McCune)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5년 초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맥쿤 문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의 후손과의 우연한 만남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후 지속된 이 분들과의 만남은 체계는 의미가 큼니다. 특히 맥쿤의 부인으로 올해 103세이신 에블린 맥쿤(Evelyn B. McCune), 그리고 따님

투스 여사(Heather M. Thompson)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식민 지시기 20년 이상씩 한국고등교육기관에 관여해 온 맥쿤의 아버지인 맥쿤 (Geroge S. McCune; 한국명 윤산은)과 장인 아더 베커(Arthur L. Becker; 한국명 백아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외국인들을 통한 한국근현대사 이해지만 제게는 한국근현대사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사 전공자로서 이러한 미국인들, 그리고 기독교를 다룬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선입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몫도 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해 출판후원을 해주신 두레교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만열 선생님의 출판제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출간을 기대해주신 강남교회(노량진 소재)의 송태근 목사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혹 선교사와 한국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점을 포함, 미진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초학자의 호기를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넘게 공부한답시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린 저를 그래도 믿어주고 지켜봐준 저의 아내 구은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인 지운·태선·태준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다른 책들의 서문에 적혀 있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저자의 감사의 말이 결코 의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이 나와도 학자의 삶이란 계속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변명해두고자 합니다. 그저 모자란 점은 이후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1절,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안중철 드림

차 례

간행사 / 3

감사의 말 / 5

서 론-----13

제1부 신사참배, 식민권력, 그리고 선교사들의 내분

제1장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선교사들의 대응-----29

1. 1931년 ‘만주사변’ 전후 일제의 기독교정책과 신사참배-----29
 - 1) 1930년대 전반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29
 - 2) ‘만주사변’ 이후 신사참배 강요-----47
2.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각 교파 선교부의 대응-----61
 - 1) 북장로교 측의 초기 대응-----61
 - 2) 타 교파 선교부들의 대응-----85

제2장 교육사업 철수를 둘러싼 갈등-----99

1. 선교사들의 철수 결정과 갈등-----99
 - 1)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의 협의-----99
 - 2) 교육사업 철수 결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113
2. 중일전쟁 이후 북장로교 교육사업 철수문제와 갈등-----132
 - 1) 철수문제를 둘러싼 갈등-----132
 - 2) 갈등의 전개와 철수과정-----145

제2부 전시협력, 재입국, 그리고 미군정

제3장 태평양전쟁기 선교사들의 귀국과 전쟁협력 -----	173
1. 태평양전쟁과 미국인들의 귀국-----	173
1) 전쟁 발발 전후 선교사들의 귀국-----	173
2) 송환 선교사 및 외교관들의 한국 정세 인식-----	188
2. 선교사 및 관련 인사들의 전시협력활동-----	205
1) 북장로교 선교사 관련 인사들의 활동-----	205
2) 한국관련 미 정부 관리들의 한국문제 인식-----	217
제4장 해방 후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미군정 참여 -----	243
1. 미군정의 기독교정책과 선교사들의 귀환-----	243
1) 연합국사령부 맥아더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243
2) 미군정사령관 하지의 종교정책과 선교사-----	250
2.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미군정-----	259
1)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와 언더우드의 활동-----	259
2) 각 교파 선교부들의 복구와 미군정, 정부수립-----	268
결 론 -----	287
참고문헌 /	297
부록 /	315
찾아보기 /	321

표 차례

【표 1-1】 북장로교 소속 중등학교의 지정학교화-----59
【표 2-1】 북장로교 소속 중등·고등 교육기관 현황(1936년 중순)-----114
【표 2-2】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의사분과 토론회와 주요 결정-----140
【표 3-1】 마리포사호 귀국 전후의 체류 선교사 수-----179
【표 3-2】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잔류 선교사 수-----182
【표 3-3】 태평양전쟁 후 억류된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자녀-----188
【표 3-4】 귀국 외교관 및 선교사 자료 제출자 명단-----193
【표 3-5】 보고서 제목과 내용-----196
【표 3-6】 태평양 전쟁기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관련 모임-----212
【표 3-7】 해방 후 재입국 내정 북장로교 선교사 A그룹-----216
【표 4-1】 각 교파 해외선교부 연합회 선정 파견 선교사-----254
【표 4-2】 한국입국 A그룹 선교사 추가명단-----261
【표 4-3】 재조직된 한국선교부 명단(1948년 1월 21일)-----271

자료 요약 기호

FRUS U. S. State Department,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5-1948.

HGU II Horace G. Underwood Papers,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관.

KMF *The Korea Mission Field*

OSS 국가보훈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재미한인자료』, 국가보훈처, 2005.

PCUSA Board of Foreign Missions, *Korea Mission Reports 1911-1954*. Department of History, Presbyterian Church(U. S. A.), Philadelphia, Pennsylvania

RIAK U. S. State Department, RG 59, Decimal File 895.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10-1929, 1930-1939, 1940-1944, 1945-194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1986.

『WCC자료』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105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문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32집)

『대한정책』 정용욱·이길상 편,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1권(돌베개, 1994)

『신사참배 I』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35집)

『신사참배 II』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자료총서 제36집)

『종교정책』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日韓キリスト』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日韓キリスト教關係史資料 II, 1923-1945』(東京: 新教出版社, 1995)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연향

19세기 말 조선정부가 서구국가들과 통상조약을 차례로 체결함으로써 조선사회는 서구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었다.¹⁾ 특히 조선이 미국과 1882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의 외교관들과 더불어 기독교 선교사들이 입국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선교사업 또는 그 수단으로써 교육·의료사업에 종사했으므로 이들의 사업은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왕실을 비롯하여 조선인들이 서구문화를 적극 수입함으로써 국가의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했으므로 조선정부는 선교사들의 내한활동을 대체로 환영했다. 당시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야욕을 지녔던 일본도 영미 등 구미세력과 불평등조약을 맺고 있었으므로 조선에서 활동하는 영미선교사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었다. 그러므로 1910년 일제의 ‘한국병합’이라는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일제시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활동은 지속될 수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남한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1) 이 책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통치기간의 한반도를 ‘조선’과 ‘한국’으로, 한국인들을 ‘조선인’ 또는 ‘한국인’이라고 각각 지칭한다. 일제강점기 점령과 통치의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일제’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일본정부’, ‘총독부’를 사용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protestant)를 지칭한다.

대한 선교사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최근이야 비로소 활기를 띠고 있다.²⁾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선교사들을 기독교의 ‘전파’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물로 다루면서 그들의 전도활동과 신학사상을 규명하는데 집중했다.³⁾ 선교사들의 일반사와의 관련, 특히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한 면을 고려한다면 일찍부터 이만열이 구한말 선교사들의 정치적 태도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루면서 “선교행위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주목할 것을 선구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⁴⁾

선교사들의 역할과 한국사회의 관련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우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와 관련된 학자들의 공동 작업은 비록 선교사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구한말부터 해방 직전까지 선교사들을 포함한 한국기독교와 한국사의 관계를 민족사의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다.⁵⁾ 개화기 선

-
- 2) 미국 일반사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연구자 존 패어뱅크(John K. Fairbank)는 미국 선교사들의 해외활동이 “미국인들 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Introduction: The Many Faces of Protestant Mission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John K. Fairbank, ed. *The Missionary Enterprise in China and America*(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6. 미국 외교사가인 아키라 이리에(Akira Iriye)도 선교사들의 활동이 “미국 대외 관계에 풍부한 유산”이며 20세기 초엽까지 미국 대외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define)” 소재라고 보았다. Akira Iriye, “Culture and International History,” in Michael J. Hogan and Thomas G. Paterson,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220-221.
 - 3)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충신대학출판부, 1992); 박용규,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 한부선 평전』(그리심, 2004); 이호우, 『초기 내한 선교사』(광안리의 신학과 사상)(생명의 말씀사, 2005) 등을 들 수 있다.
 - 4)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사론』1집(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3); 동 저자, “한말 기독교와 관련된 외세의존의 문제(1)-선교사의 세력 확대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61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9); 동 저자, “한말 구미 제국의 대한 선교정책에 관한 연구-선교사들의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자세와 관련하여,” 『동방학지』84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뒤의 두 논문은 동 저자,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에 수록.
 - 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기독교문사, 1989); 동 연구소, 『한국기

교사 집단을 고찰한 류대영의 연구는 선교사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그의 연구는 개화기 미국선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출신 배경과 신학적 입장, 특히 이들의 중산층 배경과 내한 동기, 한국에서의 활동과 한국관련 연구, 구한국 정부와의 관련, 한미관계에서의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⁶⁾ 강인철의 연구는 해방 이후의 한국기독교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루었고,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성격을 일부 다루었다. 특히 해방 후 미국 교회 교단과 한국 기독교의 관계, 기독교와 제1공화국 정부의 밀월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⁷⁾ 그러나 두 사람의 연구는 초기 선교사와 해방 후 선교사들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선교사들의 동향과 활동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도날드 클라크(Donald N. Clark)의 연구는 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의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선교사로 내한한 자신의 할아버지·할머니(Charles A. Clark, Mabel C. Clark)와 내한 서구인들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의 연구는 선교사만이 아니라 외교관, 사업가, 백계 러시아인, 영국인 등의 한국생활에까지 관심을 넓혔다. 그는 평양과 서울 선교사들 간의 지역의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해방 직후 선교사들의 활동도 일부 다루었다.⁸⁾ 식민지 시기 선교사들에 의한 교육과 근대화에 대한 이성전(李省展)의 연구는 선교사와 교육기관 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⁹⁾ 그는 “아메리카형 근대”를

독교의 역사 II』(기독교문사, 1990).

6) 류대영, 『초기미국선교사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동 저자,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7)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8)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Norwalk, CN: EastBridge, 2003).

9)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ッションスクール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東京: 社會評論社, 2006)(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 『미국선교사와 한국 근대 교육』, 번역총서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지향한 평양의 선교사들이 당면한 교육사업 운영문제에서 서울지역 선교사들과 달리 총독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시도한 점을 추적했다.¹⁰⁾ 특히 그는 신사참배 논란시 북장로교파 선교사들의 교육기관 철수와 관련해서 서북과 서울지역 선교사들의 대응의 차이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되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편 선교사들을 직접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박용권의 연구는 이 책에서 다루는 1930년대 한국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¹¹⁾ 그는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록을 활용하면서 이전 시기와 달리 물량주의, 교파주의, 그리고 국가와의 타협 등, 현대 한국기독교의 문제점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들이 이미 1930년대에 본격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상 선교사들의 내한활동에 관한 기존 연구를 개략적으로 살폈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30-40년대 격변기를 다룬 연구가 매우 적다. 둘째, 1930년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시 교육기관에서의 철수와 관련된 선교사들 내부의 논란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 셋째, 해방 후 미군정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식민지하 경험과 전쟁협력 문제 등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넷째, 미군정과 선교사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가 이러한 특징들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미국선교사들 중 당시 한반도에서 최대 교파로 활동했던 북장로교파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각 선교교파는 이미 구한말에 ‘교계예양’(敎界禮讓)으로 불린 선교지 분할협정에 따라 교파별로 지역을 나누어 선교활동을 진행했다.¹²⁾ 이 중 북장로교는 서북지역 대부분과 황해도 북

10) 같은 책, 269. 본 연구와 관련, 8장과 9장(終章)이 주목된다.

11) 박용권,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그리심, 2008).

12) 선교지 분할협정은 1892년에서 1909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구 5천 이상의 지역(서울·평양·원산)은 여러 교파가 공동 점유했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분할하였다. 대체로 평안도와 황해북부, 충북, 경북(북장로교), 충남 일부, 호남, 제주(남장로교), 경기, 황해 남부, 평안도 일부, 강원 일부, 충북 일부(북감리교), 서울(공동), 송도, 강원(일부), 함남(일부)(남감리교), 경남(호주 장로회), 함경도, 간도(캐나다 장로회)로 나누었다. 한

부, 경상북도를 중요 선교구역으로 삼았다.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시기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를 전적으로 대표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넓은 선교지역과 교세를 가진 교파였던 만큼 이 시기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분석대상임에는 틀림없다. 이 글은 북장로교 선교사들을 일차적인 분석대상으로 하되 논의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다른 교파, 예를 들면 호남지역의 남장로교, 경남지역의 호주장로교, 함경도와 간도지역의 캐나다장로교 등의 활동도 일부 다룰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선교사들과 서울에 거주하는 미국 총영사관의 관계는 매우 긴밀했으므로 총영사관 측의 입장도 이 연구에서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이 논문은 1930~40년대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존재양태와 활동을 한미관계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일제 말의 전시체제에서 해방 후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과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1930-40년대는 대격변의 시대였다. 일제는 1930년대 만주와 중국 본토로 전쟁을 확산하면서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군부 통치를 강화해나갔다. 특히 ‘중일전쟁’(1937) 발발 이후야말로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제의 ‘동화정책’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천황제가 천황의 조상을 모신 신사(神社)와 관련이 있었으므로 신사참배는 주민들을 ‘황민화’(皇民化)시키는 핵심적인 의례였다. 식민지의 모든 학교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되었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예외일 수 없었다. 신사참배 문제는 전시체제가 일제 파시즘의 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당시까지 ‘선교의 자유’를 누려온 구미 선교사

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13-218.

13) 권태억은 일제의 ‘동화정책’을 일제 전시기에 걸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즉 “식민정책에 있어서의 동화정책이란 식민지 및 그 주민을 본국의 영토 및 국민으로의 통합을 지향하여, 구체적으로 식민지에 본국과 같은 제도의 실시를 지향하며, 국민화를 위한 교육을 비롯한 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지칭한다”는 그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태억, “동화정책론,” 『역사학보』 172집(2001년 12월), 363; 1920년대와 30년대 동화정책론의 연속성과 차이점은 권태억, “1920, 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사론』 53집(2007) 참조.

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일제는 1905년 ‘보호조약’과 1910년 ‘병합조약’을 대한제국 측에 강요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¹⁴⁾ 특히 일제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경영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얻어내려고 했으므로 이들 지역 선교사들에게 ‘선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에 구미 선교사들은 1911-12년 일제가 조선인 민족운동가들을 탄압한 ‘105인 사건’이나 1919년 3·1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의 식민지 경영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¹⁵⁾ 선교사들이 일제를 비판한 경우도 대체로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탄압, 즉 인권문제와 결부된 것이었다. 대부분이 미국 국적을 가졌던¹⁶⁾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일찍부터 각종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경영해왔다. 따라서 1930년대 본격화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이들 선교사계 학교와 관련되어 있던 선교사의 존립근거를 위협하였다. 선교사들이 경영한 각종 학교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다니고 있었고, 이들 학교의 운명은 동시에 조선인 학생이나 관련 조선인들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했다.

일제 말 전시체제기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관심을 많이 끌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¹⁷⁾ 이 시기 신사참배 문제와

14) 이 조약들이 가진 문제점은 이태진 외,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까치, 1995); 이태진 외,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태학사, 2001); 이태진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서울대출판부, 2003) 등을 참고.

15) 일제는 ‘한국병합’ 후 미 국무부에 선교사의 교육 및 선교사업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Japanes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to American Ambassador in Tokyo, 1910년 10월 6일, O’Brien to Knox, 1910년 10월 14일, 895.00/517의 첨부 3. U. S. State Department,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10-1929*(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1962), 9 microfilms(이하 *RIAK*).

16) 류대영의 연구에 의하면 1884-1910년에 내한한 선교사의 총수는 대략 499명 정도였다. 이중 대부분은 미국의 4대 교파(복장로교, 남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출신들로 387명을 차지했다.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27. 미국 선교사들의 압도적 비율은 식민지 시기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17) 최원규 엮음, 『일제 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청아출판사, 1988);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혜안, 2004); 방기중 편,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 인식과 대응』(혜안, 2005); 방기중 편,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혜안, 2006) 참고.

선교사계 학교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는 신사참배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기독교계의 종교적, 민족주의적 저항을 주로 규명해왔다.¹⁸⁾ 이런 연구들을 통해 일제의 의도와 조선인들의 저항의 양상과 논리는 상당히 해명되었다. 그러나 학교교육으로부터 철수 또는 잔류라는 형태로 나타난 선교사들의 복잡한 입장은 세밀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철수문제를 두고 조선선교부(Chosen Mission)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Foreign Mission Board) 사이에 벌어진 복잡한 관계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¹⁹⁾ 이 논문을 통해 선교부와 해외선교부의 교육철수에 대한 입장 차이가 각 학교별로 어떻게 나타났고 선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신사참배에 대한 대응 면에서 겉으로 보면 서울지역 선교사들과 서북지역의 선교사들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왜냐하면 서북지역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교육기관 운영으로부터 선교부의 철수를 주장했고 기호지역의 상당수 선교사들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철수하려하자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반대했다. 그러므로 교육철수를 둘러싸고 교육사업에 종사한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서북 대 기호지역 선교사들 간의 대립보다 더 복잡한 문제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한 조선선교부 선교사들은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압력을 넣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외교관들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고 교육사업으로부터의 철수를

18) 김승태,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에 실려 있는 논문들; Wi Jo Kang · 서정민 옮김, 『한국기독교사와 정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103-116.

19) 이 책에서 Chosen Mission을 ‘조선선교부’ 혹은 ‘선교부’로, Foreign Mission Board는 ‘해외선교부’로 각각 번역한다. 아울러 조선선교부의 주요거점을 의미하는 Mission Station은 ‘선교지부’로 번역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선교지부는 조직과 장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지만 선교부는 선교지부 소속의 선교사들 전체가 모여서 조직한 상의의 회의체를 의미함으로 장소의 의미는 갖지 않는다.

주장한 선교사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일본에 거주하던 미국 선교사들도 서북지역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조선선교부의 ‘보수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신사참배문제를 둘러싼 조선·일본 거주 선교사들간 내부의 이러한 의견 대립과 갈등은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다.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신사참배 반대파들은 해외선교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실망해서 이미 2차 대전 전에 다른 교파로 옮겨가기도 했다. 그러므로 해방 후 조선에 재입국한 복장로교 선교사들 중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은 소수였다. 따라서 대다수 재입국 선교사들은 해방 후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문제 청산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이 점은 해방 후 가장 큰 교파를 형성한 한국 장로교와 그와 관련된 선교부의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선교사들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중일전쟁 후 일제의 반 영미정책 때문에 태평양전쟁 발발 전 차례차례 조선을 떠났다. 남아있던 사람들과 떠나간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있었고 잔류를 결정했던 선교사들도 전쟁발발 후 억류되어 있다가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김승태의 연구는 이 과정을 연구한 몇 안 되는 성과 중 하나이다.²⁰⁾ 그는 신사참배와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²¹⁾

한편 선교사들과 선교사 후손, 그리고 외교관들은 미국에 돌아간 뒤 미국의 대일전 수행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정보기관에서 한반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활동을 했다. 이들의 인식과 활동은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인식과 정책 형성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일부 선교사와 자녀들은 해방 이후 주한 미군정의 점령통

20) 김승태,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중 “193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 문제와 선교부의 대응”;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

21) 김승태 편역, 『일제 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기독교편, 1910-1945』(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이하 『종교정책』).

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의 대일전 수행과 전후 활동은 이 논문의 중요한 분석 대상 중 하나이다.

1930-40년대 이들의 활동은 선교·교육활동에서 나아가 미국 정부·군부의 대일전쟁 협력, 그리고 해방 후 미군정 참여 등으로 확장되었다.²²⁾ 이것은 이 시기 미일관계의 악화가 전쟁으로까지 비화하면서 벌어진 자연스런 결과였다. 동시에 이 사실은 대한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선교·교육 이외의 활동으로 분석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고는 1930년대 선교사들의 선교·교육 활동과 태평양전쟁 개전 전후 선교사들의 귀국과 전시협력, 해방 이후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군정 참여 활동 등을 분석의 범위에 두었다.

1930-40년대에 한반도는 점점 파쇼화되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해방, 미·소 양군 점령, 분단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한국인들은 일제의 전시체제에 대한 협력을 강요당하거나, 징병·징용 등을 통해서 직접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겪은 피해와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편 미국은 대일전 개시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해서나 한국문제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한국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와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다.²³⁾ 대한 선교사들이나 그들과 관련된 인사들의 존재는 이러한 미국 정부와 군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인적 자원이었다.

미국 선교사들은 항상 한국인들과 접촉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체험한 몇 안 되는 외국인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사회를 일본 이외의 국제 사회

22) 정 H. 박의 연구는 선교사들의 전시·전후 협력문제를 일부나마 다룬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는 호레이스 H. 언더우드의 신학적 사상, 특히 기독교와 민주정부와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Jung H. Pak, "Not by Power nor by Might: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Spiritual Wars in Korea, 1885-1953," Ph. D. Diss.(Columbia University, 2006), ch. 3.

23) 정용욱과 제임스 매트레이의 저서는 태평양전쟁기 고위정책 결정라인에서의 해방 후 미국의 대한정책의 준비과정을 다루었다.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의 1-2장;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구대열 역,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미국의 대한정책, 1941-1950』(을유문화사, 1989), chs. 1-2.

와 연결해 주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였고, 미일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지위가 규정되는 존재였다. 그들의 존재형태와 활동은 그들의 한국 거주 이유인 선교사업을 통한 조선인들과의 교섭 이외에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내한 선교사들은 미국 대한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를 연결하는 매개 고리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인식과 활동에 대한 분석은 기독교사 연구와 함께 미국의 대한정책사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시기 내한 선교사들의 활동을 매개로 미일관계의 변화, 미국 대한정책의 전개양상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2. 책의 구성과 자료

이 책은 크게 1, 2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1부의 두 장은 신사참배강요와 일제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운영을 둘러싼 식민당국, 선교사, 조선인들 간의 입장 차이를 다룬다.

먼저 1부의 제1장은 일제의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가 어떤 배경 하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다루려고 한다. 제1절은 1930년대 초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계의 동향과 신사참배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의 신사참배문제를 다룰 것이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본격화되기 전에 일본과 미국 지식인들의 신사문제 인식, 미국정부의 입장, 선교부의 동향, 총독부의 정책 등을 다루면서 왜 이 시기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본격화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려고 한다. 제2절은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평양의 북장로교 운영 학교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조선선교부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려고 한다. 아울러 평양 선교지부와 다른 입장을 취했던 서울 선교지부의 반응과 다른 교파들의 대응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장로교의 입장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제2장은 북장로교 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한 과정과 그것을 둘러싼 논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은 서울과 동경의 미 외교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는지, 선교부의 교육철수 입장에 대해 당시 조선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중요한 논점으로 한다. 제2절은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 측의 신사참배강요와 반서구 정책에 대해 선교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선교부 내에서 교육철수를 반대하던 ‘소수파’는 해외선교부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이에 대해 해외선교부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북장로교 소속의 사립학교 경영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이 책의 2부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지, 미국에서 어떤 전시협력에 참여했고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방 후 이들의 미군정하에서의 귀환과 활동을 다룬다. 제3장은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 선교사들의 귀국 경위와 귀국 후 활동을 다룬다. 제1절은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와 반 영미정책이 실시될 때 선교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조선에 잔류하기로 한 선교사들은 누구였는지, 이들이 전쟁 직후 미국으로 송환될 때 미 국무부는 이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구하려고 했는지 등을 살피고자 한다. 제2절은 귀국한 선교사들과 선교사 관련 인사들이 미국의 대일전에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들이 미 정보기관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협력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전후 조선에 대한 구상을 검토하려고 한다. 또 해방 후 재개될 조선 선교에 대해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도 다루려고 한다.

제4장은 해방 이후 선교사들의 재입국 과정과 선교사와 선교사 관련 인사들의 미군정 내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제1절은 당시 동경의 연합군사령부와 서울의 주한미군사령부의 기독교정책은 무엇이었는지, 선교사들이 어떻게 남한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들은 미군정 내 자신들의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했는지 등을 다룰 것이다. 제2절은 미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선교사 관련 인사들의 성향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다. 이들이 소련과 북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미군정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검토하려고 한다.²⁴⁾

이 책에서 활용한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사참배 문제와 교육철수를 둘러싼 문제를 분석하는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간행한 미국 장로교 사료관과 미 국립문서보관소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그 중에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문서와 국무부 극동국 문서, 그리고 WCC도서관 소장 문서는 1-2장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²⁵⁾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한국선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선교 관련 보고서(1911-1954)』도 도움이 되었다.²⁶⁾ 한편 1930년대 선교사들의 교육철수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동시대에 발간된 신문들을 주로 활용했다.

선교사와 외교관, 미 정부 관리들의 기록들은 당시 일제의 검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으므로 식민지시기와 해방 직후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선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발간한 잡지와 선교사와 관련 있는 소책자, 개인기록, 회고록 등을 검토했다. 선교

24) 이는 리차드 이머만이 설명한대로 외교정책에서 개인들이 가진 “단지 개성(personalities)만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가진 개성이 정책결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명제와 통한다. Richard H. Immerman, “Psychology,” in Hogan and Paterson, 152-153.

25)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35집, 이하 『신사참배 I』);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I-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자료총서 제36집, 이하 『신사참배 II』);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105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문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32집, 이하 『WCC자료』).

26) Board of Foreign Missions, *Korea Mission Reports 1911-1954*, Department of History, Presbyterian Church(U. S. A.), Philadelphia, Pennsylvania(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사본)(이하 PCUSA).

사 개인기록들은 선교현장의 분위기와 선교사들의 개인 활동을 이해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호레이스 H.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元漢慶; 1890-1951)는 해방 이전 연희전문학교 교장, 해방 이후 미 군정청 군정장관과 문교부 부장(장관) 참모로 한국교육재건에 기여했는데 그와 같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군정 교육관련 문서의 검토가 필수적이다.²⁷⁾ 연세대학교가 소장한 호레이스 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元一漢, 1917-2004) 관련 자료도 그의 활동과 언더우드 가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²⁸⁾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는 이 부분이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지만 책의 분량 상, 해방 이후 선교사·외교관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다른 책에서 다시 자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선교사들과 미주한인들의 대미 로비활동과 정보기구들에 대한 전시협력을 살피기 위해서는 1930-40년대의 국무부 한국내정 관련 자료들과²⁹⁾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의 자료들을 활용했다.³⁰⁾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미국무부 정치고문 문서철은 해방 이후 미군정 내 정치고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³¹⁾

27) Records from NARA (RG 332),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http://e-archives.snu.ac.kr>).

28) Horace. G. Underwood II Papers,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이하 HGU II).

29) U. S. State Department,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30-193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1986, 2 microfilm rolls. 같은 제목과 간행연도의 1940-1944(3 microfilm rolls), 1945-1949(12 microfilm rolls).

30) 『한국독립운동사』23~25권(국사편찬위원회, 1994)에 상당수 실려 있다. 최근 공간된 국가보훈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재미한인자료』(국가보훈처, 2005)는 『한국독립운동사』에 실려 있지 않은 자료들을 상당수 수록했다.

3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주한미군정치고문문서』(국사편찬위원회, 1994), 18·19권.

제1부 신사참배, 식민권력, 그리고 선교사들의 내분

제1장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선교사들의 대응

제2장 교육사업 철수를 둘러싼 갈등

제1장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선교사들의 대응

1. 1931년 ‘만주사변’ 전후 일제의 기독교정책과 신사참배

1) 1930년대 전반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1930년대 전반 한국기독교의 상황

1910년 ‘한국병합’ 후 한국기독교는 일제와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는 주지하듯이 총독부가 ‘105인 사건’(1911-13)을 통해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한 것이라든가 ‘개정사립학교규칙’(1915)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종교’ 과목을 정규교과목에서 삭제하는 정책 등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로교를 중심으로 총독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해 일제는 기독교 측의 일정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영미와 연결되어있는 기독교계를 통제·회유하려했다. 총독부는 제2차 조선교육령(1922)을 통해 기독교계 중등학교가 ‘지정학교’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들의 교육열이 증가하면서 중등학교가 정규학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²⁾ 특히 기독교계 학교는 전체 조선의 교육현실에서 30-40%에 해당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³⁾

총독부는 교회나 각 교파 조선선교부(회)의 재산을 ‘재단법인화’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그리하여 천주교 경성교구(1920년), 감리교 선교부(1920), 장로교 전남노회(1930)를 시작으로 각 교파는 차례로 재단법인화의 길을 밟았다. 재단법인화는 당국으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음과 동시에 일제에 의한 기독교 재산의 상세한 파악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⁴⁾ 결국 1930년대 초가 되면 총독부와 기독교계는 대체로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1930년대 전반은 조선기독교의 활발한 부흥기였다. 1930년경 당시 기독

-
- 1) ‘고등보통학교’는 정부가 정한 모든 교과과정을 따라야 했고 정규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지정학교’제도에서는 당국의 교과과정을 따르면서도 정규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각종학교’ 출신자는 상급학교진학에 불리했으므로 장로교 조선선교부와 조선장로교 측은 관할학교들이 ‘지정학교’로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감리교 측은 일찍부터 배재고등보통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 광성고등보통학교 등으로 ‘고등보통학교’ 체제를 따랐고 장로교 측은 대체로 ‘지정학교’를 받아들였다. 지정학교 승격의 사례는 권영배, “日帝下 私立各鐘學校의 指定學校 昇格에 관한 一研究,” 『朝鮮史研究』 제13집(조선사연구회, 2004); 특히 장로교 측의 사례는 박용권,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대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역사』, 375-395. 한편 대학은 연희전문(1917), 세브란스의전(1917), 이화여전(1925), 숭실전문(1925) 순으로 인가받았다.
 - 2) “부족한 중등학교 엄청난 지원율,” 『동아일보』 1928년 3월 11일자. 당시 기독교계 학교를 ‘지정학교’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동맹휴학 분규는 1920년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 3) 노치준, “일제하 한국장로교회 총회 통계에 대한 연구,” 『현대한국의 종교와 사회』(문학사지성사, 1992), 84-90.
 - 4) 천주교 측의 재단법인화는 윤선자, “일제하 조선천주교회의 법인화과정,” 『북악사론』 4집(1997) 참조; 윤선자, “일제하 종교단체의 경제적 기반 확보 과정,” 『한국근현대사 연구』 24집(2003년 봄)은 그 후속편이면서 불교계와 기독교계도 다루었다; 박용권, 같은 책, 247-255는 기독교 측의 재단법인화를 장로교 측의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했다. 기독교 측의 법인화정책과 그 법적 성격에 대한 가장 상세한 연구는 안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法人化)정책-1920년대 선교회·교회 재단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31호(2009년 3월).

교 최대 교파인 장로교는 세례교인을 포함, 신자총수가 20만에 육박했고 전시체제기 직전인 1936년경까지 계속 성장해서 341,700명 정도에 이르렀다.⁵⁾ 1930년 장로교 총회는 ‘교회진흥방침 연구위원회’를 결성하고 교회 발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세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서북지역의 기독교 부흥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전체 기독교 성장세의 중심을 차지했다.⁶⁾ 이 지역의 기독교 성장 중심에는 신자들의 활발한 전도활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북지역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집회들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 예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1931년부터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에서 개최한 관서 기독교청년 수양회와 같은 연합집회를 들 수 있다.⁷⁾ 서북지역 기독교계 고등교육기관인 숭실전문학교는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대강당을 가지고 있어서 각종 수양회와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⁸⁾ 또한 숭실은 1930~35년 기간에 매년 전도대와 악단을 활용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전도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사참배문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1935년 여름은 그러한 활동의 정점이었다. 숭실전문학교는 그 해 여름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하

5) 장로교 교세는 가톨릭 교세를 제외하고 항상 전체 기독교계의 70-80%를 차지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60-261; 콰안런(박용규·김춘섭 옮김),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대한기독교서회, 1994), 382-383.

6) 서북지역 기독교계의 특색과 성장배경은 서정민, “평안도 지역 기독교사의 개관,”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호(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94); 이광린, “평양과 기독교,” 같은 책, 제10호(1999) 참조. 이 지역의 장로교 선교의 특징으로 ‘중산층’적 토대 위에서 전개된 선교사들의 보수적인 신앙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립·자전(自傳)·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네비우스(Nevius)식 교회운영과 성경에 대한 문자적 강조를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콰안런, 같은 책, 327-357.

7) 수양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신앙문제, 청년운동, 농촌운동, 여성문제 등이었는데 당시 현실을 반영, 농촌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 수양회의 강사진에는 당시 숭실전문학교의 교수진과 기독교계 저명인사들, 예를 들면 이훈구·박형룡·조만식·정인과·채필근 등이 참여했다. 이러한 연합집회는 적어도 1936년경까지 지속되었다. 『숭실대학교 100년사 1: 평양숭실편』(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351-366.

8) 1930년 10월 10일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기숙사와 함께 낙성식이 거행된 대강당은 지하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공사비 5만 4,400원이 들었고 건평 303평, 연평 756평에 달하며 수용인원 6,000명에 달했다. 숭실전문학교의 시설확장은 같은 책, 339-342 참조.

기 아동사경회,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4회 관서 남녀기독교청년 수양회 등을 주최했다. 58명의 참여 학생으로 이루어진 여름 전도대의 활동은 전국 13개도와 만주지역에까지 미쳤다. 이들이 각 지역에서 개최한 성경학교에는 7,235명이 참석했는데 각 지역에서 60명에서 4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다. 전도대가 당시 접촉한 사람들의 총수는 25,000명 정도에 달할 정도였다.⁹⁾

선교활동의 밝은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식민지 조선의 사정은 그리 밝지 못했다. 1929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 경제대공황은 조선도 비껴갈 수 없었는데 특히 농촌경제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때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 간에 발생한 갈등, 즉 ‘완바오산[萬寶山]사건’¹⁰⁾ 발생 후 일제는 조선 내 반중여론을 조성하면서 만주침략을 단행했다. 평양의 조선인들은 비등한 반중정서 속에 중국인들에게 살상과 테러행위를 자행했다.¹¹⁾ 반중여론은 당시 평양지역 선교사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이었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계는 기존의 보수적인 신앙의 확산과 전도에 집중하면서도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국제기독교청년회(YMCA)는 고든 애비슨(Gordon W. Avison), 아더 번스(Arthur C. Bunce, 1901-1953), 프란시스 클라크(Francis O. Clark) 등 농촌활동 전문 인력을 1925년부터 차례로 조선에 파견했다.¹³⁾ 이들은 신흥우(1883-1959),¹⁴⁾ 홍병선 등

9) George S. McCune, "Union Christian College Preaching Bands," *Korea Mission Field*(이하 *KMF*), 31(1935년 12월), 259-260.

10) 유신순(신승하 외 옮김), 『만주사변기의 중일외교사』(고려원, 1994)(고려대학교 중국학총서 15), 48-51.

11) 이 사건이 조선에 알려진 7월 5-6일, 평양의 중국인 거리에서 조선인들이 수많은 중국인들을 살상했다. 윤치호와 같은 조선지식인들은 일제의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역시비평사, 2001), 276-278(1931년 7월 3일, 5일, 13일).

12) 평양에서의 중국인 학살과 당국의 방조로 이 지역 선교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의 기억으로, 1930년대 중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시,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행위를 우려해서 서울 미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13) YMCA 농촌활동에 대해서는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한국

한국인 간사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농업기술 개량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순회교육을 실시했다.¹⁵⁾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 직후인 1929년,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농촌부를 설치해서 정인과·이승길·조지 맥쿤(George S. McCune, 尹山濶; 1873-1941)¹⁶⁾·배민수 등을 중심으로 농촌활동을 전개했다. 장로교 총회 산하 농촌부는 특히 평양의 승실학교 재단 측과 긴밀히 협조했다.¹⁷⁾

관서지역에서 개최된 수양회에서도 농촌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면 승실전문에서 1932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된 제2회 관서 남너지독청년 수양회에 ‘기독교의 정신을 실천하자’라는 표어 하에 목회자 350명을 포함한 3,000여 청중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여기에는 당대 서북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기호지역의 일부 엘리트들이 강사로 참가했다. 백낙준·하경덕·김활란·조만식·이훈구·채필근·길선주·송창근 등이 그들이었는데, 강연과 토론 제목 가운데 금일 조선의 경제운동, 조선과 물산, 조선농촌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⁸⁾

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57-68;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주의 연구』(혜안, 2001), 323-349 참조.

- 14) 신흥우는 독립협회 활동에 관여했고 1920-1935년 YMCA 총무,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대표 등을 역임한 식민지 시기 가장 저명한 기독교 인사 중 한명이었지만 일제말의 전쟁협력으로 해방 정국에서는 거의 은자처럼 활동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전후로 미군정의 지원으로 *Union Democrat*이라는 신문을 간행하면서 활동을 개시했다. 1952년 대선에서 이승만과 맞붙었으나 정치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해방 후 신흥우의 활동과 미국 측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J. Earnest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83-92.
- 15) 이들은 겨울인 1-4월에 각지를 순회하면서 농업단기학교를 운영했다. Francis O. Clark, "Farm Schools for Korea," *KMF* 26(1930년 1월); F. O. Clark and D. N. Lutz, "Twenty Farm Schools in Korea," *KMF* 26(1930년 6월).
- 16) 그는 1905년 평양에 교육선교사로 부임한 후 1909년에 선천 신성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일제는 '105인 사건'과 '3·1운동' 발발 시 맥쿤을 서북 지역의 반일선교사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아들의 건강문제로 1921년 미국으로 돌아가 휴론대학(Huron College) 학장을 역임했다. 1928년 승실중학과 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조선으로 돌아왔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1936년 귀국했다. 그에 대해서는 안종철, "윤산온의 교육선교활동과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3집(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참조.
- 17) 한규무, 같은 책, 57-68; 장규식, 같은 책, 349-376.

승실전문학교는 1931년 농학과를 설치하고, 선교사 텍스터 루츠(Dexter N. Lutz, 1890-?)와 미국 위스콘신대학(Univ. of Wisconsin)에서 농업경제를 전공하고 중국 남경의 금릉(金陵)대학에서 교수생활을 하던 이훈구(1896-1961)¹⁹⁾를 초빙했다. 또 명재익·김응룡·김호식·이구화·이근태·최윤호 등을 교수진으로 보강했다.²⁰⁾ 농학과는 『농민생활』 간행에 관여하기도 했고, 농민들의 교육을 위해 농사강습회를 조직했다.²¹⁾ 그러나 기독교계 농촌운동이 일제 강점기라는 한계 때문에 토지소유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농사기술의 개량과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리고 국제 기독교 단체들의 재정 부족도 한 원인이었다.²²⁾ 그러므로 1930년대 중반 총독부가 주도하는 농촌운동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었다.

기호지방의 기독교인들도 변화된 사회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은 앞서 언급한 YMCA 계열의 농촌활동과 1935년의

18) 『승실대학교 100년사』, 357-358. 농촌문제는 주로 이훈구가 강의를 담당했다.

19) 이훈구는 위스콘신대학에서 한국농업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36년 신사참배문제로 맥클이 한국을 떠난 후 승실전문학교의 부총장이 되었다. 1938년 학교 폐교 후에는 서울로 와 조선일보 주필과 부사장이 되었다. 해방 전후 한국 농업문제에 대한 가장 뛰어난 전문가로 미군정의 적산 불하 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헌 국회의원, 초대 참의원 의원, 성균관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승만 정권과는 농지개혁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다. 5. 16 군사혁명 후 정치활동을 그만두었고 곧 사망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의 이훈구 항목 참조. 그는 소농분위의 자본주의적 농가 자립 정책을 옹호했고 소작운동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의 농업경제론에 대한 분석은 방기중, “일제하 李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 『역사문제연구』제1호(역사문제연구소, 1996); 방기중, “일제하 李勳求의 韓國土地制度史論,” 『동방학지』127집(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참조.

20) 교직원 변동은 『승실대학교 100년사』, 295-298. 학교의 확장은 1928년에 부임한 맥클의 지도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21) 이 잡지는 1929년 5월에 장로교 농촌부에 의해 창간되어 1933-34년에 승실전문학교에 영업권과 경영권이 넘어갔다. 1937년 승실전문학교의 농과가 폐지되자 장로교 농촌부가 경영권을 인수해서 1942년경까지 발행했다. 이 잡지가 장로교 농촌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한규무, 같은 책, 74-75, 127-129 참조.

22) 재정부족으로 YMCA 농촌사업이 축소됨으로 아더 번스 부부가 1934년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단적인 예이다.

‘적극신앙단’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적극신앙단은 YMCA 총무였던 신홍우가 주도하여 서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1930년대 초에 조직한 단체이다. 적극신앙단 활동은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 흥업구락부, YMCA 농촌운동의 연장선상에서(혹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파시즘의 절대적 지도자론과 국가 사회주의적 경향에 매료되어 기독교계 전체를 일원적 지도하에 통합해서 사회개혁을 추진하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국내의 이승만 계열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또한 이 단체는 현실사회에 대한 개혁 논리를 무기로 삼았는데 조직과 지도자론, 실업문제 해결 등에서 파시즘과 친화성이 있었다.²³⁾ 그러나 신홍우 일파의 YMCA 임직원 사퇴로 적극신앙단이 해체된 것에서 보듯이,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 일각의 관심축구가 전체 기독교로 확산되는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다만 세계 경제대공황 이후 기독교계 일부가 경제문제에서 자유방입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운동과 적극신앙단 등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에 반해 서북지역의 보수적 장로교의 교세는 계속 성장했다.²⁴⁾

한편, 미국 선교사들은 1934년 한국기독교선교 50주년을 맞아 교계의 성장을 축하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 해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의 경신학교(John D. Wells School)에서 개최된 선교사대회에는 맥쿤, 사무엘 마펫(Samuel A. Moffett, 馬布三悅; 1854-1939)²⁵⁾,

23) 적극신앙단에 대해서는 김상태, “일제하 개신교 지식인의 미국 인식-신홍우와 적극신앙단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권(한국역사연구회, 2005) 참조. 서울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1920년대에서 30년대의 사회운동을 통해 국가사회주의와 친화력이 있었다. 최병택, “1925-1935년 서울지역 基督教 勢力의 社會運動과 그 歸結,” 『한국사론』, 45호(서울대 국사학과, 2001) 참조; 적극신앙단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는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547-575 참조.

24) 박용권은 총회회의록 분석을 통해 1930년대 중반 장로교 측이 내부분열과 더불어 감리교와의 연합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자체적인 조직강화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로교 측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 그 이면에는 1930년대 중반 경직된 성경해석과 헌법개정작업이 있었다. 박용권, 같은 책, 193-199.

25) 마펫은 인디애나 주의 하노버(Hanover) 대학과 맥코믹(McCormick)신학교를 졸업 후

찰스 클라크(Charles A. Clark, 郭安連; 1878-1961) 등 평양의 북장로교 원로선교사들이 대거 참석, 한국교회의 부흥과 북장로교 선교회에 대한 글을 발표했다.²⁶⁾ 이 자리에서 선교사들은 조선선교의 성취결과를 기념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기독교선교의 전망을 토론했다. 선교사들은 이 회의를 통해 기존의 기독교 선교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성경의 중심적 위치, 자립, 기독교인의 높은 생활표준, 선교, 의료와 교육에서의 기독교 전도 등을 강조했다.²⁷⁾

기독교계의 한국 기독교 선교 50주년 사업은 선교사들에게 한국선교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다. 행사 중간인 1934년 7월 2일에는 조선 총독이 선교사들을 위해 직접 만찬을 베풀기도 할 정도로 총독부의 태도도 우호적이었다.²⁸⁾ 그러나 이 무렵부터 일제당국은 본격적으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 성격을 지녔고 기독교계 학교에 강요되었으므로 그동안 기독교 역사학계에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신사참배의 종교성과 함께 민족주의적 저항과 타협이라는 관점들이 부각되면서²⁹⁾ 일본 당국의 신사참배 강요 의도와 기독교계의 저항 논리는 상당히 해명되었다.³⁰⁾ 그러므로 참배 강요와 민족적 저항이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되 그것이 제기된 역

1890년에 대한, 평양신학교(1904-24), 승실학교, 승실전문학교 교장(1918-1928) 등을 역임했다. 그의 지도력으로 평양신학교의 노선이 확립되었다. 그의 두 아들도 한국에서 활동했다. 김승태·박혜진, 『내한선교사 총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383-385. 승실전문학교를 창설한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 裴偉良; 1862-1931)도 모팻과 같은 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했다. Richard H.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 (Private Print, 1968), 2-4.

26)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Seoul: YMCA Press, 193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자료총서 27로 영인).

27) 기독교기관의 책임자로 점차 한국인들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Findings," Ibid., 234-236.

28) "Program," Ibid., 1-3.

29)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31-233.

30)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참조. 이 책의 부록에 있는 신사관련 재판 판결문은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된 기본 자료는 김승태 편역, 『종교정책』, 177-218 참조.

사적 맥락을 엄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³¹⁾

먼저 ‘만주사변’ 직후 신사참배강요를 주도한 일본 군부와 선교사 측의 대응에 대해 포괄적이며 시계열(時系列)적인 이해가 필요하다.³²⁾ 즉 일본 군부 측과 총독부 민간관료와의 차이점, 각 지역과 직종에 따른 선교사들의 태도 차이 등을 보다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선교사들의 신사참배 거부와 뒤이은 교육사업으로부터의 철수문제와 관련된 북장로교 조선 선교부와 미국 해외선교부 간 갈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교파, 즉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등의 교육철수와 관련된 대다수 한국인들의 저항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 등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는 교육사업에서의 철수 시 발생한 북장로교 선교사들 간의 대립을 서울 대 평양 선교부간 대립을 중심으로 설명한다.³³⁾ 후술하겠지만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 서울 대 평양 사이에는 갈등이 야기되었지만 교육철수 문제는 교육선교사 대 ‘전도지역(evangelical)’ 선교사 간 대립의 성격도 혼재되어 있었다.

-
- 31) 대부분의 역사서술은 일제의 기독교탄압을 민족말살정책과 동일한 범주에 둔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9장; 박응규,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 한부선 평전』(그리심, 2004), 24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연세대출판부, 1993)(1982의 개정판), 478-511. 민경배는 신사참배를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을 모두 ‘민족교회’라는 범주 내에서 설명하면서 해방 후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발생했던 고려 신학교 측과 장로교 총회 측의 갈등과 관련해서 오히려 참배를 반대했던 고신 측을 비난했다. 그의 책 곳곳에 무리한 민족교회의 ‘통합’ 논리가 서술되어 있다. 민경배, 같은 책, 521-522 참조.
- 32) 김승태는 1932년 1월 전남 광주지역의 기독교계 학교들의 ‘황군에 대한 기원제 불참 사건’이 ‘만주사변’ 이후 최초의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9월 평양 기독교계 학교들의 ‘만주사변 1주년 기념 전몰자 위령제 불참 사건’, 1933년 9월 원산·함흥 기독교계 학교들의 ‘만주사변 2주년 기념일 순난자 위령제 불참 사건’ 등과 1935년 11월 14일 평양에서 발발한 선교사들의 신사참배 거부사건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일제 당국의 정책이 1930년대 내내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다. 그의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다산글방, 1994), 22-23·132-133.
- 33) 한석희,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과 사와 마사히코, “일제하 ‘신사문제’와 기독교주의 학교,”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李省展, 『朝鮮의 人宣教師と朝鮮의 近代』 8장과 結章 등.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신사참배문제의 정치사적, 외교사적 의미이다.³⁴⁾ 신사참배문제의 핵심은 바로 천황제 문제였으므로 이는 일본 정치의 특징과 직결되는 문제였다.³⁵⁾ 신사참배 문제는 내한 선교사들만이 아닌 일본 제국 각지에서 일했던 타 교파의 미국 선교사들과도 관련된 문제로, 이는 미일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 일본 본토 거주 선교사들과 서울과 동경의 미국 외교관의 입장, 나아가 워싱턴의 미국 정부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의 패망 전후 미국 정부 내에서 일본의 천황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천황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전전에 일본 내 미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있었거나 선교사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다.³⁶⁾ 이들의 전후 입장은 후술하겠지만 식민지 조선에서의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이미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신사참배강요와 선교사들의 교육기관철수 문제는 일제 말기 일제의 강압적 정책, 선교사들을 매개로 한 한미일 관계, 조선인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애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일제의 억압과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저항이라는 관점을 다른 주제들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신사참배 논란

조선 식민지에서 신사참배 논란은 조선신궁(朝鮮神宮) 완공 시인 1920년

34) 이 문제는 제2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35) 김승태는 신사참배 문제를 ‘천황제’ 이데올로기 문제로 시야를 보다 확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김승태, “193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 문제와 선교부의 대응,”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159-160.

36) 천황제 유지를 지지한 대표적 인사는 1932-1942년 주일 미 대사를 역임한 조셉 그루(Joseph C. Grew), 극동국 관리였던 조셉 발렌타인(Joseph Ballantine), 휴 보튼(Hugh Borton) 등이었다. 휴 보튼은 퀘이커(Friends Mission) 선교사였다. 이에 대해서는 안중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역사학보』 제189집 (역사학회, 2006), 86-87 참조.

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³⁷⁾ 1925년 10월 경성[京城; 서울]에 국가신사[官幣大社]인 조선신궁이 완공되었다.³⁸⁾ 완공 예식에 경성 소재 각종 학교가 대규모로 동원되었으므로 기독교계 사립학교도 민감하게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국이 조선신궁에 천황의 조상인 아미테라스 오오카미[天照大神]와 메이지[明治]천황의 ‘영령’(英靈)을 안치했으므로 기독교인들이 완공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한 해 전인 1924년 12월 29일 경성 주재 일본인 기독교 연합회가 일본 YMCA 건물에 정무총감 시모오카 추우지[下岡忠治]³⁹⁾를 초청해서(招致), 비공식 회합을 가졌을 때 처음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 경성 주재 일본 기독교 연합회 회원인 사이토 오토사쿠[齋藤音作]는 신사문제는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비록 당국이 신사는 “왕실의 조상과 국가의 은인들에게 숭경(崇敬)을 바치는” 장소라고 주장하지만 신사의 예식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보았다. 사이토는 그 근거로 1921년 런던의 로마 가톨릭 기관이 일본에는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한 점을 들었다. 실제 당시 교황청은 신사참배 예식을 “고대 로마의 제왕숭배(帝王禮拜)와 유사”하므로 신에 대한 “대역(大逆)행위”라고 보았다.⁴⁰⁾

사이토는 자신의 주장의 주요 근거로 일본 동경대학교의 종교철학과

37) 1935년 이전의 조선에서의 신사제도와 참배와 관련된 간단한 고찰은 한석희,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 김승태 엮음, 같은 책, 43-55.

38) 명치유신 후인 1871년, 일본 당국은 천황가의 조상신을 모시는 이세(伊勢)신궁을 정점으로 전국 각지에 관·국폐사(官·國幣社), 산토사(産土社)를 위계적으로 편성하는 법률을 공포했다. ‘관폐사’는 궁내성이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역대 천황·황족을 모시는 신사이고 ‘국폐사’는 지방관이 재정과 제사를 관장하는 신사였다. 安丸良夫·이원범 역,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신흥종교』(소화, 2002), 26-32, 205-207. 조선신궁의 건립과 배경에 대해서는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朝鮮神宮 건립과 운영,” 『한국사론』 50(서울대 국사학과, 2004); 손정목, “朝鮮總督府의 神社普及·神社參拜 強要政策研究,” 김승태 엮음, 같은 책, 253-359 참조.

39) 1924년 7월 4일부터 1925년 11월 22일까지 정무총감을 역임했다.

40) 사이토는 총독부 당시 임업국에서 일했고 경기도 협의회 회원이었다. William C. Kerr, “Shinto Shrine in Chosen,” *KMF* 21(1925년 4월).

교수인 이노우에 테츠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⁴¹⁾와 가케히 가츠히코[寬克彦, 1872-1961]⁴²⁾ 등 저명한 학자들이 “신사참배”가 “종교”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들었다. 게다가 그는 신사문제가 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다루어져 왔으므로 신사는 “명백히 종교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사문제를 종교과에서 담당했다는 것은 신사의 정책이 종교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 그는 대안으로 신사의식에서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학생들과 교원들의 신사참배를 “선택”의 문제로 다루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합 이후 정무총감은 총독과 협의했고, 당국은 새해가 바뀌자 신사문제를 학무국 종교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내무국 사회과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⁴⁴⁾ 그 결과 1925년 1월 10일에 관련 업무가 내무국으로 이관되었다.

경성 주재 일본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측면에서 신사참배에 문제제기를 한 것과 달리 당시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했다. 1924년 11월에 충남 강경 보통학교의 아동을 교사가 인솔해서 참배를 위해 신사에 갔다. 당시 일부 학생들이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서 교사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냥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도 당국은 해당 여교사에게 휴직을 명했다.⁴⁵⁾ 이듬해 『동아일보』는 이 문제를 조선신궁 완공과 연

41) 이노우에는 동경대 종교학 교수로 국가주의 사상을 강하게 주장했던 철학자로 metaphysics를 형이상(形而上)으로 번역한 인물이다. 우치무라 간조가 교육칙어 봉정시 고개를 숙이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천황에 대한 불경사건’(1890)이 발생했을 무렵 기독교가 가진 반국가성을 강력히 비난했다. 澤正彦, 『일본기독교사』(대한기독교서회, 1969)(개정신판, 1995), 98-101.

42) 카츠히코는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후 1903년부터 동경제대 법학부에서 헌법과 국가학을 가르쳤는데 천황과 국가는 일체라는 학설을 주장했다. 호즈미 야즈카(穗積八束, 1860-1912), 우에스키 싱키치(上德愼吉, 1878-1929) 등과 함께 천황제 옹호론을 주장한 인물이다.

43) 새로운 관제는 朝鮮總督府訓令 제1호(1925년 1월 10일), 『朝鮮總督府 事務分掌規定中改正』으로 발표되었다. 김대호, 같은 글, 326·338.

44) William C. Kerr, “Shinto Shrine in Chosen,” 82-83.

45) 『조선일보』1924년 11월 24일; 『기독교신보』1924년 11월 26일자에 보도되었는데 『동아일보』는 이듬해에야 기사화했다. 사와 마사히코(澤正彦), “일제하 '신사문제'와 기독교주의 학교,”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397. 당시 동아일보가 이

결시켜 다시 문제 삼았다. 즉 학생들에게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키는 것은 민족감정상 문제가 있다고 당국을 비판했다. 즉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大和族 以外の 祖先을 爲하여 設置한 것이 아니니 神社에 對하여 日本人이 그러한 崇高한 敬意를 表하는 것은 日本民族이라는 點에 意味가 있는” 것이지만 “일본인 이외의 민족이 일본인의 신사를 존중하기를 바라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⁶⁾ 또 “아무 이해가 없는 것은 물론이요, 감정상으로 그에 대한 감촉(感觸)이 없다고 하여도 과연 아닌, 조선인 아동에게 대하여 참배를 강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일로서 총독부 당국의 교육방침이 “조선인의 민족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난했다.⁴⁷⁾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일제는 조선신궁 완공예식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예식참여를 강요하지 않기로 하고 공립학교만 신사예식에 다수 참여케 했다. 그리하여 1925년 10월 15일 32,000명의 학생들이 일본천황의 조상신이 있다고 믿어진 함(函)을 일정한 자리에 두는, 준공식에 해당하는 진좌제(鎮坐祭) 행사에 참석했다.⁴⁸⁾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여행대(御靈代)맞이 행사에 장로교 계통의 학생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립학교 학생들이 주로 참여한 것이다.⁴⁹⁾ 일제는 1920년대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신사문제를 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신사문제를 종교가 아닌 사회 혹은 국가의식의 문제로 삼으려고 했다. 1920년대 일제는 서구국가, 특히 기독교 측의 입장을 배려함으로써 신사예식을 둘러싼 갈등을 피해갈 수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아마도 조선신궁의 건설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부금을 조선인들에게 더 걷으려는 당국의 입장에 반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46) “強制參拜問題(上-逆理에 徹底한 教育當局者),” 『동아일보』 1925년 3월 18일.

47) “強制參拜問題(下-逆理에 徹底한 教育當局者),” 『동아일보』 1925년 3월 19일.

48) 진좌제를 둘러싼 인력동원과 분위기에 대해서는 김대호, 같은 책, 338-343.

49) 사와 마사히코, 같은 글, 398. 『동아일보』 1925년 10월 15·16일자 사설은 진좌제 당시 기독교계 학교의 동향을 다루었다. 16일자 사설 “信仰은 自由-當局의 注意를 要한다”는 신사는 종교이기에 기독교 측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기독교 측을 옹호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전부터 신도가 종교인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그것은 메이지유신(1868) 이후 신도가 민간종교에서 국가의례로 변화된 상황과 관련있다. 메이지유신은 천황을 정점으로 고대의 제정(祭政)일치의 흐름을 복원한 형식을 취했다. 게다가 유신 전후 일본 당국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기독교 국가종교화 정책을 본받아 국가 통합을 위해서 신도를 국교로 채택하려고 했다. 1867년 11월 17일에 정부가 쇼군[將軍]과 다이묘[大名]들에게 보낸 문서에는 “신기관(神祇官) 및 태정관(太政官)을 각기 옛날 처럼 재흥시킬 것을 생각”한다고 기록되었고 동년 12월 9일에 발표한 ‘왕정복고의 대호령’은 “모든 일은 진무(神武)천황의 건국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했다.⁵⁰⁾ 그리하여 메이지 정부는 토착신을 모신 신사인 산토사(産土社)에서 주변의 일정범위에 걸쳐, 씨족신을 모시는 주민들을 등록시키는 정책[우지코시라베; 氏子調査]을 취함으로써 일반인들에 대해 통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불평등 조약개정과 서구문화 흡수를 위해 서구를 방문하고 1873년 돌아온, 이와쿠라 토모미[岩倉具視]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은 정부의 신도국교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왜냐하면 사절단이 방문한 서구 각지에서 일본정부가 신도국교화 정책과 함께 수행한 기독교 박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신도를 국교화하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했을 때 서구 국가들과의 불평등 조약의 개정 가능성이 낮아지리라고 판단한 메이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일본제국헌법(1889) 제28조에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신사를 국가 의례의 영역으로 복속시켰다.⁵¹⁾ 신도가 국가 의례가 됨으로써 다른 많은 종교들, 특히 불교계는 신도 내에 종속된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입지를 보장받으려고 했다. 이 때부터 국가신도는 모든 종교보다 사실상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다.⁵²⁾

50) 진무천황은 BC. 660년에 즉위했다고 믿어지는 초대 천황이다. 신도문제와 당시의 신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安丸良夫, 같은 글, 22-23.

51) 메이지 유신 당시 신도국교화의 시도는 安丸良夫, 같은 책, 26-32, 신도국교화의 실패는 같은 책 6장 “대교원(大教院)체제에서 ‘신앙의 자유’로” 참조.

52) 安丸良夫, 같은 책, 182-187.

일본 정부는 1900년부터 국가 신도와 종교 신도를 각각 내무성 신사국과 종교국에서 관장했다. 그러나 이는 신도의 종교성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는 것이었으므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신사의식 자체가 국가 신도든 종교신도든 관계없이 유사했기 때문에 종교성 문제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국가신사 중 가장 중요한 야스쿠니[靖國] 신사는 원래 초슈[長崎] 번[藩]에서 행해진 초혼제(招魂祭) 형식을 답습한 것으로, 이는 억울한 영혼의 재앙을 진정시킨다는 민간의 어령신앙(御靈信仰)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신사에 대한 참배는 분명히 종교적 성격 을 가지고 있었다.⁵³⁾ 신사문제는 종교자유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였다.

종교자유와 관련해서 일본제국헌법 제28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 항목, 즉 “일본 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부분도 해석상 애매한 부분을 제공했다.⁵⁴⁾ 이는 근대 서구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규정으로 해석에 따라서는 ‘종교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었다.⁵⁵⁾ 즉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라는 구절은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국가 당국자들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사실

53) 宮田光雄(김효전 역),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제도를 통한 정신』(교육과학사, 1992), 117-122이다.

54) 일본 제국헌법 원문은 김창록, 『日本에서의 西洋 憲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研究: 『大日本帝國憲法』의 制定에서 『日本國憲法』의 ‘出現’까지』(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부록 1에 수록. 일본은 패전 후 헌법 제20조 “신교의 자유, 정교분리” 항목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선언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패전 후 종교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새 『일본국헌법』하에서 국가기관 책임자의 신사참배는, 제20조 1항,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 대하여도 이를 보장한다. 여하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와 3항,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여하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통해 금지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당국자들의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본국 헌법문제에 대해서는 하세가와 마사야스(長谷川正安)(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소화, 2000). 현 일본국 헌법은 이 책의 부록에 수록.

55) 宮田光雄,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 114.

상 국가가 요구하는 질서에 종속되는 가치였다.⁵⁶⁾ 평화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가의 위기상황 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얼마든지 제약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신도를 종교로 보았다. 우선 일본 나가사키[長崎]의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 콰바즈(J. G. Combaz)의 의견은 기독교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수천 년간 일본의 관리들과 일반인들이 신사를 “성소(聖所) 및 예배장소(sanctuaries and places of worship)”로 간주해왔고⁵⁷⁾ 국가와 천황가, 조상들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종교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보았다. 종교적 편견이 없는 사람들, 당시 일본 사회의 분석가 래프카 디오 허언(Lafcadio Hearn)이나 앞서 언급한 이노우에 데츠지로와 가츠히코 가케히 등의 제국대학 교수들도 신도는 불교와 함께 일본인들의 오랜 종교였으므로 종교적 성격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⁵⁸⁾

후일 신사참배를 반대한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일본 제국대학 교수들의 신도에 대한 종교학적 설명을 자신들의 ‘신도종교론’의 논리적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 예를 들면 동경제국대학 법학부의 교수였던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陣重, 1856-1926]⁵⁹⁾는 신사참배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조상숭배”(ancestor-worship)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신도는 일본의 문화와 일본법의 기저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도 “조상숭배와 관련”이 있으므로 기독교 측이 신사에 참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보았다.⁶⁰⁾ 조선에서 조상에게 행하는 제사를 우상으로 금지해온 미국

56) 安丸良夫, 같은 책, 306-307.

57) Arthur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복간), 337-338.

58) Ibid., 338-339.

59) 호즈미는 동경제대 법학과 과장과 귀족원 의원, 추밀원 의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일본 국수론 법학자이다. 동경제대 법학과 과장, 귀족원의원을 역임한 호즈미 야즈카(穗積八束, 1860-1912)의 형이다. 두 형제에 대해서는 戰前期官僚制研究會 編/秦郁彦 著, 『戰前期日本官僚制(的)制度・組織・人事』(東京大出版會, 1981), 205 참조.

60) “Ancestor Worship in Japan,” May 15, 1936. 『신사참배 II』, 134-136. 이 글은 일본주재 선교사가 호즈미의 “Ancestor-worship and Japanese Law”의 일부를 발췌해서 미 북장로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호즈미의 의견은 그의 의도와 달리 ‘신도종교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일본학자는 가토 겐치[加藤玄智, 1873-1965]이다. 1935년에 가토는 자신의 오랜 연구생활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1,400쪽이 넘는 일본종교에 대한 저술을 출간했다. 그는 이 저서에서 신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피력했다.⁶¹⁾ 그는 신도가 “모든 종교의 근본에 있는 믿음”이며 “종교 중의 종교”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파 신도만이 아니라 국체신도와 신사신도를 포함하는 국가신도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라고 주장했다.⁶²⁾ 이들 제국대학의 법학 및 종교학 교수들은 황국사관과 황국헌법 질서를 옹호하면서 정부의 제정일치 정책을 사실상 뒷받침해주었다.

일본에서 장기간 선교사로 활동한 미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신도종교론을 주장한 학자가 있었다. 홀툼(D. C. Holtom)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그의 저서는 일본 학자들의 것과 함께 선교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신도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면서 “신에게 바치는 기도의식”이 “의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신도의 종교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⁶³⁾

한편 학자들의 신도종교론적 입장에 대해, 일본 언론은 신도는 일본 고래의 종교로서 신도 내에는 “종교적 요소”가 존재하므로 정부가 그것을

교 해외선교부에 보낸 것이다.

61) 『神道の宗教發達史の研究』(東京: 中文館書店, 1935). 가토는 동경제대 철학과 졸업 후 동경제대와 고쿠가쿠인[國學院] 대학의 종교과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신도는 종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62) “Fulton to Friend,” May 15, 1937, “Concerning Relations with Golden Castle College (relative to the matter of the shrines),” 1939 『신사참배 II』, 214-215, 402-403. 한국과 일본 주재 남장료교 선교사들은 신도종교론의 근거로 가토의 주장을 적극 활용했다.

63) “Concerning Relations with Golden Castle College (relative to the matter of the shrines),” 1939, 『신사참배 II』, 400-401; D. C. Holtom,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A Study of Present-Day Trends in Japanese Religions*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1943년 판의 개정판), 157-158. 그는 신도는 일본 국민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본의 팽창과 신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거해서 논란이 없게 할 것을 촉구했다.⁶⁴⁾ 이에 는 요미우리[讀賣]와 니치 니치[日日] 신문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 제국대학 교수, 선교사 출신의 구미학자, 그리고 일본 언론 등은 신사참배 논란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신도가 종교적 의례라고 보고 있었다.

신도의 종교성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너무 부각되어 일본 제국 내에서 구미선교사들의 활동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사람도 있었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로 오랜 기간 활동한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 1856-1963)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입장은 1920년대까지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신도에 관한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⁶⁵⁾ 그는 “전쟁을 통한 일본 국가의 번영과 힘의 성장”은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증대”만이 아니라 “신도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당시 일본의 국력신장과 종교의 관련성을 짚었다. 그가 보기에 신도는 일본 내 기독교의 성장을 억압함으로써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일본에서 “애국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의 유사성” 때문에 “서구적인 종교개념”을 일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⁶⁶⁾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신도의 비종교성을 지적한 경우에서 나아가 일본 문화에 대한 존경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사람도 있었다.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동경여자대학교를 세웠던 어거스트 라이샤워(August K. Reischauer, 1879-1971)⁶⁷⁾는 일본의 사상,

64) 위의 “Fulton to Friend,” “Concerning Relations with Golden Castle College (relative to the matter of the shrines),” 『신사참배 II』, 215-216·404.

65) 브라운은 1895년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회 간사로 들어온 후 해외선교행정에 헌신하여 1903년부터 1929년까지 무려 26년간 해외선교부 동아시아 관련 총무를 역임했다. 그는 자주 선교현지를 방문했고 미일간의 고위층에 많은 지인을 두었다. 그에 대해서는 Arthur J. Brown, *The Mastery of the Far East*의 “자료해제” 참조.

66) Ibid., 337-340.

67) 라이샤워(AKR)는 인디애나(Indiana)주의 장로교 대학인 하노버(Hanover)대학과 시카고의 맥코믹(McCormick) 신학교를 졸업한 후 1905년 일본에 교육선교사로 왔다. 그는 메이지학원(明治學院)에서 교수로 생활한 교육선교사였다. 영국 왕립협회 일본 지부(회장은 주일 영국대사)에서 영국인 조지 샌섬(George B. Sansom), 일본인 아네사키 마사하루[姉崎正治]와 함께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협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전후

특히 불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선교사들의 일본 문화에 대한 무지를 비판하기도 했다. 신도에 대해서는 그 종교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국가신도와 교파신도의 구별을 받아들였다. 즉 그는 국가신도는 미국의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⁶⁸⁾ 신도문제에 대한 선교지의 선교사, 외교관들과 본국의 해외선교부 인사들의 입장 차이는 신사참배강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 ‘만주사변’ 이후 신사참배 강요

1929년 세계 경제대공황이 본격화된 이후 서구국가들은 블록(bloc) 내 무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체제를 갖추어나갔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과 만주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당시 관동군 참모인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는 만주의 철과 석탄 등 자원획득이 미국과의 미래 전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동경의 허락

하버드 대학의 일본사교수이자 주일 미 대사를 역임한 에드윈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 1910-1989)가 그의 아들이다. 조지 센섬과의 관계는 아들 세대에도 계속되었다. 아들은 태평양전쟁 직후에 국무부에서 전후 대일정책관련 보고서 작성에 종사하면서 천황제 유지를 주장했다. 웨이커 선교사로 후일 국무부 일본과장을 역임한 휴 보튼도 영국 왕립협회를 통해 라이샤워 부자와 면식이 있었다. Edwin O. Reischauer,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 (New York and Tokyo: Weatherhill Inc., 1986), 13·18-20. 전후계획에 대해서는 104-109; 휴 보튼과 왕립협회, 라이샤워와의 관계는 Hugh Borton,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The Memoirs of Hugh Borton* (New York etc: Lexington Book, 2002), 32·47.

68) 라이샤워는 1925년 안식년을 맞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맥코믹 신학교, 인디애나 대학 등에서 일본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록이 이듬해 A. K. Reischauer, *The Task in Japan* (New York and Chicago: Fleming H. Revell Co., 1926)으로 출판되었다. 이 강연에 나타난 라이샤워의 ‘자유주의적’ 입장은 小檜山山正, “帝國のバハラリズム-イミナル・クラウン-としての東京女子大學,” 駒込武・橋本伸也 編, 『帝國と學校』(京都: 昭和堂, 2007), 304-310; 駒込武, “朝鮮における神社參拜問題と日米關係-植民地支配と‘内部の敵’,” 『帝國の戰爭經驗』(岩波講座 4: アジア・太平洋戰爭)(東京: 岩波書店, 2006), 81-82 참고. 고마고메 다케시[駒込武]도 가토 겐지, 홀튼, 라이샤워 등의 신도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언급했다.

없이, 1931년 9월에 중국군이 평톈[奉天] 북부 외곽의 류타오후[柳條湖] 근방에서 만주철도선을 폭파했다는 구실을 붙여 만주 전역에 걸쳐서 군사행동을 감행했다.⁶⁹⁾ 아울러 1932년 3월 1일자로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군사행동이 확대되면서 만주에서 일본군 사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식민지 당국은 이들 군인들의 ‘영혼’을 위해 이듬해인 1932년부터 만주와 가까운 곳인 평양일대의 사립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⁷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 송실학교와 송실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맥쿤은 신사참배가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항했다. 당시 평양의 일본 재향군인회지부 회원들은 선교사와 선교사 운영학교를 비난했고 일부 일본신민들도 그러한 비난에 동참했다.⁷¹⁾ 이것은 식민통치에서 군부 측의 압박이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총독부가 선교사계 학교가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것을 묵인해 주어서 큰 논란 없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왜냐하면 비록 일본이 1933년 만주문제를 두고 국제연맹으로부터 탈퇴하면서 군부 측의 입김이 거세어졌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 지도층은 영미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주의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군부에 대해 여전히 우위를 지켰다고 볼 수 있다.⁷²⁾

69) ‘만주사변’의 배경에 대해서는 『滿洲事變と滿洲國』, 『日本近現代史研究事典』(東京堂出版, 1999), 262-264; 유신순, 『만주사변기의 중일의교사』, 1-2장 참조.

70) 평양만이 아니라 전남 광주에서도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1932년 1월에 개최된 ‘만주사변 기원제(祈願祭)’에 광주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측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당국의 엄중한 경고 수준에 그쳤다. 김승태, “193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참배 거부 문제와 선교부의 대응,”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169.

71)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Failure of Certain Mission Schools in Korea to Participate in Memorial Celebrations on September 18, 1932,” 1932년 12월 1일(395.1163/8);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Agitation Over Failure of Mission Schools to Participate in September 18th Celebrations,” 1932년 11월 25일(395.1163/9), 『신사참배 I』, 23-34.

72) 중일전쟁 이전에는 일본이 영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해나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과 만주에서 본격적인 산업개발 계획을 추진해나갔다.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이해는 김낙년, “식민지기 조선 공업화에 관한 제 논점”; 주익중, “일제하 한국의 식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공업화”, 둘 다 『경제사학』 제35호(경제사학회, 2003); Carter J. Eckert, “Total War,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 in Late Colonial Korea,” in Peter Duus, Ramon H.

1930년대 초 신사참배문제와 관련해서 총독부 측이 선교사들에게 양보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주국 수립 직후인 1932년 5월 15일, 동경에서는 일단의 하급 장교들이 주동이 된 쿠데타가 발발해서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해 더 급진적인 팽창정책을 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문민’ 내각은 군부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었다. 일본 정계 수뇌부의 한 부분을 형성했던 조선총독부로서는 구미 국가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던 선교사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3·1운동 때 이미 경험한 바였다.⁷³⁾ 그러므로 총독부는 일본에 대한 선교사들의 우호적 여론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만주국이 설립된 지 1주일 후인 1932년 3월 9일에 총독부 당국은 12명의 미국 선교사들과 12명의 영국 선교사들을 은행연합회 집회소(Banker's Club)에 초청해서 회담을 가졌다. 일본 측 참가자는 총독 직속 관방(官房)의 외사과(外事課) 과장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와 통역관 오다 야스나[小田安名]였다.⁷⁴⁾ 당시 서울의 미국 총영사는 이 모임의 목적이 총독부가 선교사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본의 관점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 회담 직전에 일본군은 군사작전을 확대해서 이미 상하이로 자신의 영역 안에 넣고 있었다. 그러므로 총독부는 선교사들이 미국과 영연방 국가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본에 불리한 여론을 불리일으킬까 예의주시하였다.⁷⁵⁾ 외사과 통역관이 선교사들에게 미국의 친구들에게 일본 통치에 대해 우호적인 언급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은 총독부가 영미 여론에 민감했다는

M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War time Empire, 1931-1945*(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참고.

73) 안종철, “3·1운동과 선교사 그리고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53(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참조.

74) 외사과는 1939년 8월까지 총독직속으로 있다가 총독부의 외사부로 독립했다. 『施政三十年史』(朝鮮總督府, 1940), 413; 미야타 세쓰코 해설·감수(정재정 역),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혜안, 2002), 53의 미야모토 마사아키[宮本正明]가 조사한 표 참고.

75) John K. Davis to the Secretary of State, 1932년 3월 14일, No. 73.(395.1163/6), 『신사참배 I』, 16-19.

것을 보여준다. 선교사들 중에서 일본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임을 준비하면서 일본 당국을 비판하는 질문은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결정했다. 시국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선교사들은, “먼 곳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적 관용과 법과 질서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⁷⁶⁾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의 정세에 대해 선교사들은 침묵을 지키기로 했던 것이다.

이 회담 직후인 1932년 3-4월에 외사과 통역관 오다는 남부지방의 선교지부들(mission stations)을 방문해서 현지의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장을 만들었다. 오다의 방문 목적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⁷⁷⁾ 여기서도 선교사들은 일본의 만주침략행위에 대해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협조’에 답하기라도 하듯 당국은 같은 해 평양에서 발생한 신사참배 강요 소동에서 암묵적으로 선교사들의 입장에 동조했다. 1932년 9월 평양지역에서는 신사참배문제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9월 17일에 신사에 안치된 일본 군인들의 명령에 선교사계 학교들이 참배하지 않았던 것이 그 발단이였다. 그런데 거의 두 달 가량이 지난 1932년 11월 조선 내 일본계 언론이 갑자기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미총영사관이 보기에, 원인은 일본 재향군인회의 활동 때문이었다. 실제 재향군인회는 만주의 관동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⁷⁸⁾ 서울에서 발행

76) 위의 395.1163/6 문서, 『신사참배 I』, 18-19.

77) John K. Davis to the Secretary of State, 1932년 4월 1일, 395.1163/5, 『신사참배 I』, 15.

78) 원래 재향군인회는 규정 상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만주침략 이후 明倫會·皇道會 등 전위조직을 내세워 군비확장, 국제명징운동 등을 외곽에서 선동했다. 須崎愼一, “日本型ファシズムへの道よみかかって-在郷軍人政治組織=明倫會・皇道會の檢討,” 藤原彰・野澤豊 編, 『日本ファシズムと東アジア』(東京: 青木書店, 1977), 29-33. 재향군인회 일본·조선·대만 지부 회원 수천 명은 만주침략 이듬해 수천 명이 집회를 개최했다. “鈴木大將入京-日本在郷軍人會議 長春서 開催,” 『동아일보』1932년 6월 3일자.

된 일본계 신문인 『朝鮮日日新聞』은 11월 17일부터 평양지역의 선교사들, 특히 송실전문과 송실학교의 교장 맥쿤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신사참배강요에 유화적인 자세를 가졌던 평안남도 당국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⁷⁹⁾

재향군인회의 압력과 일본 신문들의 비판적인 보도가 있자 평안남도 당국과 서울의 총독부도 일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32년 11월 19일에 평안남도 도지사 후지와라 키조(藤原鬼城)와 미국 선교사들 간에는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고,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의식”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의식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평양의 신문들은 선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으며 불교적 의식이 생략된다는 조건으로 앞으로는 의식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평남 당국과 선교사들의 ‘애매한’ 태도를 비난했다. 재향군인회 서울과 평양 지부는 선교사들과 총독부간의 “타협”(settlement)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동경의 재향군인회 본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⁸⁰⁾ 총독부 의견을 대변하는 서울의 『경성일보』는 선교사들과의 11월 19일자 ‘합의’를 해명하면서도 선교사들의 입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측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평남도지사도, 신사참배는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종교가 아닌, “애국심을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므로 신사의식에 불참하는 것은 조선교육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⁸¹⁾

선교사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제 측은 선교사들과의 타협을 존중하고 그 이면합의를 공표하지 않았다. 평양의 원로 선교사 마펫은 후지

79)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Agitation Over Failure of Mission Schools to Participate in September 18th Celebrations,” 1932년 11월 25일(395.1163/9), 『신사참배 I』, 29-34. 이 문서에 『朝鮮日日新聞』1932년 11월 17, 18, 20, 21, 22, 23, 24일; 『京城日報』1932년 11월 22일자 기사가 첨부되어 있다.

80) Ibid., 『신사참배 I』, 30-31.

81) 『京城日報』1932년 11월 22일, 『신사참배 I』, 50-52.

와라 도지사가 이후부터 선교사계 학교가 참여할 신사의식으로부터 모든 “종교적 요소를 없앨 것을 약속”해주었다고 서울의 미 총영사 존 데이비스(John K. Davis)에게 털어놓았다. 마펫은 도지사가 외부의 압력에 휩쓸려서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 우려했다.⁸²⁾ 서울의 미 총영사에게 이 사건은 겉보기보다 훨씬 중요했다. 당시 총독부 당국은 평양이 기독교 중심지로서 지역적으로 총독부 정책에 순응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일본 군부세력에게 빌미를 주어 군부가 민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평양을 “시범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⁸³⁾

서울의 미 총영사는 일본 현지의 “불안정한 상황”과 “전쟁을 부추기는 심리적 상황”,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판” 등은 이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므로 상부의 “보다 현명한 인사들(wiser heads)”이 신사참배 논쟁을 종식시켜 줄 것을 주일 미 대사관에 요구했다.⁸⁴⁾ 일본 대사로 1932년에 부임한 조셉 그루(Joseph C. Grew, 1880-1965)⁸⁵⁾는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국무부 극동국에 조선 내 신사문제를 보고하면서 예비적 조치를 취했다. 그는 당시 일본에 와 있던 로마 교황 사절 에드워드 무니(Monseigneur Edward Mooney) 및 미 감리교 감독 찰스 레이프스나이더(Charles S. Reifsnider)와의

82)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Attendance of Mission Schools at National Shrines,” 1932년 12월 9일(395.1163/10), 『신사참배 I』, 55-56.

83) Ibid., 『신사참배 I』, 57-58.

84) 앞의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1932년 11월 25일(395.1163/9).

85) 그루 대사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보스턴(Boston) 출신으로 미국 동부의 엘리트 학교들인 그로톤(Groton) 고등학교와 하버드(Harvard) 대학을 졸업했다. 루즈벨트 대통령, 후일의 딘 애치슨(Dean Acheson) 등이 동문이었다. 1904년부터 미국 외교단에 뛰어들어 1945년 2차 대전 종전까지 외교관과 관료로 활동했다. 1932년부터 1942년까지 주일 미 대사로 근무했고 42년 미국 귀환 후 국무부 극동국 국장, 부장관, 장관대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일본 천황과 반 군부 지도자들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Joseph C. Grew, *Ten Years in Japan: A Contemporary Record Drawn from the Diaries and Private and Official Papers of Joseph C. Grew*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44)의 출간목적 중 하나는 일본 내 ‘온건파’의 존재를 소개하는 것이다. 위의 책 서문 참고. 그루는 전후 미국의 대일정책 중, 천황제 유지와 상징천황제 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中村政則, 『象徴天皇制、靖道-米國大使の周辺』(岩波新書, 1989), 110-125.

대화를 통해 일본주재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 했다. 이에 교황 사절은, 1932년 9월 30일자로 문부성이 자신에게 보내온 문서에는 신사참배 의무는 “교육적 이유, 즉 충성과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은 종교의례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⁸⁶⁾ 그루는 애국행위로서의 신사참배라는 문부성의 입장을 서울의 미총영사에게도 보내면서 일본 언론과 재향군인회의 선동은 그들의 “과도한 애국적 열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⁸⁷⁾ 그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갈등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루의 의견을 접수한 국무부 극동국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울의 총영사와 동경대사 그루의 판단에 동의했다.⁸⁸⁾ 국무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만주사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국무부는 선교사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일본군부가 민간 관료에게 강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서울과 동경의 해석에 동조했다.⁸⁹⁾ 이는 일면의 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군부는 만주침략을 지원하기 위한 전쟁동원에 전몰장병들에 대한 추도를 겸한 신사참배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만주에서 일본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수단에서, 일본 관료들은 군부 측과 달리 영미협조주의를 추진하려고 했다.⁹⁰⁾

평양의 미 북장교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일본 군부와 외곽단체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반중국

86) 앞의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1932년 12월 1일(395.1163/8).

87) Ibid.

88) 극동국 메모, 1932년 12월 22일, 『신사참배 I』, 26-28.

89) 극동국 메모, 1933년 1월 17일, 『신사참배 I』, 53.

90)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전후 일본 수상을 역임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이다. 그는 ‘만주사변’ 당시 이태리 대사로 있으면서 일본 군부의 입장을 비판했지만 만주침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John W. Dower, *Empire and Aftermath: Yoshida Shigeru and the Japanese Experience 1878-1954* (Cambridge, MA: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1979), 99-104; 이리에 아키라·이성환 역, 『일본의 외교』(푸른산, 1993), 107-119.

인 정서 하에서 서북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를 목도한 선교사들로서는 조선인들의 반외국인 정서를 우려하게 되었다. 맥쿤은 1933년 여름, 워싱턴의 미 국무부를 방문, 조선의 상황과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직원들과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조선 내 반외국인 정서를 우려했다.⁹¹⁾ 이 자리에서 맥쿤은 지난 6개월간 일본의 한국인들에 대한 태도는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졌지만 이는 일본이 만주에 “조선인들을 대량으로 이주시키려는” 속셈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쿤은 앞으로 만주국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아울러 1931년에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868-1956]⁹²⁾ 총독의 정책에 대해 논평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즉 동경의 미 대사관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의 고위관료 중 조선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사이토 마고토[齋藤實, 1858-1936]⁹³⁾ 수상(전 조선총독)과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1868-1949]⁹⁴⁾ 귀족원 의원(전 정무총감)과 같은 인사들에 압력을 넣어 신사참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⁹⁵⁾

극동국의 관리들은 맥쿤이 언급한 조선과 만주의 문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당국에 압력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91) 회담에 극동국 국장 혼벡(Mr. Hornbeck)과 직원 솔리스베리(Mr. Salisbery)가 참석했다. 극동국 메모, “Conditions in the Far East,” 1933년 8월 9일 (395.1163/13), 『신사참배 I』, 66-68.

92) 우가키는 군부 출신으로 육군상 등을 역임한 후 1931-36년 조선총독을 역임했다. 전후에 참의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친일문제연구회 엮음, 『조선총독 10인』(가람기획, 1996) 중 한궁희의 글.

93) 사이토는 해군병학교를 졸업, 워싱턴 일본공사관 소속의 해군무관을 거쳐 해군대신(1906-1914)을 역임했고, 제3대 조선총독을 맡았다. 1927년 제네바 해군군축회의의 일본 전권대표였다. 1932년 내각 총리대신에 올라 만주국을 승인하고 국제연맹에서 탈퇴했지만 1936년 ‘2·26사건’ 당시 청년장교들에게 살해당했다. 친일문제연구회 엮음, 위의 책, 김익한의 글.

94) 미즈노는 도쿄제대 법학과 졸업 후 내무성 지방국장, 내무차관 등을 역임한 후 데라우치 내각의 내무대신(1918)을 지냈다. 한국에서 정무총감 재임(1919.8- 1922.6) 후에도 일본 내에서 내무대신을 두 차례(1922-23, 1924) 역임한 내무계통의 최고권위자였다. 전후에 A급 전범으로 얼마간 복역했다. 戰前期官僚制研究會 編,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227.

95) 앞의 “Conditions in the Far East,” 1933년 8월 9일 (395.1163/13).

과 동경의 외교공관에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 총영사관은, 대사관이 “우연히 또는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두어서 “논란이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⁹⁶⁾ 동경 대사관의 판단도 사실상 동일했다. 동경의 그루는 “신사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애국심과 충성심의 표현이다”는 요지의 일본 문부성 차관의 글과 1899년 8월 3일의 문부성 명령 12호를 첨부해서 극동국으로 보냈다. 문부성 명령은 “종교교육이나 종교적 예식”이 국공립학교에서 허락되지 않으며 공립학교에서 진행되는 신사참배는 국가의례일 뿐이라는 것이다.⁹⁷⁾ 그루대사는 맥쿤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다룰 것을 주장했다.

문제는 주로 다음의 사실로부터 생깁니다. 기독교 국가와 달리 일본인들은 종교와 애국심 사이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학교와 관계 당국이 조정을 해왔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대사관이 이 문제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규정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쪽에서 이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⁹⁸⁾

이는 미국인들에게 신사참배 강요는 종교 자유의 침해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브라운의 생각과 동일한 것이었다. 또 현실적으로 일본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았자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루는 미국 동부의 명문가 출신에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인물로 일

96) John K. Davis to Joseph C. Grew, 1933년 10월 3일(395.1163/15), 『신사참배 I』, 80. 맥쿤은 극동국 직원들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의견이 극동국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한 외교관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극동국 관리들은 그런 외교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97)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Question of Attendance by School Children at Certain Ceremonies Held at Shinto Shrines,” 1933년 10월 4일, No. 545(395.163/14), 『신사참배 I』, 75-79.

98) Ibid.

본의 귀족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그는 천황가의 인물들과 교류가 깊었으므로⁹⁹⁾ 신사참배 문제에서 맥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일본에 억류되어 있다가 1942년에 미국에 돌아가서 국무부 극동국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신도가 “일본인들 내에 깊게 자리 잡은 전통”으로서, 군국주의가 신도를 이용한 면이 있지만 “군국주의가 제거된다면 신도는 전후 자산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도문제는 천황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신도 부활은 천황제의 존속과 연관된다. 그러므로 그는 천황이 신이라는 해석에는 반대하지만 전후 천황제와 신도는 일본 통치에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¹⁰⁰⁾

국무부 극동국은 동경 미 대사의 입장에 동조했다. 극동국도 일본인들이 신사에 봉안된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취하는 “존경의 형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¹⁰¹⁾ 그렇지만 신도가 종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그 근거로 일본 문부성과 내무성이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도 신도의 종교성 문제에 대해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극동국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그 점을 우려했다.¹⁰²⁾ 다만 국무부 극동국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일본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1932년 평양지역 북장로교 계열의 학교들에 대해 신사참배는 강요되지

99)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の道』, 76-92. 그는 주로 궁정그룹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특히 전후 일본의 수상이 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와 그러했다.

100) 같은 책, 41-42, 52-54. 천황과 신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당시 주 동경 영국대사관의 샌섬(George B. Sansom, 1883-1965)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샌섬은 1904년부터 1940년까지 동경대사관에서 근무했고,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미영 전시 협조외교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1940년부터 가르치면서 동 대학의 초대 일본학연구소장(1948-1952)을 역임했다. 샌섬에 대해서는 細谷千博, “シヨウ・ジ・サン・ソムと敗戦日本: 一《知日家》外交官の軌跡,” 『中央公論』9월호(中央公論社, 1975) 참조. 그는 국무부 일본과장을 역임한 휴 보튼(Hugh Borton)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모두 천황제 유지를 주장했다. 휴 보튼에 대해서는 안종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을 참조.

101) 극동국 메모, 1933년 10월 23일, 『신사참배 I』, 72-73.

102) 극동국 메모, 1933년 10월 24일, 『신사참배 I』, 74.

않았지만 이 파동을 둘러싸고 표명된 미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은 이후 본격화되는 신사참배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1936년 신사참배가 본격적으로 강요되었을 때 당국자들은 동일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만주침략 이후 일본사회는 점점 더 군국주의화되어가면서 일본은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1935년은 일본이 가입했던 런던해군조약 개정기이고, 같은 해 3월 27일부터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사회 내에서는 1935-36년 위기설이 나돌고 있었다.¹⁰³⁾ 영미와 일제가 서서히 대립하면서 군부는 사회에 대한 사상적 통제를 강화해나갔다. 국가통제의 사상적 근거에 천황제가 있었으므로 천황제 강화는 신사참배와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영미 선교사들과 관련된 기독교 축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1934년 6월 문부성 내에 사상국을 설치해서 종교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이 무렵 일본 사회 내에서 일어났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 논쟁은 일본의 지성계를 군국주의에 복속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35년 2월 28일 일본 귀족원 본회의에서 남작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가 같은 의원이었던 헌법학자 미노베 다스키치[美濃部達吉]의 저서 중 『헌법촬요』(憲法撮要)와 『축조헌법정의』(逐條憲法精義)의 일부를 문제삼았다. 기쿠치는 미노베가 일본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천황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통치권이 천황에게 있지 않고 천황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며 그를 강력히 비난했다.¹⁰⁴⁾ 이후 학계는 ‘천황주권설론자들’이 주도하면서 ‘국체명징’(國體明徵)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도시샤[同志社] 대학이 학내에 신도와 관계된 가미타나[神棚]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도시샤 가미타나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일본 당국은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일층 강화했다. 게다가 1936년 2월 26일에

103) 한궁희, “1935-37년 日帝의 ‘心田開發’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론』35집(서울대 국사학과, 1996), 140.

104) 천황기관설 사건은 김창록, 앞의 글, 124-131.

일어난 군부 하급 장교들의 쿠데타(‘2·26쿠데타’)는 군부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결정적 사건으로, 쿠데타는 진압되었지만 이후 일본은 급속히 군국주의화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군부가 주도해나갔다.¹⁰⁵⁾

천황제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식민지와도 획적인 연관 관계가 있었다. 일본은 1933-1935년간 식민지 대만에서 선교사계 사립 중등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영국과 캐나다 선교사계 학교(台南長老教中學校, 淡水中學·淡水女學院)가 주된 목표물이었다.¹⁰⁶⁾ 당시 재향군인회는 신사참배를 확대하기 위해 대만 총독부를 외곽에서 압박했다. 대만총독부는 재향군인회의 압박을 받아들여 이들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논란 끝에 영연방 선교사계 학교들은 당국의 입장에 굴복했다.¹⁰⁷⁾

한편 1935년은 ‘조선병합’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 전 해인 1934년 즈음에 발생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저항은 당국의 탄압과 포섭에 의해 무력화되었다.¹⁰⁸⁾ 우가키 총독은 만주-조선-일본을 연결, 제국의 결합도를 높이려고 했다. 그는 조선통치에서 앞으로 주력할 사업을 1) 공업 발전, 2) 농가개생계획의 확충, 3) 심전(心田)개발로 설정하였다.¹⁰⁹⁾ 공업발전은 잘 알려진 대로 만주와 중국에서의 전쟁을 위한 ‘병참기지화’를

105) Marius B. Jansen, *The Making of Modern Japa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 597-599. 이 사건으로 전 조선 총독 사이토도 암살되었다. 이는 군부 내 ‘온건파’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06) 식민지 이전인 1850년대에 스페인의 도미니칸(Dominicans) 선교사들이 대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1860년대에는 영국장로교가 타이난(台南)에, 1870년대에는 캐나다 장로교가 타이페이[台北]지역에서 사립 중등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나 조선에 비해 선교사계 학교의 활동은 제한된 범위에 그쳤다. E. Patricia Tsurumi, *Japanese Colonial Education in Taiwan, 1895-19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34-36.

107) 이에 대해서는 駒込武, “1930年代台灣におけるミッション・スクール排撃運動,”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7』(東京: 岩波書店, 2002) 참고. 고마고메 다케시[駒込武]의 연구는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08) 한궁희, 같은 글, 141-143.

109) 『宇垣一成日記』1935년 5월 15일, 10월 1일자. 한궁희, 같은 글, 144에서 재인용.

목표로 한 것이었다. 농가개생계획의 확충은 식민지에서 악화되는 소작문제의 조정을 통해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면서 농촌부락조직에 대한 총독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심전개발’은 종교계와 총독부의 전면적 협력을 목표로 종교계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1935년 초두부터 총독이 도지사, 중추원 회원, 각 지역 경무과장 등과 가진 일련의 회의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했다.¹¹⁰⁾ ‘심전개발’의 목표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개별 종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신사참배 강요는 이러한 일본 제국 전체의 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사참배 강요 문제에서 각 도 당국이 재량권을 가졌던 이전과 달리 1935년 9월 22일에 총독부는 각 도지사에게 모든 학생들이 신사에 참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당국의 일원적 통제가 시작되었다.¹¹¹⁾

【표 1-1】 북장로교 소속 중등학교의 지정학교화

중등학교 명(지역)	지정학교 당시 교장	지정학교화 연도
경신학교(경기 서울)	E. W. Koons	1923년 5월 (최초)
정신여학교(경기 서울)	Margo L. Lewis	1935년 5월
승실학교(평남 평양)	George S. McCune	1928년 5월
승의여학교(평남 평양)	Olivette Swallen	1931년 12월 18일
신성학교(평북 선천)	장리욱	1931년 3월
보성여학교(평북 선천)	Blanche I. Stevens	1935년 5월
계성학교(경북 대구)	Harold. H. Henderson	1933년 4월 13일
신명여학교(경북 대구)	Harriet E. Pollard	준비

* 출전: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ッションスクール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東京: 社會評論社, 2006), 7장; 김승태·박혜진, 『내한선

110) 각종회의에서는 조선에 있어서의 대내외적 위기와 각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이 강조되었다. “道知事會議ニ於テ之總督訓示”(1월 11일, 4월 19일),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 編纂, 『諭告・訓示・演述總攬』(朝鮮行政學會, 1941), 124-137.

111) Langdon to Edwin L. Neville (주일 미 대사 대리),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t Shinto Exercises,” 1935년 10월 10일(395.1163/21), 『신사참배 I』, 100-101; “Obeisance of School Pupils at Jinja,” *Seoul Press*, 1935년 11월 29일. Langdon to Neville, 1935년 12월 10일(395.1163/21)에 첨부. 『신사참배 I』, 113-114.

미 북장로교는 조선에서 8개의 중등학교와 3개의 고등교육기관을 지원 하였는데 중등학교는 1935년경까지 한 곳을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지정학교’로 인가받았다. 위의 【표 1-1】은 북장로교 선교부 소속 각 학교의 지정학교화를 보여준다. 총독부로서는 여러 기독교계 학교들을 ‘지정학교’로 설정함으로써 당국의 통제 하에 둘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계 학교 운영진들이 당국의 통제 하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총독부로서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애국행위’로서의 신사참배를 이들 학교들에 강요할 명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자국 판도 내에서 군국주의적 분위기를 고취해 나갔다. 그 핵심에는 신사참배 강요가 있었다. 1920년대까지 일본의 지식인들도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라고 보고 있었으므로 일제는 기독교계에 신사참배를 적극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1930년대가 되자 군부와 그 외곽단체가 평양의 각급 사립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려고 함으로써 이 지역 선교사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그런데 적어도 1930년대 중반까지는 총독부 문관 관료들은 군부 측의 입김을 어느 정도 차단하면서 선교사들의 신사참배거부를 수용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희망과 달리 이 무렵 일본 사회는 천황기관제 논쟁과 일련의 쿠데타 등을 겪으면서 급속히 군국주의화 되었다. 군부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 되자 ‘영미협조하의 대외팽창’이라는 문관관료들의 보수적 입장마저 한계에 부딪쳤다. 이것이 1930년대 중반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의 배경이었다.

2.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각 교파 선교부의 대응

1) 북장로교 측의 초기 대응

1935년 7월 2~4일에 평양에서 개최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이하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심각하게 논의했다. 그 해 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¹¹²⁾ 선교부 연례회의는 신사참배 반대라는 강경책을 채택하지 않고, 새로 임명된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 하여금 총독부 학무국과 이 문제를 교섭토록 했다.¹¹³⁾ 실행위원회의 구성원 3인, 스탠리 솔타우(T. Stanley Soltau, 蘇悅道; 1890-c.1967),¹¹⁴⁾ 해리 로즈(Harry A. Rhodes, 盧解理; 1875-1965)¹¹⁵⁾, 그리고 제임스 홀드크로프트(James G. Holdcroft, 許大展; 1878-1972)¹¹⁶⁾는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강경한

112) Holdcroft to C. B. McAfee, 1935년 7월 4일(RG 140-12-14), 『신사참배 II』, 13-14. McAfee는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로 숭실학교와 전문학교 교장인 맥쿤의 처남이었다.

113) 강경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총독부와의 타협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Ibid.

114) 솔타우는 1914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만주, 서북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청주에서 18년 동안 활동했다. 장로회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기도 했다. 1939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조선선교부 연례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면담한 후 그들이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만 생각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신사의례가 가지는 제사장, 기도, 예물, 망자의 영령의 존재 등의 종교성을 강조했다. T. S. Saltau to McAfee, 1935년 6월 6일, 『신사참배 II』, 10-12.

115) 로즈는 북장로교 선교사로 1908년 들어와서 강계 지방에서 주로 활동했다. 1918-33년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성서와 영어 등을 강의했다. 그는 장로교의 역사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1884-1934, Vol II. 1935-1959*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65)를 저술했다.

반대 입장을 취한 인물들이었다.¹¹⁷⁾ 실행위원회 대표는 홀드크로프트였다. 실행위원회 위원들은 선교부 의사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들은 선교부 내 다수파의 의견을 대변했다. 이들의 의견은 다수파의 의견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들 실행위원회 3인의 성향은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총독부와 선교부 간의 충돌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1935년 선교부 연례회의는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 마지막 기회였다. 이후에는 경찰의 참여 하에 선교부 연례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행위원회는 선교부로부터 당국과 교섭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전권위원회’로 기능했다.¹¹⁸⁾ 실행위원회는 평양의 기독교계 학교들이 일본 당국의 신사참배 강요의 “주된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¹¹⁹⁾

1935년 선교사 연례회의 직후 실행위원회 3인은 총독부 학무국장 와타나베 도요히코(渡邊豊日子)와 면담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중요한 타협을 이루어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신사행사에 참여하되, 예식 중에는 경례를 하지 않고 다만 예식을 마칠 때쯤, “사자(死者)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기(bow)”로 했다. 이는 행사 직후 돌아가는 고위관료들에 대한 인사를 겸한 것이었다.¹²⁰⁾ 실제 1935년 9월 15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신사

116) 홀드크로프트는 미주리주 파크대학(Park College)을 졸업한 후 190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양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 1905-08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한 후 1909년에 재내한해서 활동했다.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1926년부터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회장과 총무 등을 역임했고 1936년에는 회장으로 일하면서 윌리엄 블레어(William N. Blair), 솔타우, 로즈 등과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전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교부의 강경 입장을 주도했다. 해외선교부의 교육인퇴문제에 대해 실망해서 1940년 미국 귀국 후 북장로교를 탈퇴하고 정통장로회 독립선교단에서 활동했다. 김승태·박해진 엮음, 『내한선교사 총람』, 303-304.

117) 홀드크로프트는 평양, 솔타우는 청주, 로즈는 서울에서 활동했지만 주로 이들이 교육사업보다는 직접 선교사역 혹은 학내의 성경교수 등에 종사했기 때문에 활동지역과 관계없이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118) “Statement Concerning Our Attitude toward patriotic Ceremonies, Resolutions Passed by Chosen Mission,” July 1935, 『신사참배 II』, 32.

119) 앞의 Holdcroft to C. B. McAfee, 1935년 7월 4일.

참배가 평양의 학교들에게 강요되었는데 실행위원들은 평양의 삼숭(三崇), 즉 숭실전문학교,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관계자들 및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 당국이 제시한 조건하에서 선교사계 학교들이 신사참배 예식에 참여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일요일에 행사가 진행된 것을 제외하고 별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신사 명령의 존재문제는 확실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서울의 정신여학교는 1935년 10월 1일, 16일자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경기도 당국으로부터 명령받았다. 당시 경기도는 조선신궁 건축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므로 서울의 기독교계 학교 교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신사참배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아두려고 했다.¹²¹⁾ 이 문제로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로즈와 홀드크로프트는 경기도 학무국장과 면담을 했다. 두 사람은 학무국장에게 과연 신사에 “영령”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고 이에 학무국장은 다른 관료들과 달리 자신은 “영령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두 실행위원은 다른 실행위원인 솔타우와 경신과 정신학교의 교장인 에드윈 쿤스(Edwin W. Koons, 君芮彬, 1880-1947)¹²²⁾와 마르고 루이스(Margo L. Lewis, 孫珍珠, 1885-?)¹²³⁾와 면담 후 정신여학교가 신사참배 예식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선교부의 교육위원회 회장이었던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元漢慶, 1890-1951)¹²⁴⁾는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 교장들이 신사문제에 대해 질의해

120) 와타나베도 이 문제를 두고 평남 도지사과 해당 지역 군부 지도자와 협의했다. Holdcroft to Nicol (Board of Foreign Missions), 1935년 9월 27일, 1-2, 『신사참배 II』, 15-16.

121) 공식 행사명은 朝鮮神宮御鎮坐十周年記念祭였다. “基督敎學校와 道當局協議-神社不參拜問題로.” 『기독신보』, 1935년 10월 16일.

122) 쿤스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신학교 교육을 받은 후 1903년 10월에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후, 평양·재령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3년부터 1942년 강제 송환될 때까지 서울의 경신학교 교장으로 재임했다. 태평양전쟁기에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대일본 선전 작업에 참여했다. 『내한선교사 총람』, 334.

123) 루이스는 1910년 북장로교 교육선교사로 내한 후 1912-39년 동안 정신여학교 교장으로 일했다. 정신여학교는 1935년 5월 총독부로부터 ‘지정학교’로 인가받았다. <http://www.chungshin.or.kr>의 “정신 120년사” 참조.

오자 신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¹²⁵⁾

계속되는 일제 당국의 신사참배 요구에 대해 실행위원회는 1935년 가을, 세 가지 안을 총독부 측에 전달했다. 첫째 경신학교과 정신여학교의 참배를 면제시켜 줄 것,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둘째로 신사에 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애국심을 표현하도록 해줄 것, 그것도 안 된다면 셋째로, 이번에만 선교부가 당국의 ‘신도비종교론’에 기초한 설명을 받아들이고 후일 총독부와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이었다. 실행위원회가 와타나베 학무국장이나 온건파 총독부 관료들의 조정능력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²⁶⁾ 홀드크로프트는 신도종교론과 비종교론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전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실행위원회 대표로서 해외선교부가 조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¹²⁷⁾ 솔타우도 해외선교부가 신사참배에 대해 입장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¹²⁸⁾

해외선교부의 조언을 요청하면서 홀드크로프트는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가 보기에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점은 네 가지였다. 첫째는 조선의 교회가 “50년 넘게 조상숭배를 금지해온 점”이고, 둘째로는 일본 당국이 조선 기독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신사참

124) 호레이스는 언더우드 1세(元柱尤, 1859-1916)의 아들로 1912년에 미국 뉴욕대학 졸업 직후 교육선교사로 내한했다. 연희전문에서 1928년 부교장, 1934년에 교장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 장관의 정치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손인수, 『원한경의 삶과 교육사상-H. H. 언더우드의 선교교육과 한국학 연구』(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제2장, “원한경과 밀알의 삶,” 특히 156-159의 이력 참조.

125) “Underwood to McAfee,” 1936년 2월 5일, 3-5, 『신사참배 II』, 96-98. H. H. 언더우드는 맥쿤이 숭실학교장에서 해임된 후 자신의 입장을 해외선교부에 적극적으로 밝히는 과정에서 1935년 10월의 서울지역 중등학교 신사참배 문제를 언급했다. 언더우드는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의 ‘설립자’였다.

126) “Executive Committee Resolution Concerning Government Order to Attend Ceremonies at the Chosen Shrine, October 15th and 16th, Adopted Oct. 5, 1935,” 『신사참배 II』, 33.

127) 앞의 Holdcroft to Nicol, 1935년 9월 27일, 2-3, 『신사참배 II』, 16-17.

128) “Notes on the Shrine Problem,” by T. S. Soltau, 5, 『신사참배 II』, 24.

배를 강요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일본인들이 몇 년간의 정치적 상황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라는 것이었고, 넷째는 신사참배반대 문제에서 기독교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¹²⁹⁾ 홀드크로프트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양심”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반문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홀드크로프트는 해외선교부가 기독교 교육 전반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 “교육사업에서 철수”라는 강경한 입장을 총독부에 알려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조선 장로교 총회도 한 해 전인 1934년에 ‘신사참배 문제를 위한 7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교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¹³⁰⁾ 실행위원회는 해외선교부의 입장을 촉구하면서 해외선교부가 국무부와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¹³¹⁾ 해외선교부는 실행위원회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다만 실행위원회의 조치, 즉 학생들의 신사참배 시 “영령에게 절하지 않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만 칭찬했다.¹³²⁾

이러한 때 평양에서도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잘 알려진 대로 1935년 11월 14일 평남도청에서 도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회의개최 전 평남 도지사는 참석한 교장들에게 평양신사에 참가한 후 돌아와서 회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차 온 16명의 교장 중 3명의 기독교계 학교 교장들이 신사참배를 거부

129) Holdcroft to McAfee, 1935년 10월 7일, 4, 『신사참배 II』, 28.
 13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1934년 10월 1일, 12월 6일 총회장 이인식 목사 명의로 총독부에, 기독교계 학교에 신사참배를 시키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다. 총독부는 여러 구실로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24회 총회록』1935년 9월,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日韓キリスト教關係史資料 II, 1923-1945』(신교출판사, 1995), 462에 수록.
 131) 홀드크로프트는 동경의 미 대사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의 Holdcroft to McAfee, 1935년 10월 7일, 5-7, 『신사참배 II』, 28-30.
 132) “Minute Adopted by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U.S.A.,” 1935년 11월 18일, 『신사참배 II』, 34-35.

했다.¹³³⁾ 사실 평남 도지사의 요구는 두 달 전인 9월에 총독부가 결정한 전면적인 신사참배 강요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 1935년 4월 평양에 부임해 온 도지사 야스다케 타다오[安武直夫]는 부임 전 대만총독부 학무국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가 대만총독부에 재직할 때, 대만에서도 영국 선교사계 학교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¹³⁴⁾ 그러므로 기존의 평남도청 측과 평양거주 선교사들의 협력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 송의여학교 교장 벨마 스누크(Velma L. Snook, 鮮于梨; 1866-1960)¹³⁵⁾(당시 대리인 참석)와 함께 참배를 거부한 송실 측의 맥쿤은 다시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¹³⁶⁾

평남 도지사는 이들 두 교장에게 금후에도 참배를 거부한다면 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들의 답변 기한을 12월 20일로 못박았다.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한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는 총독부 학무국과 총독에도 서신을 보내어 1936년 6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와 조선장로교 총회의 토론을 통해서만 신사참배에 대한 선교부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남 당국은 신사참배 가부를 묻는 질문을 다시금 제시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 답변하라고 단호히 명령했다.¹³⁷⁾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실행위원회와 일부 선교사들

133) '동아일보', 1935년 11월 24일자. 이들은 벨마 스누크(Velma N. Snook), 맥쿤, 이희만(제7일 안식교회의 의명학교)으로 의명학교는 후일 총독부의 강경책에 굴복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90.

134) 그가 1932년 3월부터 1935년 4월까지 대만총독부 문교국장을 역임할 때 대만에서 선교사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가 본격화되었다. 비록 군부 측이 상황을 주도했지만 그도 이에 동조했다. 駒込武, “1930年代台灣におけるミッション・スクール排撃運動,” 235; 그에 대해서는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台湾總督府と帝國日本』(東京: 三元社, 2008), 459의 대만총독부관료 표 참조.

135) 스누크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1900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해서 1903년부터 추방되는 1936년 초까지 줄곧 송의여학교의 교장으로 일했다. 스누크에 대해서는 『崇義 100年史 1903-2003』(學校法人 崇義學園, 2003), 88-89.

136) 이에 대해 한석희,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참조.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85-301 참조.

137) Holdcroft to Ugaki(1935년 11월 25일), Yasutake to Holdcroft(1935년 12월 2일); 김승태,

이 동년 12월 9일, 총독부 학무국장 와타나베를 다시 방문했다. 그러나 와타나베는 “학교 교육과 종교는 구분”되어야 하며 신사참배는 “제국의 정신적 기초”라는 당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해줄 뿐이었다.¹³⁸⁾

실행위원회는 같은 날인 12월 9일부터 며칠 동안 긴급회의를 가지면서 몇몇 선교사들과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평양노회도 12월 13일 장대현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토론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¹³⁹⁾ 실행위원회에서는 결국 신사참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 결정되었고 그 사실은 12월 13일 맥쿤을 통해 그대로 평남 당국에 제출되었다. 주된 내용은 신사참배에 종교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한 자신들은 “양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신사참배는 “일본제국헌법이 허용한 종교자유”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애국적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개인 또는 교장 자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렇지만 조선선교부, 해외선교부, 조선장로교총회 등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당장에 공식 입장을 정리할 수 없다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었다.¹⁴⁰⁾ 실행위원회의 의사는 평남 도지사에게 보낸 맥쿤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신사의 의식들은 종교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

『종교정책』, 193-196.

138) 방문선교사들은 실행위원회 홀드크로프트, 로즈, 승실교장 맥쿤, 그리고 남장교 측의 다니엘 커밍(Daniel J. Cumming, 목포, 광주에서 활동)과 윌리엄 린턴(William A. Linton, 전주에서 활동)이었다. 『京城日報』1935년 12월 9일자; Langdon to Neville, 1935년 12월 14일, (395.1163/22), 『신사참배 I』, 129에 첨부. 이 기사는 위의 5인이 당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신사참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오보다.

139) 『동아일보』는 이것이 종교집회를 금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일제 당국은 신사참배는 애국적 행위이므로 만약 노회가 이 문제를 논한다면 집회는 “사회적 집회”가 된다고 맞섰다. “神社參拜問題 深刻化”; “老會側 態度強硬,” 『동아일보』, 12월 7일, 8일자. 12월 13일 200명 이상 되는 경찰과 헌병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다. “五十餘老會員이 會集해 默禱코 散會/李承吉氏談,” 『동아일보』, 12월 14일, McCune to Friend, 1935년 12월 30일, 『신사참배 II』, 70-71.

140)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Presbyterian Mission, Seoul” (December 9-13, 1935), 『신사참배 II』, 37-38; 김승태, 『종교정책』, 196-197.

기에서 [사람들이] 영령들을 예배한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경배한다고 해석될지도 모르는 행위인 신사참배를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종교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는, 어떤 방식이든 천황폐하에 대한 나의 공경과 황실과 제국에 깊은 경의를 보이겠습니다.(강조: 필자)¹⁴¹⁾

실행위원회는 신사참배 내의 종교적 요소를 제외하거나 학내에서 다른 애국활동을 개척한다면 적극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표현했다. 실행위원회는 12월 20일 서신에서도 조선선교부가 입장을 정하고 이것이 해외선교부에서 결정되어야 최종적인 입장을 도출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¹⁴²⁾

이 때만 해도 실행위원회 측은 평남 도청의 온건책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적 흐름을 일본의 민간관료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평양지역 장로교 학교들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¹⁴³⁾ 결국 실행위원회 측도 일제 당국의 태도로 보건대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파악하기 시작했다. 맥쿤은 이 무렵 해외선교부에 보낸 한 서신에서 신도의 종교성을 다시 언급하며, 일본 측과 타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선교부는 복장로교계 학교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⁴⁾

한편 총독부는 실행위원회가 맥쿤을 통해 제출한 12월 13일자 글을 동월 19일자로 다시 반송했다. 총독부로서도 12월 20일자의 최종시한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¹⁴⁵⁾ 총독부와 실행위원회 측은 1935년 12월

141) McCune to Yasutake (평남 도지사) (1935년 12월 13일), 『신사참배 II』, 39. 번역은 김승태, 같은 책, 198. 동일한 취지의 글을 실행위원회(홀드크로프트)는 학무국장에게도 보냈다. “Holdcroft to Watanabe,” 『신사참배 II』, 40-42; 김승태, 같은 책, 199-202.

142) Holdcroft to Watanabe, 1935년 12월 13일, 20일, 『신사참배 II』, 40-42 · 44.

143) 만약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명령에 불복한다면 당국은 학교폐쇄라는 강경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參拜拒否問題擴大 美本部에 總會召集要請,” 『기독신보』, 1935년 12월 4일.

144) McCune to Cleland B. McAfee, 1935년 12월 20일, 『신사참배 II』, 45-49.

145) Langdon to Joseph C. Grew, 1935년 12월 20일, (395.1163/23), 『신사참배 I』, 135-136. 서울의 미국 영사 랭던은 총독부가, 선교사들과 가능한 한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보았다.

30일에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 총독부 학무국과 관방(官房) 외사과 직원, 그리고 선교사 측에서 맥쿤, 홀드크로프트, 솔타우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신사참배의 국가의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와타나베 학무국장 취임 후 4개의 학교가 지정학교로 인가받아서 학무국 관할 하에 있으므로 총독부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¹⁴⁶⁾ 총독부의 입장을 확인한 맥쿤은 회담 직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조선에서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라면서 소식을 전했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에게 일본에서 미노베 다스키치가 천황가의 신성을 부정해서 형사범이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맥쿤은 총독부와 조선선교부 측이 결국 충돌할 것이라고 예견했다.¹⁴⁷⁾ 다음 날 총독부 학무국장은 실행위원회 측을 통해 맥쿤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통첩을 보냈다.

본부 학무당국은 학교 교육 및 종교에 관한 우리 국제(國制)의 큰 틀(梗概) 및 본부의 방침을 분명히 하여 선교사로서 학교 교육에 관여하는 일부 인사의 반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의 당면 책임자인 평양 숭실학교 교장 윤산은 씨는 그 책무에 비추어 당국의 의도를 양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태도를 고치고 스스로 신사에 참배함은 물론, 그가 관장하는 학교의 생도들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시킬 의사가 있다는 뜻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의 해결이 한갓 시간만 끌어 국민교육 상 악영향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고 일반 기독교도의 평온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동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윤산은 씨가 끝까지 학교장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도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케 할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확히 해둡니다.(강조: 필자)¹⁴⁸⁾

1936년 1월 14일에 평남 당국은 맥쿤과 학교의 ‘설립자’인 마펫을 평남도청으로 불러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상기시키며 동월 18일까지 최종 입

146) “Notes on Conference of Dec. 30th, 1935,” 『신사참배 II』, 51-52.

147) MaCune to Friend, 1935년 12월 30일, 『신사참배 II』, 70-71.

148) “A Warning to Dr. G. S. McCune, Principal of the Sujitsu School on Dec. 31, 1935,” 『신사참배 II』, 73.

장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평양 삼승학교 재단은 1월 17일, 맥쿤과 스누크의 교장사임서를 반려했다.¹⁴⁹⁾ 동시에 맥쿤과 실행위원회는 입장정리를 위해 다시 평양의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 평양신학교 교수 박형룡과 산정현교회 목사 주기철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맥쿤과 실행위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맥쿤은 1월 18일 평양지역 원로선교사 마펏과 함께 평남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음과 승실재단 이사회 측이 자신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음도 통고했다.¹⁵⁰⁾ 맥쿤은 실행위원회 측의 결정을 담은 문서를 평남 당국에 제출하면서 자신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네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신도의식이 “명백한 종교적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고, 둘째,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서 “영령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셋째, 기독교인들은 조상숭배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며, 넷째, 성경에서도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참배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일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¹⁵¹⁾

평남 당국은 회담 당일인 1월 18일에 맥쿤을 승실학교 교장 직에서 즉시 해임했고 이틀 후인 1월 20일 조선총독부가 그를 승실전문학교 교장 직에서 해임했다.¹⁵²⁾ 당시 중등학교의 관할권은 도 학무국에,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것은 총독부 학무국에 있었기 때문이다. 평남 당국은 승의여학교의 스누크도 2월 22일에 교장 직에서 해임했다.¹⁵³⁾ 일제 당국으로부터

149)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1일(395.1163/25), 『신사참배 I』, 148.

150) McCune to Yasutake, 1936년 1월 18일 편지, 『신사참배 II』, 74-75; 『신사참배 I』, 156-157과 210-211에도 실려 있다.

151) 일본 측 주장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90 참조.

152) 『승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 편』(승실대학교, 1997), 494; “當局과 最後會談에 尹校長參拜拒絶,” 『기독신보』, 1936년 1월 22일 자.

153) 스누크는 1936년 1월 29일로 선교 정년이었으므로 총독부의 직위해제와 관계없이 물러나야 했다. 스누크의 학교운영과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崇義 100年

맥쿤의 해임통고를 받은 실행위원회는 해외선교부에 학교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달라고 다시 강력히 촉구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총독부 학무국의 선교사계 학교의 직접 접수설이 선교사들을 긴장시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행위원회 측도 일제 당국의 입장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가토 겐치와 홀톱 등 ‘신도종교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글을 발췌해서 해외선교부에 보내면서 선교사계 학교들의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그 한 예로 선천의 신성학교가 독립재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¹⁵⁴⁾ 이와 동시에 실행위원회 측은 총독부 학무국에 맥쿤의 해임이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일본제국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교장 복귀를 허락해줄 것을 촉구했다.¹⁵⁵⁾

맥쿤과 스누크의 교장 해임은 다른 선교사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강경책에 반대하는 선교사들은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선선교부 다수파와 실행위원회의 강경책에 반대한 H. H. 언더우드는 1936년 2월 5일, 해외선교부에 자신과 ‘소수파’의 입장을 밝히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북장로교 내 ‘소수파’ 선교사들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⁵⁶⁾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그도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언더우드는 신사의 종교성 여부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

史』, 103-104, 204-209.

154) Holdcroft to McAfee, 1936년 1월 24일, 『신사참배 II』, 82. 독립재단이 선교회나 교회 재단보다 총독부 학무국의 압력에 더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었다.

155) “Statement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hose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날짜 미상), 『신사참배 II』, 92-93. 내용상 맥쿤 해임발표가 난 1월 18일 직후에 발표되었을 것이다.

156) 기존 연구에서는 언더우드의 신사참배 관련 주장이 다른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설명되고 있지 않아서 마치 그가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아울러 언더우드도 신사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한 뒤,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세 가지 입장을 소개했다. 첫째, 다수의 선교사들이 취하는 입장으로 일본정부가 발표한 “국가신도는 비종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¹⁵⁷⁾ 둘째, 신사의 예식이 종교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당국자들의 행동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선교사들의 행동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이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언더우드는 선교사들이 신사 앞에서 “예물(offerings)을 바치거나” 기도를 하는 등 예식의 “실질적 부분”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도예식이 종결될 때 “목례하는(bow)” 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과 기독교인의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목례는 “예배”(worship)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¹⁵⁸⁾ 세 번째 입장은 정부의 ‘신도비종교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사에 예물을 바치거나 자신의 집과 학교에 신사[가미다나]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선교사들 중에는 이러한 예는 없다고 보았다.¹⁵⁹⁾

실행위원회가 1935년 10월의 경신과 정신여학교의 신사참배 참여를 허락한 후 발생한 평양 선교사계 학교와 당국과의 충돌은 선교사들에 의해 “사주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언더우드는 보았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강경한 태도는 조선인 기독교지도자들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언더우드는 오히려 선교사들이 조선인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1935년 선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므로 각 지역의 개별 학교가 선교부 실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교육사업의 철수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⁰⁾

당시 서울지역의 선교사, 특히 교육계에 관련된 인사들은 거의 다 신사

157) 물론 이 범주에도 세 가지의 입장이 존재한다고 했다. 첫째, 예식이 진행되지 않을 때만 참석하려는 입장, 둘째는 예식 중에 참석하지만 “고개를 숙이지(bow)” 않으려는 입장, 셋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석하려 하지 않는 입장이다. Underwood to McAfee, 1936년 2월 5일, 2, 『신사참배 II』, 95.

158) 십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로 요약할 수 있다. 언더우드도 신도의식이 종교적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Underwood to McAfee, 2-3, 『신사참배 II』, 95-96.

159) Underwood to McAfee, 3.

160) Underwood to McAfee, 1936년 2월 5일, 3-5, 『신사참배 II』, 96-98.

참배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언더우드의 기록은 연희전문학교 대학위원회(College Council)내에 파견된 각 교과 선교부 소속 교직원들의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을 전해준다. 학감 유억겸, 문과 백낙준, 수학과물리과 이춘호, 상과 이순탁 등 각 학과 과장들은 신사참배에 찬성했다. 감리교과 대표 아더 베커(Arthur L. Becker, 白雅德; 1879-1978)¹⁶¹⁾와 남감리교의 제랄드 스페이델(Gerald C. Speidel)도 찬성했다. 다만 연희전문에서 성경과목을 담당한 북장로교과의 로스코 코엔(Roscoe C. Coen)만 반대했다.¹⁶²⁾

언더우드는 조선선교부가 교육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해외선교부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독교계 학교가 폐쇄된다면 “물질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학교”에서 조선인들이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이화여전·YMCA 이사장 윤치호, 감리교 총리사 양주삼, 캐나다 장로회 소속 함흥 영생고등보통학교의 김관식, 쿤스, 루이스, 오궁선, 에비슨, 호주장로교의 찰스 매클라렌(Charles I. McLaren), 영국 성공회, 제7안식교, 로마가톨릭 등, 조선 내 다수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입장과 같다고 주장했다.¹⁶³⁾ 그러므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선교사들이 북장로교 내에서는 다수파이지만 전체 선교부에서는 “소수파”라고 보았다.¹⁶⁴⁾ H. H. 언더우드는 해외선교부가 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실행위원회와 평양의 맥쿤, 마펫 등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161) 베커는 1903년 입국 후 승실과 연희전문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쳤고 1940년 미국에 돌아갔다. 해방 후 초대 부산대학교 책임자로 잠시 일했다. 그의 딸 에블린(Evelyn Becker, 1907-현재)은 맥쿤의 아들 조지(George M. McCune, 1908-1948)와 결혼했다.

162) Underwood to McAfee, 1936년 2월 5일, 5.

163) Underwood to McAfee, 5-6. 호주 장로교의 매클라렌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더우드가 잘못 파악한 듯하다. 매클라렌의 입장은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307-310. 그러나 호주장로교도 초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같은 책, 310-312.

164) Underwood to McAfee, 6.

입장 차이는 복장로교 해외선교부가 취한 입장을 각자 해석하는 데에도 반영되었다.¹⁶⁵⁾

언더우드는 중일전쟁 발발 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라는 논리로 미국과 조선의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몇 가지 근거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첫째, 일본 당국이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고 선언해왔으므로 신사는 미국의 “무명용사의 묘 또는 링컨 기념관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둘째, 참배 의식에는 간단한 목례만 있고, “궤배(跪拜, genuflection)와 부복(俯伏, prostration)”은 없으므로 “예배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당국이 신사참배는 비종교적 행위라고 했으므로, 연희전문 학생들은 “종교적 갈등” 없이 신사참배에 “충실한 신민”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제기로, 신사의식에 “양심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였다. 이는 언더우드의 현실론적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학교 폐쇄, 선교사계 학교 학생들의 비선교사계 학교로 전학, 학내 모든 종류의 기독교 활동(의료, 선교)의 중지 등이 초래될 것을 그는 걱정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은 일본 당국의 “손님”이기에 일본의 법을 지키고 “일본정부와 국민들 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선교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¹⁶⁶⁾ 이는 미 외교관들의 입장과 동일했다.

165) 후일 홀드크로프트 등의 실행위원회 측은, 해외선교부 측이 개별 선교사들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더우드는 이를 반박했다. Horace H. Underwood to Dear Friends, June 8, 1938. HGU II, Box 25 Folder 581. 물론 이는 해외선교부의 입장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다.

16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85-301, “The Korean Shrine Question: A Debate-Condensed from The Presbyterian Tribune,” *World Christianity* (March-April, 1938)의 글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를 참조. 언더우드 2세의 글은 「조선일보」1938년 8월 16일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신사참배 문제의 종교성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언더우드의 1936년 2월 5일자의 편지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신사참배 II』, 94-96.

대체로 기호지역의 한국기독교인들과 교육 선교사들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북 지역의 교육선교사들 중에도 선교부의 교육사업 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사들이 있었다. 기호지방에서 많은 교세를 확보했던 감리교 측은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는 통첩을 받았다. 감리교 측은 당국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결정했다.¹⁶⁷⁾ 감리교의 조선인 지도자 윤치호의 경우에 보듯이, 서울 지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일찍부터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¹⁶⁸⁾ 세브란스의전 교장 오궁선도 “내 생각에 일부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서북지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대한 비판이었다.¹⁶⁹⁾ 세브란스에서 오궁선의 전임 교장이었던 올리버 애비슨(Oliver R. Avison, 魚丕信; 1860-1956)¹⁷⁰⁾도 아들 더글라스 애비슨(Douglas B. Avison, 1893-1951)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국주의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167) “신사문제에 대한 통첩,” 『감리회보』, 1936년 4월 10일,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I, 1884-1992』(kmc, 1994), 642에서 재인용. 감리교 교단차원의 대응은 같은 책, 641-645참조.

168) 윤치호는 신사가 일본 민족주의의 핵심이기에 조선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보았다. 그러나 애비슨과의 대화에서 그는 “일본 문부성과 총독부 고위 당국자들은 신사참배를 가리켜, 종교행위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상징에 대한 존경행위로 요구하는 거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두고 종교행위라고 우기죠?”라고 말했다. 그는 평안도 지역의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상태, 『윤치호일기』, 348-349, 357(1935년 7월 19일, 12월 13일).

169) Underwood to Leber, June 28, 1938. RG 140, Box 15, File 13, PCUSA.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17에서 재인용.

170) 애비슨은 1890년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892년 한국에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내한 후 고종의 시의를 겸직하면서 제중원을 통해 한국의료발전에 공이 컸다. 민비시해 당시 고종 주변에서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불침번을 섰다. 1913-35년 세브란스, 1916-34년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935년 은퇴 후 12월에 이한했다. 그의 선교활동에 대해서는 Allen D. Clark, *Avison of Korea: The Life of Oliver R. Avison, M.D.* (Yonsei University Press, 1979) 참조. 그러나 이 책은 신사참배에 대한 애비슨의 입장을 다루지 않는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 모교를 졸업한 후 1920년부터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아버지가 퇴임한 후 오궁선 밑에서 세브란스 부학장을 맡았는데 1940년에 귀국했다. 아들에 대해서는 『내한선교사 총람』, 147.

신사참배는 “선교사 개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국이 주장하는 ‘국가신도 비종교론’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아들에게 신사참배 문제에서 당국의 방침에 순응할 것을 주문했던 것이다.¹⁷¹⁾ 서울의 쿤스, 루이스 등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했고 조선선교부 다수파의 교육철수안을 강력히 비난했다.¹⁷²⁾ 이들의 목소리는 교육철수를 둘러싸고 더욱 크게 울렸고 그들의 자녀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¹⁷³⁾

한편 선교사들의 학교운영으로부터 철수 가능성을 전해들은 삼승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철수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당국이 2월 초 송실전문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졸업 후 정부기관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심지어 송실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졸업장을 얻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을 암시한 데 있었다.¹⁷⁴⁾ 1936년 2월 18일 송실전문 교수회는 세 가지 원칙을 학교경영자 측에 요구했다. 첫째, 교수회는 송실전문학교와 운명을 같이 할 것, 둘째, 학교를 영구히 존속시킬 것, 셋째, 경영자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영권을 조선인 측에 넘길 것 등이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송실전문학교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 학교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두 명의 대표를 당시 서울에 가 있던 마펫에게 파견했다. 송실학교 교원과 학생들도 유사한

171) “Statement from Dr. O. R. Avison to his son Dr. D. B. Avison in Korea: Re Shrine Worship,”(날짜 미상), 『신사참배 II』, 89-91. 에비슨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녀는 공립학교에 보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172) Koons to Hooper, 1939년 7월 24일, 『신사참배 II』, 391-395.

173) 선교사 2·3세는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한 세대 전의 인사들과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H. G. 언더우드(원한경의 아들)와 알렌 클라크(Allen D. Clark)는 신사참배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렸다.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The Recollections of Horace G. Underwood*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64-65; Allen D. Clark,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2), 221-232.

174) 2월 14-15일 송실재단 ‘설립자’ 마펫은 평남 학무국장에게 신입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낼 것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하면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28일(395.1163/28), 1-2, 『신사참배 I』, 161-162.

결의를 채택했다.¹⁷⁵⁾

한편 선교사들과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숭실재단 이사회는 1936년 2월 26일에 각 학교의 교장 후임자를 선정할 것을 학무국에 보고한 후 동년 3월 4일에 숭실전문학교 교장에 엘리 모우리(Eli M. Mowry, 牟義理; 1880-1970), 부교장에 농과과장인 이훈구를 임명했고 다음날 숭실중학교 명예교장에 모우리, 교장에 정두현 교수를 임명했다.¹⁷⁶⁾ 승의여학교도 3월 12일에 교장 사무취급자로 김승섭을 선임했다.¹⁷⁷⁾

학교에서 쫓겨난 맥쿤은 동년 3월 말 수많은 평양시민들의 전송을 받으며 오랫동안 일했던 조선에서 떠났다.¹⁷⁸⁾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 그는 하와이에 4주간 머물면서 하와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연설을 했고, 후에 그 연설문을 미국 상하원에 보냈는데 그는 이 연설에서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를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의 친구들”(Friends in America)이라는 제목의 이 연설에서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일본헌법 28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1858년 미일조약과 다른 국제조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도는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와 천황의 조상들을 중심 신으로 두고, 명령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국가의례가 아닌 “종교”라는 것이었다.¹⁷⁹⁾ 그는 기독교 잡지에도 글을 보내 거듭 신사참배는 일본헌법에 비추어 볼 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문부성 학무국이 신도에는 종교적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일본 대법원이 1901

175) “崇專, 崇中經營을 朝鮮人에게 讓渡要求,” 『기독신보』1936년 2월 26일 자.

176) 『숭실대학교 100년사 1: 평양숭실 편』, 494; 『동아일보』1936년 3월 7일 자.

177) 『숭의 100년사』, 211; 『기독신보』1936년 2월 26일 자.

178) 이동진 목사의 회고에서 1936년 3월 21일 평양 역 앞에 7천 내지 8천 명이 나왔다. 이동진, “한국교회와 숭실의 은인 尹山濶,” 숭실인물사 편찬위원회, 『인물로 본 숭실 100년』(숭실대학교, 1992), 479; 이동진 목사와의 인터뷰(2007년 9월 1일). 이동진(1915-현재)은 숭실 출신으로 맥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로 하와이 한인사회의 원로이다. 맥쿤은 1921-28년에 휴론대학(Huron College)의 총장으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약 22년 정도 활동했다. 한편 승의여학교 교장이었던 스누크도 동년 9월 15일에 조선인들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179) Headquarters Hawaiian Department에서 Assistant Chief of Staff, G-2, War Department에 보낸 문서. 1936년 5월 7일(395. 1163/37), 『신사참배 I』, 244-247.

년 국가신도는 종교성이 있다고 판결한 점과 한국인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종교적 요소가 있다고 믿고 있으므로 종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는 한국기독교의 상황이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상황”과 같았다.¹⁸⁰⁾ 대체로 조선에 있을 때부터 견지한 입장 그대로였다.

귀국 후 맥쿤은 무디 성경학교(The Chicago Moody Bible Institute)의 교장을 역임하며¹⁸¹⁾ 한인 유학생들을 도왔다. 그는 한인 유학생들의 간행물인 *The Korean Student Bulletin*의 자문위원(Board of Advisors)으로 있으면서 한인 모임에 자주 참석, 여기서도 신사참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¹⁸²⁾ 맥쿤은 미국에 돌아간 후에도 미일관계가 개선된다면 조선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¹⁸³⁾ 맥쿤은 국무부 극동국을 방문해서 신사참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힘과 더불어 국무부가 주미 일본대사에게 압력을 넣어 조선에서의 신사참배강요를 중지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극동국은 “해당국의 종교문제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국무부의 원칙”이라고 답변하여, 맥쿤의 부탁을 완곡히 거절했다.¹⁸⁴⁾ 이러한 국무부의 입장은 1933년의 맥쿤과 극동국 회담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했다. 맥쿤은 1941년 12월 4일(미국시간) 시카고 장로교병원에서 운명하였는데 그의 장

180) “The Korean Shrine Question: A Debate-Condensed from The Presbyterian Tribune,” *World Christianity*(March, 1938)의 George S. McCune,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71-73. H. H. 언더우드의 글이 함께 소개되었다. Horace H. Underwood,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That Are Caesar’s.”

181) 무디 성경학교는 성경의 무오류성과 전도를 강조하는 선교사 훈련센터였다. 맥쿤의 미국 내 귀국 후 활동은 하와이대학 한국학 연구소, 맥쿤 문서 Collection 290. 안내문.

182) 예를 들면 1936년 12월 20일 뉴욕 한인교회에서 45명의 한인과 만나 유창한 한국어로 신사참배와 한국의 교육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한인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Dr. G. S. McCune is Dinner Guest,” *The Korean Student Bulletin*(선인, 2000), December-January, 1936-1937. No. 2. 346; 같은 책, 348-349의 “Dr. G. S. McCune to Advise Korean Students in America”도 참조.

183) 국무부도 그가 미국에 일시체류하고 있다고 보았다. “Presbyterian Mission Schools in Chosen,” 맥쿤과 Dooman의 대화, 1937년 1월 21일(396.1163/45), 『신사참배 I』, 292-296.

184) “Presbyterian Mission Schools in Chosen,” 맥쿤과 두우만(Dooman)의 대화, 1937년 1월 21일(396.1163/45), 『신사참배 I』, 294. 유진 두우만(Eugene H. Dooman, 1890-1969)은 일본 대사관에서 문정관으로 근무했고(1937-41) 대표적인 일본통(Japan Hand)이었다.

레식날은 12월 7일,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일이었다. 맥쿤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노령으로 혹은 타의로 한국을 떠났지만 자녀 세대에서 다수의 한국관련 인사들을 배출했다.

한편 삼승학교 측과 서울지역 교육선교사들의 교육철폐 반대에 직면한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외선교부가 입장 정리를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이 조선 내 선교사들과 조선인들이 신사참배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에 실행위원회가 전국에 넓게 산재한 각 선교지부의 다양한 입장을 조율해내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행위원회는 만약 선교사계 학교가 신사참배를 한다면 미국 내 북장로교 선교자금은 조선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면 자신들과 이에 동조하는 조선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실행위원회는 해외선교부가 교육사업 철폐 결정을 내림으로써 총독부와 한국인들의 입장을 견제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주장했다.¹⁸⁵⁾

이에 1936년 4월 20일자로 해외선교부는 실행위원회 측에 곧 “조사위원단(commission) 파견”을 알리면서 가능한 한 학교들을 폐교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¹⁸⁶⁾ 해외선교부는 또 홀드크로프트에게 일본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정부계통의 학교로 간다면 이들은 신사참배 의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와 “기독교적 설명 또는 안전장치(safeguarding)”의 양립가능한 길을 찾도록 요청했다. 해외선교부의 클레란드 맥아피(Cleland. B. McAfee)는 선교부 내의 분열을 우려하며 개인의 “양심”과, “타인의 생각을 비판하는 것”인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의

185) Holdcroft to C. B. McAfee, 1936년 3월 1일, 『신사참배 II』, 101-104. 이 편지의 마지막은 홀드크로프트의 입장을 잘 요약한다. “내가 요청한 그 행동(강조: 필자)을 해외선교부가 즉각적으로 취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치 못하게 해 달라. 우리가 끔찍한 결과를 피하려 한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댈 곳(recourse)이다.”

186) McAfee to Soltau, 1936년 4월 1일, 『신사참배 II』, 117-118.

양자는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¹⁸⁷⁾ 맥아피는 교육사업 철수에 회의적인 입장을 암시했던 것이다.

홀드크로프트는 총독부의 강경한 입장에 비추어볼 때, 해외선교부 측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선교부에 보낸 답장에서 그는 조선 내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얼마 전 결정된 남장로교 측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 그는 실행위원회 측이 미국 영사관 측과 만나서 해외선교부가 보낸 편지를 공개할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실행위원회 측이 이 문제에 국무부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암시였지만 한편으로 외교관들의 입장에 대한 선교사들의 무지함을 보여준다.¹⁸⁸⁾

해외선교부는 미국에서 직접 조선에 사람을 파견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필리핀 주재 북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로저스(James B. Rodgers)와 중국 산둥[山東] 주재 선교사 폴 애보트(Paul R. Abbott)를 조사위원단(commission)으로 임명, 1936년 중순 급히 조선에 파견했다. 이들은 먼저 일본에 들러 일본 거주 선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조선에 들어왔다. 일본 주재 선교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애국행위로 설명한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위원은 서울에 들어온 후 우선 총독부 외사과 대표의 방문을 받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를 방문해서 당국의 ‘신도비중교론’ 입장을 청취했다. 이들은 평양을 방문한 후 서울에서 개최된 북장로교 선교사 연례회의(6월 25일-7월 2일)에도 참여했다.¹⁸⁹⁾ 이는 해외선교부 인사들이 방한했을 때 늘 취하는 경로였다.

두 명의 위원단은 총독부와 접촉하면서 총독부 관료들이 군부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외사과와 학무국은 다소 유

187) McAfee to Holdcroft, 1936년 4월 5일, 『신사참배 II』, 162-164. 맥아피는 실행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보았다.

188) Holdcroft to McAfee, 1936년 6월 11일, 『신사참배 II』, 125-126.

189) 이들은 1936년 8월에 “Report of the Board’s Commission to Chosen Regarding the Shrine Question”(이하 *First Commission Report*)라는 보고서를 해외선교부에 제출했다. 『신사참배 II』, 141-148.

화적이지만 경찰과 군부는 강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¹⁹⁰⁾ 군부의 압력 아래에서 총독부가 조선 내 모든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할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조선 내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입장, 즉 신사참배는 선교사들이 금지한 조상숭배와 다르지 않으며 신사는 ‘영’(靈)을 숭배하는 종교적 시설이라는 견해에는 동조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각 학교에 신사참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당국의 기세를 막지 못하리라 판단했다. 이들은 당국의 간섭으로 한두 명의 조선인 지도자들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조선인 지도자들이 “학교보다는 교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선교사계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¹⁹¹⁾

당시 위원단이 참여한 조선선교부 연례회의는 당국의 압력으로 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이 많았다. 원래 연례회의를 감독하는 서대문경찰서는, 교육철수를 둘러싼 선교사들의 토론은 신사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서는 얼마 후 그 입장을 번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사문제에 대한 토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례회의가 열리기 전인 6월 15일, 실행위원회의 홀드크로프트와 로즈는 서대문 경찰서에 호출되어 신사참배문제 토론불가라는 경무국의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았다. 경무국은 만약 신사참배 문제가 논의된다면 “종교적”이 아닌 “정치적 집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허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취했다. 결국 실행위원회 측 선교사 5명은 신사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했고 다만 이 문제를 사적으로 토론해도 좋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¹⁹²⁾

결국 조선선교부 연례회의는 1936년 7월 1일,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철수’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해외선교부에 보냈다. 교육철수 안의 내용은

190) *First Commission Report*, 4.

191) *Ibid.*, 5-6.

192) *Ibid.*, 2-3. 미국 영사는 당국이 일본 극우파들의 압력 하에 있다고 보았다.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6일(395.1163/39), 5, 『신사참배 I』, 258.

우선 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총독부 측과 “긴밀히 협조할 것”과 실행위원회에 교육철수의 “모든 시간과 방법”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결의안의 골자는, 실행위원회의 전권을 전제로 (1) 실행위원회와 각 선교지부가 협의할 것, (2) 실행위원회가 선교부에 그 결정을 보고하되, 각 선교지부가 반대의견을 15일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 안이 그대로 확정되며, 만약 선교지부에서 반대가 있다면 연례회의 또는 실행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시회의를 소집, 다시 투표로 결정할 것, (3) 해외선교부에 보고해야 할 내용은 선교부 지침서(Manual)에 따른 것 등이었다.¹⁹³⁾ 이 결의안은 69대 16으로 통과되었다. (3)은 조선선교부 ‘소수파’가 선교부를 통하지 않고 해외선교부 측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에 맞서 선교부 내 “자유주의적 소수파”는 각 선교지부의 교육위원회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주자는 안건을 냈지만 이는 68대 19로 부결되었다.¹⁹⁴⁾ 소수파들은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철수를 받아들여 이들을 중등학교에만 제한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들은 타협책으로 만약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가 불가하다면 학교의 설립목적 “가장 유사하게(most nearly) 유지할 수 있는 단체”에 학교를 넘기자고 주장했다.¹⁹⁵⁾ 소수파의 의도는 각 선교지부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경영 여부를 판단함과 더불어 최소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선교부사업의 철수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한반도에 넓게 분포했던 북장로교 선교지부는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교육철수안을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철수가 결정된 학교에서 만약 졸업 전에 당국이 재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

193)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6일 (395.1163/38)의 첨부물 “Education Policy,” 『신사참배 I』, 242-243.

194) *First Commission Report*, 6, 『신사참배 II』, 146; 위의 Edson to Grew, 7.

195) 소수파들이 제안한 정책전문은 앞의 Edson to Grew, 1936년 7월 16일의 첨부물 “Education Policy,” 『신사참배 I』, 260.

기되었다. 소수과는 당연히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장로교 측의 입장에 동조한 선교부 실행위원회는, 교육철수기간에 신사참배를 할 수 있다면 교육철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¹⁹⁶⁾ 둘째, 신입생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재학생의 졸업을 위해 교사진을 그대로 둘 때 생기는 재정부족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나아가 만약 폐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국이 신사참배를 강요, 미국의 재정지원자들이 지원을 철회할 때 생기는 재정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였다.¹⁹⁷⁾ 이것은 학교철수의 결정만이 아니라 이후의 철수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 빚어질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위원단 보고 중 흥미를 끄는 대목은, 선교부 연례회의가 교육사업 철수 대상인 “우리의 선교사계 학교”라는 단어에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는 제외된다고 본 점이다.¹⁹⁸⁾ 위원단은 조선선교부 내의 교육선교사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선교부의 교육철수를 강력히 반대했음을 전하고 있다. H. H. 언더우드의 영향력 하에 있던 두 고등교육기관은 다른 교파, 즉 감리교와 캐나다 및 호주 장로교 등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1936년 연례회의에서는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두 위원은 연례회의의 결정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¹⁹⁹⁾

위원단은 평양이 신사참배 강요의 시범지역으로 이후에 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우울한 예측을 했다.²⁰⁰⁾ 이는 당시 조선 선교부가 1936년 8월에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²⁰¹⁾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할 무렵에 가졌

196) Edson to Grew, 1936년 7월 6일, 5.

197) Ibid. 이미 맥클은 미국에서 일본의 정책에 반대해서 재정지원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지원을 철회시키고 있었다.

198) *First Commission Report*, 6.

199) Ibid., 7-8. 이 두 선교사들의 입장은 다음에서 잘 표현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채택한 결의서에 표현된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우리는 제시된 해결책이 그 상황에서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믿는다.”

200) Ibid., 6.

201) 미나미는 육군사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참모차장, 조선군사령관을 역임했다. 만

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미나미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만주에서 석유산업의 국유화와 반 서구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²⁰²⁾ 실제 미나미 총독이 부임하자 경기도와 함경북도 당국은 외사경찰과를 신설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당시 서울의 미 총영사관은 경기도 외사경찰과는 서울 거주 530명의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함경북도의 것은 “국제적 방첩(international espionage)”활동을 위해 설치했다고 파악했다.²⁰³⁾ 이러한 조치는 서구인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다.

부장로교 해외선교부는 1936년 9월 21일자로 미국 남장로교 및 남북 감리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단서 아래, 조선선교부와 위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특히 학교처분 문제에서 선교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²⁰⁴⁾ 그러므로 선교부의 보고를 받은 해외선교부는 위원단의 보고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선교부의 자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자의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할 것을 조선선교부에 지시했다. 즉 조선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외선교부의 자산에 “담보권(lien)을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산을 “대여(loan), 임대(lease), 증여(grant)”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²⁰⁵⁾ 해외선교부는 “가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주사변(1931) 당시 육군대신으로 불확대방침을 취했지만 현지군의 군사행동을 추인했다. 1934년 관동군사령관 겸 만주국 특명전권대사가 되어서 산업국유화를 단행했다. 2차 대전 후 도쿄재판에서 종신징고형을 언도받았다. 『조선총독 10인』(가람기획, 1996), 해당 총독.

202) 서울의 선교사들은 1935년 만주에서 미나미가 관동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 외국계 사업체와 선교사 조직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을 체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서울의 미 총영사는 선교사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전했다. Andrew W. Edson to Joseph C. Grew, “Resignation of Governor General Ugaki,” 1936년 8월 12일 (895.001/22), *RIAK, 1930-1939*, 4.

203) Ralph Cory to Erle R. Dickover, Establishment of Foreign Affairs Police Sections in Provincial Governments in Chosen, 1936년 10월 16일, 895.105/5, *RIAK, 1930-1939*. 함경북도의 것은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204) 해외선교부의 반응은 “Board Action of September 21, 1936,” 『신사참배 II』, 149-151. 해외선교부의 이 결정사항을 이후 채택되는 것과 구별해서 “Board Action I”로 표기한다.

면 선교부가 할 것이지만 만약 선교부가 할 수 없다면 다른 누가 할 수 있나”고 반문할 정도로 이 시점에서 조선선교부의 강경한 입장을 존중했다.²⁰⁶⁾ 즉 1936년 중순 무렵에 해외선교부는 학교를 조선인들에게 인도하는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았고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와 학교 폐쇄라는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2) 타 교파 선교부들의 대응

남장로교의 대응

평양의 맥쿤, 스누크 교장이 해임된 1936년 초 무렵, 맥쿤에게 보낸 총독부의 경고문이 남장로교 조선선교부에도 전달되었다. 선교부는 앞으로 신사참배 강요로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다만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남장로교 측은²⁰⁷⁾ 선교부가 전라남북도 당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현지 일본인 관료들이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재량권이 있었으므로 관할 학교들에 급작스럽게 참배강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사참배와 교육철수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므로 남장로교 운영 학교의 교장단은 자체 회의를 개최했다.²⁰⁸⁾ 당국이 ‘신도비종교론’에 근거해서 모든

205) “Board Action I,” 2.

206) Ibid., 2-3. 이 결정문에서, 가을에 미 북장로교파의 거물인 스티븐슨 목사(Rev. J. Ross Stevenson)가 조선을 방문할 것이므로 그가 선교사, 한국지도자들과 협의 후 해외선교부에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슨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고 메이첸과 신학 논쟁 후에도 프린스턴에 남았다.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Fundamentalists, Modernists, and Moderates* (New York etc: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66-170.

207)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적 서술은 “조선예수교남장로교파선교 四十年사”(1-8), 『기독신보』 1932년 11월 16·23·30일, 12월 7·14일, 1933년 1월 25일, 2월 1일, 8일자 참조.

208) 회의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군산의 존 배일(John B. Vail), 목포의 다니엘 커밍(Daniel J. Cumming), 전주의 윌리엄 린턴(William A. Linton)과 수잔 콜턴(Susanne A. Colton),

학교 학생들은 애국심을 표하기 위해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²⁰⁹⁾ 선교부 측은 이에 반해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예식의 종교성, 조선신궁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메이지[明治; 재위 1869-1912] 천황의 ‘영령’을 모신 점, 일본인들의 혼란, 한국인들이 신사참배를 조상숭배와 동일시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²¹⁰⁾ 이것은 다수와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제기한 논거와 유사한 것이다. 선교부는 정부 측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국 해외선교부에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²¹¹⁾ 다만 1936년 2월 11일에 정부 측이 요구한 신사참배 의식에는 전남 당국이 선교사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신관”(priest)이 참여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신사에 “머리를 숙이는”(bow) 의식을 생략했으므로 선교부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²¹²⁾

선교부는 1936년 3월 말 서울의 조선기독교서회에서 활동하던 윌리엄 클라크(William M. Clark)의 발의로 임시 선교부 회의를 군산에서 개최하려고 했다. 이는 평양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남장로교 측의 공식적인 반응이었다. 군산 경찰서는 선교사들이 신사참배에 대해 토론한 후 성명서를 채택할지 모른다고 우려, 이 모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남장로교 측은 4월 1일부터 새 회기연도가 시작되므로 “재정문제”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 경무국은 1936년 2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2·26사태)를 핑계로 선교부회의를 무기한 연기시켰다.²¹³⁾

그러나 1936년 7월 1일 결정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의 입장

광주의 플로렌스 루트(Florence E. Root), 로버트 낁스(Robert Knox), 엘 뉴랜드(L. T. Newland), 그리고 브루스 커밍(Bruce Cumming) 등이었다. Confidential Letter, 1936년 2월 4일(광주, 남장로교), 1, 『신사참배 II』, 83.

209) Ibid., 1-2.

210) Ibid., 2.

211) Ibid., 3-4.

212) Ibid., 4.

213) Langdon to Grew, “Prohibition of Meetings of American Missionaries,” 1936년 3월 26일 (395.1163/31), 『신사참배 I』, 179-181.

은 남장로교 선교부로 하여금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²¹⁴⁾ 1936년 7월 7일에서 14일까지 전남 구례에서 남장로교 조선선교부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선교사들은, 만약 당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정책을 이미 1934년 연례회의에서 확립해두고 있었으므로 굳이 새로운 결의서를 채택할 필요는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독부 외사과의 오다 사무관이 이 회의에 참석해서 선교사들에게 당국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선교부로서는 굳이 새로운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득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선교사들은 9월 15일로 정해진 일본의 명절에 신사참배가 강요되는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아직 호남지역에 신사가 많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²¹⁵⁾

그러나 만주침략으로 사망한 일본 군인들에 대한 추도를 위해 1936년 10월 초 선교사계 학교에 다시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당시 참배의식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반부 약 40분 정도는 영령에 대한 “공양”(供養, sacrifice) 의식이었고 후반부는 군인장교에 의한 애국연설이었다. 선교사들은 전반부 참석의 면제를 요구, 광주 수피아여학교는 예식의 후반부에만 참석했다. 그러나 전남 당국은 10월 15일 의식에는 앞부분에도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²¹⁶⁾ 이에 대해 광주선교지부는 신사참배에 대한 참여거부와 동시에 교육사업 철수를 확인했다. 광주선교지부의 “임시위원회”(ad-interim committee)는 11월 4일 학교폐쇄를 결정하면서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의 최종결정을 기다렸다.²¹⁷⁾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당국의 발언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있는 조선인 기독교인들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결정을 비난하기도

214) 앞의 Confidential Letter, 1936년 10월 15일, 4-6.

215)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395.1163/39), 『신사참배 I』, 254-256.

216) 이 때 수피아학교 교장 루트(Root)는 평양에 들러 북장로교 선교부의 분위기를 파악했고 돌아오는 길에 전주에 들러서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의 Confidential Letter, 1936년 10월 15일, 5.

217) Ibid., 6.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남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총무인 다비 풀턴(C. Darby Fulton)을 직접 호남지역에 보내서 선교사들과 회합을 가진 후 1937년 2월 전주에서 유명한 ‘풀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신사참배 예식의 종교성을 지적하며 전주·목포·순천·광주 등지의 학교들을 점차 폐쇄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측의 입장과 다른 점은 만약 학교가 문을 닫는 과정 중에 당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그 “즉시로” 학교를 폐쇄한다는 것이었다.²¹⁸⁾ 남장로교 측이 학교 폐쇄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해외선교부가 직접 풀턴 총무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정책을 결정할 전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풀턴은 일본에서 태어난 선교사 2세로 신사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 호남지역은 북장로교 선교지역에 비해 지리적 밀집도가 높아서 선교사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유리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보듯이 남장로교 측도 교육사업 철수에서 조선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호주장로교의 반응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호주장로교도 신사참배 반대에 동참했다. 남장로교 조선선교부와 마찬가지로 호주장로교 조선선교부는 1936년 2월경에 “다른 영령들에게 봉헌된 신사에 참배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사참배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²¹⁹⁾ 그러나 선교

218) “Policy Regarding Schools in Korea,” 『신사참배 II』, 223-224; 풀턴 성명의 번역문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97-299 참조.

219) Edith A. Kerr and George Anderson,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 (Australian Presbyterian Board of Missions, 1970), 57-59;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310; 호주선교부의 결의(1936년 2월 7일) 전문은 『신사참배 I』, 279; 김승태,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203-204도 참고.

부는 교사나 학생이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²²⁰⁾ 그런데 선교부내에 이견도 존재했다. 특히 교육에 관심을 가진 여선교부는 학교를 보전하기 위해 “우리의 학교들 안에서 주어지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교부의 교육사업 철수 입장에 반대했다.²²¹⁾ 이에 대해 호주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학교폐쇄와 신사참배 사이에 중도의 길을 찾을 것을 권고했고, 선교부와 일본관리들 간에 타협의 길이 모색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1936년 말 제임스 맥켄지(James N. McKenzie, 1865-1956)²²²⁾는 그의 편지에서 학생들이 신사에 가서 “존경하는 태도로 서서 국가를 위해 묵도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써 신사참배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되었다”²²³⁾고 주장했다.

적어도 1936년 가을 호주장로회 조선선교부 내에는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당국과 타협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맥켄지는 호주장로회 계열 학교로 부산 일신(日新)여학교의 ‘설립자’로 신사참배문제에서 당국과 타협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다.²²⁴⁾ 특히 일신여학교는 호주장로회 조선선교부 운영학교 중 유일하게 1933년에 ‘지정학교’로 선정되었으므로 그의 학교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다고 볼 수 있다. 맥켄지는 1938년 호주로 돌아간 이후에도 신사참배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면서 신사참배는 “애국적 의례”임을 강조했다.²²⁵⁾ 결국 경남지방에서

220) Kerr and Anderson, *Ibid.*, 90.

221) Minutes of the PWMU, 1936년 5월 4일, 정병준, 같은 책, 311에서 재인용. 한편 호주장로교 여선교사들은 빅토리아 장로교회 여선교연합회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고 1923년에 조선 선교부 내에서 남성과 동일한 투표권을 획득했기에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병준, 같은 책, 80-90.

222) 맥켄지(梅見施)는 1910년부터 38년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의사로 부산 나병원 원장(1910-38), 일신여학교의 설립자(1915-38)로 활동했다. 정병준, 같은 책, 171-173.

223) Minutes of the FMC, 1936년 12월 8일, 같은 책, 311에서 재인용.

224)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슨(J. Ross Stevenson)도 한국에 와서 맥켄지의 입장을 확인했다. Stevenson의 편지, 1936년 11월 13일, 『신사참배 II』, 443.

225) 지정학교 관련은 정병준, 같은 책, 314. 맥켄지는 *Messenger*라는 잡지에서 일제의 신사참배요구는 정치적 의무에 대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선교부 회장이었던 프랭

는 당국과 선교부의 타협을 통해 중일전쟁(1937) 이전에 신사참배 논란은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그것은 경상남도 도 당국이 가능한 한 학교 폐쇄를 강요했다는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아서 선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경남지역에서도 신사참배문제가 1938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그리하여 1939년 1월 4-8일 진주에서 열린 특별 선교사협의회에서 교육사업철수 안이 16대 3으로 통과되어서 호주장로회의 교육철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²²⁶⁾ 그러나 호주장로회 측도 교육철수문제를 두고 한국인들과 불편한 관계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캐나다장로회의 대응

캐나다장로회는 1898년부터 함경도와 간도, 연해주 등지에서 선교를 시작했다.²²⁷⁾ 캐나다 선교사들은 3·1운동 시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중립’을 지키려고 했지만 일제의 만행을 목도하면서 한국인 시위자들에 대한 일본의 잔인한 진압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1920년 가을에 있었던 간도지역에서의 일본의 한국인 학살과 관련해서 이 지역 캐나다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품었다.²²⁸⁾ 캐나다 선교사들의 활동지역에는 함흥·원산·성진·청진 등 해변지역을 따라 있는 도회지를 제외하고 배후에 있는 험준한 산악지세때문에 당국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지역이 많았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몰아닥친 세계대공황은 함경도 지역도 예외 없이 강타했다. 함경도는 노동운동과 농민운

크 볼랜드(Frank T. Boland)와 대립했다. 자세한 논쟁은 같은 책, 316-320.

226) Kerr and Anderson,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57-58.

227) 초기 캐나다장로회의 한국선교에 대해서는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 연구, 1898-1910,”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참조. 1925년 캐나다 연합선교회로 통합되었다.

228) 이는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조선인들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도널드 클락, “식민지 시대 한국의 캐나다 선교사와 일본인,” 『기독교와 한국역사』(연세대 출판부, 1996), 108-113.

동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유명한 지역이었다. 특히 함경도 지역은 간도 지역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이 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캐나다 선교사들은 대체로 다른 지역 선교사들과 유사하게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보수적인 장로교 신앙을 가르쳤다.²²⁹⁾ 그러나 캐나다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목도하고 한국인들의 처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많았다. 1928년부터 1934년까지 함흥지역에서 활동한 아더 번스 부부는 YMCA 농촌사업부에서 일하면서 농촌사회의 안정을 통해 공산주의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다.²³⁰⁾

함경도 지역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도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캐나다선교회 소속 학교를 정부 기준에 맞추어 등록할 때, 성경교과의 정규수업화가 가능한 ‘지정학교’보다 정부의 인가를 받으나 성경교수가 정규수업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보통학교’나 ‘고등보통학교’를 선호했다. 그리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일본의 교육체제에 편입시키려고 했다. 그 결과 1925년부터 고등보통학교 승격을 위해 준비를 해온 함흥의 영생여학교는 1929년 10월 13일부로, 영생학교는 1931년 3월 4일 각각 고등보통학교로 승격·인가되었다.²³¹⁾ 초등교육기관인 진성(進誠)여학교도 학부모회가 나서서 노

229) 비록 1930년대에 자유주의신학을 수용한 일부 캐나다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신학사조로 캐나다 선교부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위의 글, 113-124. 다만 성경해석상 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윌리엄 스코트(William Scott, 徐高道; 1886-1979)는 해방 후 한국신학대학교(기독교 장로회)를 설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230) William Scott, *Canadians in Korea: Brief Historical Sketch of Canadian Mission Work in Korea*[Board of World Mission(미간), 1975], 120-121. 불행히도 자금 부족으로 YMCA 농촌갱생을 위한 특별 팀은 1934년 해산되어서 한국으로부터 철수했다. 번스의 해방 후 활동은 제4장 2절 참조.

231)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정학교보다는 고등보통학교를 더 선호했다. 캐나다선교회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반대하다가 결국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Ibid., 121-122; “永生女學校 高普로 認可 내용도 충실,” 『동아일보』 1929년 10월 20일; “咸興永生校高普로 昇格, 이로써 사립고보가 十교 二日附로 認可되어,” 『동아일보』 1931년 3월 5일.

력한 결과, 1931년 4월부터 진성여자보통학교가 되었다.²³²⁾

신사참배는 1933년 3월, 즉 만주사변 2주년 기념식부터 캐나다선교부에 강요되기 시작했다. 선교부는 참배를 반대하자는 측과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civil rites)”이기에 수용해도 무방하다는 측으로 나뉘어졌다.²³³⁾ 원산의 진성여자보통학교는 “만주사변 2주년 순난자 위령제”에 참가할 것을 종용받았지만 거부했다.²³⁴⁾ 그 결과 교장 박혜선이 사임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²³⁵⁾ 이후 선교부는 오랜 고민 끝에, 함경도 지역의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협력을 얻어, 학교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호주장로회와 마찬가지로 중일전쟁 이전까지 함경도 당국이 참배예식과 관련해 선교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계 학교가 행사에 참가했을 때, “학생들과 선생들이 물러간 후에 신도의 신직(神職)들이 그들의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²³⁶⁾

내한 캐나다 선교사들과 달리 토론토의 캐나다연합선교부 총무 암스트롱(A. E. Armstrong)²³⁷⁾은 신사의 종교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신사참배 강요가 가속화되었던 1937년 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및 남북 장로교 선교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은 일제의 ‘신도비종교론’ 입장에 동의

232) “元山進誠女校普校로 昇格,” 『동아일보』, 1931년 4월 7일.

233) William Scott, *Canadians in Korea*, 130. 캐나다연합교회 선교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 김승태,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204-207.

234) “위령제 불참가로 진성여교 문제화,” 『조선중앙일보』, 1933년 9월 28일.

235) “위운제 문제로 진성교장 사직,” 『조선중앙일보』, 1933년 10월 11일.

236)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934, 327[김승태,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206에서 재인용].

237) 암스트롱은 각 교파 해외선교부의 부탁을 받고 한국의 3·1운동 발발 직후인 3월 16일에 서울에 들어와 3일 동안 만세운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미국교회연합회(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산하 동양관계위원회(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Orient)에 정보를 제공했다. 안종철, “3·1운동, 선교사 그리고 미일간의 교섭과 타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3집(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66. 이후 동 위원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료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와 동 위원회와의 갈등은 민경배, “3·1운동과 外國宣教師들의 關與問題,” 『동방학지』 59호(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220-227.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기독교인의 신사의식 수용은 교회의 “전도사명”(evangelistic witness)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²³⁸⁾ 암스트롱은 일본 기독교계가 천황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신사참배 문제에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일본 기독교계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조선과 만주의 기독교인들의 참배반대가 “종교적”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며 일본 기독교계를 강력히 비난했다.²³⁹⁾ 그는 “근본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신사참배 반대파들을 근본주의자들로 몰아붙이는 선교사들의 입장에도 반대했다.²⁴⁰⁾ 그렇지만 그는 현지 선교부의 결정, 즉 일본 당국의 신도비종교론과 교육기관 유지라는 입장을 대체로 따랐다.

일본 기독교계의 반응²⁴¹⁾

로마가톨릭과 러시아정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독교 단체가 가입한 일본기독교연맹은 1930년 이전에 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국가신도의 종교성 여부를 조사하고 국가신도의 종교성을 인지했다.²⁴²⁾ 이들 일본 기독교계 55개 단체는 1930년 5월, 당시 일본 정부가 ‘신사제도조사회’를 구성하자 국가 신도의 종교성 여부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려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1. 이번엔 신사에 관한 본질적인 연구조사를 수행해서 신사가 종교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서, 초종교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그것을 애매히 하지 않을 것.

238) Armstrong to Bert, 1937년 5월 19일, 1-2, 『WCC자료』, 341-342.

239) 위의 Armstrong to Bert, 1937년 5월 19일, 2.

240) Armstrong to Bert, 1937년 6월 8일, 『WCC자료』, 354.

241) 일본기독교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서정민,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기독교회와 민족국가 관계론 연구』(한울 아카데미, 2000), 2-3장 참고.

242) 종교성에 대한 기독교연맹의 입장 표명은 D. C. Holtom,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96-97.

2. 신사를 종교 권외에 두려 한다면 그 숭경(崇敬)의 의의나 대상을 명료히 해서 교파신도와 혼효(混淆)를 바로잡고, 제사의식의 종교적 내용을 삭제하며 나아가 기원, 기도 및 신사 부적(護符)의 수여, 혹은 장의(葬儀)의 집행 등 기타 일절 종교적 행위를 폐지시켜 주기 바람.

3. 신사를 종교권내에 두려한다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종교행위를 국민에 강요하지 않도록 할 것.

4. 사상 선도 및 교화사업 등의 진행에 있어서, 국민각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소위 학생(生徒) 강제 참배, 가미다나 문제 등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야기시키지 말아주기 바람.

5. 제국헌법이 보장하는 신교자유의 본뜻을 본 문제해결의 명확한 기초로 삼아주기 바람.²⁴³⁾

기독교계는 국가신도의 종교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례와 배치되는 종교의식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일본 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피했다.²⁴⁴⁾

그러나 일본기독교계의 입장은 신사참배의 종교성보다는 국가의례적 측면을 인정하는 쪽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신사의 종교성을 명확히 해달라는 대정부 성명서의 작성에 참여한 일본 감리교는 1934년 1월 26일 동경에서 사상문제연구위원회를 개최한 후 입장을 바꾸어 신사참배를 애국행위로 천명하며 국민사상의 진흥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²⁴⁵⁾ 이러한 상황에서 1934년 가을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솔타우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과 면담했다. 이 때 그는 1-2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가신도에 참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놀랐다. 그들이 솔타우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만약 한국의

243) “神社問題に關する進言,” 『聯盟時報』(1930년 6월 15일)제74호;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日韓キリスト教關係史資料 II』(東京: 新教出版社)(이하 『日韓キリスト』), 199-201.

244) 3년이 지나서 감리교 측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神社不參拜問題に對する基督教聯盟見解-問題は神社の宗教的意義,” 『日本キリスト新聞』(1933년 9월 24일), 제2175호,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같은 책, 190-191.

245) “基督教に基き日本精神を闡明-現代に對するキリストの態度,” 『日本キリスト新聞』(1934년 3월 11일), 제2197호,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같은 책, 191-192.

어떤 학교의 교장이라면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²⁴⁶⁾ 대부분의 일본 거주 선교사들은 솔타우의 신도종교론을 비판했던 것이다.²⁴⁷⁾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반응은 이후 신사참배가 논란이 되었을 때 참배 반대파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것을 암시한다.

평양에서 발발한 신사참배문제를 조사키 위해, 미국 웨이커 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일본지부 대표 길버트 보울스(Gilbert Bowles, 1869-1958)²⁴⁸⁾가 1936년 1월 17일부터 23일에 걸쳐 한국을 방문했다. 홀드크로프트는 그가 한국에서 총독부 관리들과 선교사들을 면담하면서 얻은 결과를 일본 주재 선교사들에게 잘 설명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²⁴⁹⁾ 상황은 보울스의 힘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었다. 이미 일본 기독교계가 일본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1930년대 중반에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35년 말, 만주에서 많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와 유교숭배 강요를 거부해서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일부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일본기독교연맹에 호소하기도 했지만 기독교연맹은, 현지의 선교사들이 “반일활동”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며 일본 군부의 기독교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체포 활동은 기독교 탄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²⁵⁰⁾

246)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의 명단과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Notes on the Shrine Problem,” by T. S. Soltau, 1935년 9월 6일, 『신사참배 II』, 20-22. 솔타우는 당시 복장로교 조선 선교회 실행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는 복장로교 해외선교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247) Soltau to McAfee, 1935년 6월 6일, 『신사참배 II』, 10.

248) 보울스는 오랜 동안 일본 웨이커 선교부의 대표로 있었다. 후일 국무부 일본 과장을 역임한 보튼(Hugh Borton)이 1928-31년에 그의 밑에서 학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와 보튼의 관계에 대해서는 Hugh Borton,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3 · 10 · 36.

249) Holdcroft to McAfee, 1936년 1월 24일, 『신사참배 II』, 80.

250) 미 국무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미 선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개입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Warnshuis and Hornbeck Conversation re: Missionary Problems in Korea and Manchuria,” 1936년 3월 20일 (395.1163/29), 『신사참배 I』, 168-169; 일본기독교연맹의 입장은 Akira Ebisawa to William Paton, 1936년 1월

일본기독교연맹은 평양에서 발생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회에 보냈다. 연맹측은 이 편지에서,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한 것은 없지만, 신사참배 강요는 “미국이 이민자들을 미국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조선인을 일본화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내 선교사들이 일본 기독교인들이 취한 자세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연맹은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의 인사들이 신사에 참배토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²⁵¹⁾

일본기독교연맹은 결국 1936년 11월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신도가 종교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²⁵²⁾ 연맹의 총무 윌리엄 액슬링(William Axling)은 이전부터 정부의 ‘신도비종교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신도종교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움직임을 견제하려 했다.²⁵³⁾ 이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기독교연맹 총무였던 에비사와 아키라[海老澤亮]는 중일전쟁 2주년을 기념하는 글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와 일본의 “아시아 팽창”을 동일시했다.²⁵⁴⁾

남장로교 일본선교부는 신사참배 문제에서, 조선과 일본 내 선교사들의 의견이 똑같은 유일한 교파였다. 남장로교 측은 1920년대 초에도 일본 내

21일. 위의 395.1163/29의 첨부물 참조.

251) Akira Ebisawa to Warnhuis, 1936년 3월 2일, 『신사참배 II』, pp. 109-110.

252) D. C. Holtom,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97-98; 김승태,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217-219.

253) 액슬링은 침례교 선교사였다. 그의 입장은 미국의 종교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있다. Axling to John R. Mott, 1936년 3월 4일, Axling to A. L. Warnhuis, 같은 날짜, 『WCC자료』, 234-239. 그는 일본기독교연맹의 1936년 11월의 신사관련 성명을 영문으로 각지에 전달했다. “The Shinto Shrine Problem” by National Christian Council of Japan (Dr. Axling), 『WCC자료』, 347-348.

254) 海老澤亮, “東亞新秩序の建設と基督教,” 『聯盟時報』(1939년 6월, 제183호, recited D. C. Holtom,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109-110. 그는 조선기독교연합회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위해 글도 쓰고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聯盟時報』1938년 7월 15일, 제172호, 1939년 8월 15일, 제185호 등.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日韓キリスト』, 254-260.

의 신사참배강요 움직임에 대해서 해외선교부 차원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²⁵⁵⁾ 아울러 일본에서 교육사업 철수를 결정한 1939년에도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일본 제국대학의 종교과 교수 가토 겐치와 황국법학자 가케히 가즈히코의 신도종교론과 일본 기독교연맹의 1930년 보고서 등이었다.²⁵⁶⁾ 남장로교 측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신사참배문제를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과 충돌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취한 선교사들은 일본 내에서는 소수파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한국 내의 본격적인 신사참배 강요는 1935년 11월 평안남도 도지사가 평양지역 사립학교장 회의 직전에 교장들에게 신사에 먼저 참배할 것을 ‘강요’함으로 시작되었다. 신사에 참배하기를 거부한 북장로교과의 맥쿤과 스누크가 교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부터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두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체적으로 기호지역에서 교육계에 종사한 ‘소수파’ 선교사들은 일제의 신사참배요구를 ‘애국행위’로 받아들였다. 해외선교부는 이 무렵 조사위원단을 파견, 한국 내 선교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선선교부의 교육사업에서의 철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남장로교 조선선교부가 취한 강경하며 일사불란한 입장을 제외하고 다른 교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부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신사참배문제는 일본 내 선교사들과 한국 내 선교사들 간, 심지어 한국 내 선교사들 간에도 심각한 의견대립을 낳았다.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인들을 선교사들과 대립적인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 이에는 총독부가 한국인들의 학교 인수의 배경 뒤에 있었다. 그 갈등을 겪으면서 전시체제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었다.

255) “Concerning Relations with Golden Castle College” by A. P. Hassell, 『신사참배 II』, 396-397.

256) Ibid., 402-404.

제2장 교육사업 철수를 둘러싼 갈등

1. 선교사들의 철수 결정과 갈등

1)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의 협의¹⁾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북장로교 선교사 대부분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 서울의 교육선교사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입장은 다른 교파의 선교사나 일본 내 선교사들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일본과 조선에 거주한 미 외교관들의 입장과는 달랐다. 기존의 신사참배 관련 연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선교사들과, 외교관 혹은 다른 교파 선교사들과의 차이점에 그리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이들 간의 입장 차와 그것이 가진 한미관계사에서의 함의를 확인하지 못했다.²⁾

1)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미일간 교섭에 대해서는 1장의 1절의 관련 부분과 함께 안종철,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와 미 국무부의 대응, 1931~1937,” 『한국사연구』145호(2009년 6월), 187~217에 실렸다.

2) 도널드 클라크의 연구는 서울의 총영사관측과 선교사들 간의 대립을 암시한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19-221. 신사참배 논란의 주역 맥쿤과 외교관들과의 의견 차이에 대한 시론적 검토는 안종철, “윤산온의 교육선교 활동과 신사참배 문제,” 89-90; 고마고메 다케시도 1935~36년 신사참배 논란 시 국무부의 불간섭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駒込武, “朝鮮に於ける神社参拜問題と日米關係-植民地支配と『内部の敵』,” 75-78.

동경 미 대사관과 서울 총영사관 직원들 중 상당수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국무부 극동국에서 전후계획, 특히 천황제의 존속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³⁾ 조선총독부가 1930년대, 특히 중반 이후 천황숭배를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에서 확대되는 전쟁 상황과 관계있었다. 군부는 당시 천황이었던 쇼와[昭和; 재위 1926-1989]를 신적 존재로 숭배하면서 동시에 국가신사에서 메이지천황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등을 기리는 것을 전시동원의 주요 축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핵심은 천황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였다.⁴⁾

미 정부 당국의 입장은 1935년 말부터 본격화되는 신사참배 파동에 대한 대응에서 잘 드러난다. 1935년 11월 14일, 맥쿤이 평안남도 도지사의 신사참배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의 총영사관도 이 사건을 즉시 확인, 동경 미 대사관을 통해 국무부 극동국에 상황을 보고했다. 서울의 윌리엄 랭던(William R. Landon, 1891-1963) 영사⁵⁾는 앞으로 미 국무부가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고서를 1935년 12월 10일자로 상부에 보고했다. 그는 평양의 신사참배 문제가 1932년 참배강요의 재판이라고 보면서도 이번에는 “심각한 형태”(in acute form)로 재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신사참배에 대한 세 학교 교장의 거부와 한국 장로교 측의 강경한

3)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로 동경 대사관의 조셉 그루(Joseph C. Grew), 유진 두우만(Eugene H. Dooman) 등인데 이들은 전후에 천황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中村政則, 『象徵天皇制と王道』, 127-160.

4) 김승태는 신사참배 문제의 본질은 ‘천황제’ 이데올로기문제라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김승태, “일제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기독교학교,”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5) 랭던은 직업외교관으로 동아시아문제 권위자로 서울 미 총영사관(1933-36), 만주 심양총영사관(1936-37), 동경대사관(1938-41)에서 근무했다. 1941년 6월부터 워싱턴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태평양전쟁기 중국 쿤밍[昆明]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1936년에 외무대신을 역임한 이시이 키쿠지로[石井菊次郎]의 『外交余録』을 번역해서 미국학계에 소개할 만큼 뛰어난 일본어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William R. Landon ed, *Diplomatic Commentaries by Viscount Kikujiro Ishii*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36). 식민지 시기부터의 한국에서의 활동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해방 이후에도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1945년 10월부터 활동했다. 그에 대한 개인적 정보는 김광운·정병준, “『주한미군 정치고문 문서』해제,” 『大韓民國史資料集-駐韓美軍 政治顧問文書』18(국사편찬위원회, 1994) 참조.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⁶⁾ 한국 기독교인들 중 소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정도로 강직”하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총독부와 충돌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다.⁷⁾

자신의 개인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랭던은 신사의 종교성 여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한편 그는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측에도 자신의 사건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로마 가톨릭 측의 공식반응을 기다려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일본내 기독교인들과도 보조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므로 그 동안은 신도가 종교가 아니라는 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⁸⁾ 실행위원회 측도 총영사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교육사업 철수 시 발생할 선교사들의 권리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 이에 랭던은 교육철수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며 선교사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주일 미 대사관에 소견을 물겠다고 말했다.

한편 랭던은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가진 “권리의 원천”인 1910년 9월과 10월에 미일 정부가 주고받은 “교육과 선교사업의 자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장”을 상부에 상기시켰다.⁹⁾ 그는 1935년 12월 9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된 북장로교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신사참배 불가입장이 12월 19일에 총독부에 통보되었다는 소식을 상부에 전했다. 당국이 실행위원회 측의 서신을 반송했을 때¹⁰⁾ 랭던은 이것을 총독부의 “유화적인” 태도로

6) Langdon to Edwin L. Neville,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t Shinto Exercises,” 1935년 12월 10일(395.1163/21), 2-5, 『신사참배 I』, 102-104. 랭던도 개인적으로는 신도의식이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15.

7) 위의 Langdon to Neville, 3-7. 그는 당국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동아일보」 12월 1일, 「조선일보」 12월 5일·9일; 「조선중앙일보」 12월 8일자에 실린 학무국장의 의견을 자세히 소개했다. 같은 문서에 첨부된 “Obeisance of School Pupils at Jinja,” *Seoul Press*, 1935년 11월 29일도 당국의 입장, ‘신도비종교론’을 잘 보여준다.

8) *Ibid.*, 8.

9) *Ibid.*, 8-9.

10) Langdon to Edwin L. Neville,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t Shinto Exercises,” 1935년 12월 14일 (395.1163/22), 『신사참배 I』, 115-133. 이 보고서 뒤에는

해석했다.¹¹⁾ 그렇지만 랭던도 총독부가 12월 말에 맥쿤과 선교사들에게 보낸 최후통첩에서 “신사참배는 교육상 애국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선교부가 마음을 고쳐서 신사참배를 성실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당국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¹²⁾

한편 총독부는 랭던에게 적어도 1936년 가을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intimated)했다. 랭던은 이것을 총독부의 중요한 양보로 받아들였다. 이는 조선선교부, 조선장로교 총회,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모임이 동년 6월, 9월에 차례로 개최된 후 총독부가 최종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¹³⁾ 랭던의 보고서를 접한 미 국무부 극동국은 현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랭던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내무 비망록에서 평가했다.¹⁴⁾ 그러나 조선과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신사참배 불가론을 강경히 주장하는 한, 1936년 가을로 문제를 미루는 것은 문제의 해결일 수는 없었다.

신사참배 문제가 적어도 1936년 가을까지는 재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랭던의 낙관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맥쿤과 스누크는 학교장의 직위에서 해제되어 1936년 상반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추방되었다.¹⁵⁾ 랭던은 두 사람의 해임된 후, 총독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상황이 쉽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무렵 그는 총독부가 각 학교의 교장과 부교장을 가능한 한 한국인들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무국장 와다나베도

16개 정도의 한국 신문을 번역해서 한국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11) Langdon to Grew, 1935년 12월 20일 (395.1163/23), 『신사참배 I』, 135-136.

12) Langdon to Grew, 1936년 1월 6일 (395.1163/24)에 첨부된 “A Warning to Dr. G. S. McCune, Principal of the Sujitsu School,” 『신사참배 I』, 141-145.

13) 위의 Langdon to Grew, 2-3.

14) 극동국 비망록, 1936년 2월 12일, 『신사참배 I』, 137. 이 비망록을 작성할 시점에 맥쿤과 스누크는 교장 자격을 박탈당했다.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외교자료교환은 극소수의 긴급한 전신을 제외하고 대개 서신으로 이루어졌다. 현지와 문서를 주고받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서신으로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은 극동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15)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1일(395.1163/25). 맥쿤의 입장은 이 문서의 첨부물인 McCune to Yasutake, 1936년 1월 18일, 『신사참배 I』, 156-157 참조.

요히코가 전한 것, 즉 “학교 이사회가 후임자를 찾을 수 없다면 당국이 적절한 인물을 모색할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총독부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¹⁶⁾ 당시 사립학교법상 당국은 학교가 추천하는 교직원에 대해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직접 자신들이 사람을 추천할 수는 없었다.¹⁷⁾ 학무국장은 숭실전문학교와 숭실학교 부지는 “학교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학교폐쇄 후 선교부가 건물을 신학교나 신학교육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선교부 측은 이에 대해 “학교부지는 학교를 위해 임대된 개인소유물”이기 때문에 법원은 아마도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랭던은 총독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총독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일본 본토와 달리 사실상 “진행될(operative) 수 없기 때문에” 총독부의 의사가 그대로 관철될 것이라고 보았다.¹⁸⁾ 또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평안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경찰들이 이 문제로 선교사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선교사들이 통일된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비록 선교사들을 “극단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 당국은 기독교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더 채택할 것이라고 랭던은 보았다. 결국 선교부 소속 학교의 부지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¹⁹⁾

총독부와 평양지역 선교부가 충돌하면서 선교사계 학교들의 폐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랭던은, 총독부가 여전히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애국

16) 위의 Langdon to Grew, 4-5에 인용된 「경성일보」1월 23일, 「조선일보」1월 20일 기사.
 17) 교원임명(면)에 관련해서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의 조항이 사립학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었다. 제3조는 “설치인가 사항의 변경: 사립학교 설치가 인가된 후에 목적·명칭·위치·학칙 또는 설립자를 고치려고 할 때에는 조선총독에게, 교장이나 교원을 갈려고 할 때에는 도장관에게 각각 청원을 내어 인가를 받아야 하고, 校地·校舎의 소유자나 유지방법을 고치려고 할 때에도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다. 자세한 논의는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112-116. 물론 당국은 1936년 당시 유효한 「사립학교규칙」14-16조를 가지고 학교폐쇄를 할 수 있었다. 위의 Langdon to Grew, 5.
 18) 학무국장의 의견은 「조선일보」1월 19일. 앞의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1일, 6.
 19) 위의 Langdon to Grew, 8.

심을 고취”하기 위해 학생들이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은 미국이 “외교적 개입”을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미국정부로서는 총독부의 선언을 받아들이든가, “신학적 논쟁에 개입”하는 선택만 가능할 뿐이었다. 랭던은 1936년 9월로 예정된 미국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가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총독부도 기독교인들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²⁰⁾

랭던의 인식과 달리, 승실전문학교와 승실학교의 운영을 맡게 된 마펫은 당국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학내에서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과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인 교수가 마펫의 입장을 가지고 학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면서 신사참배 반대로 학내로 돌아오지 않는 200명의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또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조선인들에게 학교 경영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1936년 2월 18일에 발표했다.²¹⁾ 평양지역 재향군인회 회장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 마펫을 방문하려고 하자 그는 자리를 피했다.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마펫은 맥 쿤과 함께 경찰의 충고에 따라 2월 18, 19일 각각 서울로 떠났다. 평양의 다른 선교사들 일부도 서울로 향했다.²²⁾

랭던은 학교재산과 선교사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총독부 경무국에 신변안전을 부탁할 필요성을 느꼈다. 평양지역 선교사들은 1931년 완바오산 사건으로 야기된 평양의 중국인 학살을 알고 있었다. 랭던은 2월 19일, 몇몇 선교사들과 함께 총독부를 찾아가서 재향군인회의 “위험적인 활동”

20) Ibid., 9.

21)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28일(395.1163/28), 2-4, 『신사참배 I』, 162-164. 아마도 랭던이 언급한 한국교수는 이훈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후일 승실전문 부교장에 임명되었다. 클라크는 위의 문서의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랭던이 당시 곤란한 입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15. 그러나 랭던의 일관된 관심은 정치적 파장에 대한 것으로 신사참배는 일본 내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22) 위의 Langdon to Grew, 3. 승실전문과 학교의 조선인 교수와 학생들의 분위기와 선교사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승전, 승중경영을 조선인에게 양도요구,” 『기독신보』 1936년 2월 26일.

과 완바오산 사건 후 중국인 학살 사건을 열거하며 평양지역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총독부는 이에 따라 선교사들의 보호를 위해 평양경찰서에 예비적 조치를 취해 두었다.²³⁾ 1936년 2월 20일, 랭던 일행은 총독부 학무국을 방문해서 타협 가능성을 찾았다. 이 회담 직후 총독부 측은 랭던에게 사람을 보내 선교사들과 총독부간의 타협안을 중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교부와 총독부 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랭던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독부 측은 “좀더 고분고분한 조선인들”에게 학교를 책임지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조선인들 중 학교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 선교사들은 총독부 측만 아니라 학교운명을 자신들에게 인계하라는 조선인들의 압력을 해결해야만 했다. 선교사들은 당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완화된 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가 허락을 한다면 한국인을 부교장으로 임명하고 학생들 “스스로 신사참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었다.²⁴⁾ 한편 1936년 3월 말 실행위원회 측과 총독부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져 평양 송실재단 학교들의 후임 교장 인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래에 기독교계 학교가 신사참배를 면제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였다. 랭던은 실행위원회 측이 후임 교장인선을 수용한 데에는 총독부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신사참배 문제는 일단락이 된 듯했고 평양의 선교부는 차분한 상태가 되었다.²⁵⁾

이에 랭던은 선교사들의 재산관련 문제 이외에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1936년 3월 말 남장로교선교부가 임시선교부를 군산에서 개최하려고 했을 때 군산 경찰서는 이 모임에서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개최한 후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집회를 허가하

23) Ibid., 4.

24) Ibid., 5.

25) 전문학교 교장에 모우리, 부교장에 이훈구, 송실학교 교장에 정두현(명예교장 모우리), 송의학교 임시 교장에 김승섭(교장 O. R. Swallon이 안식년 중)이 임명되었다. 이들 교장단도 신사참배 반대파였다. Langdon to Grew, 1936년 3월 24일(395.1163/30), 『신사참배 I』, 177-178.

지 않았다. 선교부는 모임이 “한 해의 선교사역과 재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 총영사관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랭던은 총독부 외사과를 찾아서 이 모임은 선교사들의 선교 관련 토론을 위한 “사적인 집회”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폈듯이 이 모임은 일본에서 발생한 군부쿠데타(2·26사태)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랭던은 총독부 측의 집회불허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남장로교 선교부 측의 윌리엄 클라크에게 선교부의 우려, 즉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당국이 선교부의 일상적 모임에 “개입할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화하기 어렵다(not justified)”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²⁶⁾ 신사참배 문제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현지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해오던 랭던은 국무부가 이 문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극동국도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가 “미일간의 조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았으므로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²⁷⁾ 랭던의 의견이 국무부 극동국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당시 국무부 극동국에는 1936년 초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이 전달되었다. 국제적인 초교파 기독교 단체인 국제선교사 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총무는 극동국장 스탠리 혼벡(Stanley K. Hornbeck)에게 보낸 서신에서, 조선과 만주에서 신사참배와 만주국에 대한 충성 문제로 기독교 목사와 교인들이 일본 당국에 억류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관심을 촉구했다.²⁸⁾ 이외에도 어떤 일본인과 하와이한국기독교인연합회 등도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들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비판하는 서신을 국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²⁹⁾ 이에 대해

26) Langdon to Grew, “Prohibition of Meetings of American Missionaries,” 1936년 2월 26일 (395.1163/31), 『신사참배 I』, 179-181.

27) 극동국 비망록, 1936년 2월 28일(395.1163/25), 3월 9일(395.1163/27), 3월 24일 (395.1163/30), 『신사참배 I』, 146·159-160. 극동국은 1910년 10월 6일에 일본 외무대신이 동경 미 대사에게 확약해준 ‘종교자유’가 ‘종교적 믿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조치를 미일 간 조약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28) 국무부 극동국 비망록, “Conversation between Warnshuis and Hornbeck,” 1936년 3월 20일(395.1163/29), 『신사참배 I』, 168-169.

극동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극동국은 서울과 동경의 외교관과 교육사업철수 반대파 선교사들의 입장을 두둔했다.

랭던에 후임으로 신사참배 문제를 다룬 사람은 앤드루 에드슨(Andrew W. Edson)이었다. 1936년 6월 25일부터 개최되는 북장로교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를 토론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에드슨 영사는 총독부와 선교부 사이의 입장을 중재하는 일에 관여했다. 그러나 1936년 초 군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장로교 선교부회의가 금지된 것에서 보듯이 당국의 입장은 강경했으므로 에드슨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서대문 경찰서는 홀드크로프트와 로즈를 ‘억류’하고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서류에 이들이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들의 전화를 받고 에드슨 영사는 총독부 경무국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를 방문했다. 결국 에드슨의 중재로, 실행위원회 위원들은 문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풀려나오게 되었다.³⁰⁾ 에드슨은 실행위원회 측에 선교사들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부와 행정에 해가 되지 (prejudicial) 않는” 범위에서 총독부 측이 선교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위해’ 여부는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의 종교문제에 대한 결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국은 “잠정적인 시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에드슨의 의견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북

29) 일본인의 입장은 Langdon to Grew, 1936년 4월 14일 (395.1163/32), 『신사참배 I』, 183의 첨부물. 이 일본인은 중국에서 통조림업에 종사하는 사업가로 서울에 와서 선교부에 자신의 글을 전달했다. 일본의 신도가 다신교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은 유럽국가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고 비판했다. The United Korean Christian Society of Hawaii to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 1936년 5월 8일(395.1163/33), 『신사참배 I』, 168-169, 190-197. 하와이교회의 편지는, 미국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극동에서의 미국인의 위신은 추락하며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은 맥쿤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도중 하와이에 4주간 머물면서 한인교회에서 연설한 직후 한인기독교인들이 작성했다. G. S. Patton to War Department, 1936년 5월 7일 (395.1163/37), 『신사참배 I』, 244-249.

30) Edson to Grew,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nd Teachers at Japanese National Shrines,” 1936년 6월 17일(395.1163/36), 4-8, 『신사참배 I』, 222-226. 이 문서 뒤에 집회 관련 조선총독부 법령을 첨부했다.

잡한 문제를 “매우 유능하게(very capably)” 처리하고 있다고 보았다.³¹⁾

서울 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려고 했다. 에드슨 영사는 1936년도 선교부 연례회의 개최 직전에 일본에 건너가 명망높은 북장로교 선교사인 라이샤워 등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들은 평양의 선교사들이 장로교 해외선교사들 중 “가장 강한 근본주의자들”로 그들의 신학사상은 일본만이 아니라 뉴욕 해외선교부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주재 선교사와 일본 당국의 관계는 우호적이어서 일본의 선교사계 학교에서는 “학교 대표만 참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신사예식에 참여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에는 “종교적 의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받는 순교자(persecuted martyrs)”가 아닌 “별나게 까다로운 분파주의자들(ultra-meticulous sectarians)”에 불과한 인물들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선교부가 일본 기독교계의 “도움” 없이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일본 선동가들의 주장, 즉 “종교적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조선선교부가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있다는 선전에 좋은 재료가 된다고 보았다.³²⁾

서울로 돌아온 에드슨은 홀드크로프트에게 일본 선교사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선교부 연례회의 개최 전 두 실행위원을 억류해둔 것은 “고압적(highhanded)”인 조치였지만 이는 일본의 “법집행 권한 내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례회의 개최 전날인 6월 24일,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조사위원단인 제임스 로저스와 폴 애보트는 서울 총영사관도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에드슨이 보기에 이들은 “자유주의적 견해”와 “세련된(tactful) 접근방식”을 가진 인사들로서, 조선선교부가 일본의 정책에 복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심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교부가

31) Ibid., 2-3. 극동국의 에드슨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비망록, 1936년 7월 23일 (395.1163/35), 『신사참배 I』, 218.

32) 두 선교사들의 입장은 Edson to Grew (Confidential),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 Policy,” 1936년 7월 6일 (395.1163/38), 1-3, 『신사참배 I』, 233-235참조. 극동국의 입장은 극동국 문서, 1936년 8월 3일(395.1163/38), 같은 책, 230-231.

정부시책에 복종한다면 당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³³⁾ 조사위원단의 이런 의견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보낸 공식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6월 25일 에드슨은 이들 위원단과 함께 총독 우가키의 사저에서 열린 점심만찬에 참석했다. 그는 이 모임의 비공식적 성격과 환대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에드슨은 6월 25일 저녁부터 열린 선교부 연례회의에 참석했다.³⁴⁾ 이 연례회의는 앞에서 본대로 69대 16으로 교육기관으로부터 철수 안을 통과시켰고, 각 선교지부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소수 안을 68대 19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에드슨은 학교가 폐쇄되기보다는 한국인들에게 인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인들이 학교운명을 맡게 되어 두 위원이 언급한 해외선교부의 정책, 즉 교육·의료·전도사역에서 “토착조직으로의 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³⁵⁾ 에드슨도 소수파에 동의했던 것이다.

한편 에드슨 영사는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한 “자유주의적 소수파(liberal minority)”의 교육정책 안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소수파의 교육정책 안은 학교가 소재한 각 지역의 선교지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동시에 만약 교육철수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중등교육에만 한정하려고 했다. 에드슨은 소수의견에 북장로교 해외선교부가 파견한 두 위원이 공감했다고 보았다.³⁶⁾ 두 위원은 비록 전체 선교부의 결정사항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등교육기관 중 연희전문과 세브란스의전이 철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을 절충하려고 했던 것 같다.³⁷⁾ 언급한 대로 해외선교부는 위원단의 이러

33) 위의 Edson to Grew, 3-4·8. 에드슨은 부영사 코리(Ralph Cory)와 더불어 선교부 연례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가 보기에, 일본경찰들이 상당히 예의바르게 행동하면서 선교사들의 개별적 토론을 방해하지 않았다.

34) 연례회의에 경찰과 함께 총독부 외사과 두 명의 직원도 참석했다. Ibid., 5-6.

35) 에드슨은 당국은 교육인계를 받은 한국인들이 “더 고분고분해질 것”이며 ‘토착화’를 환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bid., 8.

36)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7일 (395.1163/39), 3-5, 『신사참배 I』, 256-258.

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³⁸⁾

국무부 극동국은 1936년 선교부 연례회의가 교육기관에서의 철수를 결의하자 자국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부적절한 종교적 중요성(undue religious significance)”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³⁹⁾ 서울 총영사관 측은 학교폐쇄를 주장하는 평양지역 선교사들이 교육기관을 차라리 조선인들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극동국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극동국은 일본거주 미 선교사들의 “상식적인 관점,” 즉 신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자신들의 판단 근거로 들었다.⁴⁰⁾ 같은 해 여름에 교황청이 발표한 ‘신도비종교론’ 성명은 이러한 판단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⁴¹⁾ 극동국은 현지 외교관인 랭던, 에드슨 등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그들의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⁴²⁾

극동국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북장로교 조선선교사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 관리들에게 ‘신도종교론’을 설득하려 했다. 홀드크로프트는 북경을 방문해서 북경 주재 미 대사 넬슨 존슨(Nelson T. Johnson)에게 신도종교론을 설명했다. 그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 선교사들이 교육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중 대사는 왜 북장로교 측이 가톨릭 측처럼 일본의 ‘신도비종교론’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아울러 “신사에 영령이 깃들어 있다”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도 반문했다. 이러한 대화에 대해 극동국

37) “Report of the Board’s Commission to Chosen: Regarding the Shrine Question,” 6, 『신사참배 II』, 146.

38) “Board Action of September 21st, 1936: The Chosen School Situation,” 2, 『신사참배 II』, 150.

39) 국무부 극동국 비망록, 1936년 8월 3일(395.1163/38), 1, 『신사참배 I』, 230.

40) Ibid., 2, 『신사참배 I』, 231. 극동국의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대한 비판은 극동국 비망록, 1936년 8월 14일 (395.1163/39), 같은 책, 252-253도 참조.

41) “신사참배하는 가톨릭 교회,” 『경성일보』 1936년 8월 2일. Edson to Grew,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s at Shrine Ceremonies,” 1936년 8월 13일(395.1163/40)의 첨부물, 『신사참배 I』, 264.

42) William Philips to Grew, 1936년 8월 5일(395.1163/38), 『신사참배 I』, 250-251.

도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보았다.⁴³⁾

미국으로 추방당한 맥쿤은 1937년 초 국무부 극동국을 방문, 극동국 고위관리인 유진 두우만(Eugene Dooman)과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총독부가 선교부로 하여금 학교를 폐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무부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일본 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지 질의했다. 두우만은 국무부는 “해당국의 종교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두우만은 맥쿤의 생각을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에 국무부 장관은 서울과 동경 공관의 의견을 물었다.⁴⁴⁾ 동경 미 대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조선총독부에 일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총영사관 측도 선교부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특히 중남미에서 서울로 전근 온 게이로드 마쉬(O. Gaylord Marsh) 총영사⁴⁵⁾는 1937년 2월 24일에, 막 발표된 ‘폴턴성명서’를 극동국으로 보내면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강경한 입장을 비난했다.⁴⁶⁾ 그는 선교

43) 이들은 북경의 연경대학(Yenching University)의 환영만찬에서 만났다. 홀드크로프트가 북경에 간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John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Protestant Missions and the Shinto Question in Chosen,” 1936년 10월 30일(395.1163/44), 『신사참배 I』, 285-291.

44) “Presbyterian Mission Schools in Chosen,” 1937년 1월 21일(395.1163/45), 『신사참배 I』, 292-294. 이에 대한 국무부 장관의 조치는 같은 책, 295.

45) 마쉬 총영사는 ‘과테말라 총영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외교가에서 그의 중남미의 정원에 대한 강의로 유명했다. 마쉬는 조선의 지명에 대해 철저하게 일본식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의 통치를 지지했다. 그는 Seoul이라고 이름이 붙은 총영사관의 편지지를 버리고 Keijo라고 적힌 것으로 대체했다. 나아가 국무부의 국가색인(Foreign Service List)에 서울(Seoul)로 표기된 지명을 일본의 공식지명인 케이조(Keijo)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O. Gaylord Marsh to the Secretary of State, “Correct Name of Seoul,” 1937년 4월 20일(895.014/2), *RIAK, 1930-1939*. 그의 부인 루스(Ruth)는 그림을 그려서 미나미 지로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미나미는 답으로 자개로 장식한 서예품을 보내왔다. 성격이 괴팍하여서 총영사관 부지 내에서 중국인 요리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다양한 일화에 대해서는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06-209; U. Alexis Johnson(With Jef Olivarius McAllister), *The Right Hand of Power: The Memoirs of An American Diplomat*(NJ: Prentice-Hall, Inc. 1984), 39-40 참조.

46) Marsh to Grew, “Mission Schools and Shrine Ceremonies in Korea,” 1937년 2월 25일(395.1163/47), 『신사참배 I』, 301.

부 다수파에 동조하는 맥쿤을 두고 “언행이 부주의하고, 표현이 불완전하고, 발언이 선동적이며, 몸가짐이 괴이한,” 일본 당국의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이라고 혹평했다.⁴⁷⁾ 그는 선교회 소관의 재산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무부가 개입해야겠지만 신사참배와 같은 종교문제는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신사는 일본 당국의 “편의적인 국가 철학”이므로 만약 “애국적인 행사”에 자신이 다른 일본 관리 및 영사들과 함께 초대된다면 기꺼이 참배하고 싶다고 주장했다.⁴⁸⁾ 마쉬는 자신이 영사로 있었던 과테말라와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선교부나 교회의 활동에 “한계”를 둘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신사참배와 학교폐쇄를 주장하는 이들은 “근본주의자들”에 불과했다.⁴⁹⁾ 오히려 그는 선교사들에게 일제의 ‘신도비종교론’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선교사들은 비록 그가 선교회의 재산과 선교사들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대다수 선교사들의 입장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는다고 보았다.⁵⁰⁾ 마쉬는 내심 선교사들보다는 평양과 광주 지역 유지들, 특히 한인보·이춘섭 등의 선교사계 학교의 인계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⁵¹⁾

국무부 극동국은 남장로교 측의 강경한 성명서 채택에 대해서 미 당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맥쿤 등이 주장하는 신도의 종교성 문제는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자신들은 그것을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다수파 선교사들이 근거로 드는 1901년 일본 민사법원의 판단 중 신사의 종교성을 언

47) Marsh to Grew, “Mission Schools and Shrine Ceremonies in Korea,” 1937년 3월 8일 (395.1163/48), 2, 『신사참배 I』, 305.

48) Marsh to Grew, “Mission Schools and Shrine Ceremonies in Korea,” 3월 8일(395.1163/48), 2, 『신사참배 I』, 307. 마쉬도 신사의 종교적 요소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동양인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동양적인 종교적 관념”으로 보았다.

49) Ibid., 2.

50) Rhodes to Leber, “The Shrine Problem in Chosen,” 1937년 7월 27일(RG 140-12-21), 『신사참배 II』, 269-270.

51) 앞의 Marsh to Grew, “Mission Schools and Shrine Ceremonies in Korea,” 3월 8일자 문서에 번역·첨부된 『조선일보』 1937년 3월 2일 기사 참조.

급하고 있다는 부분은, 판결문에 “부수적으로 언급된 부분”이므로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⁵²⁾ 즉 미 극동국은 신사참배에 비판적인 선교사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2) 교육사업 철수 결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

북장로교파의 교육철수 결정과 갈등⁵³⁾

북장로교는 평양의 장로교신학교 외에도 3개의 고등교육기관(송실전문, 연희전문, 세브란스의전)을 다른 교파와 함께 운영했고 8개의 한국인 중등학교를 직접 운영했다. 이들 교육기관들에 1936년 중반에 대략 3,200명 정도의 조선인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다(【표 2-1】 참조). 수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 다수파의 학교 폐쇄안에 동의하는 결정서를 1936년 9월 21일 총독부에 전달했지만 해외선교부 내 일부 인사들은 일본 당국과 타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해외선교부는 이전에도 「개정사립학교규칙」(1915)으로 학내에서 종교교육 여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조선선교부 측과 달리 일본 당국의 입장에 동조했다. 즉 기독교계 학교가 정규교과과정 중에 종교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총독부가 금지했을 때,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선교부 다수파 선교사들은 이 조치를 자신들의 선교활동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종교탄압’으로 받아들였다.⁵⁴⁾ 해외선교부 동아시아 담당 총무 아더 브라운은, 총독

52) 극동국의 비망록(1937년 5월 3일과 4월 13일), 『신사참배 I』, 299·304.

53) 북장로교파의 평양에서의 교육철수에 대해서는 1장 2절의 일부 내용과 함께 안종철,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신사참배 문제와 평양의 기독교계 중등학교의 동향,” 『한국문화』 48호(2009년 12월), 93~116에 수록.

54) Miller to the Secretary of State, 1914년 4월 22일 (895.00/557). *RIAK, 1910-1929*. 총독부의 입장은 이 문서 뒤에 첨부된 *Results of Three Years' Administration of Chosen Since Annexation* (Government-General of Chosen, January, 1914)을 참조.

부의 조치가 이전에 누려오던 광범위한 종교자유를 제한한 것이지만 일본 관리들이 선교부의 기독교 교육기관 운영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즉 그에게 당국의 조치는 “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종교자유를 허용하는 것”이었다. 새로이 공표된 사립학교규칙의 정관(定款) 중, “일부 교수와 이사는 일본인으로 한다”는 것도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총독부 권한 내의 “적법한 조치”라고 보았다.⁵⁵⁾

【표 2-1】 북장로교 소속 중등·고등 교육기관 현황(1936년 증순)

학교등급	학교 명(위치)	학교장/ 부교장	재학생 수
중등	신성학교(평북 선천)	장리욱 / Henry W. Lampe*	340
중등	보성여학교(평북 선천)	Blanche I. Stevens	196
중등	송실학교(평남 평양)	정두현	560
중등	송의여학교(평남 평양)	Olivette R. Swallen / 김승섭*	432
중등	경신학교(경기 경성)	Edwin W. Koons	468
중등	정신여학교(경기 경성)	Margo L. Lewis	105
중등	계성학교(경북 대구)	Harold H. Henderson	356
중등	신명여학교(경북 대구)	Harriet E. Pollard / Archibald G. Fletcher*	130
고등	송실전문(Union Christian College)	Eli M. Mowry / 이훈구	185
고등	연희전문(Chosen Christian College)	Horace H. Underwood / 유억겸	369
고등	세브란스 의전(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오궁선 / Douglas B. Avison	160

출전: Edson to Grew, 1936년 7월 17일 (395.1163/39)의 첨부물 “List of Schools and Colleges Operated by th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 *은 교장대리

1910년대 당시 해외선교부 총무를 역임한 로버트 스피어(Robert E. Speer, 1867-1947)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종교탄압이라는 관점보다는 일본의

55) Arthur J. Brown to the Chosen Mission. No. 628. June 6, 1923, PCUSA, 李省展, 『朝鮮의 宣教師와 朝鮮의 近代』, 218-219에서 재인용.

한국인들에 대한 “동화(assimilation)” 문제로 인식했다. 그가 다녀간 25년 전의 한국사회는 “사회화되지 않은 단위들(units)의 집합체”였지만 지금(1910년대 중반)은 “정치와 사회기관들을 대표하는 일본인들에 의해 잘 통치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선교부가 일제 당국에 “긍정적이고 현명하게(positively and wisely)”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⁵⁶⁾ 당시 조선선교부는 일본 당국에 대한 이러한 우호적 견해를 강력히 비난했다.⁵⁷⁾ 조선선교부는 운영학교들을 총독부 학무국에 등록하지 말고 10년간 허용된 유예기간을 채우고 그 후 학교를 폐쇄하자고 주장했다.⁵⁸⁾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 신사참배와 교육사업 철수 논란시, 해외선교부 내에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해외선교부 총무 클레란드 맥아피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는 학교폐쇄에 대해 반대하면서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성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외선교부는 내부의 이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936년에는 일단 조선선교부의 결정을 존중했다.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의 입장이 일치되어 있던 1936년 가을 일제는 다시 선교사계 학교들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평양신사가 국가신사[國幣小社]로 승격된 동년 10월 2일, 일제는 평양의 모든 학교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명령했다.⁵⁹⁾ 비록 선교사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평양지역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은 모두 참석했다. 평안남도 당국은 이것을 두고 신사참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전했다.⁶⁰⁾ 왜냐하면 같은 날, 서울에서

56) “Extracts Re the Shinto Shrine Problem” (RG 140-12-16) 중 “From Dr. Speer’s Report on Deputation of April-November 1915,” 『신사참배 II』, 160-161.

57) 특히 황해도에서 활동한 샤프(Charles E. Sharp)는 해외선교부의 의견을 강력히 비판했다. 李省展, 같은 책, 107-109.

58)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과 평양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었다. 재한 선교사들의 이 문제에 대한 반응과 차이는 이성진, 같은 책, 107-120.

59) 평양신사는 천조대신(天照大神), 국혼대신(國魂大神)을 제신(祭神)으로 10월 2일을 예제(例祭)일로 한 국가의 국폐소사(國幣小社)였다. 鐵道省, 『神まうて』(東京: 博文館, 1933), 322. 이 책은 철도성이 일본 제국 내의 신사를 방문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안내 책자인데 ‘국가적 제사’라는 관점(같은 책, 1)에서 신사를 소개하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신도종교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도 모든 학교가 신사에 참배할 것을 명받았고 모두가 당국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장로교 선교사들은 서울의 감리교 학교인 배재고등보통학교 교장 헨리 아펜젤러(Henry D. Appenzeller, 1889-1953)에게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펜젤러는 답변서에서 신사참배는 “선량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당국의 조치라고 말했다.⁶¹⁾ 일제 측도 서울의 배재고등보통학교와 경신학교 등의 당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잘 알고 있었다.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측은 1936년 가을, 일제 측의 신사참배 재강요에 강력히 반발했다. 동위원회는 1936년 7월 1일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학교를 즉시 폐쇄하려고 했다. 이에 평양 선교지부와 평양노회가 적극 동의했다. 특히 평양노회는 동년 10월 7일 신사참배에 참여한 학교들에 노회 차원에서 학교에 이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과 신사참배를 한 인사들을 징계할 것을 결의했다. 당시 실행위원회 측에 동의하지 않는 교육선교사들은, 한국인 장로교인들이 선교사들을 “[반일의] 앞잡이(cat's paw)”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⁶²⁾ 특히 서울과 대구 선교지부는 실행위원회의 강경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두 지역의 선교지부는 일제 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아직 신사참배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평안북도 선천도 아직 신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사참배강요가 없었다.⁶³⁾ 또 강계·안동·재령·청주 선교지부에는 선교사들이 운영

60) 국무부 극동국 비망록, 1936년 11월 5일(395.1163/42), 『신사참배 I』, 272-273.

61) Cory to Dickover (주일 미대사관), “Participation of Mission School Students in Shrine Ceremonies,” 1936년 10월 12일(395.1163/42), 『신사참배 I』, 274-275. 아펜젤러의 답변은 이 문서에 첨부. 아펜젤러는 한국의 첫 감리교 선교사(H. G. Appenzeller, 1858-1902)의 아들이다. 첫 감리교 선교사에 대해서는 이만열 편, 『아펜젤러-한국에 온 첫 선교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를 참조.

62) Ralph Cory to Dickover (일본 대사관), “Participation of Mission School Students in Shrine Ceremonies,” 1936년 10월 9일 (395.1163/41), 3, 『신사참배 I』, 267. 일본 당국이 평양학교들의 신사참배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이 문서 뒤에 첨부된 *Seoul Press*의 1936년 10월 4일자, “Complicated Shrine Problem Virtually Settled”와 10월 9일자, “Shrine Obeisance Issue Satisfactorily Settled” 기사 참조.

63) “Confidential Report of the Board’s Second Commission to Chosen,” 1937년 6월 14일

하는 학교가 없었으므로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까지의 신사참배 문제는 평양을 중심으로 다시 대두되었던 것이다.

평양 선교지부와 평양노회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교육에 관심있는 한국인들은 평양의 유서 깊은 학교들의 폐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각도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1936년 12월 10일부터 해를 넘겨가면서 삼승의 조선인 이사들은 학교 인수자 설정 문제를 두고 선교사들과 논의를 지속했다. 조선인 이사들은 인수자를 물색 중이므로 학교를 즉각 폐교치 말도록 선교사들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승실전문학교 교장인 모우리와 같은 교육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⁶⁴⁾

평양의 유지들은 “승전·승중·승의 3교 후계촉진회”를 결성해서 학교 운영진과 협의한 후, 학교의 이사진 중 고한규·정두현·김동원을 “인계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임명하고 사무를 일임했다.⁶⁵⁾ 평양의 유지인 조만식·오윤선 등도 인계위원들과 더불어 전국의 재력가들과 접촉했다. 그 결과 승의여학교 측은 20만 여 원의 자산을 소유한 재단법인 백선행기념관에 경영을 의뢰하기로 했고 승실전문학교와 승실학교는 다른 재단을 물색하기로 했다.⁶⁶⁾ 한국인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측은 1937년 1월 초, 해외선교부에 한교를 한국인들에게 인계한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개의 제안을 보냈다. 이는 세 가지 안이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 모든 시설을 인계하는 안, 둘째, 승실전문학교의 본관, 과학관, 운동

(RG 140-12-19), PCUSA, (이하 *Second Commission Report*), 3. 선천신사가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건립된 후에 신사참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선천 신성학교 교장인 장리욱은 자신이 동우회사건으로 체포될 무렵인 1937년 봄 이후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고 주장했다. 張利郁, 『나의 回顧錄』(샘터사, 1975), 163. 그러므로 당시 보성여학교 교사 안이숙이 신사참배 반대로 도망 다니기 시작한 것은 1938년 초였던 것 같다. 안이숙, 『죽으면 죽으리라』(신망예사, 1968), 30.

64) 「매일신보」1936년 12월 12일, 『승실대학교 100년사』, 498에서 재인용; “崇專,崇中,崇義校의廢校に猛烈反對,” 『朝鮮新聞』1936년 12월 12일.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mp_sc_1936_12_12_0220).

65) “崇實後繼促進會解體 報告書發表,” 『기독신보』1937년 2월 24일.

66) “四十年歷史를 갖인 崇專, 崇中, 崇義의 通悲한 最後,” 『기독신보』1937년 2월 10일.

장 등(1,500평)을 제외하고 인계하는 안, 셋째는 평안남도 대동군 소재의 농장(33만평)을 제외한 학교들의 인계안이었다.⁶⁷⁾

인계위원회 김동원의 노력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던 서북인 방응모가 합동경영을 전제로 한 인수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송실전문학교 측은 큰 기대를 걸었다.⁶⁸⁾ 그러나 처음부터 송실학교가 분리경영을 주장해서 초기의 인수안은 암초에 부딪혔다. 우선 송실전문학교 학생들은 1937년 2월 2일, 대강당에서 학생대회를 개최하고 송실의 합동경영안을 강력히 제기했다.⁶⁹⁾ 송실학교 교직원들은 이에 반해 1937년 2월 5일 “학교 내용의 충실과 자유로운 향상발전”을 위하여 송실전문과 분리, 단독경영을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선장로회 총회장 이승길을 중심으로 한 현직목사들과 송실학교 교장 정두현 등도 송실학교의 단독경영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인계위원회의 김동원은 삼교 합동경영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분리와 합동경영의 주장은 송실전문학교 혹은 송실학교의 존속여부와 관계되어 있었다. 분리경영을 주장하는 측은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의 인계를 함께 담당할 독지가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단독경영이 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⁷⁰⁾ 결국 내분으로 말미암아 삼송학교 인계운동은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행위원회 측의 솔타우는 평양 선교지부 회의를 긴급개최해서 1936년 7월 1일에 결정했던 대로 삼교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67) “崇專, 崇中, 崇義 三校 引繼具體案을 宣敎部에 請訓,” 『기독신보』1937년 1월 13일.

68) ‘인계위원회’와 방응모의 관계는 Hoon K. Lee (이훈구)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신사참배 II』, 173.

69) 송전 측의 입장은 『매일신보』1937년 2월 4일자 기사, 『송실대학교 100년사』, 498에서 재인용.

70) 송실중학 측의 입장은 “崇中職員團 聲明書發表,” 『기독신보』1937년 2월 17일 참조. 분규의 자세한 내용은 『송실대학교 100년사』, 499-501 참조. 송실전문학교는 맥쿤 교장시절 미국인 독지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급성장했다. 송실학교 측은 맥쿤의 사임으로 독지가 2명의 재정기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두 학교의 통합운영이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앞의 『기독신보』1937년 2월 24일 기사.

않고 폐교를 단행하기로 했다. 실행위원회 측은 분리경영과와 합동경영과의 갈등 속에서 분리경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므로 1주일 이내에 평안남도 당국에 폐교수속을 단행하기로 했다.⁷¹⁾ 이 소식은 학생, 학부모, 일반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어서 학교가 곧 폐교될 것이라는 소문이 당시에 유포되었다. 이에 송실전문학교 교장 모우리는 학교폐교설을 낭설로 일축하면서 신입생 모집이 늦어지더라도 학생모집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⁷²⁾ 모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파인 평양지부 선교사들을 “과도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송의여학교 교장 올리벳 스왈렌(Olivette R. Swallen, 蘇安燁)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경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⁷³⁾

이후 평양 유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인보(韓仁輔)가 70만 원을 투자하여 송실전문과 송의여학교를, 이춘섭(李春燮)이 30만 원을 투자해서 송실학교를 각각 경영하기로 했다.⁷⁴⁾ 학교와 후계축진회의 80여 명의 평양유지들은 이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리하여 1937년 3월 3일 밤 선교사 랄프 라이너(Ralph O. Reiner, 羅道來)의 집에서 ‘후계경영 청원안’이 성안되었다. 청원서는 송실학교의 분리 경영, “인계 후의 학교 경영은 종교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와 동일히 한다”는 주장, 그리고 소속 학교들의

71) 앞의 「기독신보」1937년 2월 10일 같은 기사. 선교사들은 송실학교의 분리문제가 교육 철수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솔타우를 중심으로 하는 실행위원회 측은 애초부터 학교폐쇄, 철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한국인들의 강력한 압력으로 해외선교부에 최종 결정을 미루었을 뿐이다. 앞의 「기독신보」1937년 2월 24일 기사는 실행위원회 측이 합동경영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일신보」1937년 2월 13일 기사는 선교사 측이 합동이나 분리를 상관치 않고 학교를 인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기독신보」측의 기사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72) “崇專校長 悲壯한 訓話-廢校說을 絶對否認,” 「기독신보」1937년 2월 17일.

73) Marsh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Mission School-Shrine Problem in Chosen,” 1937년 5월 7일(395.1163/52), 첨부된 Memorandum by Vice Consul Ralph Cory 1937년 5월 6일, 『신사참배 I』, 329-331.

74) “北長老派宣教會 經營各學校問題,” 「기독신보」1937년 3월 10일. 이훈구는 송실전문학교의 양주동이 주동이 되어 한인보를 끌어들였고 모우리가 이를 강력히 지원했다고 했다. 앞의 Hoon K. Lee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1-2.

자세한 재산목록을 담고 있었다. 이 청원서는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선교부에 보내졌다.⁷⁵⁾

그러나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평양선교지부의 강경파들이 평양 지역 유지들과 학교관계자들의 학교인계에 대한 열망에 얼마나 동의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하여 평양지부 선교사들과 인계반대파 한국인들은 인계자들의 자질에 깊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인계반대파인 송실전문학교 이훈구 부교장은, 한인보가 가톨릭 신자라는 것과 그의 축첩(蓄妾)행위를 문제 삼았고, 그가 40만 원의 재산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에 학교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인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던 고한규가 학교관련 인사들에 의해 학교 밖으로 거칠게 쫓겨날 정도로 조선인들의 학교인수에 대한 열정은 높았다.⁷⁶⁾ 김동원·조만식·오윤선 등 평양지역의 유지들도 한인보의 도덕성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결국 대세를 따라 그의 인수를 지지했다. 라이너는 후일 자신은 조선인들의 학교유지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고한규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다.⁷⁷⁾ 1937년 2월 24일에 호남지역 남장로교 선교부의 학교철수안인 ‘폴턴 성명서’가 발표되자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측은 조선

75) 청원서 전문은 『송실대학교 100년사』, 501-505와 “崇專, 崇中, 崇義三校 後繼請訓調印完了,” 『기독신보』 1937년 3월 17일. 해외선교부에 대한 학교운영진의 간청서는 “Petition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 Mission and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 S. A.” 1937년 3월 5일(송실전문학교 교직원 일동), 3월 9일(송의여학교 교직원 일동), 『신사참배 II』, 168-172. 후계청원서가 조인 후인 3월 6일에 학교 측은 한인보, 이춘섭을 위해 찬화회(讚賀會)를 개최했다.

76) 이훈구는 양주동이 평남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이너와 교섭할 때도 일제 측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훈구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일제 당국이 이 문제에 모종의 개입을 하고 있음과 ‘인계위원회’ 측 인사들 내에서도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인보의 재산액은 맥쿤과 이훈구의 지인인 변호사 노진철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앞의 Hoon K. Lee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1-3.

77) 라이너는 해외선교부가 평양유지들의 인수안을 수정한 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랐다. 그는 송실학교 이외에는 송실전문학교와 송의여학교는 고등교육의 비효율성과 한인보의 도덕성을 각각 들어 폐쇄를 희망했다. “Letter dated August 1, 1937 from Ralph O. Reiner,” 『WCC자료』, 395-398.

선교부가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했다.⁷⁸⁾ 하지만 선교사들은 평양과 서울 등지의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선교부는 이 문제를 더 조사하기 위해 1937년 3월에 두 명의 위원, 찰스 레버(Charles T. Leber)와 크로이 도즈(J. LeRoy Dodds)를 2차 위원단으로 조선에 파견했다. 이들은 3월 9일에서 22일까지 머물며 강계를 제외한 모든 선교지부를 방문하면서 교육철수 문제를 조사했다.⁷⁹⁾ 이들이 3월 13일 평양의 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승전의 모우리, 박치우, 송실의 정두현, 송기업, 송의의 오문화, 한인보 측 대표 양주동, 그리고 각 학교의 교수회, 교직원, 교우회 등은 2차 위원단에게 세 학교의 인계청원안을 속히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⁸⁰⁾ 두 위원은 황해도 재령에서 1937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실행위원회에 참석해서 한국인들의 학교인수안에 대해 심각히 토론했다.⁸¹⁾ 실행위원회는 동년 3월 3일에 서명된 청원서를 해외선교부에 보내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국의 언론들은 실행위원회의 결정이 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청원안이 뉴욕에 도착한다면 해외선교부에서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최후결정”으로 보도되었다. 관련 학교 측은 이에 당연히 환호작약했다.⁸²⁾

한국사회 내의 학교 인수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는 달리 2차 위원단은 선교부 내부와, 한국인들 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총독부의 태도 등에서 각기 상당한 차이를 발견했다.⁸³⁾ 이들은 한국인들의 인수안과는 다소 다

78) Holdercroft to Scott, 1937년 3월 25일(RG 140-12-21, PCUSA), 『신사참배 II』, 176-177.

79) *Second Commission Report*, 1-2. 이들은 총독부 학무국 사무관 다카오 진조오[高尾甚造]를 두 차례 방문해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당국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다.

80) “米國北長老派宣敎部總務 다드, 레버 兩氏來訪”과 “米國北長老派總務에게 崇實三校引繼 早速實現을 要望,” 『기독신보』1937년 3월 24일.

81) “載寧서 레버, 다드 兩氏와 같이 宣敎師實行委員會開催,” 『기독신보』1937년 3월 24일.

82) “崇實三校後繼問題를 宣敎師會實行委員會에서 正式通過”와 “崇實三校後繼問題 不遠間最終的 落着,” 『기독신보』1937년 3월 31일.

83) *Second Commission Report*, 4.

른 입장을 해외선교부에 개진했다. 두 위원도 신도의식에는 “종교의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본 당국이, 한국인들의 “반일활동과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막고 “제국정신(empire spirit)”을 촉진하려고 신사참배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두 위원은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지만 학교폐쇄는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인들의 학교폐쇄에 대한 반대는 전통적인 반일의식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보았다.⁸⁴⁾ 이는 한국인들이 학교를 통해 민족주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 위원은 기독교계의 딜레마를 정확히 짚었다.

두 위원의 기록은 자신들이 참석한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준다. 실행위원회는 주로 신사 및 교육관련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평양의 학교철수와 관련하여 네 가지의 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고 학교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안(선교부의 초기 입장).
2. 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한 후 조선인들에게 학교와 부지를 넘기는 안(한국인들의 인계요구안).
3. 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한 후,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를 위해 보유하되, 정부가 허락하는 조선인들에게 학교교직원(선교사는 제외)과 학생들은 인계하는 안.
4. 3안과 대체로 같지만 선교부가 보유한 부동산 중 조선인들이 기부한 두 곳과 일본당국이 기부한 한 곳의 토지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안.⁸⁵⁾

평양지부 인사들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지만 이내 2, 3, 4안으로 의견이 나누어졌다. 2안은 평양지역의 일부 선교사들과 한국인 대부분의 열렬한

84) 기독교계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는 Ibid., 4-8.

85) 이상의 네 가지 안은 Ibid., 8-9. 실행위원회 측은 나중에 한국인들에 의한 기부 필지는 평양의 어떤 가게 건물만 해당된다고 나중에 수정했다. Soltau & Holdcroft to Leber & Dodds, 1937년 7월 27일(RG 140-12-21), 15, 『신사참배 II』, 260.

희망사항이었고 일본 당국의 지지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의 한인보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매우 열정적인 한국인들의 위협” 등으로 보건대 이는 바람직한 안이 아니라고 두 위원은 판단했다. 3, 4안은 상당수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지지하는 안이지만 2안에 묻혀서 실제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⁸⁶⁾ 위원단 보고서의 결론은 조선선교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선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외선교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1937년 6월 24일부터 열리는 조선선교부가 결정을 내린 후, 안식년을 맞은 선교부 회원 중 일부가 미국에 건너가서 해외선교부 인사들과 토론을 거친 후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⁸⁷⁾

해외선교부가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고 위원단이 주장한 내막은 사실상 두 번째의 학교인계안을 부결시킬 의도에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인계자의 도덕성은 학교의 기독교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위원단의 대안은 제4안으로, 한국인과 일본 당국에 그들의 원래 소유지를 돌려주고 교사와 학생들만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⁸⁸⁾ 인계안의 핵심이 학교명과 건물임을 생각할 때 이는 한국인들의 인계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

86) *Second Commission Report*, 9-10.

87) *Ibid.*, 10-11. 이러한 위원단의 입장은 성명서로 채택되어서 총독부 학무국, 평남 도지사, 평양의 인계후원회, 평양선교부에 배포되었다.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고 다만 해외선교부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취지였다. 같은 문서, 12-13. 실행위원회 측은 철저한 학교폐쇄 쪽을 선호했다. 홀드크로프트는 당국이 타협할 가능성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솔타우와 함께 시베리아를 거쳐 뉴욕에 9월 15일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ldcroft to Scott, 1937년 3월 25일 (RG 140-12-21, PCUSA), 『신사참배 II』, 176-177.

88) 이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에 해외선교부에 요청하기를, 자신들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일본이나 한국어로 보내지 말라고 했다. 자신들의 보고서도 한국을 떠난 후 중국 상하이에서 1937년 4월 12일에 작성되었다. *Second Commission Report*, 14-15.

측과 2차 위원단의 학교인계안에 대한 찬성입장은 한국인들과 총독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행위원회와 2차위원단의 이러한 실제 입장을 모르고 있었던 평양지역의 유지들과 학교관계자들은 해외선교부의 답변이 늦어지자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거듭해서 학교인계에 대한 확답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⁸⁹⁾ 해외선교부의 최종 반응이 나오지 않자,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의 애매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⁹⁰⁾ 이 문제는 1937년 4월 1일자에 시작된 새 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였다. 당국과 한국인들은 학교 인수가 확실하다면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실행위원회 측은 해외선교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입생 모집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⁹¹⁾

한국인들의 거듭된 입장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부 측은 교육철수에 대한 입장표명을 결국 1937년 중순까지도 하지 않았다. 당시 해외선교부는 한국인들에게 학교를 인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맥아피와 같이 교육철수안을 반대하는 인사들도 있었으므로 공식입장을 채택하지 못했다.⁹²⁾ 해외선교부는 1937년 6월 말, 실행위원회에 보낸 답신에서, 외

89) '3교수계후원회 실행위원회' 측은 자신들의 후계청원서에 해외선교부가 4월 20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한이 지나자 5월 초에 신입생 모집과 후계청원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평남 도당국과 해외선교부에 다시 발송했다. 이 후원회는 평양 주민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실행위원회 측과 신입생모집을 위해 교섭했다. "新入生問題로 受繼後援會 活動," 「기독신보」, 1937년 5월 5일; "米國宣敎本部和 宣敎師側에 陳情과 懇願書發送," 「기독신보」, 1937년 5월 19일. 이에 실행위원회의 술타우는 6월 20일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後繼問題를 六月 二十日까지 解決," 「기독신보」, 1937년 5월 26일. 그러나 이는 한국인들의 '위협'을 해소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혹자는 위원단이 미국에 5월 25일에 도착한 후인 6월 25일 경에 해외선교부가 인수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外地傳道部委員會 十日頃에 重大會合," 「기독신보」, 1937년 6월 9일.

90) 사실 "북장노회 선교회에 一언을 드리노라," 「기독신보」, 1937년 6월 30일. 사실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었으면서도 때로는 찬성, 때로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선교부의 애매한 태도를 비난했다.

91) 선교사들은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거부했다. "平南當局에서 新入生募集을 懲憑," 「기독신보」, 1937년 4월 7일. 이는 실행위원회 측이 처음부터 학교 인계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주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분과위원회(Foreign Department Committee)가 교육철수문제를 심사한 후 교육인계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동년 9월 경 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⁹³⁾ 해외선교부의 답신에 조선인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해외선교부의 답신이 온 직후인 1937년 6월 24일부터 1주일 간 선교부 연례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한국인들은 학교인수안이 통과되도록 선교부에 다시 압력을 넣었다. 이에 대해 실행위원장 솔타우는, 평양지역 세 학교의 교육인계문제는 해외선교부의 소관이므로 선교부 연례회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⁹⁴⁾ 그런데 오히려 이 회의에서 대구와 서울의 학교들에 대한 폐교가 결정됨으로 한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6월 29일의 회의에서 1939년부터 대구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에서 선교부가 철수(표결 56 대 33)할 것을, 그리고 30일 회의에서는 1939년부터 서울의 경신학교에서 철수(표결 56 대 30)할 것이 결정되었다. 서울의 정신여학교와 선천의 신성학교, 보성여학교의 문제는 일단 보류되었다.⁹⁵⁾ 한편 1937년 9월 말,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평양 학교들에 대한 인수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실을 조선선교부에 통고했다. 이에 선교부는 11월 1일자로 평남 당국에 평양의 선교사계 학교에 대한 폐교원을 제출했다.⁹⁶⁾ 평양학교들의 운명에 대해서 북장로교의 소수파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폐쇄를 막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92) McAfee to George T. Scott, 1937년 4월 12일, 『신사참배 II』, 164-165.

93) “崇專, 崇實, 崇義三校後繼問題의 米國宣教會本部回答到着,” 『기독신보』1937년 7월 7일. 해외선교부 결정문은 “Board Action June 14, 1937: Chosen School situation,” 『WCC 자료』, 358.

94) “平壤三校後繼請願問題로 蘇悅道 宣教師重大聲明,” 『기독신보』1937년 6월 30일.

95) “敝新, 信聖도 經營引退를 決議,” 『기독신보』1937년 6월 30일. 신성학교에는 1937년 가을부터 신사참배가 강요되었기에 실행위원회 측은 즉시로 학교폐쇄를 결정했다. Holdcroft & Soltau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1938년 3월 28일(RG 140-12-26), 2, 『신사참배 II』, 292.

96) 선교부는 9월 말에 해외선교부에서 통보를 받고 평안남도 도지사에게 소식을 전달했다. “決定된 미순學校의 運命,” 『동아일보』1937년 10월 1일; “崇實專門의 廢校願, 遂昨日 府 提出,” 『동아일보』1937년 11월 2일.

남장로교 측의 교육철수 결정과 파장

평양유지들이 중심이 된 북장로교 학교들의 인계청원이 미국의 해외선교부에 보내질 무렵 호남지역의 남장로교 조선선교부는 해외선교부가 직접 개입해서 1937년 2월 24일, ‘폴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선교부의 학교교육으로부터의 철수, 1937년 4월의 신입생 입학 불가, 학교유지 기간에 신사참배 강요시 즉시 철폐, 학교 재산의 “기증, 대여, 전세,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⁹⁷⁾ 이 중에서 특히 교육철수 과정이 진행 중일 때 당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그 즉시로 학교를 폐쇄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주목된다. 이 안은 북장로교 측의 학교폐쇄 지지자들의 모델이 되었다. 북장로교가 운영, 지원하는 학교들은 지역적으로 서북지방에서 영남지방에 걸쳐 있었고 서울과 평양과 같은 대도시의 학교 관련 소식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반해 남장로교는 재정의 한계로 두 개의 ‘지정학교’만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신사참배 거부와 폐교결정이 전 한국 차원의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 같다.⁹⁸⁾ 기존 연구에서는 이 성명서의 발표 이후, 학교유지를 위한 한국인들의 입장

97) “Policy Regarding Schools in Korea” by C. Darby Fulton (1937년 2월 24일), 『신사참배 II』, 223-224. 이 성명서는 남장로교 해외선교부 실행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총무인 다비 폴턴(C. Darby Fulton)이 1937년 2월에 남장로교 선교지부를 돌아보고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의 공식정책으로 채택했다. 번역문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97-299 참조.

98) 당시 남장로교 운영 학교는 광주의 수피아여자, 송일(광주), 신흥, 기전여자(전주), 매산, 매산여자(순천), 영흥, 정명여자(목포), 영명(현 군산 제일), 멜본던 여자(현 영광여자)(군산) 등 10개교였다. 1933년 선교부 연례회의는 두 개의 학교를 ‘지정학교’로 신청할 것을 결정했다. 1933년 선정된 두 개의 ‘지정학교’는 전주의 신흥학교와 광주의 수피아여자학교였다. 목포의 영흥, 군산의 영명학교 등도 좋은 시설로 유명했지만 ‘지정학교’들이 아니었기에 학교수준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호남지역에서 일본 당국의 초등교육 확대와 함께 관할 학교의 학생 75%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남장로교 조선선교부의 규정 등으로 우수한 일반학생들이 이 학교들을 기피했다.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Board of World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U.S., 1962), 123-125.

과 남장로교선교부 입장이 충돌했다는 점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학교폐쇄는 당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폴턴은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을 방문할 때 자신의 방문목적이, 일본인과 한국인들에게 악평을 듣고 있는 내한 선교사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⁹⁹⁾ 그는 1937년 1월 27일 동경에서 주일 미대사 그루를 만난 후 한국에 들어와 2월 2일부터 24일까지 호남지역의 군산·목포·광주·순천·전주와 서울·평양을 방문했다. 그가 처음 전주와 군산에서 만난 이들은 “인근의 교회 인사들, 신문기자들, 남쪽 선교지부의 교인대표들, 그리고 전주와 군산의 유력자(gentry)”들이었다.¹⁰⁰⁾ 그들에게는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철수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초기에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당국의 체포, 구류, 강압 등에 의해 많은 이들이 입장을 바꾸었다. 특히 선교사들의 강경한 태도는 학교의 인계를 통한 존속조차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교육철수에 대한 호남 대중들의 반대를 초래했다. 폴턴이 보기에 수많은 한국인들은 선교사계 학교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조선적 형태”(Korean mold)를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부와 당국의 관계와 더불어 선교부와 한국인들 간의 갈등도 심각했다.¹⁰¹⁾

광주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진원지로, ‘민족주의적’ 열정이 반외세 감정으로 달아오를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실제로 이는 선교사들에 대한

99) “Dear Friends” by C. Darby Fulton, 1937년 5월 15일 (RG 140-12-22), 1, 『신사참배 II』, 204.

100) Ibid., 1-3. 방문지는 군산(2월 2-5일), 목포(5-9일), 광주(9-12일), 순천(12-15일), 전주(15-18일), 서울(18-20일), 평양(20-22일), 전주(24일) 순이었다. 각 선교지부에는 600에서 3,00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몰려들었다. 모든 도시에서는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환영 만찬이 개최되었다. 한국인 유지들의 활동은 평양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01) Ibid., 2. 당시 폴턴은 당국의 압박, 학교유지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 선교사들의 학교철수에 대한 강경한 입장 등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인들의 “무력적 위협”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풀턴이 각 선교지부에서 만났던 8~15명 정도의 한국인 대표들은 하나같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육기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²⁾ 남장로교 선교부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교 학생 수는 초등학교를 합치면 10,000명이 넘었다.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새로 중등사립학교를 허가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전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조선 해방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가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계 지도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¹⁰³⁾ 호남지역 유지들이 내세운 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선교부는 이전처럼 학교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
2. 선교부가 학교를 경영할 수 없다면 조선인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야 한다. 기독교적 요소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만약 당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도 자녀세대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계속 운영하겠다[다수 의견].
3. 이도 저도 안 된다면 학교를 비신자에게 매각해야 한다.¹⁰⁴⁾

이에 대해 풀턴 성명서는 학교인계 후 기독교적 특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한국인들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의 성명서에 대한 반대는 상당히 격렬했다. 성명서가 채택된 2월 24일의 전주 선교지부의 모임장소에서는 20~30명의 한국인 유력자들이 토론을 방청하겠다고 우겼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자발적으로 인계하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학교를 점거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시위원회”(Ad-Interim Committee)가 ‘풀턴 성명서’를 채택하자 건물 밖에서는 “술에 취한 한국인”이 풀턴을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되었다.

102) Ibid., 3. 신사의 종교성을 인정하는 인사들도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풀턴이 말한 기독교인들의 “항복(giving-in)”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의 교육기관에 대한 ‘공개념’적 인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많은 한국인들은 설립자의 의도와는 별도로 교육기관은 사회적 기물이라고 생각했다.

103) Ibid., 6.

104) Ibid., 14-15. 세 번째 안은 선교부로 하여금 신사참배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성명서가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발표될 저녁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성난 한국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폴턴과 몇몇 선교사들은 성명서 작성 후, 한국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전주역이 아닌 이리 역으로 차를 몰고 사라졌다.¹⁰⁵⁾ 폴턴 일행은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표명함으로써 조선선교부 측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 성공했다.

성명서 발표에 대해 개별 학교 별로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예를 들면 광주의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은 그날 저녁 강당에서 교감 김필레가 번역한 성명서 내용을 듣고, 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막 돌아온 플로렌스 루트(Florence Root) 교장을 포위하고 그녀에게 소리를 질러댔다.¹⁰⁶⁾ 이러한 항의시위에 일부 한국인 교사들이 동조해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미 총영사관 부영사 랄프 루트(Florence Root)는 총독부 외사과를 방문해 광주의 혼란이 선교사들과 선교부 재산에 해를 끼치는 불상사로 발전하지 않도록 당국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¹⁰⁷⁾

‘폴턴 성명서’ 발표 전후로 호남 지역의 개별 학교별로 지역유지들과 학교운영진을 중심으로 학교[인계]후원회가 결성되었다.¹⁰⁸⁾ 전남노회 측도 한국인들의 학교인계 문제에 무관할 수 없어서 1937년 5월 7일부터 일주일 간 목포에서 이 문제를 두고 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노회에서 임명한 전형위원들은 토론 후 광주 수피아여학교를 필두로 각 선교지부, 즉 전주·군산·목포·순천 등의 10개 학교에 대한 선교부의 폐교에 대한 반대안을

105) Ibid., 19-20;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154-155.

106) George T. Brown, Ibid. 155-156. 설립자 다니엘 커밍과 교사들이 성난 학생들을 결국 해산시켰다.

107) 총영사관은 남장로교 측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Marsh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Mission School-Shrine Problem in Chosen," 1937년 4월 20일(395.1163/50), 2-4, 『신사참배 I』, 316-318.

108) 그 과정에서 선교사 측에 동의하는 소수의 학내 인사와 학교인계를 요구하는 인사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광주 수피아여학교의 정모 교사는 다른 교원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사직한 후 경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그는 선교부의 입장에 동의한 인사였던 것 같다. “廢校問題로 光州須彼亞女校의 敎員間不祥事惹起,” 『기독신보』1937년 3월 24일.

통과시켰다. 이들은 목포 영흥학교 교장 다니엘 커밍(Daniel J. Cumming, 金雅各; 1892-1971)을 방문해서 전남노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커밍은 이를 다시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 보냈다.¹⁰⁹⁾ 그러나 해외선교부는 폴턴성명서에 표명된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한편 총독부 학무국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폐교를 1937년 7월 22일부터 신고주의에서 허가제로 바꾸어 선교사들이 함부로 학교를 폐교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두었다.¹¹⁰⁾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던 북장로교의 H. H. 언더우드도 해외선교부 위원들에게 이 법이 남북 장로교 조선선교부 소속의 학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인들은 이 조치를 환영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이 법 때문에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학교를 폐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¹¹⁾ 이 점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총독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1937년 가을 신학기가 시작되자 일제 측은 조선선교부에 대해 다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즉 동년 9월 6일 애국일을 명목으로 전 한국의 학교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 이에 대해 광주 수피아, 송일, 목포 영흥, 정명여학교 등 4개 학교의 설립자들은 학생들이 신사참배에 참여치 못하게 하면서 이틀 뒤인 9월 8일에 폐교 조치를 취했다.¹¹²⁾ 전주 신흥학교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참배했지만 ‘설립자’ 윌리엄 린튼(William A. Linton, 仁敦; 1891-1960)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도 당국에 학교의 자진 폐쇄원을 제출했다. 이 때 전주의 기전여학교도 함께 폐교신청서를 냈다.¹¹³⁾ 신흥학교의 경우에 전북 도의원 7명이 찾아와서 “학교명, 건물, 경

109) “宣教會經營十數校 廢校反對를 決議,” 『기독신보』, 1937년 6월 16일. 커밍은 1918년 내한, 목포 영흥학교, 광주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 등의 교장을 역임했다. 해방 후 재내한, 목포 기독교병원에서 병원전도, 농촌지역 선교에 종사했다. 『내한선교사 총람』, 224.

110) “學校의 經營,廢止에 今後 許可制 採用,” 『동아일보』, 1937년 7월 22일.

111) “Minutes of the Foreign Department,” 1937년 8월 31일, 3; 『WCC 자료』, 403.

112) “愛國日에 神社不參拜-四學校를 廢校處分,” 『동아일보』, 1937년 9월 8일.

영권” 등을 3월까지 “대여”할 것을 설립자 린튼과 교직원들에게 요청했지만 린튼은 폴턴 성명서를 근거로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전주 부(府)의 회 의원들도 이 문제를 두고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강경한 조선선교부 측의 방침에 속수무책이었다. 폴턴 성명서의 정책대로 호남 지역의 남장로교 운영 학교들은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폐교되었다.¹¹⁴⁾ 당시 선교부 학교들에 등록된 4,787명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시험 후 편입했다.¹¹⁵⁾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같은 시기 평양의 북장로교 학교들이 일시적으로 당국의 신사참배 요구에 따랐을 때, 북장로교 측을 강력히 비판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신사참배가 허용된다면 왜 영구히 참배가 허용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했다.¹¹⁶⁾ 남장로교 측의 신속한 대응과 정책은 신사참배반대와 학교폐교를 강력히 주장하는 북장로교 다수와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선교사들은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자국 외교 공관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과 동경의 미 외교관들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철저히 일본 내 문제로 인식했다. 외교관들은 자국 선교사들이 경찰에 억류되자 이들의 석방을 위

113) “全州 新興學校는 自進閉鎖,” 『동아일보』, 1937년 9월 8일; “全州의 新興, 紀全兩校 今 明間 廢校認可,” 『동아일보』, 1937년 9월 9일.

114)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156-157; “引繼交涉을 拒絕,” 『동아일보』, 1937년 9월 9일; “對策協議會를 開催-全州社會各方面人物을 網羅,” 『동아일보』, 1937년 9월 10일 자. 9월 9일로 잡혀있었던 유지회는 열리지 않았다. “廢止된 學校의 學生處置困難,” 『동아일보』, 1937년 9월 10일.

115) 남장로교계 관할 학교의 재학생수는 『수피아 90년사』(수피아여자고등학교, 1997)(<http://www.speer.hs.kr/html/speeryear/pds/5.pdf>), 제4편 수난기(1931-1937), 29; “在 學生 千餘名 他校에 轉學시켜 救濟,” 『동아일보』, 1937년 9월 8일; “木浦兩校八百名 公 普에 編入,” “多數學生轉學校는 二部制實施,” 『동아일보』, 1937년 9월 9일.

116) 한 남장로교 선교사는 북장로교 측의 교육철수 안 중, “질서 있는 방식으로(in an orderly fashion)” 철수할 것이라는 구절이 교육철수기간 중 신사참배를 사실상 허용한다고 비난했다. “A Statement by William M. Clark,” 1938년 1월 12일, 『신사참배 II』, 282-285.

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그 이외의 문제에는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오히려 외교관들은 해외선교부 내 소수파, 즉 교육철수에 반대하는 선교사들의 입장에 은근히 동의했다. 당시 한국인들은 북장로교와 남장로교의 교육철수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후계인계위원회'를 조직해서 선교부에 학교폐쇄가 아닌 경영권 승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남장로교의 일사 분란한 대응과는 달리 북장로교는 넓게 자리 잡은 선교거점들 때문에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가 매우 어려웠다. 초기에는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도 조선선교부 다수파의 학교교육 철수 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거듭 표명된 한국인들의 학교인계 요구와 소수파 선교사들의 건의 때문에 해외선교부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2. 중일전쟁 이후 북장로교 교육사업 철수문제와 갈등

1) 철수문제를 둘러싼 갈등

1937년 6월 말에 개최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에 참석했던 선교사들 중에는 교육기관에서 선교부의 철수를 반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각 학교에서 교육선교사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였다. 이들은 한국 내 언론에 직접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해외선교부에 서신을 보내 사업철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육철수 반대파 선교사들의 이러한 활동은 해외선교부가 동년 가을에 개최한 한국 교육 관련 회의에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쿤스, H. H. 언더우드, 루이스 등 서울의 중등 또는 고등교육 사업에 관련된 선교사들은 실행위원회 측의 학교 폐쇄 결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신학교 교장 쿤스는 자신이 경영하는 학교는 폐교의 운

명을 겪지 않을 것이며 인수할 재단을 확보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¹¹⁷⁾ 선교부 연례회의 개최 직전인 1937년 6월 초 해외선교부에 보낸 서한에서 언더우드는 학교폐쇄를 주장하는 다수와 선교사들을 다시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신사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진행 순서 중 종교적 행위가 없을 때 신사에 “절하는(bow)” 것은, 선교부가 1년 전 총독부 측에 먼저 가능한 지 질의한 내용인데도 선교부 다수파가 이제 와서 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¹¹⁸⁾ 그는 신사참배에 종교적 요소가 있으며 이는 “즐겁지 않은 국가적 의식”이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편의상(expediency)” 참여해야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가 보기에 조선선교부가 한국 내 각 지역별, 정부기관별, 교회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¹⁹⁾ 언더우드는 신사참배 문제를 한국교회가 직접 결정토록 한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운동에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참배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면, 교육사업에서 우리의 오랜 희망인 국민적 협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학교들이 한국의 기독교학교들로 튼튼히 서게 될 것을 바랍니다. 즉 학교에 선교부가 협력하고 한국인들이 종교교육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선교부가 한국교회가 너무 유치하다(childish)고 생각해서 **한국교인들이 학교들을 인계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비기독교 신자들은 선교부가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해를 끼쳐왔다고 느낄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제를 완전히 비기독교적인 학교에 보낼 때 생기는 문제들을 깨달을 때는 [이미 사태는] 다른 국면에 처

117) “引繼할 財團은 現在도 念慮업다-敝新 欸스 校長談,” 『기독신보』1937년 6월 30일.

118) 欸스는 자신이 20여 명의 학생대표단을 이끌고 신사에 갔을 때 신사의 제관이 신사를 청결하게 하는 예식이외에는 종교적 요소가 없었다고 언더우드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홀드크로프트는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언더우드, 루이스(정신여학교), 欸스 등은 상황을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H. H. Underwood to Charles T. Leber, 1, 『신사참배 II』, 240.

119) 한국의 유력한 지도급 인사들이 학교를 인계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도 그에게 중요했다. 위의 H. H. Underwood to Charles T. Leber, 2. 그러나 일제 측의 통제 때문에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정확한 여론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다.

할 것입니다.(강조: 필자)¹²⁰⁾

언더우드는 서울에 줄곧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면서 한국인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므로 선교부의 한국교회에 대한 통계보다는 협조, 즉 교육기관의 현지화 정책을 옹호했다. 이는 다른 선교사들보다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선교부 연례회의가 종결되자 해외선교부에 다시 서신을 보내어 선교부의 학교폐쇄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다수와 대소수파의 비율이 60 대 40 정도인데도 다수파가 소수파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보았다. 그는 이 문제를 더 토론하기 위해 해외선교부에 방미(訪美)를 신청했다.¹²¹⁾

대구 계성학교 교장 해롤드 헨더슨(Harold H. Henderson, 玄居善)도 역시 학교가 폐교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강조했다. 그는 연례회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계성학교는 경북노회와 북장로교 선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이기에 쉽게 폐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¹²²⁾ 그는 재정적인 이유로 만약 선교부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면 그 시점을 1942년 정도로 미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에게는 선교부가 취할 가장 현명한 조치는 각 선교지부가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맡겨두는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한다면 한국교회가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헨더슨은 개인에게 학교를 인계한다면 그 학교는 기독교적 정신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흥미롭게도 신사참배 자체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¹²³⁾ 대구 신명여학교의 교장대리인 아치발드

120) 위의 H. H. Underwood to Charles T. Leber, 2.

121) H. H. Underwood to Charles T. Leber, 1937년 7월 8일. 『신사참배 II』, 244-245. 그는 해외선교부로부터 도미 허가를 받았던 1937년 7월 2일, 연회와 경신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자였던 삼촌 존 언더우드(John T. Underwood)의 부음(訃音)을 듣게 되었다.

122) “廢校는 안된다-헨 啓聖校長談,” 『기독신보』, 1937년 6월 30일. 경북노회와 공동경영이었다는 점때문에 이후 대구지역 학교들이 한국교회에 인계되어 대구지역에서는 선교부의 교육철수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23) 헨더슨의 편지는, 선교부 내부에서 한국인들에게 학교를 인계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점과, 2-3명의 선교사가, 만약 선교부 관할 하에 학교가 계속 경영되어진다면 북장로교 선교사를 사임하겠다고 주장한다는 등, 선교부 내부

플레처(Archibald G. Fletcher, 鰲離秋)도 선교부의 학교폐쇄 결정을 비난하면서 이 문제는 한국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해외선교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늦추어 줄 것을 요청했다.¹²⁴⁾

평북 선천의 신성학교 교장대리로 있던 헨리 램프(Henry W. Lampe, 南行理)는 일제의 ‘신도비종교론’ 해석을 신뢰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의 “양심적 판단”, 즉 신사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에 참여하되 마음으로 기독교적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북 지역의 선교사로서 드물게 종교적 면에서 신사참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의견은 독특했다. 그는 만약 학교가 폐쇄된다면 학생들이 정부학교에 다니게 되어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사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는 남장로교 측의 ‘폴턴 성명서’를 강력히 비판했다.¹²⁵⁾

대립되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선교부 소속의 솔타우, 홀드크로프트, H. H. 언더우드 등은 1937년 여름, 동년 9월에 열릴 해외선교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우선 다수파를 대변한 솔타우, 홀드크로프트는 시베리아를 횡단해 미국으로 가는 도중, 해외선교부 2차 위원단의 서신을 읽고 위원단 앞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들은 위원단 보고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교회가 참배반대와 학교폐쇄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두 위원이 주장한, 한국교회 중 다수가 학교폐쇄에 반대하

의 갈등양상을 전해준다. “Extract from Letter dated July 21, 1937 from Rev. Harold H. Henderson,” 『WCC 자료』, 394-395.

124) “Extract from Letter dated August 24, 1937 from Archibald G. Fletcher,” 『WCC 자료』, 393. 플레처는 1908년 내한 후 대구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신명여학교 교장대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125) Lampe to the Members of the Mission (날짜 미상), 『신사참배 II』, 277-279. 이 편지는 폴턴 성명서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1937년 선교부 연례회의 직전에 조선선교부 회원들에게 보내진 것이다. 램프는 1908년 내한 후 선천을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장리욱과 함께 재정확충을 통해 신성학교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신성학교는 1931년에 ‘지정학교’가 되었다. 장리욱, 『나의 회고록』, 149-150.

고 있다는 정보는 틀린 것으로 만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거의 모든 장로교 목사들은 학교폐쇄를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²⁶⁾ 이들은 2차 위원단이 주장한 제3안(학교 부지를 제외하고 교직원, 학생들만 한국인들에게 인계)과 제4안(3안에 더해 기부 받은 부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줌)을 각각 “학교의 운영 허가(School Permits)안”과 “학교운영 및 부지 허가(Permits plus Endowments)안”으로 재정리했다. 이들은 학교를 비기독교인에게 인계하는 안은 반대하며, 기독교인에게 인계하는 것도 선교부 측이 “타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인들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는 두 번째 안에 대해서도 인계안의 서명과정에 있었던 강압성과, 한인보의 도덕성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¹²⁷⁾

실행위원회 위원이었던 솔타우와 홀드크로프트는 학교의 완전 폐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그들은 네 가지의 이유를 들었다. 첫째, 대다수 선교사들이 남장로교 선교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 둘째, 남장로교 측의 조치를 볼 때, 위원단의 우려와 달리 해외선교부가 폐쇄 조치를 취하더라도 당국과 조선인들의 반발이 강하지 않다는 것, 셋째, “기독교적 지도력의 공백”을 우려하는 위원단과 달리, 성경학교 교육을 통해 “명확한 기독교적 확신을 가진 젊은 세대를 양산해서 미래의 지도력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 넷째, 학교 폐쇄가 “타인의 양심을 마음대로 지시하는(dictate)” 문제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을 지속하는 것은 선교부와 교회의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라는 점 등이었다.¹²⁸⁾

이들은 더 나아가 해외선교부가 평양의 학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

126)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찬성한 윤치호가 “늙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든지, “정부 당국의 관대함”은 틀린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인정하지만 기독교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국인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이 신사참배에 대해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olau & Holdcroft to Leber & Dodds, 1937년 7월 27일(RG 140-12-21), 3-7, 『신사참배 II』, 248-252.

127) Ibid., 16-17.

128) Ibid., 17-21.

한다면 대구(계명, 신명)와 서울(경신)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양의 결정은 “전 조선의 선례”이기에 만약 대구와 서울에서 평양에서와는 다른 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선교사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남장로교 측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이, 당국과 한국인들은 무엇이 “기독교인의 확신”이며, “기독교적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⁹⁾ 한국에 있던 실행위원회 위원장 로즈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학교폐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선교부를 재차 압박했다.¹³⁰⁾

한편 1937년도 선교사 연례회의가 끝난 직후인 7월 7일, 일본이 중국본토에 대해 전면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총독부 학무국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동년 7월 22일자로 선교사들의 자의적인 학교폐교를 막고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폐교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었다. 비록 실행위원회 측은 총독부가 이 법을 통해 선교사들의 학교폐쇄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지만¹³¹⁾ 학교에 대한 강화된 통제조치는 선교사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선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H. H. 언더우드, 홀드크로프트, 솔타우 등 한국주재 선교사들과 면담을 통해 입장을 확립하려고 했다. 해외선교부내에서 교육철수문제에 대한 조사를 위임받은 외사분과위원회(Foreign Committee)는 우선 언더우드를 1937년 8월 31일에 초청, 학교폐쇄 반대에 대한 그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모임에서 언더우드는 1937년의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서울과 대구 학교들의 폐쇄 문제에 대한 조선선교부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¹³²⁾ 그는 조선선교부 전체 회원 약 100명 중

129) 이들은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한국과 서신 교환에서 철저한 비밀을 요청했다. Ibid., 21-23.

130) Rhodes to Leber, 1937년 7월 27일 (RG 140-12-21), 『신사참배 II』, 269-270.

131) Rhodes to Leber, “Amendments to Private School Regulations,” 1937년 8월 16일, 『신사참배 II』, 271-272. 당시의 총독부 성명도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廢校申請하는 學校엔 當局은 認可方針,” 『동아일보』 1937년 9월 9일.

132) “Minutes of the Foreign Department,” 1937년 8월 31일, 2, 『WCC자료』, 402.

학교폐쇄를 반대하는 회원 35명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언더우드도 아울러 한국인 교역자 47명, 경신학교 졸업자 275명이 서명한 문서도 함께 제출했다.¹³³⁾ 그는 신사에 종교적 요소가 있지만, 일본정부가 ‘신도비종교론’을 주장하면서 참배자들이 직접 “신사는 애국행위임”을 표현할 “자유”를 허용한다는 점을 학교폐쇄 반대의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한국 내 학교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기독교계 학교의 폐쇄가 이루어진다면, 3~4천 명에 달하는 북장로교계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독교적 교육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¹³⁴⁾ 언더우드는 해외선교부가 평양의 학교들에 대해서 “조속히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늦출수록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¹³⁵⁾ 이는 평양선교지부의 입장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과 더불어 다른 지역, 특히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의 교육사업철수를 막아보려는 시도였다.

외사분과위원회는 2주 뒤인 9월 15일에 솔타우와 홀드크로프트를 불러 학교폐쇄에 대한 조선선교부측의 찬성 입장을 들었다. 홀드크로프트는 기존의 주장인 ‘신도종교론’을 피력했다. 솔타우는 많은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경찰의 탄압을 받아왔으므로 만약 해외선교부가 “타협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이는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영적 신경 (spiritual nerve)”을 끊어버리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¹³⁶⁾ 위원회 측은 이들에게 해외선교부가 학교폐쇄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어떠한 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솔타우는 “신속한 결정”만이 학교폐쇄를 주장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고, 홀드크로프트는 학교를 한국인들에게 인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한 후 후일 상황이 좋아진다면 다시 개교할 수 있다고 보았다.¹³⁷⁾

133) Ibid., 3.

134) Ibid., 4-5.

135) Ibid., 7.

136) “Minutes of the Foreign Department,” 1937년 9월 15일, 2, 『WCC자료』, 408.

137) Ibid., 5.

외사분과위원회는 언더우드를 다시 이 회의에 불러들였다. 언더우드는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선교사계 학교들이 최소한 1940년까지는 신입생을 수용할 것, 한국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학교를 운영토록 해서 “기독교적 교육”을 시킬 것, 변호사들을 통해 학교의 인계절차를 진행시킬 것, 일본기독교연맹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에 신사의 종교적 요소를 제거해 주도록 요청하도록 할 것 등을 위원회에 새로이 건의했다.¹³⁸⁾

외사분과위원회 위원장 로버트 맥그레고(Robert G. McGregor)는 일련의 대답을 통해 언더우드의 입장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는 만약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내 다수파의 의견을 취한다면 “목동이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 떠남으로써, 양떼와 같은 학생들을 홀로 두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후 해외선교부가 학교 양도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면 한국 내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해외선교부 측에 전달했다.¹³⁹⁾

부장교로 해외선교부 소속의 조선교육소위원회(Sub-Committee on Chosen Educational Situation)도 해외선교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했다. 소위원회는 1936년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교육철수안에 대해서 선교부가 합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역자들 중 상당수가 교육철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보았다. 소위원회는 해외선교부에 몇 가지 권고를 했는데, 이는 사실상 언더우드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우선,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는 일본의 기독교연맹 및 선교부와 힘을 합쳐 일본 당국과 접촉해서 “국가적 애국의식에서 종교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교육기관을 인계하도록 하며 신입생을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위원회는 비록 해외선교부가 평양지역 학교 경영을 한국인에게 인계하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의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했

138) Ibid., 6-7.

139) “Letter from Dr. Robert G. McGregor,” 1937년 9월 16일, 『WCC자료』, 400.

다.140) 이 시점에서 해외선교부내에서 입장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의사분과 토론회와 주요 결정

날 짜	참석자	주된 내용
1937년 8월 31일	Robert G. McGregor(위원장), Robert E. Speer, J. L. Dodds, Charles T. Leber etc. 조선: H. H. 언더우드	학교폐쇄 반대 입장 청문회
1937년 9월 15일	Robert G. McGregor(위원장), Robert E. Speer, J. L. Dodds , Charles T. Leber, J. Ross Stevenson etc. 조선: 솔타우, 홀드크로프트, H. H. 언더우드	솔타우, 홀드크로프트 입장 표 명 후 언더우드 참여 토론/ 학교폐쇄 찬성입장 청문회
1937년 9월 16일	위원장 맥그래거의 의견	언더우드의 입장에 공감
1937년 9월 20일	해외선교부의 결정	10월 4일에 종합토론회 개최키 로 함
1937년 10월 4일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 인사 들, 조선 측: H. H. 언더우드, 솔타우, 홀드크로프트	양쪽의 입장을 개진
1937년 12월 20일	해외선교부의 결정	최종결정을 미룸
1938년 1월 17일	외사위원회와 조선 선교사들 간의 대화: 조선 측: H. H. 언 더우드, 솔타우, 홀드크로프 트, 플레처	최종결정을 못함. 조선 선교부 에 당국에 일시(for the time being)협력 요구
1938년 3월 21일	해외선교부의 결정	경신학교 1939년 4월 1일부터 3년간 운영 결정, 조선선교부 에 1936년 결정의 타당성 재투 표 지시

출전: 『WCC자료』; 『신사참배 II』 등.

1937년 9월 20일, 의사분과위원회와 조선교육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140) 물론 단서는 기독교적 특성과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Proposed Minute: Submitted by Certain Members of the Sub-Committee on Chosen Educational Situation”(1937년 9월 중), 『WCC자료』, 386-389.

해외선교부는 동년 10월 4일에 다시 토론에 들어갔지만 동월 18일에 결정을 내리자고 정책결정을 미루었다.¹⁴¹⁾ 다만 평양 학교들이 신입생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학교 측의 2만 엔의 재정부족분에 대한 재정 지출을 승인했다.¹⁴²⁾ 이는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지역에서의 학교폐쇄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선교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언더우드 등 교육관련 선교사들과 일부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 아울러 언더우드 가족에게서 해외선교부에 온 서신들은 선교부에 대한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연희전문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¹⁴³⁾ 또 다른 이유로는 해외선교부가 전통적으로 선교 대상국에서의 선교사업과 국제정치와의 관련성을 예민하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만약 해외선교부가 한국 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부터 철수를 단행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외사분과위원회는 1937년 10월 4일 한국에서 온 3명의 선교사를 다시 불러서 교육철수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미국에 건너온 3명의 한국주재 선교사들이 동시에 참석했다는 것과 함께 당시까지 교육철수안과 관련된 거의 모든 논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회의를 통해 해외선교부 인사들 대부분은 조선선교부 ‘소수파’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 토론을 통해 교육기관철수 안을 두고 선교사들 간에 “심각한 감정적 대립”이 존재하며 일부 선교사들은 교육사업에 너무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전도사업”에 쓸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교육선교사와 ‘전도사업’ 선교사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¹⁴⁴⁾ 참석한 해외선교부 인사들 중 두 명(John A.

141) “Board Actions Chosen Educational Situation,” 1937년 9월 20일, 『WCC자료』, 385.

142) 송금 관련은 “Chosen Educational Situation”(대략 1937년 9월 29일), 『신사참배 II』, 275-276.

143)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17.

144) “Minutes of the Foreign Department,” 1937년 10월 4일, 1-2, 『WCC자료』, 415-416.

Mackay, J. Ross Stevenson)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Robert G. McGregor, Charles T. Leber, Charles R. Erdman, Kenneth M. Scott, Mrs. Fleming, Miss Sheppard)은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철수를 반대했다. 한편 교육사업 철수에 대한 찬성안은 일제가 국가를 “하나님의 영역”보다 높이는 것이 문제라는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했다.¹⁴⁵⁾

교육철수 반대 주장자들의 논리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을 방문했던 레버가 주장한 것으로, 1936년 9월의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안을 지지한 것은 명확한 사고 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홍분된 상황”에서 처리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학교존속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보았다.¹⁴⁶⁾ 두 번째 논리적 근거는, 비록 총독부가 “신도가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에게 신사의식에 관련된 “(선교사들의) 의사를 천명할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H. H. 언더우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언더우드는 선교사들이 신사에서 “영령 존재여부”를 논의한다면 해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일제 당국의 성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애국과 충성의 목적”을 위해 신사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¹⁴⁷⁾ 신성학교의 램프도 언더우드와 동일한 의견을 가졌는데 이는 교육선교사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거였다.¹⁴⁸⁾

해외선교부 위원 다수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기존의 해외선교부의 교육철수 정책을 뒤집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교육사업 철수 지

145) Ibid., 4-5 · 12 등에 있는 맥케이(Dr. Mackay)와 스티븐슨(Dr. Stevenson)의 발언 참조. 맥케이는 “God-man or Man-God”(즉 무엇이 우선이냐)이 문제이며 스티븐슨은 독일과 이태리처럼 국가를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문제라고 보았다.

146) Ibid., 3-4.

147) 언더우드는 이러한 총독부의 입장이 자신과 총영사 마쉬에게 전달되었다고 했다. 이에 반해 홀드크로프트와 솔타우는 ‘신사종교론’을 들어 언더우드 2세의 의견을 강력히 비판했다. 홀드크로프트는 “당국이 신사에 영령들이 없다고 주장할 때만” 신사참배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Ibid., 5-8.

148) 램프는 “신사참배는 애국적 행위임을 천명할 기회”를 선교사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정책을 따라야 할 근거로 보았다. “On the Shrine Question,” by Henry W. Lampe, 1940년 8월 5일(Received), 『신사참배 II』, 423-425.

지자인 스티븐슨은 학교 철수 안에 반대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홀드크로프트도 이에 동조해서 새 정책은 일본기독교연맹이 취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솔타우도, 새로운 정책은 조선선교부와 교회에 “끔찍한 충격(terrible shock)”이며 이는 한국 내에서 해외선교부의 결정사항들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discredit)”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¹⁴⁹⁾ 이러한 해외선교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외선교부의 스콧은, 전년도 해외선교부의 결정사항은 평양지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모든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¹⁵⁰⁾ 물론 이는 새로운 해석이었다. 아무튼 1937년 10월 4일의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 의견은, 평양의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학교폐쇄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의사분과위원회의 몇 차례에 걸친 토론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부는 교육철수에 대한 정책을 여전히 확고하게 수립하지 못했다.¹⁵¹⁾

한편 해외선교부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 조선총독부는 평양지역 학교들에 대한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 안을 허가했다. 총독부는 평양 선교부가 2년 동안 두 개의 건물 중 한 개 반을 대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폐쇄에 동의했다. 이는 평안남도 당국이 전문학교와 중학교를 새로 인가한다면 새로운 교사(校舍)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위원장 로즈에게 이 문제를 일임했으므로 실행위원회는 평양지역의 한국인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평남 당국의 안을 수용했다.¹⁵²⁾

149) 앞의 “Minutes of the Foreign Department,” 1937년 10월 4일, 5·8.

150) 물론 언더우드는 해외선교부의 반복된 결정이 한국 선교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Ibid., 5·10-11.

151) 해외선교부의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여주는 결정으로는 【표 2-2】에 나와 있는 1937년 12월 20일자 결정, 1938년 1월 17일의 것을 들 수 있다. 이 결정서들의 자세한 내용은 “Board Actions Regarding Withdrawal from General Education in Chosen,” 5-6, 『신사참배 II』, 521-522 참조. 이 문서는 해외선교부가 1936년 9월 21일부터 내린 학교 관련 결정서들을 1940년 이후 편집한 것이다(이하는 “Board Actions 모음”으로 표기).

152) 해외선교부는 건물대여 조건의 폐쇄 안에 대해서 실행위원회로부터 1938년 2월 1일

해외선교부의 조치에 따라 결국 송실 관련 학교들은 폐교하게 되었다. 그러자 광산가 이종만이 폐교 위기에 몰린 송실전문학교를 인수할 것을 총독부 학무국에 요청했다. 이종만은 1938년 6월 1일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어서 7월 1일자로 송실전문학교를 인수, 대동공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¹⁵³⁾ 한편 송실학교는 평양 제3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송의여학교는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의 일부로 흡수됨으로 총독부의 교육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평양의 유서 깊은 삼숭(三崇)학교는 1938년 3월에 기독교계 학교로서의 역사를 매듭지었다.¹⁵⁴⁾

한국인이 학교를 인수하게 하거나 혹은 새로 학교인가를 내주거나 기존학교에 학생들을 흡수한 것은 총독부로서 한국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된다. 이는 당국의 통제권 내로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일부 수용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1937년 7월부터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한 일본으로서 후방인 서북지역의 한국인들을 포섭해서 지역을 안정화하는 것이 제국 경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38년 2월 총독부는 「육군특별지원법령」(칙령 제95호)을 반포해서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자원’해서 입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3차 교육령(동년 3월)을 발표해서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학교와 일본인학교의 명칭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하면서 기존의 일본인과 한국인들에 대한 이원적인 교육을 하나로 통합했다.¹⁵⁵⁾ 두 가지의 정책은 사실

자료 전보를 받았고 2월 21일에서야 결정을 내렸다. 위의 “Board Actions Regarding Withdrawal from General Education in Chosen,” 7-8; “平壤崇專의 校舍 大同工專에 貸與,” 『동아일보』, 1938년 2월 24일. 학교부지 대여문제로 선교부와 총독부, 도당국과의 협의와 타협에 대해서는 『송실대학교 100년사』, 517-520 참조.

153) “大同工業五月開校 今年鑛山科만 設置”, “當分間 鑛山科만,” 『동아일보』, 1938년 6월 1일, 3일. 이종만은 이종만과 접촉을 성사시켰다. Soltau to Leber, 1938년 1월 6일 (RG 140-12-27), 『신사참배 II』, 280-281.

154) 송실학교는 평양 제3고등보통학교가 되었다가 1938년 제3차 교육령 반포 후 학제 개편에 따라 평양 제3중학교로 개명되었다. “崇中後身 平壤第三中學 設立認可,” 『동아일보』, 1938년 4월 5일. 송의여학교는 도의회에서 제2여자고보로 만드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崇義女學校를 第二女高普로 하라’ 貧困兒童의 授業料 免除도 強調 平南道會 第五日,” 『동아일보』, 1938년 3월 18일; 『崇義 100年史』, 225.

상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1938년 총독부가 추진한 핵심적인 정책들이었다.¹⁵⁶⁾ 일본은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인들의 교육 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서야 일제의 ‘동화정책’은 겨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⁵⁷⁾ 한편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총독부가 의도했던, 평양에서의 한국인들과 선교사들 간의 분리와 한국인들의 체제 내 흡수정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¹⁵⁸⁾

2) 갈등의 전개와 철수과정

기독교기관의 ‘조선인화’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 간의 교육철수 정책과 관련된 갈등은 1937년 여름에 발발한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정책변화,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의 ‘변질’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총독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실력양

155) 「육군특별지원법령」(칙령 제95호)과 「제3차 교육령」(3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스즈키 케이후[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研究』(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164-174 참고.

156) 미나미 지로 총독은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법령」이 공포된 날 도지사들을 소집해서 훈시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미제국의 식민통치와 달리 일본의 통치는 내선일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의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의 중요시책을 달성하고 싶다. 그 하나는 조선인지원병제도의 실시이고 그 두 번째는 교학쇄신(刷新) 및 확충이다”고 구체적 정책을 언급했다. 조선총독부, 『施政三十年史』(朝鮮印刷株式會社, 1940), 803에서 재인용. 미야다 세츠코는 ‘지원병제도,’ 제 3차 교육령, 창씨개명(1940년 2월)이 중일전쟁 개전 직전부터 거의 동시에 한국인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입안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야다 세츠코[宮田節子],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일조각, 1994), 103-124.

157) 전시체제 말기에도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권리의 부여에 인색했다든가 행정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권태억, “동화정책론,” 『역사학보』172집(2001년 12월), 364.

158) 해외선교부의 조치를 비난한 홀드크로프트는 일본의 췌기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았다. Holdcroft to Hooper, 1939년 10월 13일, 『신사참배 II』, 410-413.

성을 위한 결사단체이자 민족주의자들의 집합소인 동우회(同友會)와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회원들을 체포함으로써 중일전쟁의 후방인 한국에서 사상통제와 안전을 도모했다.¹⁵⁹⁾ 동우회는 안창호가 미국에서 설립한 흥사단의 국내조직으로 1920년대 초에 선천·평양·경성에 지부를 두었다. 주요 간부진은 정인과·조병옥·정두현·김동원 등 대부분이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이었다.¹⁶⁰⁾

동우회 간부 체포는 선교사들이 관련되었던 기독교청년면려회(勉勵會)¹⁶¹⁾에 대한 탄압에서 시작되었다. 면려회는 1937년 6월 12~13일 이틀간 금주운동의 시행을 계획하고 전국 35개 지부에 운동계획을 지시했었다. 당국은 지시문 가운데 “멸망에 빠진 민족을 구출할 기독교인의 역할”이라는 구절을 문제 삼아서 이양섭·이용설·정인과·이대위·주요한·유형기 등 주로 서북 지역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 당국은 이들이 동우회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1937년부터 38년 3월 22일까지 약 181명(기소 49명, 기소 유예 57명, 기소 중지 75명)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송치했다.¹⁶²⁾ 이 사건은 식민지시기 일제의 민족주의자 탄압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특히 관련자에 대한 고문이나 경찰의 조서위조 등의 형태는 이

159) 이 두 단체의 구성원들과 그 활동에 대해서는 김상태, “1920-30년대 同友會·興業俱樂部 研究,” 『韓國史論』28집(서울대 국사학과, 1992) 참조.

160) 1929년 11월 흥사단과 수양동우회의 운동이 통일되어 동우회가 되었다. 수양동우회의 간부진은 김상태, 같은 논문, 217; 조선총독부, 『朝鮮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警務局, 1938)(이하 『治安狀況』), 362-404(김승태, 『종교정책』, 219-247에 재수록, 이하에 중복수록된 것은 김승태 책에서 인용). 수양동우회에 대해서는 김승태, 같은 책, 219-227.

161) 영문명은 The World Christian Endeavor Union으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보스턴(Boston)에 본부를 두었으며 1921년에 한국에 들어와 1924년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며 기독교교육과 청년 훈련을 위한 초교파적, 다인종, 국제적 기독교 단체를 표방했다. 1938년 당시 한국 교회와 선교사 모임으로 전국에 2,000개 정도 있었다. 한국에서의 현황은 Stanley B. Vandersall(Secretary-Treasurer) to Department of State, 1938년 11월 19일(395.1163/78); Gaylord Marsh to Joseph C. Grew, 1938년 11월 30일, “Suspension of Work by National Union of Christian Endeavor in Korea”(395.1163/81), 『신사문제 I』, 456·466.

162) 조선총독부, 『치안상황』(김승태, 『종교정책』, 225-226).

전의 사건, 예를 들면 ‘105인 사건’(1911-13) 당시와 극히 유사했다.¹⁶³⁾ 총독부가 이 사건을 일으킨 의도는 당국의 기록에 선명히 나타나있다.

본 사건 관련자는 변호사·의사·교육자·목사 및 자산가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다. 본 사건에 관련된 목사는 조선 전체에 20여만 명의 신도를 확보, 기독교내에서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북장로파**였다. 특히 **평양과 선천 지방의 경우 동우회원이 기독교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관계**로 본 사건의 검거 선풍은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본 검거가 지나사면 발발 직전 착수되어 비상시국 하에서 취조, 송치됨에 따라 총후활동에 정진하고 있던 조선인 민중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강조: 필자)¹⁶⁴⁾

즉 총독부 측은 평양, 선천 등 기독교 교세가 강한 서북 지역에 대한 통제가 중일전쟁 직후 ‘후방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의도는 성공해서 총독부 측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특히 민족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른바 기회주의 분자들에게 전향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 등은 예상 밖의 성과로 판단”¹⁶⁵⁾했다. 이 사건 후 많은 이들이 ‘사상전향’을 했는데 기소유예자인 정영도가 미국의 지인들에게 일본의 전쟁 명분을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한 것이라든가, 예심에서 보석으로 출소한 이광수 등 28명이 서울에서 사상 전향회의를 가진 후 조선신궁을 참배하고 동우회 입회금 300원과 당일 출석자가 낸 2,888원을 당국에 국방헌금으로 기부했던 것은 그 예들이다. 총독부의 기록도 이를 “사

163) 당시 수양동우회 회원으로 신성학교의 교장으로 있었던 장리욱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끌려가서 1년 이상 경찰 유치장에서 고문을 받고 시간을 보냈다.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도산 안창호는 1938년 3월에 사망했다. 장리욱, 『나의 회고록』, 178-192. 장리욱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안창호의 측근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해방 후 서울대 제3대 총장, 교육사절단, 홍사단 이사장, 주미대사 등을 역임했다. 해방 후 그의 활동은 서북지역 엘리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 서울대 총장에서 면직되었고 4·19직후 장면 정권하에서 주미대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 5·16때 사직했다.

164) 조선총독부, 『治安狀況』(김승태, 『종교정책』, 226).

165) 김승태, 같은 책, 226.

상선도 상 상당한 성과”로 인정했다.¹⁶⁶⁾ 그러나 경성고등법원 상고심이 1941년 11월, 동우회 사건 관련자 4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¹⁶⁷⁾ 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보여준 셈이었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당국은 통제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다. 초대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이승만은 서북지역 인사들이 주도한 홍사단, 국민회 계열과 대립하면서 1921년 8월 미국에서 동지회(同志會)를 결성했고, 그의 노선에 공감하는 기호지방의 인사들이 국내에서 1925년 3월 23일 홍업구락부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이미 이승만이 구한말 독립협회 활동 당시 알고 지냈던 인사들, 즉 윤치호·이상재·신홍우·유억겸·구자옥·안재홍 등 기호지방의 감리교, YMCA계 인물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배재, 연희, YMCA 등에서 교육과 사회사업 활동에 주로 종사해왔다.¹⁶⁸⁾ 홍업구락부 회원들이 좌우연합운동 단체였던 신간회(1927-1931)에서 이상재(회장)를 필두로 간부진 10명 중 7명에 해당될 만큼 이 단체는 기호지방의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에 깊이 개입했다.¹⁶⁹⁾

‘홍업구락부 사건’은 경찰이 1938년 2월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들이 관련된 ‘경제연구회 사건’을 조사하던 중, 동교 부교장인 유억겸의 자택에서 이승만과 연락한 문서가 압수됨으로 시작되었다. 또 당국의 기록에 따르면 1938년에 미국에서 귀국한 윤치영을 취조했을 때 미주 동지회의 연장단체로 국내에 비밀결사체인 홍업구락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YMCA 총무였던 구자옥이 걸려들었고 그에게서 홍업구락부의 일지가 발견되었다. 이후 홍업구락부는 해체되었고 운동자금으로 축적한 2,400원은 국방비 현금조로 서대문 경찰서에 넘어갔다.¹⁷⁰⁾ 아래에서 보듯

166) 김승태, 같은 책, 225-226.

167) 김상태, “1920-30년대 동우회·홍업구락부 연구,” 258.

168) 홍업구락부의 자세한 간부진의 면모는 같은 논문, 221-222과 조선총독부, 『治安狀況』(김승태, 같은 책, 231-232).

169) 김승태, 같은 책, 234.

170) 김승태, 같은 책, 235-236.

이 이 사건의 해결방법도 동우회 사건과 대동소이했다.

사건 관련자 가운데 교직에 있던 신흥우 이하 8명은 교직 사퇴를 통해 자신의 죄과를 사죄하였다. 또 **교계와 관련된 윤치호 이하 5명으로부터는 기독교를 통해 내선일체의 실적을 거두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한편 유억겸은 자진해서 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렇듯 사건 관련자들이 현저히 개선의 정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 다수의 지식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보다는 **후방활동에 자발적으로 협력시키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을 충량한 제국 국민으로 갱생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강조: 필자)¹⁷¹⁾

일제 당국은 사건관련자들을 전시체제하에서 “자발적으로 협력시키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결국 신흥우 외 관련 54명의 인사들은 1938년 9월 3일에 석방되었고 이들은 매월 정례회합을 열고, 때로는 ‘애국좌담회’를 개최한 후 국방헌금을 총독부에 보내기도 했다.¹⁷²⁾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두 단체가 미주의 한인운동과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일제가 이들 단체에 대해 단속에 나서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¹⁷³⁾ 결국 동우회와 흥업구락부 사건을 통해 일제는 한국인 엘리트, 특히 기독교인들을 미주의 한인활동과 관계를 끊고 당국의 정책에 순응하게끔 만들었다. 중일전쟁 후 해방 때까지 한국인 엘리트들의 이러한 활동은 해방 후 ‘친일논란’과 관련되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었다.¹⁷⁴⁾

한국인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은 일제 측의 반서구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동우회 사건이 종결되어 갈 무렵에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국제기독교면려회의 보스턴 본부는 경성으로부터 경성지부가 해산되고 활동이 정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면려회 본부는 미국무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국무부

171) 김승태, 같은 책, 236.

172) 위와 같음.

173) 김상태, “1920-30년대 동우회·흥업구락부 연구,” 253.

174) 김상태, “일제하 개신교 지식인의 미국 인식,”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2005), 109-113.

는 동경대사관에 이 문제를 조회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다.¹⁷⁵⁾ 그 소식에 따르면, 조선면러회 총무 윌래스 앤더슨(Wallace J. Anderson)이 서울 총영사에게 말하기를, 이미 1년 전에 경찰이 자신을 찾아와서 동회를 해산하고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총독부의 간섭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면러회가 스스로 해산선언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1년 후인 1938년 5월 앤더슨에게 당국이 면러회를 해산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통고했다. 그리하여 면러회는 당국과 마찰을 피하고자 “조용히 활동을 중지”하고 훗날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지회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¹⁷⁶⁾

면러회에 대한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YMCA, YWCA, 국제 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등 다른 국제적 기독교 단체들을 “일본화시키는(nationalize)” 움직임 중 하나였다. 물론 총영사의 보고에 나타난 대로 총독부의 일부 기독교인 관리들도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놀라기도” 했지만 대체를 바꿀 수는 없었다.¹⁷⁷⁾ 미 국무부는 미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세계면러회 본부에 이 사건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고 면러회도 이에 동의했다.¹⁷⁸⁾ 이 사건 후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계가 영미 측의 관계단체와 절연하기 시작했다. 일본경찰이 기독교 단체들로 하여금 ‘자발적’ 형태로 움직이도록 한 점과 해외로 보내는 서신을 검열한 것 등은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났다.

민족주의 단체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교회에 대한 당국의 통제도 이 시기 본격화되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신사참배의 강요와 종교단체법의

175) 위의 “Vandersall to Department of State”(395.1163/78). 국무부의 동경대사관에 대한 지시는 Department of State to Embassy in Tokyo, 1938년 11월 26일(395.1163/78), 『신사참배 I』, 457.

176) 총영사관 측은 일본 경찰이 앤더슨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을 우려했다.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1938년 12월 5일(Telegram)(395.1163/79), O. Gaylord Marsh to Joseph C. Grew, 1938년 11월 30일, “Suspension of Work by National Union of Christian Endeavor in Korea”(395.1163/81), 『신사참배 I』, 459-461, 466-468.

177) 위의 Gaylord Marsh to Joseph C. Grew (395.1163/81).

178) Maxwell M. Hamilton (Acting Secretary) to Stanley B. Vandersall, 1938년 12월 7일(395.1163/73), Vandersall to Hamilton, 1938년 12월 28일(395.1163/80) 『신사참배 I』, 462-464.

개정을 통해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두 개의 축으로 나타났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제는 1938년 9월 9일에서 16일까지 평양부 서문밖에 배당에서 열린 제27회 조선장로교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했다. 총회에는 27개 노회(조선 내 23, 만주 4)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 선교사 등 도합 206명의 인사들이 모였다.¹⁷⁹⁾ 이 집회의 진행은 1905년 11월 17일 새벽에 일제가 구한국 정부에 대해 ‘보호조약’을 강제한 상황을 연상시킨다. 우선 경찰이 총회 참석 대표인 총대들을 미리 불러다가 신사참배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총회 참석자들인 선교사 총대 30명도 그런 지시를 받았다. 총회 당일, 집회 장소 인편에 경찰들이 포진해서 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총회 두 번째 날에 평양노회 회장 박응룡이 평양, 평서, 안주의 3개 노회 32명 출석자를 대표하여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와 위반되지 않는 애국행위라고 강변했다. 결국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이 통과되었는데¹⁸⁰⁾ 윌리엄 블레이어(William N. Blair, 邦緯良), 브루스 헌트(Bruce F. Hunt, 韓富善) 등과 선교사 총대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¹⁸¹⁾ 신사참배를 가결한 후 총회 임원과 노회 대표 23명은 평양신사를 참배했다.¹⁸²⁾ 이로써 교회는 본격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본 당국은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각 교단과 초교파 연합체 단체들에 대해 영미본부와 절연할 것을 강요함과 아울러 한국기독교계를

179) 조선총독부, 『治安狀況』(김승태, 『종교정책』, 240).

180) 같은 책, 240.

181) 당시 신사참배 가결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위의 자료와 함께 William N. Blair, *Gold in Kore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48)[김승태 역, 『정금같은 신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154-159를 참조. 일본 자료는 감독 경찰관이 총대들을 간곡히 설득하여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설득과 타협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 『治安狀況』(김승태, 『종교정책』, 240).

182) H. H. 언더우드가 총회 후 “본인은 미리부터 이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총회에서 평안남도 경찰부장에게 축하의 말을 했다고 일본 자료는 주장하지만 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선총독부, 『治安狀況』(김승태, 『종교정책』, 241).

일본 교단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움직였다. 1931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 교역자들은 매년 2회씩 간담회를 개최해왔는데 1938년에는 이를 확대해서 전국적 조직으로 만들었다. 1938년 5월 8일 경성 부민관(현 서울특별시 시의회 청사)에서 발회식이 개최되어 기독교신자 약 1,800명이 참석했고 지회의 발회식이 7월 6~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¹⁸³⁾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동년 8월 19일, 감리교 지도자 윤치호는 조선 YMCA를 일본 YMCA와 통합할 것을 선언했다. 얼마 후 YWCA도 일본측과 통합했다. 감리교측도 1938년 10월 5일 개최된 조선기독교감리회 제3차 총회에서 일본 감리회와 통합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 총회에서 애국일 실시를 계획해서 10월 5일 당일에 총회 참석 대표 62명과 일반 신도 1천 명, 그리고 감리교 운영 학교 학생 4,154명이 배재중학교 교정에 모여 국가봉창과 황거요배, 황국신민서사(誓詞)의 제창, 황군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위한 기도 등의 행사를 가졌다.¹⁸⁴⁾

장로교측도 동년 10월 17일, 시국대응 기독교 장로 신도대회를 개최했는데 교역자 및 학생 2,970명이 참석했다.¹⁸⁵⁾ 장로교는 각 개별 교회, 노회, 총회라는 중층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감리교처럼 상층으로부터 일관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었다. 그리하여 감리교보다 약간 늦었지만 1940년 9월 제29회 장로교 총회는 헌법개정과 중앙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하면서 ‘혁신요강’을 발표했다. 이 요강은 친일화한 장로교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183) 개회식 전에 참석자들은 남산의 조선신궁에 참배했다. 같은 책, 243-244.

184) 같은 책, 236-237. 윤치호는 일제의 이러한 압력을 수용하면서도 YMCA합동이 결정된 다음날, 자신의 일기에서 당국의 정책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지난 70년 동안 조선이, 특히 정치적으로 지옥보다 나을게 없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조선의 마지막 통치자 아래에서 특히, 마지막 30여년에 걸친 황제의 부패한 악정 아래에서 공공생활에 편안함을 느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이제 우리의 새 통치자들은 옛 조선 황제의 부패한 관료들이 써먹던 섬뜩한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고 있다.”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1938년 8월 20일, 410. 윤치호는 1938년부터 중추원에 들어갔다.

185) 김승태, 같은 책, 247.

1. 우리는 과거의 구미 의존주의로부터 벗어나 순정 일본기독교의 확립을 기한다.
2. 우리는 외국 선교사가 경영하는 교육, 성경, 기타 모든 기관을 점차 접수하고 이의 재정적 자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의 후퇴를 기한다.
3. 우리는 과거 민주주의적 교단의 헌장·의식·포교 기타 모든 기구의 일대 혁신을 기한다.¹⁸⁶⁾

이 시기부터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관들의 접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일본내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확립한 것이 ‘종교단체법’이었다. 이 법안은 1939년에 제정되어 40년에 개정되었다.¹⁸⁷⁾ 종교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이 법의 핵심 조항은 종교단체장에 대한 임명과 종교단체의 해산을 규정한 부분이다. 즉 제4조의 “교과와 종파에는 관장을, 교단에는 교단 통리자를 두어야 한다. 관장 또는 교단 통리자는 교과·종파 또는 교단을 통리하며 이를 대표한다...관장, 교단 통리자 또는 그 대무자가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을 것을 요한다”와 교단의 정비와 해산에 관련된 5조 중 “교과·종파, 또는 교단은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병합 혹은 해산할 수 있다. 교과·종파, 또는 교단은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된다”는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종교단체법은 일본신도를 정점으로 기독교, 불교 등 각종 종교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주목적으로 했다.¹⁸⁸⁾

일본 당국의 종교통제와 신도의 사실상 국교화는 당시 아돌프 히틀러

186) 『思想彙報』 제25호(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40년 12월(김승태, 같은 책, 360).

187) 종교단체법은 1939년 4월 8일 법률 제77호로 제정되었고 1940년 3월 29일 법률 제25호로 개정되었다. 원문은 김승태, 같은 책, 307-314. 물론 이 법은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사실상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188) 종교단체법은 1945년 10월 4일 일본주재 연합국 사령부의 “정치·신교 및 민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철폐”지령에 따라 치안유지법과 함께 철폐되었다.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양현혜·이규태 역,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소화, 2002), 43.

(Adolf Hitler) 치하의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다. ‘국가종교’를 통한 사회통제라는 점에서 두 국가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즉 일본의 경우는 신도가 모든 종교를 자신의 영역 안에 흡수해서 국가종교로서 기능한 것에 반해, 독일의 경우는 기독교가 국가종교적 성격을 가지면서 사실상 게르만 민족의 고대신화를 통해 독일의 독자성과 우수성이 강조되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 탄생한 독일의 전국적인 기독교 교단이었던 독일제국교회(Protestant Reich Church)는 나치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었다. 제국교회의 성립에는 외부 강압보다는 기독교 내적인 동기, 즉 민족주의적 감성과 맞물려 있었다. 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진 주장 중 흥미로운 점은 신이 민족을 통해(이 경우는 게르만 민족)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은 반 유대인 정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¹⁸⁹⁾ 물론 이러한 기독교 측의 히틀러에 대한 협력에 대해 독일 내에서 소수의 저항세력이 있었다.¹⁹⁰⁾

한편 종교단체법의 제·개정을 배경으로 하면서 기독교계는 반영미, 반선교사, 반독립 교단이라는 체제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감리교는 교단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했는데 이에선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의 집중현상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구한말부터 허버트 웰치(Herbert Welch) 등의 친일적인 감독의 부임으로 교단자체의 친일성이 농후했는데 그 정점은 1940년 감독인 정춘수의 성명이었다.¹⁹¹⁾ 그는 동아시아

189) 비록 히틀러가 독일제국교회(Protestant Reich Church)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나치당의 주장과 독일제국교회의 내적 논리는 유사하다. Doris L. Bergen, *Twisted Cross: The German Christian Movement in the Third Reich*(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31-38.

190) 특히 칼 바르트(Karl Barth)와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 등을 사상적인 지주로 했던 고백교회(Confessing Church)는 대표적인 예이다. 고백교회는 교회의 전통적인 신학적 사상을 ‘고백’한다는 의미로 독일제국교회의 인종주의적 신학에 반대했다. 본 회퍼는 히틀러 암살음모에 가담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종전 바로 직전인 1945년 4월 9일에 히틀러의 명령으로 처형되었다. Ibid., 12-14.

191) 친일논란에 따른 압박으로 정춘수는 해방 후 가톨릭으로 개종 후 한국전쟁 전 북한으로 사라졌다. 김삼웅 편저, 『친일파 100인, 100문: 친일의 궤변, 매국의 논리』(돌베개, 1995) 해당 인물 참조. 한국기독교 지도자들의 해방 후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의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일본과 조선의 단일화[內鮮一體]”가 교단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국체(國體) 및 군사 교육이 신학교와 고등교육, 초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함과 아울러 신학교육에서도 서구문화에 영향을 준 구약의 가르침을 제외한다고 선언했다. 또 외국 선교 기관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독립”을 주장했다.¹⁹²⁾ 한편 장로교단도 전시체제 확립에 따라 반선교사, 교단의 중앙통합화, 일본 교단과의 교류 확대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양 교단은 반공(당시 용어로 防共)을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활용했다.¹⁹³⁾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신학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까지 한국의 신학사상을 ‘결정’해 온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1938년 말 폐교되자 선교사들로부터 보다 독립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조선인 목회자들은 서울에 조선신학원을 설립했다.¹⁹⁴⁾ 이 학교의 설립자 겸 원장은 김대현, 이사장은 함태영, 교수는 윤인구·김재준, 강사로는 전필순·이정로·현제명(음악)·김창제·갈홍기 등이었다. 송창근·한경직 등도 조선신학원 건립을 위해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¹⁹⁵⁾ 이들은 서북지역의 기독교

는 Donald N. Clark, “History and Religion in Modern Korea: The Case of Protestant Christianity,” *Religion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97), 173-175.

192) “Statement made by Bishop Chung Choon Soo,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Keijo, Chosen, October, 1940, and adopted by the General Board of the KOREAN-METHODIST CHURCH.” 『신사참배 II』, 541-543. 감리교 집행부는 가미다나를 교회에 안치시켜서 신사참배를 했고 세례와 아울러 미소기[禱]라는 정화의식을 집행하기도 했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74.

193) 장로교단의 문제는 “Outline for Guidance of the Presbyterian Church”(『매일신보』 1940년 11월 10일자 비공식 번역), 『신사참배 II』, 544-545 참조.

194) 평양에서 1940년 4월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평양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고 해방 후까지 명맥을 유지했지만 북한의 기독교 정책에 따라 폐쇄되었다. 조선신학원은 총독부가 아닌 경기도 학무국의 인가를 받았기에 “신학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예수교 장로회 총회, 1956), 193-196; 長空 自敘傳 出版委員會, 『凡庸記-長空 金在俊 自敘傳』(도서출판 풀빛, 1983), 133-139.

195) 송창근은 홍사단 사건으로 보석 중이었고, 한경직도 ‘사상불온’이라는 이유로 일제 측에 의해 신의주 제이교회의 목회에서 손을 떼었다. 長空 自敘傳 出版委員會, 같은 책, 130, 141-144.

지도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둔 인사들로 구 평양신학교의 미국유학과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1930년대 평양신학교 측의 보수주의적 성경 해석에 반기를 든 인물들이었다.¹⁹⁶⁾ 특히 송창근과 김재준은 같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지역인 함경북도 출신으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과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다.¹⁹⁷⁾ 조선신학원 학장으로 취임한 김재준은 신학교 설립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조선신학교 설립 운동이 태동할 무렵 한국 교회 여론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말하자면 선교사파와 조선교회파랄까. 전자는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학교를 폐문하고 돌아갔으니 우리도 그 뒤를 따르자는 주장이었다. 평양 신학교 재개 또는 서울에서의 새 신학교 설립 등등은 모두 선교사에 대한 배신행위요 우상숭배에 굴종하는 배교행위라는 것이었다.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가 그 선봉이었다고 들었다. 조선교회파란 것은 선교사 시대는 지났고 잘 되든 못 되든 조선 교회는 조선 사람 손으로 운영 추진 건설해야 한다는 분들이다. 물론 후자가 절대 다수였다.¹⁹⁸⁾

196) 송창근, 한경직, 김재준은 1930년대 중반 『아빙돈 단권성경주석』 사건으로 평양노회의 심사를 받기도 했다. 같은 책, 108-109.

197) Donald N. Clark, "History and Religion in Modern Korea," 179-182. 구한말, 일제시기 캐나다 선교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승태, "한말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 연구, 1898-1910,"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도널드 클락, "식민지 시대 한국의 캐나다 선교사와 일본인," 『기독교와 한국 역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클락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특별히 진보적 신학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이 한국인 신학자, 김재준, 문익환 등의 '진보주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오히려 클락은 이들의 행동주의를 "객관적 정치적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198) 長空 自敘傳 出版委員會, 같은 책, 134. 김양선은 김재준이 신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신학원이 설립된] 이날부터 참된 意味의 朝鮮教會가 始作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只 今까지에 다른 機關은 모두 朝鮮사람에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神學校만은 기어코 宣教師들이 經營하려 하였던 것이다...그러므로 서울에 朝鮮사람으로서의 朝鮮神學校가 設立되고 宣教師가 一齊히 歸國한다는 것은 비록 戰爭에 依한 不可避의 事態라 할지라도 別써 宣教師執權時代는 지났다는 것을 意味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195. 김양선은 김재준의 신학을 반선교사주의와 자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고 정리했지만 김재준은 신학교 내 학문의 자유를 중시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는 당시 신학교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지역이 서북지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한 총회 분립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다. 같은 책, 137-139.

물론 폐교 전의 평양신학교에 조선인 교수로 채필근·박형룡·남궁혁 등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선교사들이 신학교육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이었다. 그러나 이들 조선인 교수들의 입장이 선교사들의 것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재준의 언급은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신학교를 조선인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을 대변한다. 해방 후 조선신학교는 평양신학교 측의 보수적인 신학자들과 다시 신학적으로 대립했다.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조선인들 내에서 신학적·지역적 차이가 드러나면서 전시체제기에 한국인들이 교회와 신학교 운영을 주도하게 되었다.

서울지부의 학교들¹⁹⁹⁾

한편 평양의 기독교 학교들과는 달리 서울의 학교들에서 선교사가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 선교지부 내 교육선교사들은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H. H. 언더우드와 쿤스가 관여한 경신학교는 한국사회 전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후 복장로교 교육철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37년 여름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서울과 대구의 학교들을 폐쇄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후, 서울 선교지부는 경신학교의 운영문제로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측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서울 선교지부 교육선교사들과 경신학교 동창회, 지역 유지 등은 학교를 인계받기 위해 조직적인 시도를 했지만 실행위원회 측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²⁰⁰⁾

199) 한국인들의 학교인수 노력과 파장에 대해서는 박혜진, “서울지역 미북장로회 선교부의 교육사업 철수와 학교 인계 연구: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2호(2010년 3월) 참조할 것.

200) 동문회 측과 조선인 인수자 측은 학교인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문제로 선교부 실행위원회가 몇 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다. 『동아일보』의 다음 기사들 참조. “母校後繼問題로 敝新同門會” 1937년 7월 24일; “‘母校의 永續을 希望’ 長老會 宣敎本部에 請願하기로” 1937년 7월 25일; “最後 請願마저 否決 安岳金氏門中の 熱誠마저 歸虛,” 1937

경신학교 이사진은 해외선교부 측에, 1939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학교시설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신학교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경성노회와 68명의 미주 거주 기독교 조선 유학생들도 동참할 정도로 학교폐쇄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대여론은 높았다.²⁰¹⁾ 결국 학교인수를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강한 압박으로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측은 타협안으로, 1938년 봄 학기에 경신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외선교부에 학교인수안을 제출했다.²⁰²⁾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학교 이사진은 실행위원회와 상의없이, 1938년 1월 11일에 ‘설립자’에 원래 있던 언더우드에 더해 한명의 한국인과 선교사를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에드워드 밀러(Edward H. Miller)와 당시 안악지방 김씨 문중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최태영(1900-2005)²⁰³⁾이었다. 실행위원회 위원장 로즈는, 선교지부의 이러한 정책은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서울 선교지부는 실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²⁰⁴⁾ 경기도 학무국은 1938년 2월 9일자로 경신학교의 새로운 ‘설립자’들의 설정을 인가했다.²⁰⁵⁾ 이는 총독부가 언더우드, 쿤스 등의 학교 지속안 내지 한국인 인수안을 지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서울 선교지부가 ‘강수’를 둔 이유는 당시 법에 따라 ‘설립자’ 명의로

년 9월 10일; “*徽新學校 貸借案 書面決議도 遂否決*,” 1937년 10월 7일; “*再考願의 徽新問題, 書面으로 實行委員會*,” 1937년 12월 17일.

201) “Board Action of March 21, 1938,” in “Board Actions 모음,” 8.

202) 인수안은 1938년 1월에 해외선교부에 제출되었다. Harry A. Rhodes and Arch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11.

203) 최태영은 황해도 은율 출생으로 해방 전에 보성전문학교의 법학교수, 경신학교·정신여학교를 운영했고 해방 후에는 서울대, 부산대, 청주대, 경희대 등 교수를 역임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4) 새로운 ‘설립자’들은 경신학교 이사진에 의해 선택되었다. 당시 경신학교 이사진은 선교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실상 서울 선교지부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A Statement by William M. Clark,” 1938년 1월 12일 (RG 140-12-25), 2, 『신사참배자료』, 283. 윌리엄 클라크는 남장로교 선교사이지만 숭실전문학교(이사), 대한기독교서회 경영에 참가하면서 경성노회원으로 활동했고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5) “*徽新設立者增員 正式으로 兩氏에 認可*,” 『동아일보』, 1938년 2월 16일.

사단법인에 관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자 중 한국인이 있다면 그의 명의로 선교부와 관계없이 학교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만약 선교부의 학교 폐교 결정에 따라 선교사들로 구성된 학교이사회가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설립자’가 반대한다면 이사회 결정은 무효가 되었다.²⁰⁶⁾ 선교부 측은 이전에도 「기독신보」 운영권과 관련된 ‘설립자’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으므로 서울 선교지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²⁰⁷⁾ 게다가 경신학교 이사회가 실행위원회 측의 안을 받아들여 당국에 제출한 1938학년도 신입생 모집 거부 안은 당국에 의해 거절되었다. 당국은 교장 쿤스에게 경신학교 신입생 모집을 종용했다.²⁰⁸⁾ 결국 신입생 모집과 ‘설립자’ 추가임명을 통해 서울 선교지부 교육선교사들은 총독부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는 언더우드와 쿤스의 의견이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해외선교부는 경신학교에 대한 인수청원안이 각 처에서 올라오자 조선선교부로 하여금 1936년 선교부의 결정, 즉 교육철수안에 대해 전체 선교부가 다시 투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 내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 경신학교 이사진의 학교운영을 허락했다.²⁰⁹⁾ 해외선교부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측을 격양시켰다. 홀드크로프트와 솔타우는 장문의 서신을 해외선교부로 보내 기존 정책의 반복은 선교부와 한국교회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²¹⁰⁾ 그들은 경신학교 이사진이 “조선선교부와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받

206) “A Statement by William M. Clark,” 3-4.

207) 1935년 가을, 선교부가 당국에 등록하기 위해 편이상 전필순을 「기독신보」의 발행 겸 편집인(‘설립자’에 해당)으로 임명해 두었는데 전필순은 조선기독교서회 산하의 신문 경영권을 자신의 것으로 장악해 선교사와 서북기독교계에 대항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35년 3월 15일, 569; 최병택, “1925-35년 서울 지역 기독교세력의 사회운동과 그 귀결,” 『한국사론』 45집, 319-320 참조.

208) “敎新校 生徒募集, 도에선 不募願을 認可치 안하, 미순會 態度가 注目,” 『동아일보』 1938년 2월 24일. 경신학교 청원서에 비판적인 실행위원회 선교사들은 새로운 ‘설립자’ 임명이 신입생 불수용안을 무효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Holdercroft & Soltau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1938년 3월 28일(RG 140-12-26), 4, 『신사참배 II』, 294.

209) “Board Action of March 21, 1938,” in “Board Actions 모음,” 8.

지 않은 집단”이고, 경성노회의 학교인수안 지지 결정은 성립된 바 없으며, 노회는 경찰의 압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대구와 안동지부의 학교인수안 찬성결의안도 “선교사들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며, 68명의 재미한인학생 결의안도 “언더우드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 이 한인 학생 단체는 “기독교단체”가 아니라고 강력히 비판했다.²¹¹⁾

조선선교부는 해외선교부의 재투표 요구에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조선선교부 전체의 재투표를 이행했다. 투표 결과 교육철수 안에 대해 62 대 33으로 다시 찬성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선교부의 교육철수 정책 자체는 보다 명확해졌고 다만 학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았다.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의 결정을 1938년 5월 16일자로 재확인했고 미 북장로교 총회도 그 결정에 동의했다.²¹²⁾ 그리하여 조선선교부는 해외선교부의 입장 표명에 안심했다.

교육철수를 확인한 해외선교부의 결정에 고무된 조선선교부는 1938년 6월 20-29일에 평양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해서 또 다시 몇 가지 매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첫째,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부터도 1941년부터 철수할 것, 둘째, 교육철수기관에 선교사가 “이사나 교사진으로 참여치 말 것,” 셋째, 서울 선교지부의 행태를 “비판함(reprimand),” 넷째, 경신과 선천학교들의 부지를 처분하는데 실행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할 것, 다섯째, 대구와 선천의 학교 ‘설립자’에 한국인이나 다른 이들을 추가하지 말 것 등이었다. 즉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의 철수, 서울 선교지부의 입장을 반박, 다른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완전한 철수 등이 주요 골자였다. 아울러 학교 철수 문제에 대해 실행위원회에 좀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

210) Holdcroft & Soltau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1938년 3월 28일(RG 140-12-26), 1-3, 7-9, 『신사참배 II』, 291-293, 297-299. 실행위원회의 두 선교사들은 1938년 3월 이전까지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의 중등학교 폐쇄 안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처럼 설명했지만 해외선교부 측과의 몇 차례 회의를 통해 해외선교부 내의 미묘한 입장 변화를 이전에 감지했을 것이다.

211) Ibid., 4-5.

212) “Board Action of May 16, 1938.” 해외선교부의 결정은 미 북장로교 총회의 인준도 받았다. “Board Action of June 13, 1938,” “Board Actions 모음,” 9.

다.²¹³⁾ 이는 선교부 내의 갈등을 해소키 위해 소수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조치였던 것이다.

중등교육철수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는 철수정책이 관철되었지만 한국 내 교육선교사들은 여전히 조선선교부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교별로 한국인들에 의한 교육기관 인수안이 대체로 관철되었다. 예를 들면 실행위원회 측과 관계가 악화된 경신학교 측은 예정대로 1938년 초, 신입생을 받아들였고 한국인들에게 학교를 인계해나갔다. 여기에는 쿤스 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고 당시의 ‘법’이 적절히 활용되었다. 사실 쿤스는 이전부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학교를 살리겠다고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특히 1938년 7월부터 미국에 안식년으로 1년간 체류하면서 경신학교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²¹⁴⁾ 하지만 1937년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1939년 3월 말, 경신학교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철수가 진행될 때 언더우드, 로즈 등은 이사직을 사임했다.²¹⁵⁾

정신여학교도 경신학교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인들에게 인계되었다. 선교부는 경신학교보다 1년 늦은 1939년부터 정신여학교의 신입생을 받지 않고 1940년 3월 말에 철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성노회 측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1938년 6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에 학교인수안을 제출했는데 선교부는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다.²¹⁶⁾ 그러나 조선 언론을 통해 여자교육기관을 살리자는 의견이 제기되

213) “Present Conditions in Korea” by Herbert E. Blair, 1938년 7월 30일(RG 140-12-25) 중의 “Annual Meeting of the Chosen Mission, June 20 to 29, 1938-Pyongyang.” 『신사참배 II』, 372-373. 이 회의도 1936년, 1937년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엄중한 감시 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표결에서 55 대 25로 압도적 차이로 교육사업철수안이 통과되었다.

214) 대표적으로 “最後까지 勞力 校長 君芮彬氏談,” 『동아일보』, 1938년 9월 11일. 쿤스의 안식년 출발은 “敝新 “쿤”校長 今日發 歸國,” 『동아일보』, 1938년 7월 13일.

215) “敝新問題 落着 金氏 門中서 引繼,” 『동아일보』, 1939년 3월 1일, 인계조인식은 3월 4일에 열렸다. “更生盤石에 오른 敝新校,” 『동아일보』, 1939년 3월 4일. 교명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情든 “敝新” 校改名,” 『동아일보』, 1939년 3월 20일.

216) “貞信女校의 引繼 不許方針을 通牒 京城老會 活動도 마춤내 水泡,” 『동아일보』, 1938년 7월 10일.

면서 학교인수 안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²¹⁷⁾ 해외선교부 측도 1938년 9월 19일 자료, 1940년 3월말로 정신여학교 운영에서 탈퇴하겠지만, 만약 1939년 10월 1일까지 인계를 담당할 적절한 조선인이 나타나다면 학교를 인계하겠다고 결정했다.²¹⁸⁾ 한국인들과 서울선교지부 선교사들은 학교 존속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인계자 물색에 나섰다. 결국 인수안 통과, 선교부 거절, 다시 인수안 통과 등의 우여곡절 끝에 정신여학교도 1940년 3월, 안약의 김씨 문중의 손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서도 언더우드 중심의 서울선교지부의 노력이 있었다.²¹⁹⁾ 그러나 정신여학교의 인계문제는 태평양전쟁 발발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태평양전쟁 발발 후인 1942년 3월 언더우드의 ‘설립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학교가 적산(敵産)으로 인수되어 일제 측에 의해 경영되었다.²²⁰⁾

대구지부의 학교들

경북 대구의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는 이전부터 조선선교부와 경북노회의 공동운영 하에 있었으므로 선교부가 교육철수를 결정한 후 경북노회가 인수해서 경영하기로 결정했다.²²¹⁾ 물론 이러한 결정의 배후에는 조선선교부와 대립각을 세운 계성학교의 헨더슨과 신명여학교의 폴라드(Harriet E. Pollard; 方解禮)의 노력, 그리고 해외선교부의 지원이 있었다. 헨더슨은 1938년 선교사 연례회의가 끝난 후 평양지역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연례회의의 결정 중 교육기관 철수 후 선

217) “眞信校를 求하자,” 『동아일보』 1938년 10월 26일.

218) “Board Action September 19, 1938,” in “Board Actions 모음,” 13.

219) 인계조건은 3년간 얼마간 세를 내고 인계하는 것이었다. “眞信女學校 新生の 再出發,” 『동아일보』 1940년 3월 6일. 해외선교부는 동년 3월 18일자로 인계 안을 허락했다. “Board Action March 18, 1940,” in “Board Actions 모음,” 23.

220) H. H. 언더우드는 후일 연례보고서에서 이러한 결과로 해외선교부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Personal Report of Horace H. Underwood, 1940-1942,” RG 140-10-8 (PCUSA), 4.

221) “岐路의 啓聖 信明 兩校, 老會繼續經營기로 決定,” 『동아일보』 1938년 12월 17일.

교사들이 학교 일에 관여치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강력히 비난했다.²²²⁾ 해외선교부 측은 조선선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39년 3월까지 학교경영을 경북노회에 넘긴다는 대구 선교지부의 결정에 동의했다.²²³⁾ 대구지역 학교에서 철수가 결정된 후인 1939년 6월에도 헨더슨과 폴라드는 ‘설립자’의 자격으로 계속 교장역할을 담당했으므로 나중에 실행위원회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²²⁴⁾ 그러나 해외선교부가 이미 1938년 9월 19일자로 “비공식적으로,” “자발적인 일부 시간제”로 교육기관에 조인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결정을 내렸으므로 조선선교부의 강력한 반발은 큰 의미가 없었다.²²⁵⁾

선천지부의 학교들

평북 선천의 신성학교와 보성여학교는 1937년 11월의 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폐교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에 평북, 의산, 용천 노회는 3노회 공동으로 학교를 인수, 경영하기로 결정했다.²²⁶⁾ 이에 해외선교부는 1938년 12

222) 그는 “선교사들도 경북노회의 일원이었으므로 만약 학교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노회에서 사실상 탈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선교부 소속이 아닌 노회의 일원으로 학교를 돕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물론 이는 해방 전 선교사들이 가진 이중적 위치, 즉 본국 노회와 선교지 노회 양쪽에 소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였다. 헨더슨은 또 해외선교부가 1938년 결정한 사항 중, 학교를 처분한 대금으로 동년의 재정으로 사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 대구학교들의 매각 지연으로 이 조치의 예외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Henderson to Hooper, 1938년 7월 14일(RG 140-12-25), 3-4, 『신사참배 II』, 368-369.

223) “啓聖 信明兩校引繼를 米國本部서 確認通告 ‘미순’會의 抗議를 一蹴코,” 『동아일보』 1939년 2월 14일.

224) 선교부는 헨더슨이 직접 선교부에 출두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Re. Rev. H. H. Henderson and Taiku Situation” RG 140-12-32, 3-6의 “Letter Mission Executive, March 18, 1940,” 『신사참배 II』, 488-491.

225) “Board Action September 19, 1938,” in “Board Actions 모음,” 11.

226) “宣川信聖 保聖兩校도 二年後 廢校기로 決議, 宣川에서 開催中인 ‘미순’委員會에서 延專 世專問題도 討議,” 『동아일보』 1937년 11월 30일; “更生되는 信聖, 保聖 財團完成도 目睫間, 白,威兩氏筆頭로 萬圓을 喜捨 各界의 聲應이 熱烈,” 『동아일보』 1939년 3월 14일.

월 19일자, 1939년 1월 16일자로 각각 신성학교와 보성여학교를 한국인들에게 인계하는 안을 허가했다.²²⁷⁾ 평양을 제외한 6개 학교 경영진들은 학교들의 갱생을 위해, 한국인들의 기부와 당국의 도움을 촉구했고 한국 언론을 통해 재정확보에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다.²²⁸⁾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의 갈등

한편 1938년 여름의 선교부 연례회의가 연희와 세브란스의전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결정하자 해외선교부는 1938년 9월 19일자로 이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철수시점은 1941년 3월로 잡았다. 그러나 해외선교부는 비록 선교사들이 학교의 운영진에서는 물러나지만 “개별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므로 조선선교부는 이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²²⁹⁾ 결국 언더우드는 1941년 5월까지 연희전문의 교장 직을 유지했고 그 이후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까지 교수로 활동했다. 1939년에 조선 선교사로 부임한 그의 아들(Horace G. Underwood II, 원일한)도 전쟁발발 시까지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로 일했다.²³⁰⁾ 이는 해외선교부의 조치를 언더우드 부자가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총독부는 신사참배문제에서 파생된 선교부의 교육기관에서의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을 한국인들에게 넘김으로써 한국인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고 그들을 전시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므로 일본이 의도한 분할통치정책과 통제정책에 한국기독교

227) “Board Action December 19, 1938”과 “Board Action January 16, 1939,” in “Board Actions 모음,” 15-17.

228) “사학을 진흥하자 應分の 힘을 다해 學校를 만히 세우자,” 『동아일보』 1939년 1월 5일.

229) “Board Action September 19, 1938,” 이것은 1938년 1월 17일의 해외선교부의 결정, 즉 다른 교파와 “일시적” 협력사역을 허용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신사참배 II』, 528.

230) H. H. 언더우드의 사임은 1941년 2월 25일에 연희전문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483. 1941년 2월 25일자. 그러나 같은 해 5월 21일까지 직위를 유지한 것 같다. “Resolutions,” *KMF* 1941년 6월호.

측이 말려든 것이라는 평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²³¹⁾ 그러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을 지속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것이었다.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선교부 내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은 해외선교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경신학교가 ‘설립자’를 자의로 임명한 것에 불만을 품었던 실행위원회 측은, 1938년 5월 16일자 해외선교부의 교육사업철수안 확약을 학교들의 완전 폐쇄로 해석하면서 이 안을 모든 소속 학교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 결과 조선선교부는 정신여학교를 한국인이 인수하는 안이 포함된 1938년 9월 19일의 해외선교부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해외선교부는 한국인 인수안을 지지하면서 원래 선교부의 결정서에 있는 “철수(withdrawal)”는 “폐쇄(clos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선교사들이 학교들에 대해 가지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자산(equities)”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학교경영을 선교부가 할 수 없다면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넘길 수 없다는 선교부의 의견에 대해, 해외선교부는 학교를 완전 폐쇄하고 책임을 털어버리기보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인계경영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²³²⁾

실행위원회 측은 선교부의 학교철수 안은 1936년 9월 21일자의 해외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학교를 “임대, 대여, 증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신여학교의 한국인 인수안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 측은 정신여학교 인계문제에 대한 해외선교부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해외선교부가 직접 정신여학교와 대면하라고 항의했다.²³³⁾ 실행위원회 측 대표로 미국에 와 있던 허버트 블레

231) 김승태,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 220.

232) “Statement by the Foreign Council,” 1939년 1월 12일, 『신사참배 II』, 305-307.

233) 1939년 4월 17일자로 정신여학교 설립자 언더우드는 경성노회가 인계 안을 준비해 두었다고 해외선교부에 전보를 보냈다. “Seoul Girl’s School, Chosen: Action of Executive Committee march 24-27, 1939,” “Comment by Executive Secretary,” “Cablegram from Chosen, April 17, 1939,” 『신사참배 II』, 308-309.

어(Herbert E. Blair)는 해외선교부 측에, “조선선교부에 너무 굴욕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 조선선교부가 미국 내 교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린다면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라는 “정식통로를 무시”하고 교육철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을 “직접 접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비판했다.²³⁴⁾

1939년 6월 7일 해외선교부 내에서 있었던 조선선교사들과 해외선교부 위원들 간의 대화는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의 갈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모임은 당시 뉴욕에 있었던 허버트 블레어의 발의로 해외선교부 인사들(J. L. Hooper, Charles T. Leber, J. L. Dodds, George T. Scott 등)과 홀드크로프트, 라이너, 블레어, 에스더 쉴즈(Esther L. Shields) 등 내한 선교사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²³⁵⁾ 이 자리에서 홀드크로프트와 블레어는 정신여학교를 한국인들에게 인계하라는 해외선교부의 결정은 기존의 정책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너는 자신이 떠나온 1938년 7월 이래 총독부가 조선선교부와 한국교회 간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일제 당국이 해외선교부와 선교부의 갈등을 이용해 선교부 내 “분열(wedge)”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서 쉴즈는 학교운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조선선교부 내 소수파 중 한명이었다.²³⁶⁾

해외선교부의 총무 후퍼는 정신여학교에 대한 해외선교부의 결정에 실행위원회가 불복종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실행위원회가 직접 미국의 장로교 총회와 접촉해서, 총회가 해외선교부에게 학교 폐쇄를 지시

234) “Herbert E. Blair to J. L. Hooper,” 1939년 5월 2일, 5월 18일, 『신사참배 II』, 310-311, 313-315. 블레어는 태평양전쟁 중 필리핀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필리핀 해방 직전 기아로 사망했다.

235) 블레어는 조선선교부로부터 ‘비공식’ 대표(delegate)로 미 북장로교 총회에 참석해서 해외선교부에 압력을 넣어줄 것을 요청받았다. “Informal Conference of Chosen Missionaries with Members of the Board,”(이하 “Informal Conference”) 1939년 6월 7일, 1-2, 『신사참배 II』, 316-317. 쉴즈는 초대 세브란스의대 간호학교장(1906-23)을 역임했고 1938년 12월 은퇴, 귀국했다. 『내한선교사 총람』, 465.

236) “Informal Conference,” 3-4.

하도록 한 것은 선교부가 해외선교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압박전술 (squeeze play)”이라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선교부 다수파는 매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고 있었다.²³⁷⁾ 이에 홀드크로프트는 후퍼가 조선선교부의 입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상황인식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홀드크로프트는 연희전문이 “출발부터 잘못”되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신사참배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격노했다.²³⁸⁾ 즉 그는 1910년대 연희전문 설립과 관련된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의 해묵은 갈등을 다시 언급했던 것이다. 홀드크로프트와 함께 연희전문을 이사를 역임한 허버트 블레어는 신사참배는 양심의 문제이므로 철저한 교육철폐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²³⁹⁾ 홀드크로프트는 이 회의 후, 후퍼에게 보낸 서신에서 후퍼의 신사문제에 대한 무지, 교육철폐에 대한 애매한 태도 등을 비난했다.²⁴⁰⁾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 골이 매우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 간의 간극도 상징하고 있다. 결국 이 회의는 정신여학교와 연희, 세브란스전문학교의 철폐, 인계안을 두고 발생한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와의 입장 차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해외선교부로서는 결국 서울과 서북, 교육과 전도사업 선교사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했다.

해외선교부의 ‘유화적인’ 교육철폐 정책과 달리 조선선교부는 교육사업에서의 철폐가 다른 선교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조선선교부와 한국교회의 공식관계를 “비공식적 관계”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²⁴¹⁾ 특히 1938년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공식적으로

237) Ibid., 7-8. 후퍼는 연희와 세브란스에 대해서도, 선교부가 해외선교부의 1941년 철폐 결정을 무시하고 1939년에 철폐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238) Ibid., 9-10.

239) Ibid., 12-13. 홀드크로프트는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이사직을 사임했다.

240) Holdercroft to Hooper, 1939년 8월 22일, 『신사참배 II』, 408-409. 홀드크로프트는 결국 1940년 1월 31일자로 북장로교 선교위원회에서 탈퇴했다. 김승태, 앞의 글, 197. 그 후 독립장로교회 해외선교부에서 활동했다.

241) “Chosen Mission Annual Meeting, June 1939,” in “Exhibit C: Actions and Commen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the Chosen Mission and the National Church,” 『신사참배

결정된 이후에 선교부 다수파는 조선인 교회기관들에 불만이 많았다. 한편 교육철수에 대한 해외선교부의 대응에 불만을 품었던 선교사들 중 일부는 복장로교를 탈퇴했는데 1940년 한 해에만 5명에 달했다.²⁴²⁾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 간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코자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 대표단과 회의를 통해서 선교부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의 철수가 이루어지기 전인 1940년 9월 23-24일에 “한국 관련 회의(The Chosen Conference)”가 미국에서 개최되었는데 조선에서 윌리엄 블레어, 코엔(Roscoe C. Coen), 로즈가 대표로 참석했다. 조선선교부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해외선교부의 지난 결정들을 다시 맹비난했다.²⁴³⁾ 그러나 조선선교부 대표단은 “과거의 잘못”보다는 현재 상황을 “완화시키고(ameliorate)” 미래를 제대로 “확보(safe-guard)”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선교부와 해외선교부 사이의 갈등을 매듭짓고자 했다.²⁴⁴⁾

해외선교부는 이 회의를 통해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선교부가 한국교회와 협력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했다.²⁴⁵⁾ 또 선

II], 470.

242) 솔타우 부부(1939년 10월 16일), 홀드크로프트 부부(1940년 4월 15일), Miss Marjorie Hanson(동년 5월 20일)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J. L. Hooper to the Chosen Mission, 1939년 11월 24일, 1940년 5월 6일, 6월 24일자(RG 140-2-26), PCUSA; “Commission from the Chosen Mission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September 1940, 『신사참배 II』, 428. 드와이트 말스배리(Dwight R. Malsbary, 마두원), 윌리엄 치스홀름(William H. Chisholm, 최의손), 플로이드 해밀턴(Floyd E. Hamilton, 함일돈), 부르스 헌트(Bruce F. Hunt, 한부선)등도 비슷한 이유로 탈퇴했다. 이들은 메이첸과 선교사들로 불리면서 해방 후 주로 고려신학과(고신)와 손을 잡았다. 김양선, 같은 책, 151.

243) Roscoe C. Coen의 “To Board of Foreign Missions, September 16, 1940”(RG 140-12-32), 『신사참배 II』, 499-502은 대표단의 입장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다. 코엔은 선교부와 해외선교부 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들었다. 첫째, 해외선교부가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 둘째, 해외선교부의 기존 입장의 번복과 “예매한” 표현사용, 셋째, 해외선교부가 소수파를 지지한 것, 넷째, 해외선교부와 총무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언을 받은”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다.

244) Ibid.

245) Hooper to the Chosen Mission, “The Chosen Question,” 1940년 11월 18일(RG 140-12-33), 3, 『신사참배 II』, 548.

교부의 불만을 확인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해외선교부의 결정권과 선교부의 권한을 재확인하려 했다. 특히 앞으로는 한국에서 보내는 서신은 조선 선교부 내 “연락담당 총무(Correspondence Secretary for the Mission)”를 통해서만 해외선교부에 발송되도록 결정했는데 이는 교육기관 철수를 두고 ‘다수파’와 ‘소수파’ 선교사들 간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²⁴⁶⁾ 해외선교부 측은 한국 담당 총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려 4명이나 임명됨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²⁴⁷⁾ 전체적으로 학교철수에 대한 해외선교부 측의 혼란스런 결정에 대한 변명의 성격이 강했다. 해외선교부 측이 조선 선교부에 ‘화해’를 요구하며 보낸 서신이 도착하기 전, 한국 내 선교사들은 미 국무부로부터 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받았다.²⁴⁸⁾ 이로써 신사참배와 교육철수를 둘러싼 조선선교부내 다수파와 소수파, 그리고 해외선교부 간의 갈등은 전쟁발발과 함께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되었다.

조선선교부 내 소수파의 의견을 대변했던 H. H. 언더우드와 쿤스 등은 조선선교부의 학교폐쇄 결정을 막으려고 다각도로 노력했다. 그 결과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 회원들과 몇 차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언더우드는 교육철수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상당 부분 그의 안이 수용되었다. 결국 해외선교부는 신사참배의 종교성 때문에 교육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학교처리는 앞서 살핀 대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들에게 학교 기관을 인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해외선교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대한 일부 ‘다수파’ 선교사들은, 특히 정신여학교에 대한 해외선교부의 처리방식을 강력히 비난하며

246) Ibid., 4.

247) Cleland B. McAfee (1930년 8월-1936년 7월), George T. Scott (1936년 10월- 37년 5월), Charles T. Leber (37년 7월-38년 5월), J. L. Hooper (1938년 9월부터 1948년 6월) 등이 조선 담당 해외선교부 총무들이었다(PCUSA 자료). 맥아피 이전에는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으로 그는 수십 년간 조선관련 선교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해외선교부의 책임인정은 일리가 있는 것이다.

248) 이 편지는 1940년 11월 18일에 발송되었고 서울 총영사관의 선교사들에 대한 철수 권고 회람은 11월 20일에 이루어졌다.

북장로교 교단을 탈퇴했다. 교육철수 안에 반대한 선교사들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서북지역만 아니라 지역을 불문하고 교육기관에 종사해온 이들이었다.

‘소수파’ 선교사들의 교육기관 철수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제는 이번에는 반영미정책을 채택했다. 이에 선교사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각종 기독교 기관들은 한국인들이 인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육기관 운영도 한국인들에게 넘어갔다. 선교사들의 활동은 교육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운영과 직접 전도 활동 등으로 좁혀졌고 이마저도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로 많은 제한을 받았다. 결국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았던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미 국무부의 철수권고에 따라서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제 미국의 대일전과 관련되어 소중한 정보원이 되었다. 다음 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제2부 전시협력, 재입국, 그리고 미군정

제3장 태평양전쟁기 선교사들의 귀국과 전쟁협력

제4장 해방 후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미군정 참여

제3장 태평양전쟁기 선교사들의 귀국과 전쟁협력

1. 태평양전쟁과 미국인들의 귀국

1) 전쟁 발발 전후 선교사들의 귀국

중일전쟁 발발 후인 1938년 5월 10일, 일본은 식민지 한국에 ‘국가총동원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¹⁾ 전 한국인들이 일본의 ‘황민화’ 정책에 따라 전쟁수행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었다. 일본은 1938년 3월부터 시행한 한국인들의 지원병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였고, 물자통제와 산업생산의 극대화를 도모해나갔다. 산업생산에서 농업과 공업생산성 증대가 그 핵심에 있었다.²⁾ 일본은 1940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증강과 예산확대를 통해 소련, 미국과 있을지 모를 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1940-41년 회계년(1940년 4월 1일-1941년 3월 31일) 예산이 8억 6천 6백만(866,641,112)엔으로 직전 해보다 무려 34% 증액되었으며 이듬해인 1941-42년 예산은 10억 엔을 돌파했다. 이는 당연히 서울의 미 총영사관 측의 주목을 받았다.³⁾

1) 전시체제의 통제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박영사, 1998)(개정판), 562-564.

2) “정무총감의 시정방침,” 『조선총독부관보』1940년 4월 24일.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한 것을 기점으로 한국기독교 전체가 중일전쟁 후 군국주의의 확대를 지원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방 후 기독교 측도 1938-1945년間に 있었던 술한 ‘친일’ 혹은 전쟁협력 문제로 일반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내용에 휩싸였다.⁴⁾ 군국주의와 아울러 일본 당국은 일본 정신[大和魂]을 강조하는 강력한 국가주의적 동원을 통해 식민지를 전쟁체제로 편입시켜 나갔다. 한국인 엘리트들은 자의든 타의든 전시체제로의 재편과 국가주의적 동원과 무관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적극적 협력을 하든가 완전히 은둔해 버리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계에서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신홍우·윤치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일형·변영태 등 전시체제기에 시골로 은둔했다가 해방 정국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 인물들도 있다.

일본 당국은 외국인과 함께 이들과 면식이 있는 한국인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했고 당시 한반도에 남아있던 선교사들과 ‘친미파’ 한국인들은 ‘황민화’정책으로 인해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요구되었다.⁵⁾ 특히 선교사들은 1938년 이후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를 들면 H. 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元一漢, 1917-2004)⁶⁾는 1939년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같은 해 가을 경성제

3) 『조선총독부관보』1940년 4월 8일, 1941년 4월 4일자 참조. 예산증액에 대한 미 서울 총영사관의 평가는 U. Alexis John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0년 5월 4일(895.50/5); O. Gaylord Marsh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1년 4월 10일(895.51/52), *RIAK, 1940-1944*.
 4) 중일전쟁 후 태평양전쟁 말기까지 기독교 측의 전쟁협력 동향에 대해서는 김승태, “일제 말기 한국기독교계의 변질·개편과 부일협력,” 『한국기독교와 역사』제24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년 3월) 참조.
 5) *KMF* Vol. 36(1940년 1월)은 선교사들(William B. Lyon, Charles A. Clark, Dorothy McBain 등)의 일본어 학습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소개했다.
 6) 1939년 해밀턴대학(Hamilton College) 졸업과 동시에 한국에 북장로교 선교사로 나왔다가 태평양전쟁 발발 후 억류되었다. 송환 후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해방 후 미 해군 소속으로 1947년 8월까지 일하면서 국립서울대학교의 초대 교무처장을 역임했고 ‘국립대학안’을 주도했다. 한국전쟁 때는 휴전회담 담당 수석 통역장교로 활동했다. 이후 북장로교 선교사로 연세대학교 이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고비 고비마다 중요한 분석과 제안을 미국 정부와 언론계에 보냈다. 태평양전쟁 시와 전후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87-96, 102-128.

대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마츠모토[松本]에게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겨울에는 동경에 건너가서 3개월 간 일본어와 문화를 더 배웠다.⁷⁾ 1939년 여름 선교사들은 휴양지인 황해도 소래에 모여서 일본어 학교를 개설, 수업을 듣기도 했다.⁸⁾ 1940년 이화여자전문학교의 교장이 된 김활란도 교장이 되기 직전, 학교에 남아 있으려면 일본어가 더 능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했다.⁹⁾ 1940년 여름에 열린 미 북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일본에서 일본어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통과시켰는데 해외선교부도 이를 승인했다.¹⁰⁾

일본 당국에 최대한 협력하려는 선교사들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선교사들에 대해 점점 더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다. 특히 일제는 1940년을 건국 2,600주년으로 크게 기념했는데 이 행사에는 당연히 일본적 특수성, 즉 신도와 천황제 등이 강조되었다. 즉 일본제국의 특수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신사참배 등 사상통제도 강화되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학교의 운영진은 일본인 내지 한국인으로 바뀌었다. 중요산업과 물자에 대한 통제가 속속 실시되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외국인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쳤다. 금과 금제품을 한국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나 달러 수표발행을 엄격히 규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수표발행이 어렵다는 것은 한국 내 선교사들이 외국에 주문할 물품의 대금을 송금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¹¹⁾ 또 조선총독부는 주요도시와 지역에서 외국인들

7) Ibid., 61.

8) "Pyongyang station, 1939-1940," RG 140-7-11 PCUSA.

9) J. Manning Potts ed. *Grace Sufficient: The Story of Helen Kim by Herself* (The Upper Room, 1964), p. 96. YMCA에서 활동한 박인덕도 1937년 이후에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Induk Pakh, *September Monkey*(NY: Harper Brothers, 1954), 194.

10) "Board Action-February 17, 1941," J. L. Hooper to the Chosen Mission, 1941년 3월 14일, RG 140-2-27 PCUSA, 3.

11) 해주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결핵퇴치에 힘쓴 감리교 의료선교사 홀(Sherwood Hall, 1893-1991)은 병원에서 쓸 X-Ray 필름과 약품 구입의 어려움을 캐나다의 가족에게 호소했다.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좋은 씨앗, 2003), 654-656의 1939년 9월 12일

이 부동산매입을 제한하는 법령을 반포했다.¹²⁾ 당시 선교사들은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기보다는 선교부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었으므로 이 법의 실효성은 높지 않았지만 조선총독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적대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서울 미 총영사관은 조선총독부 외사과와 협의를 통해 당국의 ‘허가’하에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얻어내기도 했지만 이 법령을 두고 외국인들이 느끼는 압력은 상당했다.¹³⁾ 게다가 1939년 8월 31일자로 동양최대의 금광인 운산금광을 운영하던 미회사(Oriental Mining Company)가 일본에 매각되었다.¹⁴⁾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고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이듬해인 1940년 10월에 독일, 이태리와 함께 추축국 연합을 형성하여 영국과 대척점에 섰다. 그리고 영국을 지원한 미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하였다.¹⁵⁾

자 편지. 홀은 1940년 화진포 선교사 휴양지에서 사진촬영을 한 것과 크리스마스 썰도안의 문제점(조선 풍경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스파이 혐의를 받아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1940년 11월, 마리포사호를 타고 귀국했다.

- 12) 「칙령 267호-外國人土地法施行令改正」, 『조선총독부관보』1940년 4월 17일. 이 법은 주요도시 내와 철도에서 4킬로미터 이내의 토지를 외국인들이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총영사관의 반응은 U. Alexis Johnson, “Extension of Districts to which Alien Land Law is applied in Chosen,” 1940년 4월 26일(895.52/25), *RIAK, 1940-1944* 참조.
- 13) 선교사들은 결혼예물인 금반지나 목걸이 등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외국으로 반출할 때 문제가 되었다. U. Alexis Johnson to the Secretary of State, “Regulations Strictly Controlling the Carrying of all Articles Containing Gold by Travelers from Chosen to Foreign Countries,” 1940년 4월 17일(895/5151/5), *RIAK, 1940-1944*.
- 14) Marsh to Secretary of State, 1939년 9월 16일 (895.63 OR4/47), *RIAK, 1930-1939*, 운산금광에 대한 중요한 연구는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22-239.
- 15) 이미 일본 당국이 영국인들을 체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면 홀과 그의 친구인 성공회 신부 캐롤은 촬영이 금지된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당국에 체포되었다.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679-680. 일반적으로 1940년경에는 대부분의 서구인들은 일본정부로부터 스파이 취급을 받았다. Board of Foreign Missions Methodist Episcopal Church to Department of State, “A Brief Summary of the Factors Presented by Evacuees on Board the S. S. Mariposa as their reasons for Returning Home,” (이하 “A Brief Summary”) 1940년 12월 10일(395.116M56/7), 『신사참배 I』, 496-500.

1940년 9월 12일, 일본내에서 반영미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주 일본 미 대사 조셉 그루는 미국 내 대일 강경책을 주장하는 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청신호 의견(green light message)”을 국무부에 보냈다. 그루 대사의 이전 활동에서 보이듯, 미국과 일본은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주의하였다. 그러나 이 메시지 발송 이후 미일 간에는 본격적인 갈등이 벌어졌다. 미 국무부는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40년 가을, 일본제국 영토 내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피신시키는 정책을 취했다.¹⁶⁾ 그리하여 1940년 10월 둘째 주, 미 국무부는 동아시아 외교공관에 외교관을 제외한 미국인들을 철수시키도록 지시했다. 국무부의 지시문을 받아든 서울의 미 총영사 게이로드 마쉬는 다음과 같은 전문을 한국 주재 미국인들, 주로 선교사들에게 발송했다.

미국시민들의 정상적인 문화, 사업, 기타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극동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과 삶의 조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워싱턴의 국무부는 여권의 통제(control of passports)(원문 그대로)가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시민들의 미국으로의 철수를 제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얼마 전 유럽의 혼란한 지역에서 취한 조치들과 유사하다. 철수는 그들의 존재가 미래에 급박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남성들과,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수송수단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현재 가능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당신들은 현지(station)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후 당황할(alarm)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¹⁷⁾

마쉬 총영사의 회람 전문은 국무부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었지만 사실

16) 일본당국의 정책과 선교사들의 귀국, 추방, 송환 문제에 대한 연구는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50-277; 김승태,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가 있다. 전자는 송환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다루었다. 후자는 철수와 송환이라는 개념을 엄밀히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다. 김승태에 의하면 철수는 자발적인 것이고 송환은 억류되었다가 귀국한 경우를 의미한다.

17) Marsh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0년 11월 20일(390.1115A/305),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50-251에서 재인용.

상 철수 명령과 같은 것이었다. 즉 이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당연히 취할 조치였지만, 기존에 마쉬가 철저히 일본 측 입장을 옹호한 점에서 볼 때 놀라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쉬는 신사참배 문제에서도 평양지역의 자국민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입장에 비판적이었고 총독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조선총독부 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예로 그는 1939년 말, 평양지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해 일본에 건너가 일본정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조차¹⁸⁾ 두 명의 선교사들에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래 보고서는 당시 마쉬 총영사의 대응을 잘 보여준다.

저는 이들 두 명에게 그들의 열정을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활동하는 조선에서 그들이 총독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지 모르는 어떠한 실수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¹⁹⁾

1940년 10월 중순, 미 국무부가 동경의 미 대사관과 서울의 총영사관을 통해 자국 선교사들의 철수를 명령한 것은 일본에 대한 기존의 우호적 접근만으로는 미일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반서양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주재 미선교사들은 국무부의 귀국요청에 응해 대부분 1940년 11월 16일에 마리포사호(S. S. Mariposa)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특히 감리교 선교사들 대

18) 두 선교사는 북장로교 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총무인 홀드크로프트와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찰스 클라크였다. 이들은 평양신학교의 폐쇄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신학교가 폐쇄된다면 미일관계가 경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선교사의 입장은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No. 4290, 1939년 12월 8일, "Transmitting Memorandum Relating to Japanese Efforts to Curb American Missionary Activity in Chosen"(395.1163/89)의 첨부물 2. Memorandum 1939년 11월 18일, 『신사참배 I』, 493-495.

19) 위의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No. 4290, 1939년 12월 8일의 첨부물 1. Gaylord Marsh to the American Ambassador at Tokyo, 1939년 11월 20일, 『신사참배 II』, 492.

부분은 미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외교관들과 일부 선교사들, 특히 북장로교과 인사들이 태평양전쟁 발발 시까지 남았다.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부는 마쉬 총영사의 회람을 받고 해외선교부에 선교사들의 “즉각 철수”를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교사업의 중단을 우려한 해외선교부는 “즉각적인 완전 철수”는 반대하며 노약자 위주의 “제한철수”를 허락했다.²⁰⁾ 그 이후 조선선교부는 11월 2일자로 8명의 선교사들의 귀환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외선교부는 선교부 실행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개인별 요청에 응할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해외선교부는 가능한 최대의 인원이 한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²¹⁾ 그리하여 감리교 측과 달리 많은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남았다. 여전히 해외선교부는 일본 제국 내에서 선교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래의 【표 3-1】은 마리포사호를 통해 선교사들이 귀국한 후 남은 자들의 숫자이다.

【표 3-1】 마리포사호 귀국 전후의 체류 선교사 수

교파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호주	기타(영국 등)	총계
귀국 전	114(118*)	64(66)	116	35(38)	26(29)	약 50	402(408)
귀국 후	61	7	7	20	23	1	

* 출처: 김승태,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연구』, 238;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 322; “A Year of Withdrawal,” *KMF* Vol. 37(1941년 9-10월) 등으로 재조정. ()은 김승태의 통계로 1940년을 기준.

당시 마리포사호를 타고 출국한 선교사들과 한국에 남은 선교사들 사이에는 상호간에 경멸과 비방을 동반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서울 지역 언더우드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잔류파는, 여성들과 어린이

20) J. L. Hooper to the Chosen Mission, “Situation in the Far East,” 1940년 10월 28일 RG 14-2-26, PCUSA.
 21) J. L. Hooper to the Chosen Mission, “Missionary Withdrawals,” 1940년 11월 28일 RG 14-2-26, PCUSA.

들이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더라도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자신들의 임지를 버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선교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더불어 자신들이 한국에서 구축한 입지가 국제적 긴장 속에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H. H. 언더우드 부부는 철수하는 다수와 선교사들이 “종교로부터 애국심을 분리하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했다”라고 비난했다.²²⁾ 즉 신사참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한 조선선교부 다수파들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잔류파 중에는 교육선교사로서 신사참배 수용을 주장한 이들이 많았다. 반면에 떠나가는 사람들은 잔류파들이 비록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한국에 남아있어도 더 이상 성취할 어떤 것도 없다고 보았다.²³⁾

귀환 선교사들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북감리교 선교사들이 마리포사호를 타고 돌아가면서 북감리교 해외선교부에 보낸 문서다.²⁴⁾ 선교사들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선교사들에게 떠날 것을 권고했지만, 자신들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귀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일본 정부가 “선교사만이 아닌 모든 민주주의 세력”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선교사들이 “적성국 시민으로” 수감될 것이므로 “기독교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²⁵⁾ 교육철수에 반대해온 감리교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당국의 반영미 정책은 자신들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귀환 선교사들은 그 외 다른 이유로 “선교지 교회(native churches)”와 “본국교회(mother churches)”간의 “강제적 단절,” 교육과 예배에서 “양심의 자유 원칙”이 제한된 것, “현실적으로” 당국이 모든 서구인들을 스파이로 간주

22) Ethel Underwood to J. L. Hooper, 1940년 11월 15일(PCUSA),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53에서 재인용.

23)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67-68.

24) 앞의 “A Brief Summary” 1940년 12월 10일.

25) Ibid., 1.

하면서 그렇게 선전한 점, 선교사들과 교제하는 교인들에게 가해지는 위협 등을 들었다.²⁶⁾ 실제로 1940년 10월에 300명 정도의 목사와 교회 관련 인사들이 당국에 체포되었고, “개인주의와 자유”를 비판하도록 기독교인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군사훈련이 강제되었다.²⁷⁾ 그러므로 태평양전쟁 발발 1년 전에 이미 선교사들과 총독부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는 반영미적인 일본의 군국주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맹위를 떨쳤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선교사 철수정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의견을 대변하는 언론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호전적인 언론들은 이를 환영하며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²⁸⁾ 결국 219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마리포사호를 타고 한국을 빠져나갔다.²⁹⁾ 이 인원 속에는 캐나다와 영국 선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 선교사들 가운데 4명이 함흥과 원산에 남았다.³⁰⁾ 호주장로회는 1940년 10월,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선교사 철수문제를 논의했는데 철수를 선교사 개인의 양심에 맡겼다. 호주장로회 선교사들 중 이때 철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³¹⁾

감리교 선교사들은 마리포사호를 통해 대부분 귀국했는데 여기에는 마쉬가 미국인에게 회람을 보내기 전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1940년 9월 중순 일본 감리교 아베 요시무네[阿部義宗, 1886-1980] 감독이 서울에서 일본정책의 변화에 대해 강연하면서 선교사들의 귀국을 종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0월 2일 정춘수 감리교 감독이 외

26) Ibid.

27) Ibid., 2.

28)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0년 11월 1일(390.115A/242)에 첨부된 *Japan Advertiser*(Tokyo), 『東京日日新聞』1940년 10월 29일자.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54에서 재인용. 그루는 *Japan Advertiser*가 외무성 기관지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았다.

29) Donald N. Clark, Ibid., 256.

30) William Scott, *Canadians in Korea*, 139-141.

31)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322-323.

국선교단체에게 재정지원 중단을 요청하면서 선교사들이 기독교단의 주요직책에서 물러날 것을 성명으로 발표한 것이다.³²⁾ 일본과 한국 감리교 본부의 반선교사 성명은 선교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감리교 해외선교부가 선교사들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해외선교부는 1941년 1월에 제임스 베이커 감독(James C. Baker, 1879-1969)³³⁾과 해외선교부의 R. E. 디펜돌퍼 총무(R. E. Diffendorfer)를 일본과 한국에 보내 직접 상황을 조사하였고, 그들은 선교사들의 한국철수를 강력히 권고했다. 감리교 해외선교부는 2월 20일자로 한국 거주 미 감리교 선교사들의 철수를 명령했고 8월 말에 마지막 감리교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갔다.³⁴⁾ 그러므로 태평양전쟁 발발 전에 감리교 선교사들 중 남아 있는 이들은 없었다. 호주장로회 측은 1941년 4월 16일에 선교부 실행위원회를 개최해서 먼저 미혼여성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도록 결정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1941년에 떠나갔다.³⁵⁾

【표 3-2】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잔류 선교사 수

교파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호주	총계
숫자	24	4	없음	4	5	37*

출전 : 김승태, 같은 책, 237-238; 정병준, 같은 책, 326.

* 1942년 6월에 송환된 선교사들 숫자와 일치한다.

1941년에 들어서자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례차례 추방되었다. 청주 선교지부의 미 북장로교 선교사 오토 드 캠프(E. Otto De Camp)와 드위트 로움(Dewitt Lome)은 1941년 1월 15일 청주 선

32)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22-124. 정춘수의 감리교단 성명은 『신사참배 II』, 541-543 참조. 이 무렵 일본과 한국의 감리교 합동이 논의되었다.

33) 베이커는 1928년부터 1930년, 즉 한국인 양주삼이 남북 연합감리교 감독이 될 때까지 한국 지역 감독이었다. 1930년 남북 감리교 연합운동을 통해 기독교조선감리회가 발족될 당시 자문을 담당했다. 『내한선교사 총람』, 153.

34)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29-131; "The Basis of Withdrawal," *KMF*, Vol. 37(1941년 3월).

35) 정병준, 같은 책, 324-326.

교지부 선교사관 구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신자의 집에서 가미다나[神柵]를 철거하여 경찰에 돌려주었다. 일본경찰은 이를 문제 삼고 동년 2월 25일에 두 선교사를 불경죄로 대전형무소에 수감해버렸다.³⁶⁾ 이후 석방되어 이들은 미국으로 추방당했다.

남아있던 선교사들의 사기에 극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바로 ‘만국부인기도회사건’이다. 총독부는 이를 통해 선교사 철수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자신들이 선교사 관리에 주도권이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⁷⁾ 이 사건은 ‘한국병합’ 직후 한국인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한 ‘105인 사건’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다. 즉 국가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국가반란’이라는 죄목을 씌워 기소한 점이 그러하다. 만국부인기도회는 1925년부터 매년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 매주 금요일에 각 지역별로 같은 예배순서와 기도제목을 가지고 개최되었는데 이는 기독교 여성계의 통상적인 연례행사에 불과했다. 일본 당국은 이 기도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이 때 기도회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일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국부인기도회사건의 골자는 단순했다. 매년 선교부연합공의회장이 장로교·감리교 양파의 미국인 여선교사 중 각 1명씩을 준비위원으로 지명하면 이들이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서 한국인 조사(助事)와 함께 기도 원문과 번역문을 작성, 각 교회에 보낸 후 특정 날짜에 기도회를 개최했다.³⁸⁾ 대체로 기도의 내용은 기독교 용어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도 있었다. 마리포사호가 떠난 며칠 후 1940년 11월 20일 경 만국부인기도회 영문 순서지를 우송받은 북장로

36) 사와 마사히코, “일제하 ‘신사문제’와 기독교주의 학교,”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참조.

37) 이 사건에 대한 연구는 조선혜, “1941년 ‘만국기도회사건’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호(1996년 9월); Donald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58-261 참조. 이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집은 『만국부인기도회사건자료집』1-37권(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만국부인기도회사건 I-IV』61-64(국사편찬위원회, 2005)가 있다.

38) 조선혜, 같은 글, 119.

회의 앨리스 버츠(Alice M. Butts)와 감리교파의 존 무어(John Z. Moore)의 부인은 1941년 기도회를 위해 편지 내용을 편집, 번역한 후 이 번역된 기도문 15,000부를 인쇄해서 각 교회에 배포하기 시작했다.³⁹⁾ 그런데 일본 당국이 기도문 내용 중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 뜻을 불순종하여 참된 연락을 아니함으로 국제간 분쟁이 있는 것을 자복할 것”과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여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도와주지 않은 것을 자복할 것”을 문제 삼았다.⁴⁰⁾ 그것은 일제 심문관들이 언급한 대로, 당국은 선교사들이 중일전쟁의 부당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⁴¹⁾

문제가 된 또 다른 구절은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고 화평한 세상이 되기를 간구할 것”이라든가 성서의 요한계시록 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또한 있지 않더라”는 것으로, 천황이 현인신(現人神)임을 강조하는 일본의 공식선전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⁴²⁾ 일제는 관여자들을 조사하면서 신사참배와 궁성요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는 일제가 이 문제를 신사참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음을 의미한다.⁴³⁾ 이 사건의 일차 검거 대상자는 27명이었고 이 중 11명이 선교사였다. 그 중 8명이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고 2명은 캐나다장로회, 나머지 1명은 감리교선교사였다. 한국인 피의자도 선교사들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이었다.⁴⁴⁾ 여기서도 신사참배 문제와 마찬가지로 북장로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종 입건된 사람은 선교사 20명, 한국인 43명, 총 65명이었다. 선교사 중에는 에텔 언더우드(Ethel Underwood), 릴리안 로스(Lilian Ross), 찰스 클라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⁴⁵⁾

39) 배포 및 일제 당국의 관련자 단속 상황은 조선해, 같은 글, 120-122.

40) 조선해, 같은 글 부록 ‘1941년 만국부인기도회 순서.’

41) 『만국부인기도회사건자료집』 제17권 金亨信 심문조서, 제 2권 李義實 심문조서 등. 조선해, 같은 글, 132-133에서 재인용.

42) 조선해, 같은 글, 부록 ‘1941년 만국부인기도회 순서.’

43) 조선해, 같은 글, 133.

44) 참여자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같은 글, 128-132; 김승태,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 233.

45)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59.

일제는 선교사 및 그들과 관련된 한국인들을 검거함으로써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에 썩기를 박으려고 했다. 일본 당국은 선교사들을 간첩행위자들로 몰아붙였다.⁴⁶⁾ 검거가 시작된 다음날 발표된 「매일신보」 기사는 일제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신문은 총독부 보안과의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조선의 기독교장로회 및 감리교의 영미인 선교사 중에는 지나사변이 발생한 이래 이번 성전을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이라고 망단(妄斷)하고 무지한 조선인 교도들에게 극히 교묘하게 반전사상 내지 반국가적 의식을 너허주는 동시에 당국의 기독교 지도에 대하여서도 시종 완미한 태도로써 고집해야 왔다. 특히 작년 가을 이래 국제정세가 긴박하여짐을 따라 일본의 진의를 곡해하고 의심하는 나머지 한층 반일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사변하 민심의 기미한 동향을 살피어 가면서 소위 반전적 신앙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다. 그후 미국에 있는 만국 기도회의 지령밑에서 ‘만국부인기도회’의 이름으로 극단으로 불온한 반국가적이요 반전적인 기도문 수만 매를 인쇄하여 나누어둔 다음....(강조: 필자)⁴⁷⁾

이 담화문은 만국부인기도회 사건의 주된 탄압대상이 선교사였음을 보여준다. 서울의 미국 총영사 마쉬는 자신은 선교사들의 “개인적 무분별함”을 막아줄 수 없다고 오히려 선교사들을 비난했다.⁴⁸⁾ 만국부인기도회 사건은 결국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와 일본 당국의 타협으로 해결되었다. 사건을 통보받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레온 후퍼(J. Leon Hooper)는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도즈(J. LeRoy Dodds), 레버(Charles T. Leber) 등과 함께 워싱턴의 주미 일본대사관을 방문해서 문제를

46) 해주 결핵병원의 원장이었던 감리교 선교사 서우드 홀은 1940년 8월, 화진포의 별장에서 주변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간첩죄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일반적이었다. 서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 678-696.

47) “정당한 포교는 無關, 反國家的인 策動은 嚴罰, 선교사만전모략사건에 대한 當局談,” 「매일신보」, 1941년 3월 27일[김승태,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 233에서 재인용].

48)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1년 3월 5일 중의 Marsh to Grew, 3월 4일, (390.1115A/400),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60에서 재인용.

해결했다. 여기에서 일제 측이 검거한 장로교 선교사 11명의 철수를 조건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들 선교사들은 8월 말부터 9월 말에 걸쳐 차례로 한국을 떠났다.⁴⁹⁾ 선교사들은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것을 일본 당국에 사과하고 그 대가로 한국을 떠났던 것이다.⁵⁰⁾

일제는 만국부인기도회사건을 통해 일부 선교사들을 철수시킨 후, 1941년 7월 28일 총독부령 제218호로 「외국인관계 취임취체 규칙」을 발령하여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꾀했다.⁵¹⁾ 이 법은 특히 미국과 미국령 필리핀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으로 24조의 외국인 소유 재산목록 제출과 매달 재산관련 변동사항 보고를 그 핵심으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⁵²⁾ 1940년 11월, 마리포사 호를 통해 52명의 북장로교 선교사, 75명의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서 철수했으나 1941년 6월에도 여전히 55명의 북장로교 선교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한때 164명이었던 북장로교 선교회는 만국부인기도회 사건을 통해 상당수 선교사들이 철수함으로써⁵³⁾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은 약 28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22명으로 2명의 아동을 포함하여 모두 24명이었다. 이들은 대개 총독부의 기독교 정책을 수용하고 당국이 정한 범위에서 활동하고자 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본부가 1941년 2월 21일에 어린이와 여성, 병약자의 철수만 권고했을 뿐 선교사의 체류

49) 자세한 사항은 김승태, “1930·40년대 일제의 선교사에 대한 정책과 선교사의 철수·송환,” 236-237.

50) 선교사들이 서명한 문서원문은 Donla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60-261의 각주 31.

51) 조선총독부령 제218호 「외국인관계취임취체규칙」, 『조선총독부관보』1941년 7월 28일자.

52) Arthur B. Emmons to the Secretary of State, “Control Regulations for Foreigners’ Transactions,” 1941년 8월 14일(895.5161/7), *RIAK, 1940-1944*.

53) W. Reginald Wheeler ed. *The Crisis Decade: A History of the Foreign Missionary Work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New York: PCUSA, 1950), 74. 이 책의 일부가 Sung-Deuk Oak, *Selected Material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1886-195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에 실려 있다.

여부를 선교사 개인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에 남을 수 있었다.⁵⁴⁾

한국을 떠난 상당수 선교사들은 필리핀이나 남미 혹은 인도 등으로 선교지를 전환하기도 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선교사역을 하기에 문제가 없었다. 특히 15명이 해외선교부의 결정에 의해 필리핀으로 전출되었다. 그러나 필리핀으로 갔던 선교사들은 진주만 공습 후 일본 해군이 필리핀을 점령하자 전쟁포로가 되었다. 허버트 블레어가 1945년 미군 진주 바로 직전에 필리핀의 일본인 포로수용소에서 기아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⁵⁵⁾

1941년 12월 8일(한국시간) 일본의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유럽의 전쟁은 태평양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맞았다. 총독부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H. H. 언더우드, 쿤스, 그리고 바티칸의 대일본 중립정책을 믿고 신사참배를 찬성한 가톨릭 선교사들이 전쟁 발발 당시 남아있었다. 이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외교관들과 함께 적성국 국민이 되어 당시까지 누린 권리를 박탈당했고 이들의 재산은 적산(敵産)으로 분류되어 총독부가 지정한 관리인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⁵⁶⁾ 앞에서 살펴본 학교재산들 중 한국인들에게 넘어간 학교 이외에, 남장로교 측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의 교육철수 당시 한국인들에게 인계되지 않았던 학교들은 ‘적산’으로 분류되었다. 북장로교파 학교들은 정신여학교를 제외하고 대체로 한국들에게 인계됨으로써 적산으로 편입된 학교는 없었다.

54) “The Basis of Withdrawal,” *KMF* Vol. 37(1941년 3월).

55) 15명의 명단은 Rhodes an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21-22. 조우 라이브세이(Joe B. Livesay) 부부와 해롤드 바우(Harold T. Baugh) 부부를 제외하고 모두 일본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혔다. 두 부부는 필리핀 산악지대로 도망가서 해방될 때까지 숨어 지냈다.

56) 「外國人關係取引取締規則第1條第1項」規定ニ依リ左ノ外國ニ指定ニ朝鮮總督府告示第 2001號; 「外國爲替管理法ニ基キ外國爲替管理-府令 323號」, 『조선총독부관보』 1941년 12월 12일자. 가장 중요한 적산관련법은 「敵産管理法施行規則-府令 343號」, 같은 책, 1941년 12월 29일자. 이 법은 8조로 구성되었는데 관리인을 임명한다는 것과 총독부가 필요로 하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국에 남은 구미인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일간에 실시된 전쟁포로교환으로 한국을 떠났다. 억류되었던 101명에 달하는 구미인들은 1942년 여름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⁵⁷⁾ 이들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중립국 스웨덴 선박인 그립숄름(S. S. Gripsholm)호로 배를 바꾸어 타고, 전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었던 브라질의 수도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를 거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 송환 선교사 및 외교관들의 한국 정세 인식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일제에 의해 억류당한 22명의 북장로교 선교사와 2명의 어린이 명단은 【표 3-3】 과 같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쟁 발발 후 가택연금을 당했고 외교관들은 총영사관 내에 연금되었다.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절연되었다. 그러나 지방과 달리 서울지역의 선교사들 중 남자와 미혼여자는 송환되기 전 감리교신학교(현 서대문구 충정로) 부지에 수용되었다. 쿤스, 밀러, 라이너 등 일부 선교사들은 경찰에게 심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⁵⁸⁾

【표 3-3】 태평양전쟁 후 억류된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자녀

번호	이름	거주지 / 수감지	수감 직전 활동
1	William C. Kerr	서울/ 감리교 신학교	일본선교부: 조선거주 일본인 목회
2-5	Horace H. Underwood 부	서울/ 감리교	연희전문 교장

57) 이들이 일본을 떠나기로 한 것은 1942년 6월 18일이었지만 1주일 더 지연되어서 25일에 일본 배 아사마마루(淺間丸)를 타고 포르투갈령의 동아프리카지역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립숄름으로 바꾸어 탔다. Joseph C. Grew, *Ten Years in Japan: A Contemporary Record Drawn from the Diaries and private and Official papers of Joseph. Grew.*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44), 528. 1942년 5월 29일 자 일기; Michael J. Devine ed., *Korea, War, Revolution and Peace*, 83-87.

58) W. Reginald Wheeler ed. *The Crisis Decade.* p. 349;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81-82도 참고. 경찰은 당시 24세였던 H. G. 언더우드는 심문하지 않았다.

	부와 두 어린이(Dick과 Grace)	신학교	
6-7	Horace G. Underwood 부부	서울/ 감리교 신학교	연희전문 교수, 41년 7월 10일 결혼
8-9	Edwin W. Koons 부부	서울/ 감리교 신학교	경신학교 교장
10	Edward H. Miller	서울/ 감리교 신학교	연희전문 교수, 기독교서회 이사, 실행위원회 회장
11	Ralph O. Reiner	서울/ 감리교 신학교	평양외국인학교 교장, 선교부 회계담당
12	Miss Astrid Pederson	서울/ 감리교 신학교	노르웨이인
13	Dexter N. Lutz	평양/ 집*	승실전문 농과 교수
14	John D. Bigger	평양/ 집	평양연합기독병원 의사
15	Anna L. Bergman	평양/ 집	송의여학교 교사, 폐교 후 평양 기독병원 영양사
16	Edith G. Myers	평양/ 집	평양연합기독병원 간호사
17-18	Roy K. Smith 부부	선천/ 집	의사로 서울, 평양, 선천 등 병원에서 근무
19	Vera F. Ingerson	선천/ 집	장로교 병원 간호사
20	Mrs. Frederick S. Miller (Lilian)	청주/ 집	남편과 전도사업
21	Minnie C. Davie	청주/ 집	교회와 학교 사역
22	Edward Adams	대구/ 집	대구성경학교 교장
23-24	Archibald G. Fletcher 부부	대구/ 집	의사로 동산기독병원 원장

출전: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 II. 1935-1959*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5), 23-24.

*18명의 평양 가톨릭 선교사들과 함께 수감, 부부 중 남편만 수감.

22명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들의 선교지역은 서울·평양·선천·대구·청주 등으로 전체 선교지부 8 곳 가운데 다섯 곳이었다. 대체로 신사참배 문제와 교육철폐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었다. 둘째,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찬성하고 교육철폐에 강력히 반발했던 인사들로 당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인사들이다. 선교부 실행위원회 회장인 밀러, 경신학교 교장이자 실행위원회 총무였던 쿤스, 그리고 언더우드 가족 등에서 보듯이 이들은 복장로교 선교사들의 철폐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셋째, 플레처, 스미스, 존 비거, 베라 잉거스 등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한 인물들이 많았다. 의료 업무에 종사한 인물은 도합 8명으로 이들은 해방 후 의료기관이 열악했던 한국에 재입국할 때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넷째, 남자가 대부분으로 부인과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언더우드, 쿤스, 아치발드 플레처, 로이 스미스 정도이다. 이들은 교육과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전쟁발발 시까지 조선 내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인물들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동경의 주일 미 대사관 직원들과 별도로, 서울에 남았던 총영사관 직원들은 3명이었는데 그들은 총영사 해럴드 쿼튼(Harold B. Quarton), 부영사인 아더 에몬스(Arthur B. Emmons)와 알렉시스 존슨(Alexis Johnson)⁵⁹⁾이다. 쿼튼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 상황에 밝지 못했다. 에몬스와 존슨은 한국에 있으면서 사회상황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들이다.

국무부는 브라질 수도 리오 데 자네이로의 미 대사관을 통해 귀환한 미국인들의 대표 격인 그루대사를 통해 외교관들과 귀국 선교사들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⁶⁰⁾ 이들은 승선 후 자신들이 한국에서 겪

59) 존슨은 1937-39년 서울 총영사관의 부영사관으로 근무했고 중국 톈진, 일본 동경 등지에서 외교관 수업을 받았으며 1966-69년 동경주재 미 대사로 근무한 40년 경력의 외교 베테랑이다.

60) 국무부는 그루대사가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것으로 5가지를 들었다. 1. 일본의 전쟁 수행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 특히 한국독립에 대한 희망과 일본에 대한 저항과 충성의 정도, 2. 전시 생필품 통제가 한국인들에 미친 영향, 3. 전쟁이 일본당국의 한국인들

은 일과 현재의 상황을 기록해서 국무부에 제출했다.⁶¹⁾ 일본 당국의 검열이 없었으므로 이 보고서들은 전시하 미국인들이 겪었던 적나라한 사실들을 담았다. 이들은 한국에 오래 체류해 현지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보고는 적국의 내부 사정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 있던 미 당국에게 매우 긴요했다. 왜냐하면 당시는 태평양전쟁의 초기로서 일본군이 동남아시아를 석권하면서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기에 미국으로서도 일본 내 정보는 어떤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관련된 한국 내 사정 이외에 이들 송환 미국인들의 정보가 미 당국에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전달한 정보 가운데에는 한국인들의 독립능력 등 미국의 대한정책과 직결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 국무부는 식민지였던 지역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국 이전에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중반 서울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랭던은 전쟁이 발발한 3개월 후인 1942년 2월 20일 국무부내 비망록에서 한국인들이 일제의 오랜 통치로 “정치적으로 거세되어왔다”고 보고 해외 한인독립운동가들에게 한국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⁶²⁾ 이러한 과도기 설정 방식은 이후 ‘신탁통치’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이 시기에 미국 국무부 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 승인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제공한 정보는 중요하다.

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 4.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특히 동만주의 한국인 급진주의자들의 존재와 중국 국민당 내 한국인 독자 부대의 존재, 5.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적대활동에 참여할 한국인 세력과 활동에 대한 정보 등이다. The State Department to Embassy in Rio de Janeiro(Strictly Confidential), 1942년 7월 27일 (895.01/156A), *RIAK, 1941-1944*.

61) Joseph C. Grew to the Secretary of State, “Report Prepared by Consul General Harold B. Quarton,” 1942년 8월 21일. 이 보고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25권, 142-179과 *RIAK, 1941-1944*에 실려 있다.

62) “Some Aspects of the Question of Korean Independence,” 1942년 2월 20일, *RIAK, 1941-1944*, 12; 랭던 구상에 대한 평가는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8-9;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40-41.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임정은 충칭[重慶]과 워싱턴에서 임정승인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1942년 2월 23일자 라디오 연설에서 한국인들의 “노예상태”를 언급하며 대서양헌장의 원칙인 “침략자들의 무장해제, 민족 자결의 원칙, 4개의 자유-언론과 종교의 자유, 궁핍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임정승인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⁶³⁾ 특히 이승만은 주미위원부의 외곽조직으로 당시 한국과 관련 있었던 영미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미협회’를 전면에 내세워 대정부 로비 및 선전활동에 돌입했다.⁶⁴⁾

이승만 계열의 지속적인 임정 승인 운동과 별도로 당시 중한동맹의 워싱턴 대표 한길수는 이승만과 임정에 대한 비판을 국무부에 제기했다.⁶⁵⁾ 그러므로 국무부는 연합국과의 정책 조율 과제와 독립운동단체의 분파성 등을 이유로 임정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⁶⁶⁾ 그러나 임정 측은 임정승인이 일본과 중국 내 한국인들의 대일본 저항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인들의 일본화 가능성과 독립역량에 대한 평가는 전쟁수행과 전후처리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정리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였다. 아래의 【표 3-4】는 국무부에 한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이들의 간단한 신상정보다.

63) “Draft of Proposed Declaration by the Pacific War Council,” 1942년 4월 18일(895.01/100), *RIAK, 1941-1944*, 3-4. 루즈벨트의 한국관련 발언과 대서양헌장의 원칙적용문제는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9.

64) 이 시기 ‘한미협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연세대 출판부, 2004), 428-431.

65) 한길수는 국무부에 약산 김원봉 계열의 중한민중동맹단의 존재를 알리며 이승만 계열과의 토론을 통한 동수의 대표단 구성을 몇 차례 제안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Kilsoo K. Hahn to the Secretary of State(Hull), 1942년 4월 20일(895.01/102), *RIAK, 1941-1944*.

66)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정휴,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임정 불승인정책,”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참조.

【표 3-4】 귀국 외교관 및 선교사 자료 제출자 명단

번호	이름	직책	활동지역	주요활동(전전/ 이후)
1	Harold B. Quarton	총영사	서울	서울 총영사
2	Arthur B. Emmons 3rd	부영사	서울	1940년 9월에서 42년 4월까지 서울 부영사
3	U. Alexis Johnson	부영사	서울	부영사/ 마닐라, 요코하마 등 (총)영사, 주일 대사, 국무부 차관보(동북아)
4	Horace H. Underwood	북장로교	서울	연희전문학교 교장/ 연희 이사 및 하지 고문, 미군 민간 고문
5	E. W. Koons	북장로교	서울	경신학교 교장 역임/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방송 활동
6	Edward H. Miller	북장로교	서울	YMCA와 기독교서회 이사, 경신학교 교장, 연희전문 학교교수(1918-42)
7	Edward Adams	북장로교	대구	성경학교 교장/ 계성학교장 및 UNKRA위원, 계명대 초대 이사장
8	John V. Talmage	남장로교	호남	농촌선교, 애양원/ 초대 승전대 이사장
9	Donald V. Chisholm	메리놀	평양	
10	Thomas F. Nolan	메리놀	평양	
11	Wilber J. Borer	메리놀	평양	
12	Arthur F. Altis	메리놀	평양	
13	Leo W. Sweeney	메리놀	평양	
14	James V. Pardy	메리놀	평양	
15	Patrick T. Brennan	가톨릭	강원도 원주	
16	익명(로마 가톨릭)	가톨릭	전남 나주	

출전: Harold B. Quarton, "Survey of Current Political Thought and Temper of the Korean People"(1942년 8월 15일)(895.01/157 1/2), *RIAK, 1940-1944*, 『내한선교사 총람 1884-1984』. * 4번 이하는 선교사.

보고서 제출자들과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평양·선천·청주 등의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보고서 작성자 명단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숫자도 적었지만 주로 병원관련 일이나 전도사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국무부가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 내의 사정에 대해 의미 있는 정치적 정보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신사참배문제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조선선교부의 교육사업 지속을 주장했던 언더우드, 쿤스 등 서울지역 선교사들이 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학교장을 역임했던 언더우드와 쿤스가 서울의 외교관들과 같은 수준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외교관 3명과 이들 두 명은, 간단한 구술 자료만 제출한 다른 이들과 달리 각각 개별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보고서가 전체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북장로교 선교사들 중 대구 지역에서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를 운영하며 다른 선교지부의 교육선교사들과 학교철수문제에서 보조를 취한 애덤스가 눈에 띈다. 대구 지역 선교사들은 교육철수 문제에서 언더우드, 쿤스와 보조를 취했다.

넷째, 신사참배를 부정하지 않았던 평양지역의 가톨릭 선교사들, 즉 1925년부터 한국선교를 시작했던 미국 매리놀(Maryknoll) 선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가톨릭 선교사들은 교황청의 전시중립 정책 때문에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적성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할 수 있었다.

다섯째, 선교사 중 일부는 미국에 귀국한 뒤 미국정부와 군부에서 복무하였다. 예를 들면 H. G. 언더우드는 미국에 송환된 후 미군 해군장교로 복무하였다. 그는 3대째 한국에서 활동했는데 해방 이후 한국에 부임하여 한국의 교육과 정치, 사회 문제 등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주요 인물이 되었다. 한편 그의 첫째 부인 조안 언더우드(Joan Davidson Underwood, 1915-1976)의 아버지 헨리 데이비슨(Henry W. Davidson)은 구한말 조선 해관에서 근무한 영국인이었다. 조안은 서울에서 영국 총영사관의 비서로 일했다. 부영사 에몬스는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신랑 들러리로 섰고 해방 후

미군정 국무부 정치고문실에서 일했다.⁶⁷⁾

결국 1940년 11월에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철수한 후 태평양전쟁 발발까지 한반도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대개 신사참배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며 총독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선교활동을 지속하려 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가톨릭, 감리교, 북장로교파 서울선교지부 인사들이었고 특히 선교사계 학교의 경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들이었다.

다음으로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표 3-5】는 제출된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총영사 퀴튼의 보고서는 제출된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무부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들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그것이 임정승인과 전시한국인 동원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다루고자 한다.

일본의 전쟁 동원과 한국인들의 반응

퀴튼은 한국들이 대체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조직적으로 일본에 저항한 경험은 1919년 3·1운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파악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 통치에 대해서는 냉담했고 일본의 전쟁동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전쟁은 “일본인의 전쟁”이며 농민들은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⁶⁸⁾ 그러나 퀴튼은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정은 늘 다시 “재점화(rekindling)

67) 이는 언더우드 집안의 영국 및 미국 총영사관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H. G. 언더우드의 부인과 부친, 에몬스에 대해서는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68-73. 그의 두 번째 부인 도로시(Dorothy Watson, 1933-)는 1960년 부산에 호주장로교 선교사로 입국한 이후 이화여대 음대 교수로 1998년까지 일했다. 이들은 호주대사관 관저에서 결혼했다. 공교롭게도 언더우드는 영국, 호주 등 영연방국가 출신 여성과 결혼했다. 같은 책, 227-234.

68) 예를 들면 조선 내 1/3의 쌀이 일본에 수출되었으므로 농민들은 여분의 쌀이 있어도 숨기는 경우가 허다했다. “Survey of Current Political Thought and Temper of the Korean People”(895.01/157 1/2), (이하 Quarton보고서), 1.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연합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일본에 진심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았고⁶⁹⁾ 전시체제 초기 상당수 한국인들은 유언비어나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일본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다.⁷⁰⁾ 언더우드도 한국인들 대부분이 독립을 열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⁷¹⁾

【표 3-5】 보고서 제목과 내용

번호	작성자	제목	쪽수 및 참고내용
1	Harold B. Quarton	“Survey of Current Political Thought and Temper of the Korean People”	8쪽/ 요청받은 5가지 문제에 대한 답
2	11명	Excerpts from Missionary Statements	9쪽/첨부 1
3	일본신문사	Japan Times and Advertiser (1942년 5월 23일)	1쪽/첨부 2, 조선청년들을 포로감시원으로 이용
4	Arthur B. Emmons, 3rd	“Korean Nationalist Movement”	3쪽/첨부 3
5	Horace H. Underwood	Memorandum	3쪽/첨부 4
6	Edward W. Koons	Memorandum	3쪽/첨부 5
7	U. Alexis Johnson	Memorandum	3쪽/첨부 6

출전: 【표 3-4】의 Quarton보고서(895.01/157 1/2).

69) Ibid. 한편 Quarton보고서의 첨부 1, “Excerpts from Missionary Statements”에 나타난 가톨릭 선교사들의 증언들은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동일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이들은 만약 한국인들이 선불리 봉기했다가는 3·1운동의 탄압과 같은 “어리석은 것”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보았다. 농촌과 산악지역에서 “반정부적인(seditious)” 활동을 벌이는 한국인들도 있었다.

70) 중일전쟁 직후 유언비어 등으로 검속된 상당수 한국인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쟁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한국인들의 중일전쟁관에 대해서는 미야다 세츠코, 『朝鮮民衆과 ‘皇民化’ 政策』, 8-26 참고.

71) Quarton보고서의 첨부 4, “Memorandum,” by Horace H. Underwood, 1-2. 물론 언더우드는 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은 비밀조직(교수, 학생 등)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송환 미국인들은 이후 1944년에 실시된 징병제나 한국인 노무동원 등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다.

퀴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본의 전시 통제경제에서 가능한 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들은 식량과 물자 통제에 수동적으로 저항하였다. 경찰은 식량공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한국인들은 경찰을 가장 기피했다. 게다가 모집된 자원을 배분하는 체계가 잘 확보되지 않아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⁷²⁾ 한국인들은 육류 통제가격에 대해 저항했는데 그 이유는 살아있는 육축이 도살된 것보다 가격이 더 비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육류판매를 꺼렸기 때문에 1941-42년 겨울 도시에는 육류 공급이 부족해서 “육류기근”이 발생했다.⁷³⁾ 그럼에도 일제는 한국인들로부터 미곡을 거두어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1941년에는 8백만 석(石)이 현해탄을 건넜고, 1942년에도 총생산량 2천 4백만 석의 35% 정도가 일본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목초나 보리를 먹어야 했다. 기름이나 옷감 등도 마찬가지였다.⁷⁴⁾ 보고서 내용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기술한 것이었다. 조선인들의 저항은 당국의 비현실적인 자원통제와 자원부족이라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 당국은 물자부족에 대해서 군수물자의 안정적 공급과 조선인 수요의 안정을 위해서 ‘일본정신’의 함양이라는 강압적 형태로 대응했다.⁷⁵⁾

물자부족은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기름부족으로 어선의 출어가 격감했으며 옷감 원료 부족으로 조선의 방직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대부분의 의류가 일본에서 수입되었다. 조선인들이 전통적인 흰옷을 입지 못하

72) 효율적인 통제 체계가 확보되지 않아 석탄이나 나무 등이 기차역에 그대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1941-42년의 서울지역에 대한 관찰에 따르면 쌀과 연료 등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차역에 쌓여있었다. 서울의 석탄 공급은 1/4로 줄었다. Quarton보고서, 2.

73) Ibid. 퀴튼은 경찰이 비현실적으로 책정한 육류가격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74) Ibid., 2-3. 그러나 에몬스 부영사는 물자통제가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 본토보다 강력히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Quarton보고서의 첨부 3, “Korean Nationalist Movement,” by Arthur B. Emmons, 3rd, 1-2.

75) 신탄(薪炭)배급 등에서 일제가 신탄을 사용하지 않는 ‘일본정신’을 강조한 것은, 온돌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들의 신탄사용 절제를 의도한 것이었다. 최병택, “전시체제하 일제의 물자수급 및 통제정책-경성의 신탄(薪炭)수급 통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2004), 53호.

게 됨으로써 “민족주의적 감정이 조장되고 있다”는 퀴튼의 지적은 흥미롭다.⁷⁶⁾ 퀴튼은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전쟁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애국공채 등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음을 지적했다.⁷⁷⁾

퀴튼은 1936년에서 1942년 사이에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취한 한국인 억압 정책을 1942년 5월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1880-1950]⁷⁸⁾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는 전쟁의 승패와 관계된 것으로, 전황이 일본에 유리하면 한국인에 대한 통제를 느슨히 하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인들을 가혹하게 대우할 것으로 보았다.⁷⁹⁾ 부영사 에몬스도 지적했다듯이 일본 당국은 한반도에서 “치안을 방해하는” 한국인들의 활동을 강하게 의심했고 그 결과 한국인들을 철저히 감시했다.⁸⁰⁾ 당시 일본 군대 내에 2-3천 명의 ‘자원’입대한 한국인들이 있었음에 비해 규슈나 일본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은 10만을 상회한다고 보았다. 비록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미나미 총독은 만주에 수천 명의 한국인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일제는 아직 전투수행에 한국인들을 본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지만 후방의 군사적 지원에는 이미 한국인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노동력 부족으로 전쟁 포로들을 감시하는 업무에 한국인들을 대거 투입했다.⁸¹⁾

퀴튼이 보기에 미나미 총독이 한 일 중 중요한 것은 바로 1942년 5월에

76) Quarton보고서, 3.

77) Ibid., 3-4.

78) 고이소 총독은 육군사관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1932년 8월부터 관동군참모장 겸 특무부장으로 만주국 건국 직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선군 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2차 대전 직전 남진론을 주장했다. 전후 A급 전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 사망했다. 『조선총독 10인』 해당 총독.

79) Quarton보고서, 4.

80) Quarton보고서의 첨부 3, “Korean Nationalist Movement,” 2.

81) Quarton보고서, 5, Quarton보고서의 첨부 2, *Japan Times and Advertiser*의 기사(1942년 5월 23일)는 바로 한국인들을 간수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일본 내각의 동의를 얻은 한국인 징병령으로 이는 1944년 7월에 실행될 예정이었다. 사실 일본정부는 이즈음 전쟁이 끝날 것이며 동시에 한국인들의 “불충(disloyalty)”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 시점을 정했다고 보았다.⁸²⁾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징집령은 전시에 각종 명목으로 동원된 한국인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지 한국에서의 징병제는 태평양전쟁 발발과 함께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식민지기 말까지 한국인들의 폭동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⁸³⁾ 퀴튼은 전시체제가 일제의 한국인 활용 정책과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협조적 태도를 충분히 의식했다.

한국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평가

일본의 전쟁동원과 더불어 국무부의 관심을 끈 것은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분석이었다.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과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임시정부 승인과 직결된 문제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퀴튼은 전황이 연합국에게 유리해지면 한국 민족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1919년 3·1운동 때 일본이 보인 억압정책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 지도자들이 선불리 민족주의적 동원을 감행하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⁸⁴⁾ 이는 일본통치의 억압성과 효율성을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 퀴튼은 일본 당국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간 농촌과 산악지역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의 투쟁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퀴튼은 1919년 3·1운동 때 도시의 많은 애국자들이 농촌지역이나 산악지역으로 들어간 후 투쟁이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일본인들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들은 만약 “적절한 자

82) Quarton보고서, 4.

83) 징병제 실시 배경은 미야다 세츠코, 같은 책, 132-143 참조.

84) Quarton보고서, 1. Quarton보고서의 첨부 1, “Excerpts from Missionary Statements”의 에덤스와 놀란의 진술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실이다.

리”만 주어진다면 자신들의 일을 그만 둘 의사가 많다고 관찰했다.⁸⁵⁾ 즉 퀴튼은 한국인들이 일제에 대해 적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퀴튼은 일본 군대와 경찰의 조치들이 워낙 엄격해서 한국에서 민족주의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⁸⁶⁾ 이 점은 부영사들도 모두 지적하는 바였다. 에몬스는 한국인들 사이에 독립을 위한 희망이 만연하지만 일반인들은 대개 전쟁 상황에 “무심하고” 그들의 독립에 대한 희망은 “일관성이 없고 비조직적인” 것으로 보았다.⁸⁷⁾ 그것은 ‘한국병합’ 이래 일본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인해 형성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⁸⁸⁾ 그는 독립운동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거의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만주 일대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집단은 그 수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⁸⁹⁾ 당국의 철저한 탄압은 가시적인 독립운동을 불가능하게 했기에 독립운동은 “지하운동”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독립을 위한 봉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다만 “잘 조직되고 철저히 준비된 혁명적 운동”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⁹⁰⁾ 존슨도 한국인들의 반일적 태도는 만연하지만 일본 당국의 통제로 조직적인 운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이 전쟁에서 밀린다면 한국인들이 적극 나설 수 있다고 보았다.⁹¹⁾ 쿤스는 독립운동 조직은 희망이 없다고 보았으며 자신은 “[독립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격려”하고 싶지 않았기에 “의도적으로” 이들 조직에 대해 알기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⁹²⁾ 언더우

85) Quarton보고서, 1.

86) Ibid., 6.

87) Quarton보고서의 첨부 3, “Korean Nationalist Movement,” 1.

88) 에몬스도 이 점을 지적했다. Ibid.

89) Ibid., 2.

90) 에몬스는 도시는 일본의 자본이 많이 투자되었으므로 반일적인 분위기는 농촌에서 더 만연하다고 보았다. Ibid.

91) Quarton보고서의 첨부 6. “Memorandum” by U. Alexis Johnson, 2-3.

92) Quarton보고서의 첨부 5. “Memorandum” by Edward W. Koons, 2-3. 쿤스는 한반도 너머의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함께 미국으로 송환되는 독립장교로 선교사 브루스 헌트(Bruce F. Hunt)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기록했다. 아울러 H. H. 언더우드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드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비판은 만연하지만 일본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대적 행위를 감행할 민첩성과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그 같은 결과는 매우 효율적인 일본 통치 기구 덕분이었다.⁹³⁾

퀴튼이 보기에 한국인 민족운동의 중심은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상하이 등 3곳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민회(The Korean Nationalist Association)”였다.⁹⁴⁾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대한민국민회가 임시 정부를 지지했고 호놀룰루에도 대한민국민회 지부가 있었지만 세 지역 전체가 각각 대한국민회, 이승만의 동지회, 임시정부 등의 세력권으로 사실상 나뉘어졌으므로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다.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이승만은 적어도 1925년 임정개조론 논쟁이 있는 후부터 1941년까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

퀴튼은 그러므로 한국인들이 강력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외 민족주의운동의 활동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게다가 경성, 평양, 부산 등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이지 않다”고 보았다.⁹⁵⁾ 이러한 정보들은 한국 내 일본 통치의 강고함과 해외 한인지도자들의 낮은 인지도 등을 미 국무부에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정책적 제언

퀴튼은 보고서에서, 모든 보고서들이 동의한 대로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서 민족주의 정신을 “재점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군사적 성공을 통해서 노동자, 농

93) Quarton보고서의 첨부 4, “Memorandum” by Horace H. Underwood, 3.

94) Quarton보고서, 6. 한편 존슨 부영사는 만주에는 일부 일본과 전투를 벌인 “집단(bandits)”이 있지만 대체로 “중앙조직”은 없다고 주장했다. 간도지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며 만주와 러시아 지역은 거의 접촉이 없는 것 같다고 보았다. Quarton보고서의 첨부 6, “Memorandum,” 2-3.

95) Quarton보고서, 6.

민층에 영향을 주는 것과 “더 나은 조직, 지도자, 준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⁹⁶⁾ 비록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시베리아가 연합국 측으로 들어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소련과 연합국이 협력한다면 한국인들 내의 혁명적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⁹⁷⁾ 퀴튼 보고서의 특징은 소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의 소련 총영사관(티예보프[Tjevoff] 총영사, 3명의 부영사 이하 수십 명의 직원)의 우수성과 미국의 소련,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든 것이 그 예이다.⁹⁸⁾ 당시 소련과 일본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서울에 소련 영사관이 존치, 활동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각국 고위 정치인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태평양전쟁 초기에는 송환자들조차 전쟁 수행을 위한 연합국 측의 단결에 기대를 걸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해방 후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 미군정 측이 소련 총영사관 직원들을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북으로 쫓아낸 것과 대조적이다.⁹⁹⁾

퀴튼은 대한인국민회가 주로 한반도 밖에서 활동하며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대한인국민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사한 의도”를 가진 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다.¹⁰⁰⁾ 이는 일본의 패망이라는 목표 하에 한국인들을 단결시킬 필요를 제시한 것이지만 임시정부의 한인들에 대한 대표성 주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퀴튼은 샌프란시스코의 전쟁정보처(Office of War Information, OWI)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 쿤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H. H. 언더우드와 같이 한국어에 능한 인물이 정보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보고했다.¹⁰¹⁾

96) Ibid., 7.

97) Ibid.

98) Ibid.

99) 미군정은 1차 미소공위 결렬 직후 서울 러시아 총영사관의 폴리안스키(Poliansky)가 미군정에 반대하는 비밀스러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직원들을 북한으로 보내버렸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306-307.

100) Quarton보고서, 7-8.

101) Ibid, 8.

실제 쿤스는 전쟁정보처에서 한국에 대한 선전 작업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언더우드도 주로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해방 후 선교사 재입국에 대한 여러 정책수립에 참여하면서 틈틈이 미국의 정보기관에 전쟁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송환자들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표출하였다. 부영사 존슨은, 현재 한국인들의 “악명 높은 협력부재”와 “지도력 부재”를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의 현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합국이 승리할 시 한국을 즉각 독립시킨다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무조건 약속”하자고 주장했다.¹⁰²⁾ 에몬스 부영사는 1905년 이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보았다. 해방 후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데 교육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외부 강대국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값비싼” 지원이 없다면 전후 한반도는 1910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음모와 압력”에 취약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압력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립이 “어떤 효율적 형태의 국제적 협약”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⁰³⁾ 두 부영사는 전후 한반도 문제에서 각각 ‘독립’과 ‘국제적 지원’ 등을 주장할 정도로 한국의 궁극적 독립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이들 외교관과 선교사들의 보고서가 당시 미 국무부의 임정불승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다. 사실 국무부의 임정불승인안은 영국과 소련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미 전쟁 직후부터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⁰⁴⁾ 다만 이들 송환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해외독립운동단체에 대한

102) Quarton보고서의 첨부 6, “Memorandum,” 6. 쿤트는 한국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다. 즉시 독립이라는 존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정치문제는 상위의 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103) Quarton보고서의 첨부 3, “Korean Nationalist Movement,” 3.

104) Department of State to American Embassy in London, 1942년 5월 11일(895.01/113). 이 자료는 중국 측의 임정 승인 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영국 측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계속되는 이승만의 임정승인요청에 대해 국무부 차관보 버얼(A. A. Berle)이 주미외교부의 외곽조직인 ‘한미협회(The Korean-American Council)’ 회장 제임스 크롬웰(James H. R. Cromwell)을 불러서 국무부의 임정불승인과 개별인사들의 전쟁활용에

이해 부족과 일본의 한국사회에 대한 철저한 통제 상황을 미 국무부에 보고함으로써, 국무부 내에서 이미 확정된 입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한국인들에 의한 독립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교사들은 일제의 반영미 정책으로 1940년이 되면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일부 선교사들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교육사업이 아닌 다른 활동을 지속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1940년 가을에 있었던 미 국무부의 자국민 철수 권고를 받아들여 귀국했다. 잔류한 이들과 떠나간 이들 사이에는 상당한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 잔류한 이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후에야 포로교환 명목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상에서 국무부에 한국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무부는 임정승인과 한국인들의 대일전 동원 문제때문에 이들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했다. 외교관들의 보고와 더불어 북장로교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H. H. 언더우드, 쿤스, 애담스 등이 보고서의 주된 작성자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한국사회가 겪고 있던 전시체제의 성격과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동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의 지식을 높게 평가한 총영사 퀴튼이 쿤스와 언더우드 등을 미 정보기관에 추천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미국 정부의 전쟁수행을 위해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대해 설명했다. "Recognition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1942년 6월 30일 (895.01/152). *틀 다 RIAK, 1941-1944.*

2. 선교사 및 관련 인사들의 전시협력활동

1) 북장로교 선교사 관련 인사들의 활동

태평양전쟁 전후 미국으로 돌아온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후의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마지막 송환 선교사들은 그립솅호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 모임을 개최했다. 이 모임에 대해 에드워드 애덤스(Edward Adams)는 “그 목적은 우리가 여전히 한국 땅에 있을 때 모임을 개최함으로써 모임의 법적 성격을 확보하고 차후의 모든 모임들을 ‘보류된 모임(adjourned meeting)’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단 한반도를 벗어나면 조선선교부가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기에, 우리의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그 목적을 정의했다.¹⁰⁵⁾ 이들은 그립솅호에서도 4차례 회의를 하고 보고서와 해외선교부에 보낼 권고사항 등을 작성했다.¹⁰⁶⁾ 송환 선교사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체되었고 한국에 대한 선교정책의 중심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로 넘어갔다.

귀환 선교사들 중 일부 핵심인사는 귀국 직후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면담을 요구받았다. 그리하여 1942년 8월 15일, 5명의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1명의 남장로교 선교사가 정보당국자와 함께 모여 한국에 관해 면담했다. 참석자들은 에드워드 밀러(Edward. H. Miller), 쿤스, H. H. 언더우드, 애덤스, 루츠(Dexter. N. Lutz)와 남장로교의 존 텔미지(John. V. N. Talmage)였다.¹⁰⁷⁾ 정보 당국자의 질문을 요약하면 한국의 상황, 한국인 지도자의 존

105) Rodes an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26.

106) *Ibid.*, 26. 전후를 대비해서 해외선교부 소속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재,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지지, 그리고 미국의 한국독립 인정이 가져올 효과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그림솜호에서 국무부에 제출한 문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답변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전시경제 체제하의 고난,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개별적 저항, 일본인들의 강고한 통제 등이었다. 그리고 일본 당국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불만과 불안” 등을 언급했다.¹⁰⁸⁾ 아울러 이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참석자 모두 미국에 의한 한국독립 보장은 현 단계에서 “재앙이 될 것”으로 보았다.¹⁰⁹⁾ 앞서 여러 송환 외교관과 선교사들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독립을 보장한다면 일본 당국이 한국인들에 대해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을 우려했다고 볼 수 있다.

송환 선교사들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한반도에서 그들의 활동과 상황에 대한 마지막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¹¹⁰⁾ 선교사들은 억류 경험을 자세히 보고했는데 그들의 경험은 지역과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다. 서울의 쿤스는 감리교 신학교에 억류되어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보고했지만 루츠는 선교사 구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했다고 주장했다.¹¹¹⁾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들이 관리해 온 해외선교부 소속의 재산, 특히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이들 부동산은 전쟁 발발 후 일제 당국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분류·관리되었다.¹¹²⁾

107) August 15, 1942, “Interview,”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재미한인자료』(국가보훈처, 2005), 737-740(이하 OSS).

108) Ibid., 738.

109) 이들이 주장한 것 중 주목해야 될 대목은 약 1,500명의 젊은 조선인 여성들을 “군대를 위한 매춘굴”로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선교사들이 ‘중군위안부’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Ibid., 739.

110) 미 정보당국이 해외선교부를 방문, 연례보고서 일부를 수합해 가기도 했다. RG 140-10-8(PCUSA)는 쿤스 부부, 밀러, 언더우드 등의 연례보고서들이다. 연례보고서에는 선교사들의 동료들이 1940년 11월 중 마리포사(Mariposa) 호로 철수한 이후부터 태평양전쟁 발발 후 송환되기까지 겪은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다.

111) 쿤스의 경험은 “Examination by the Police(May 6-26, 1942),” 루츠의 경험에 대해서는 “Annual Report of D. N. Lutz from June 1, 1941 to August 20,” 1942, 7-10. 언더우드의 경험은 두 사람이 겪은 것의 중간 정도가 될 것이다. “Personal Report of Horace H. Underwood, 1940-1942” 9-10. 모두 RG 140-10-8 PCUSA.

H. H. 언더우드는 전후 한국 상황을 예측하면서 해외선교부에 몇 가지 건의를 제출함으로 전후 선교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한국에서 1941년 3월까지 사립 연희전문학교의 최고책임자였고 전쟁으로 수감될 때까지 연희전문학교의 교수로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선교사들이 마리포사호로 철수한 이후 태평양전쟁 전까지 서울의 YMCA, 피어선성경학교, 정신여학교, 기독교서회, 서울외국인학교, 영국왕립협회 조선지부, 외국인 묘지 등과 관계했기 때문에 그의 보고서는 조선선교부 재산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¹¹³⁾

연례보고서에서 언더우드는 전쟁 발발 전 자신의 활동과 역류경험을 소상히 밝히면서 전후 전망과 해외선교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에서 기독교 포교를 위한 기회가 많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미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우호적이기에 한국에 대한 재정적 도움과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¹¹⁴⁾ 한국 내 해외선교부의 재산은 선교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었다. 그러므로 언더우드는 해외선교부가 즉각 나서서 누가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확인해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기준은 건강뿐만 아니라 “개인적 적합성(personal acceptability)”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¹⁵⁾ 한국 내 해외선교부 재산의 활용과 선교사의 ‘개인적 적합성’은 사실상 교육철수와 마리포사호 철수에 반대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112) 이들 재산이 적산으로 관리되면서 당국은 한국인을 관리자로 임명해서 전시체제하에서 관리케 했다. 루츠는 평양의 숭실전문, 숭실학교 등의 재산을 끝까지 관리했다. 위의 “Annual Report of D. N. Lutz,” 4-5.

113) “Personal Report of H. H. Underwood, 1940-1942,” RG 140-140-10-8 PCUSA, 1-7. 언더우드는 자신이 관계한 단체들이 적산으로 관리되면서 전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14) Ibid., 12.

115) 언더우드는 파견되는 선교사들 중 소수(여성과 적어도 한명의 의사도 포함)가 먼저 한국 내 사정을 조사한 후에 차례로 선교사들이 입국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언더우드의 의견은 해방 후 해외선교부의 정책으로 그대로 집행되었다. 물론 언더우드는 자신의 가족이 한국에 재입국하는 선교사집단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Ibid.

재입국할 선교사들을 선발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 재과견될 선교사들은 한국인 기독교인들과 협의해서 어떤 활동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해외선교부가 “친미적(pro-American)이고 친기독교적(pro-Christian)인” 한국인들의 반응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¹¹⁶⁾ 그의 부친 H. G. 언더우드 가 미국 문명과 기독교를 구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도 ‘친미’와 ‘친기독교’를 동일선상에서 보았다.¹¹⁷⁾ 언더우드의 한국 내 억류 시 고생담과 조선체류에 대한 희망, 그의 한국 내에서의 입지, 그리고 삼촌 존 언더우드(John T. Underwood)가 해외선교부에서 차지했던 위치 등은 그의 의견을 해외선교부에서 매우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전후 한국 선교정책은 거의 언더우드가 제시한 노선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태평양전쟁기간 거의 대부분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일했으며 때로는 해외선교부의 한국 관련 “임시 책임자(acting director)”로 활동할 만큼 영향력이 컸다.¹¹⁸⁾

한편 언더우드는 미 정보기관과 잦은 면담을 통해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 해군정보국(Office of Naval Intelligence; ONI), 육군정보국(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MIS), 연방조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전쟁정보처(Office of War Information; OWI) 등과 귀환 직후인 1942년 9월 30일, 1943년 4월 26일, 1945년 3월 27일, 31일 등 최소한 4차례에 걸쳐 면담했다. 특히 광범위한 답사로 얻은

116) 재입국 선교사들과 한국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협의와 관계 재설정엔 언더우드가 1930년대 후반 교육철폐수 반대 시부터 강하게 주장해온 점이다. Ibid., 12-13.

117) H. G. 언더우드를 포함하는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미국과 선교에 대한 인식은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144-154; H. G. 언더우드의 미국 문명관과 기독교의 관계는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305-306 참조.

118) 언더우드는 1942년 미국 귀환 후 줄곧 뉴욕의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활동하다가 1944년 3월 1일 목사안수를 받았다. 전략첩보국(OSS)과의 관련은 당시 OSS 워싱턴 지부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문제의 전문가로 일한 어네스트 피셔(J. Earnest Fisher)의 추천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 J. Earnest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270-271.

그의 한국 지리에 대한 정보는 정보당국이 놓칠 수 없는 것이었다.¹¹⁹⁾ 면담 내용은 한국의 도로, 철도, 교량, 공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라든가¹²⁰⁾ 철도의 구체적 구간(예를 들면 용산-수색 구간, 청량리 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였다.¹²¹⁾ 그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정보만 아니라 미 육군부(War Department)에 “한국의 주요인물(Who’ Who in Korea)” 명단을 작성, 제출했다.¹²²⁾

전쟁이 막바지에 다가오자 1945년 3월 31일, 언더우드는 정보기관과 한국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교환 성격의 면담을 했는데 정보기관이 그가 “매우 협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당국에 대한 정보제공에 우호적이었다. 그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철도와 한국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신이 휴가를 보낸 황해도와 지리를 설명하면서, 연합군이 서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해 적대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소수 정예부대가 충분히 침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²³⁾ 이는 당시 진행 중이던 OSS의 한반도 침투계획과 관련이 있다.

언더우드를 포함해서 당시 서울과 경기도 권역에서 활동한 상당수 원로 선교사들은 정치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했다.¹²⁴⁾ 세브란스의전과 연희전문교의 교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올리버 애비슨(Oliver R. Avison)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1942년 9월 22일 이승만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초청으로 워싱턴에 와서 한국을 돕는 방안을 한인들과 상의했다. 그는 한국의 초대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의 딸이자 오랫동안 이

119) 한국에서의 그의 사냥, 백두산, 항해활동 등에 대해서는 손인수, 『원한경의 삶과 교육사상』 3장 “원한경의 취미와 모험심” 참고. 그는 자동차를 타고 곳곳을 누볐다.

120) April 26, 1943, “Interview,” OSS, 664-668. 이 문서에 손으로 그린 평양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121) March 27, 1943, “Interview,” Ibid., 758-760.

122) March 31, 1943, “Interview,” Ibid., 714-717.

123) 위의 March 31, 1943, “Interview,” Ibid., 717.

124) 이승만 부분은 안종철, “문명개화에서 반공으로: 이승만과 개신교의 관계의 변화,” 『동방학지』 145집(2009년 3월), 198-202에 수록되었다.

화여전 교장을 역임한 앨리스 아펜젤러(Alice Appenzeller)와도 이 문제를 상의했다.¹²⁵⁾ 그 결과 에비슨은 이승만의 지원 하에 ‘기독교인친한회(Christian Friends of Korea)’라는 조직을 새롭게 결성했다. 이 조직은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 한국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하였다.¹²⁶⁾ 조직의 결성 목적은 미국이 이승만과 임정을 지원하도록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미 정보당국의 의견에 따르면, 에비슨은 임시정부 구미위원부의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¹²⁷⁾ 에비슨은 동료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구한말부터 이승만의 개혁에 대한 생각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¹²⁸⁾ 그러므로 에비슨과 이승만의 관계는 1894년 이승만이 배재학교에 입학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비슨은 한국독립운동에 대해 이승만을 지지해야 할 이유로 흥미롭게도 한국독립 문제와 선교활동의 연관성을 들었다. 즉 한국이 독립을 얻지 못한다면 미래에 “직접적 선교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⁹⁾ 만약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 독립이 성취된다면 한국 내 선교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125) October 17, 1942, “Dr. O.R. Avison’s Activities in Regard to Korea”에 첨부된 10월 5일자 에비슨의 편지. OSS, 351. 이승만은 자신과 아펜젤러와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서 그의 딸 앨리스를 불렀던 것 같다.

126) 이 단체 결성을 위해 약 600여 통의 편지가 미 전역으로 발송되었다. June 5, 1943, FBI Director (John E. Hoover) to George V. Strong(G-2, War Department), “Memorandum for Colonel Martin,” Ibid., 347.

127) 물론 에비슨은 해방 후 한국 거주 2천 4백만 한국인들이 대표문제에 관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단서는 달았다. June 5, 1943, FBI Director (John E. Hoover) to George V. Strong (G-2, War Department), “Dr. O.R. Avison’s Plans for Working with the Koreans,” Ibid., 345-346.

128) October 17, 1942, “Dr. O.R. Avison’s Activities in Regard to Korea”에 첨부된 10월 5일자 에비슨의 편지. Ibid., 352-353.

129) Ibid., 352. 이승만은 ‘105인 사건’과 3·1운동 등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기독교탄압으로 선전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는 Chairman, Korean Commission(구미위원부) to Robert Lansing(국무장관), 1919년 8월 28일(895.00/655), *RIAK, 1910-1929*.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안중철, “3·1운동, 선교사 그리고 미일간의 교섭과 타결,” 70-71 참조.

구한말부터 한국의 독립운동에 크게 공감했던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¹³⁰⁾도 1942년 3월 1일 이승만, 서재필과 함께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인자유대회(Korea Victory Congress)’에 참여했고 이후에도 이승만을 강력하게 지지했다.¹³¹⁾ 헐버트는 이승만의 사설고문단(Kitchen Cabinet) 역할을 한 한미협회(The Korean-American Council)의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¹³²⁾ 헐버트의 선전활동은 두 가지에 집중되었는데 첫째, 일제 한국통치의 “잔인함과 억압성”은 “기본적인 정의와 기회의 박탈”이라는 것과 둘째, 한국인들은 “자유롭고 진보적인 사람들로서” 세계에 기여할 “무한한 역사·문화적 실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었다.¹³³⁾ 당시 이승만이 서북지역에서 활동한 전제 선교사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실치 않지만 서울지역에서 활동한 원로 선교사들은 이승만을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대표로 확고히 지지하였다. 실제 이승만의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의 인맥은 상당히 중첩되었다.¹³⁴⁾

한반도에 대한 당시까지의 선교현황을 자세히 확보한 미 복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해방 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

130) 헐버트는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 교사로 한국에 부임해서 서울사범학교 교장, *The Korea Review*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다가 고종의 부탁을 받고 1907년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다. 후일 미국에 돌아가서 목사, 저술가, 연설가로 활동했다. 1949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 참석차 한국에 들어온 후 8월 5일 사망해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Clarence N. Weems Jr., “Profile of Homer Bezaleel Hulbert,” *Hulbert’s History of Korea* (New York: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1962) 참조.

131) Ibid. 58. 헐버트는, 일찍이 워싱턴회의(1921-22)에 한국문제를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1921년 3월 1일 개최된 상해임정 구미위원부 주최 한인 집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401. 1890년대 헐버트는 배재학교 소제 삼문출판사에서 *The Korea Review*를 출판할 때부터 이승만을 알고 있었다.

132) 이승만의 워싱턴로비 그룹에 대해서는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61-65.

133) Clarence N. Weems Jr., “Profile of Homer Bezaleel Hulbert,” 61. 헐버트의 만일논리와 기독교문명화 논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안드레 슈미드, “오리엔탈 식민주의의 도전: Anglo-American 비판의 한계,” 『역사문제연구』12(역사비평사, 2004) 참조.

134) 한미협회는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기독교인친한회’는 기독교계에 대한 친한 여론 조성작업 등을 담당했다.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428-432.

고, 전후 선교정책을 수립하는 모임을 몇 차례 개최했다. 아래의 【표 3-6】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전후 한국관련 모임을 정리한 것이다.

【표 3-6】 태평양 전쟁기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관련 모임

날짜	개최지/ 참석자	협의내용	특이사항
1942년 8.31-9.1	뉴욕/ 일본, 한국, 태국, 남중국, 필리핀 등 160여명의 선교사	선교사 실행위원회 회장 밀러(Edward H. Miller)가 억류경험을 소개	귀환자 환영
1943년 3. 11-13	Horace H. Underwood, William N. Blair, Archibald G. Fletcher, Harold Voelkel 등	일본 패망 후 예상되는 변화	3월 12일 한국관련 모임
1944년 3. 4	뉴욕	한국에서 일한 6개 선교단체의 답신서를 토대로 보고서 준비	“Some Comments and Actions on Resumption of Work in Korea”라는 보고서 채택
1944년 9.20-22	뉴욕/ 해외선교부 실행위원회	전후 한국관련 선교사업 착수 시 예상되는 문제점 토론/ “Korea Consultative Conference”	J. Leon Hooper가 “Basic Issues Confronting Post-war Missions”을 낭독. Chosen이라는 명칭이 Korea로 바뀜
1945년 5. 14	뉴욕/ 해외선교부 실행위원회	한국에 들어갈 선교사들을 A, B 등급으로 분류	한국인들과 협의체 구성을 결정/ 보고서 “Procedure for Reentering Occupied Fields” 채택

출전: Rhodes an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 II. 1935-1959, 27-28;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문서(PCUSA) 참고.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1943년부터 미국의 대일전 승리를 전제로 전후 변화될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1944년 9월 20일 개최된 모임에서 해외선교부 지도자들은 미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전후 한국관련 선교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선교위원회의 명칭을 조선

(Chosen)선교위원회에서 한국(Korea)선교위원회로 바꾸었다. 즉 식민지 한국이 해방되어 원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¹³⁵⁾

해외선교부는 1945년 5월의 모임에서, 전쟁 후 변화될 현실을 토대로 미국선교사들로 구성되는 한국선교부(the Mission)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한국 교회와 긴밀히 연결될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 것을 결정하였다.¹³⁶⁾ 이 결정은 언더우드의 영향력 또는 그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립된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의 선교부가 한국인들 위에 있다는 인상을 피하고 한국인 지도자들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들고자 했다. 이것은 식민지기까지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놀라운 변화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 7명의 한국인 목사를 배출했고 노회를 구성했고 1912년에 총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보수적인 신학은 식민지시기 내내 한국교회를 통제하였고, 선교사들은 미 장로회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장로회 총회에서도 투표권을 가졌다.¹³⁷⁾ 즉 1907년부터 1922년까지 선교사들 중 목사는 한국인 장로교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졌다. 비록 1932년에 장로교 헌법이 개정되면서 한국교회가 좀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선교사들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유지하였다.¹³⁸⁾

식민지 시기 미국인들의 조선선교부와 한국인 교회조직이라는 이원적인 형태에서 선교부가 가진 우월성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가 적어도 형식적이거나 타파하려고 한 것은 큰 변화였다. 선교사들은 전후 한국이 독립하면 한국 장로교회의 위상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135) 공식적으로 모든 문서에서 “한국(Korea)”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1945년 11월 4일이었다.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2월 10일, RG 140-9-14(PCUSA), 1.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Chosun이나 구한말의 Core, Korea 등을 일체가 ‘한국병합 후’ Chosen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호, “국호영문표기, Core에서 Korea로의 전환과 의미,” 『역사와 현실』, 58권(2005. 12) 참조.

136) Rhodes an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28.

13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84-285.

138) Charles A. Clark, “Fifty Years of Mission Principles, Practice and Organization,” *The Fif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62-65.

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30년대 후반 신사참배문제로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긴장과 갈등을 겪었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후에 보겠지만 해방 후 이러한 정책이 남한에서 일시 반영되었지만 재정적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선교부는 다시 영향력을 복구했다. 또 한국전쟁으로 한국교회가 피폐해지면서 이후 선교부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¹³⁹⁾

일본의 패망이 확실시된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기존의 조선선교부 회원들에게 전후 선교사 파견에 대한 지침을 발송했다.¹⁴⁰⁾ 해외선교부는 선교사들과 “현지교회”의 관계를 주의 깊게 재정립해야 할 필요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선교사들 대부분의 귀환은, 필요한 선교사들의 종류와 숫자 그리고 그들이 현지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의 형태에 대해 다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건물들의 파괴, 다른 종류의 시설에 대한 피해와 손실이 모두는 해외선교부가 협력할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재고를 필요로 한다. 이 기간 **홀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현지교회는 새로운 독립의 정신을 획득해왔다. 그것은 선교사들과 교회에 대한 관계, 해외선교부가 추진할 조직적인 형태에 대해 새로운 고려를 요구할 것이다.**(강조: 필자)¹⁴¹⁾

이 결정은 이미 태평양전쟁 직전부터 한국인들이 한국교회를 지도했다는 점, 한국기독교인들의 전쟁협력을 둘러싼 갈등 등을 선교사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교사들은 앞으로 진행할 일과 함께 기존에 해외선교부 명의로 소유했던 부동산의 처리, “선교지의 현지인

139)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미국교회에 대한 재정적 종속성으로 인해 선교사들의 영향력은 다시 증대했다. 1950년대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인철, 『한국기독교교회와 국가·시민사회』 특히 113-123참고.

140) 이 회람 문서는 1942년 8월 19일자 문서 이후 처음으로 조선선교부에 보내진 것이다. 그러므로 1944년 9월 회의의 결과를 반영, 수신처가 조선선교부(Chosen Mission)가 아닌 한국선교부(Korea Mission)로 되어있다.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6월 29일 RG 140-2-28 PCUSA.

141) Ibid., 1.

(nationals)/현지교회(national churches)”와의 관계 등을 새롭게 다루어야 했다. 당시 선교부와 관련된 부동산은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선교사 거주지와 부속지, 둘째 교회건물과 부지, 셋째 기독교 기관, 즉 학교나 병원 건물과 부지, 그리고 넷째가 그 외의 부동산이었다.¹⁴²⁾ 새로운 정책은 선교사 거주지와 부속지는 원래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되 이 부동산이 만약 교회나 기관과 밀접히 관계된다면 해외선교부가 그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선교부 소유의 교회건물과 부지는 가능하면 한국인들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사용토록 할 것이며, 다만 한국 내 “교회상위기관(higher church courts)”이 해외선교부의 “권리증(equity)”을 양도받았을 때는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독교 기관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이사회나 법인체가 그 용도를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즉 기독교적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 하에 현지 기독교계에 부동산을 넘기는 것이 대체로 파악되었다.¹⁴³⁾

전후 현지에 파견되는 선교사들의 숫자를 제한하고,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몇 가지로 한정해야 했다. 그 일은 “구호, 영적사역(spiritual ministry), 현지사정과 교회에 대한 조사와 조연자 역할”이었는데 해외선교부는 이 일을 담당할 이들을 우선 A그룹으로 분류했다.¹⁴⁴⁾ 이들의 명단과 활동지역은 【표 3-7】 과 같다. 이 명단에는 로스코 코옌을 제외하고 신사참배 반대와 교육철폐를 주장했던 인물들은 거의 없다. 해외선교부가 신사참배 문제에서 서울지역 교육선교사들의 입장을 내심 지지한 것과, 언더우드처럼 한국내 ‘소수파’ 선교사들이 전쟁기간 동안 해외선교부에서 직접 일한 것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해방 직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한반도가 전화(戰禍)를 거의 입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A그룹에 6명을 추가, A그룹은 총 16명이 되었다. 이 중 9명이 1946년 초부터 차례로 입국했다.¹⁴⁵⁾ 이들의 역할은 한국에서 긴급구호를 담당하는 것이었는

142) Ibid., 6.

143) Ibid., 7.

144) Ibid., 1.

145)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0월 22일, RG 140-2-28 PCUSA; Harry A.

데 이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 그룹은 잠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므로 많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현지에서 구성될 “긴급실행위원회(Emergency Executive Committee)”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¹⁴⁶⁾ 잠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와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표 3-7】 해방 후 재입국 내정 복장로교 선교사 A그룹

선교사 이름	활동지역	지위(전전/ 전후)
Edward Adams	대구	성경학교 교장/ 미 연합장로회 총무, 연회 이사, 계명대 이사장, 학장 등
John D. Bigger	평양	평양연합기독교병원/ 미군정 자문관, 안동 베이커병원 재건
Allen D. Clark	만주, 청주	농촌 선교/ 장로회신학대학, 피어선성경학교 교수, 대한성서공회 번역위원
Roscoe C. Coen	서울	연회전문 강사/ 영락교회 맏인사역, 조선기독교연합(NCC) 선교부 대표 등
Archibald G. Fletcher	대구	대구 동산병원 원장/ 세브란스 이사, 동산병원, NCC 실행위원, 피난민 구호사업
Harold H. Henderson	대구	계성학교/
Clarence S. Hoffman	강계, 선천	영실중학, 신성중학 교장/
Olga C. Johnson (여)	청주, 강계	여성선교, 성경학교/ 안동 경안고 교장
Mrs. Frederick S. Miller (여)	서울	남편이 연동교회 기초
Horace H. Underwood	서울	연회전문 교장/ 미군정, 연회 이사, 각종 기독교 단체 이사

출전: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6월 29일(PCUSA), 『내한선교사 총람 1884-1984』 참조.

A그룹의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언더우드, 헨더슨, 아담스)이나 의료(비거, 플레처), 문서선교(클라크, 코엔) 등에 관계한 인사들임을 알 수 있고 전전과의 인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A그룹 선교사들의 입국 후, 복장로교 해외선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28-29.
146)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6월 29일, 2.

교부는 대표를 파견해서 A그룹 선교사와 한국인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확립하기로 했다.¹⁴⁷⁾ 이러한 새로운 정책 확립 전에 현지의 필요에 따라 파견될 선교사들은 B그룹으로 명명되었다. A, B에 속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예비인력(reserve force)” 즉 C그룹에 속했는데, 이들은 현지 긴급실행위원회와 한국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될 계획이었다.¹⁴⁸⁾

한편 이들 선교사들은 모두 적어도 3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¹⁴⁹⁾ 그러므로 수많은 전전의 선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은퇴하거나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¹⁵⁰⁾ 식민지시기에 활동한 선교사들과 해방 이후 재입국할 선교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일어난 것이다. 전쟁 중 몇몇 선교사들은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¹⁵¹⁾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H. H. 언더우드였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1946년 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으므로 1948년 정도가 되어야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어 선교사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¹⁵²⁾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선교사 파견은 전쟁의 진행상황과 종전 후 한국에 수립될 정치체제의 성격에 달려 있었다.

2) 한국관련 미 정부 관리들의 한국문제 인식

태평양전쟁 발발 후 선교사 또는 선교사 자제들이 정부·군부의 각급

147) Ibid..

148) Ibid., 2.

149) Ibid., 4.

150)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조지 맥쿰(George S. McCune)으로 그는 1941년 12월 4일 사망했다. 후자는 찰스 클락(Charles A. Clark)이다. 클락에 대한 일화는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92-294.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국으로 귀국 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강력히 소망했다.

151) 앞의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6월 29일, 9-10. 해외선교부에 남아서 일하게 된 이들은 John F. Genso, William M. Baird, Jr., Archibald G. Fletcher, Edward Adams, Horace H. Underwood이다.

152) Ibid., 3.

기관과 관련을 맺으며 미국의 전쟁 수행에 협력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이 시기 선교사 및 관련 인사들의 한국 정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사 출신 미국 관리들의 한국문제 인식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무부 내 한국담당 인사들의 한국 정세 인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시 서울 주재 총영사관 인사들이 각 교과 선교사들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고 그들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

한국 관련 국무부 담당자들의 한국 인식

1930년대 서울·심양·동경 등에서 영사로 근무한 랭던의 인식부터 살펴보자. 태평양전쟁기 한반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전쟁종결 전후에 있었던 신탁통치와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¹⁵³⁾ 랭던은 앞 장에서 언급한 대로 1930년대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철저히 일본 국내 문제로 인식하면서 서북지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신도종교론’적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통치를 긍정적으로 본 것처럼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 우호적이었는데¹⁵⁴⁾ 1930년대 총독부의 ‘농촌진흥운동’이 지향한 “소작문제의 온건한 해결,” “지주자본의 산업자본화”라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¹⁵⁵⁾ 이는 사회주의자들의 토지개혁모델을 비판한 것이기도 했다.

랭던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국무부 내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영토소위원회에 소속되어 한국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랭던은 한국인들 대부분이 문맹으로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153) 랭던의 1942년 보고서(895.01/79)와 45년 11월 보고서의 연속성과 차이점에 대한 흥미 있는 분석은 김지민, “해방 전후 랭던의 한국문제 인식과 미국의 정부수립정책,” 『한국사연구』 119호(한국사연구회, 2002) 참조.

154) 김지민, 같은 논문, 157-158.

155) Langdon to FE, ACC, EA, No. 19, 1934년 5월 19일(895.61/6), 위의 논문, 159에서 재인용.

것을 문제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국가를 이루기 위해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강대국들에 의해 보호·지도·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¹⁵⁶⁾ 이것이 바로 사실상 신탁통치구상이었다. 신탁통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부정을 내포한 문제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 당국이 발표한 공식정책은 ‘추축국’이 점령한 나라들의 망명정부나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¹⁵⁷⁾

랭던은 계속해서 한국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 근거는 “우리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아시아에서 우리들의 영토(possessions)로부터 쫓겨나면서 한 아시아 국가에 독립을 약속한다면, 이는 한국의 명분(cause)에 손해가 될 것이며, 일본과 그들의 동맹국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또 우리들의 친구들[연합국]을 화나게 하는(irritate) 것”이라는 점이다.¹⁵⁸⁾ 그는 중국, 소련과 협의한 후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즈벨트는 랭던 보고서가 제출된 3일 뒤 라디오 연설에서 식민지하 한국인들의 노예상태를 인정하면서 대서양헌장에 규정된 자결의 원칙을 지지했다.¹⁵⁹⁾

랭던 보고서 중 흥미로운 점은 중경 임시정부 인사들을 선별적으로 활용, 해방 후 미국이 한국 ‘임시정부’(중경 임시정부가 아닌)를 세울 때 도움을 얻도록 하자고 한 점이다. 그는 해외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활용해서 ‘임시정부’를 세운 후, 신탁통치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와 협의해 한국을 통치할 것을 주장했다.¹⁶⁰⁾ 한국인들을 선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그의

156) “Some Aspects of the Question of Korean Independence” 1942년 2월 20일 (895.01/79). *RIAK, 1940-1944.*

157) 미국의 인정불승인과 신탁통치문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의 “보론: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인정 불승인정책,” 492-500.

158) 앞의 Langdon의 1942년 2월 20일 보고서.

159) 매트레이는 랭던의 연설이 루즈벨트의 연설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in Korea*, 9.

160) 김지민, 164-166. 후원 국가들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입장은 한국인보다는 열강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점에서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입장은 1942년 2월 27일부터 3일간 열린 한인자유회의(Korean Liberty Conference)에 국무부 극동국장 스탠리 혼백(Stanley Hornbeck)과 함께 참석한 후 더 굳어졌을 것이다. 이 대회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주미외교위원부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가 미국 정부 및 일반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최한 행사였는데 두 국무부 직원들이 보기에, 이승만을 위시한 재미 한인지도자들은 한국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선전활동에 주로 치중하였다. 국무부 관리들은 이 대회를 미 정부와 언론을 위한 “선전공세”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¹⁶¹⁾

랭던으로 대표되는 미 관리들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일본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과 연동되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무부에서 전쟁 전후 대일관계를 담당한 인사들은 전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여전히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1932년부터 1942년까지 주일대사를 역임한 그루였다. 이미 지적한 대로 그루는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신사참배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입장을 두둔한 적이 있었다. 이는 그가 미 동부출신으로 신앙적으로 ‘유니테리언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입장을 유지했으므로 보수적인 기독교계와는 다른 입장에서 사태를 본 것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¹⁶²⁾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천황가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천황숭배와 관련된 신사참배 문제를 하나의 국가의례로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천황가의 사람들, 예를 들면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시데하라 키지로[幣原喜重郎], 히로다 코오키[廣田弘毅], 마즈다이라 츠네오[松平恒雄]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¹⁶³⁾ 이들은 대체로 영미협조

161) 이 회의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73-74.

162) 미 동부 특히 보스턴 지역의 지식인들은 18세기 말부터 유니테리언(Unitarian)주의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니테리언주의는 성경의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신의 단일성과 합리주의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조이다. 류대영, 『미국종교사』(청년사, 2007), 211, 248-250. 한편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자유주의’, ‘근대주의’ 등 다양한 신학적 조류에 대해서는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Fundamentals, Modernists, and Moderates*, 19-20.

163)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と、王道-米國大使の周辺』, 76-77.

하에서 중국에서의 이권확보를 추구하고자 했던 인물들로 종전 직전에 그루에 의해 일본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된 인물들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평양주재 선교사 맥쿤, 홀드크로프트 등이 견지한 ‘신도종교론’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물론 국무부 내에는 그루와 두우만 등 ‘일본통’이 견지한, 전후 ‘천황제 유지’ 입장에 비판적인 인물들도 있었다. 특히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의 지식인들 가운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인물들이 있었다. 토마스 비슨(Thomas A. Bisson)은 가장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IPR의 전후 대일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는 그루가 천황의 주변 인물들을 ‘온건파’로 규정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었다.¹⁶⁴ 하지만 대체로 전쟁 전 일본에 거주한 외교관들이나 선교사들의 입장이 미국의 전후 대일정책에 반영되었다.

천황제 문제와 전후 개혁주의 세력에 대한 미국의 전후 구상에는 영국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랜 동안 주일 영국대사관 외교관리를 역임한 학자이자 관료인 조지 샌섬(George Sansom, 1883-1965)¹⁶⁵이 미영간 대일정책 조율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영국왕립협회 일본지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전후 미국의 일본전문가를 육성한 인물이었다. 그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전후에 천황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⁶⁶ 샌섬은 1942년 말 개최된 태평양문제연구회 회의에 “전후 대일관계”(Postwar

164) 같은 글, 103. 비슨의 전후 일본에 대한 구상을 보여주는 글은 Thomas A. Bisson, “The Price of Peace for Japan,” *Pacific Affairs*, 17/1 (1944)이다. 미국의 대일정책 중 천황제 문제와 헌법 개정의 문제는 안중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82-88 참조.

165) 샌섬은 1904년부터 1940년까지 무려 36년간 동경의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당시 서구의 최고 일본전문가였다. 일본에서 근무 시 영국 왕립협회 일본지부를 라이샤워와 함께 운영했다. 태평양전쟁 발발 후 콜롬비아대학에서 일본학을 가르치다가 워싱턴에서 미국과 영국 간 대일정책의 점검과 조율을 담당했다. 국무부 일본과장이 된 휴 보튼의 정신적 스승으로 전후 콜롬비아대학 부설 일본학연구소 초대 소장(1948-1952)이 되었다. Hugh Borton,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27-74.

166) 샌섬의 전후 구상은 細谷千博, “ジョージ・サンソムの敗戦日本: 一『知日家』外交官の軌跡” 참조.

Relations with Japan)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서 그는 비록 전후 일본이 해외영토를 잃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일본에 대한 강력한 징벌은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전후 일본 사회 개혁에 연합군이 “직접 참여”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참여하자고 주장했다. 샌섬은 일본의 한국과 대만 식민통치에 대해, 물질적 측면의 “생산능력과 통신, 보건 시설 등의 발달을 통해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보았고 “실질적 이유”에서 전후 한국과 대만에서 일본의 행정권한을 일부 남겨두는 안을 주장했다.¹⁶⁷⁾ 비록 그가 일본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되지만 식민지 문제에서는 일본 내 천황 측근들의 사고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루와 샌섬에게서 나타나듯이 영국과 미국 외교관들의 사고는 1930년대까지 지속된 영·미·일 협조 외교체제하에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한 사고 속에서 연합국의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구상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¹⁶⁸⁾

선교사 배경의 미 정보담당 인사들의 한국문제 인식

국무부 관련 인사들의 한국문제 인식은 식민지하에 형성된 미 외교관들의 인식을 반영하였다. 그들은 대체로 한국인들의 독립능력이 부족하므로 연합국에 의한 신탁통치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기를 설정하더라도 한국인들의 능력유무라는 판단기준과 다른 근거를 들고 있던 인사들도 있었다. 특히 선교사 2세대 중 일부 인사들은 그런 입장을 보여 주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선교사 관련 인사들의 세대차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지 맥쿤(George M. McCune, 1908-1948)¹⁶⁹⁾이나 클라렌스 워스(Clarence

167) 샌섬의 일본 식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은 油井大三郎, 『未完の占領改革: 知識人と捨てられた日本民主化構想』(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155-159 참조.

168) 신탁통치는 서구와 제 3세계의 오랜 접촉에서 파생된 산물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서구사회가 구한말부터 가져온 ‘독립능력 부재’라는 평가와 관계있다고 구대열은 분석했다.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역사비평사, 1995), 특히 238-246과 5장.

169) 그는 평양주재 북장로교 선교사 맥쿤(George S. McCune)의 아들이었다. 그의 한국명은 윤안국(尹安國)이었다. 이동진 목사와의 인터뷰(2006년 9월 3일). 맥쿤은 옥시덴탈

N. Weems Jr., 1907-?)¹⁷⁰⁾ 등 젊은 선교사 2세대들은 평양과 서울에서 10대를 보내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으며 한국인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물론 해럴드 노블(Harold J. Noble, 1903-1953)에게서 보듯이 아버지가 이승만과 관련이 깊었으므로 이승만의 워싱턴로비그룹에서 임정승인을 적극 지지한 인사도 있었다.¹⁷¹⁾ 이들은 미국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막 끝내고 OSS¹⁷²⁾나 해군정보기관인 ONI등에서 한국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실무진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했고, 해방 전후 각기 국무부, 육군부 등에서 한국관련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으며, 관료 퇴임 후 미국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맥쿤은 OSS 워싱턴 사

(Occidental)대학에서 학·석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에서 194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이다. 그의 일생과 한국학에 대해서는 Jong Chol An, “Making Korea Distinct: George M. McCune and His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7 (2004) 참조. 맥쿤 가족(GSM, GMM, SM) 문서는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Collection 289-290)에 소장되어 있다.

- 170) 1909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역임한 클라렌스 워스(Clarence N. Weems, 1875-1952)의 아들이다. 워스의 이력서로 짐작되는 문서에 따르면 그는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학사, 석사)를 거쳐 하버드대학에서 1938년 “Comparative Methods of Japanese Expansion in Korea and Manchuria”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쟁 전 외교정책연합회(Foreign Policy Association)에 “Rebuilding the U. S. Merchant Marine”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ugust 4, 1942, “Memorandum for Colonel Pettigrew: Personal Data,” OSS, 663. 그는 해방 직후 하지 장군의 비서로 김규식 중심의 좌우의통합을 지지했다.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89-90. 퇴역 후 대학(Mansfield State College, George Washington)에서 가르쳤다. 1962년 헐버트의 *History of Korea*를 2권으로 편집, 출간했다.
- 171) 노블은 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오리건(Oregon)대학교에서 역사와 국제정치를 가르치다가 해방 후 언론(Saturday Evening Post)의 통신원으로 전후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기고했다. 일본 미군정(1947-1948)을 거쳐 한국 미군정(1948-1949)의 정치참모, 그리고 건국 후 미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1949-1951)을 역임했다. 투철한 반공의식을 가졌다. 그에 대해서는 그의 *Embassy at War*(Seattle&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v-xviii 참조.
- 172) 루즈벨트는 1941년 7월 11일 정보조정국(Coordinator of Information: COI)을 창설했고 이 기관이 1942년 7월 11일 전략첩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이하 OSS)이 되었다. 이 조직의 창설, 활동, 해체, 그리고 한국관련 문서 목록은 방선주, “미국 OSS의 한국독립 관련자료연구,” 『해방 전후사 사료연구 1』(선인, 2002) 참조.

무실에서, 워스는 OSS 샌프란시스코 사무실과 중경에서 활동하면서 미주 한인들과 중국의 임시정부에 대한 조사와 정보교환에 종사했다.¹⁷³⁾

OSS나 ONI 등의 정보기구 성격상 이들의 활동이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¹⁷⁴⁾ 1947년 창설된 미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과 달리 이들 기구들은 비록 자유로운 연구가 보장되긴 했지만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이 적었다. 또 한국인들의 파당성, 일본 통치에 대한 저항의 불가능성을 들어 임정승인과 한국인 활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국무부 고위 관료들의 벽을 넘어설 수 없었다.¹⁷⁵⁾ 그러나 OSS에서 일한 맥쿤과 워스의 의견은 국무부 측의 신탁통치안이나 임정(또는 다른 한인단체) 불승인안과 다소 달랐다. 이들의 인식이 당시 미국의 대한인식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OSS의 전신인 정보조정처(Office of the Coordinator of Information; COI)는 윌리엄 도노반(William J. Donovan) 국장의 지휘 하에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

173) 워스는 전쟁발발 후 1942년 2월부터 현역 중위로 G-2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다가 1943년 3월 8일부터 OSS 샌프란시스코지부에서 일했다. 맥쿤은 워스가 OSS로 오게 된 것을 친구로서 축하했다. Letter, McCune to Weems, March 15, 1943,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4(국사편찬위원회, 1994), 478-479. 이후 OSS연구조사와 파견으로 해방 후인 1945년 10월 초순까지 중국 쿤밍[昆明]에서 활동했는데 이 지역의 광복군 훈련을 실질적으로 책임졌다. OSS 근무 후 버지니아 주의 미육군 미군정학교(School of Military Government)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몇 개월간 한국 관련 강의를 했다. 그의 경력에 대해서는 앞의 October 10, 1945, "Memorandum for Colonel Pettigrew: Personal Data," OSS, 287.

174) OSS의 한국 관련 작전에 대한 가장 포괄적 연구는 장세영, "태평양전쟁기 미국 전략 첩보국(OSS)의 대한반도 정보전"(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논문, 2005) 참조. 장세영의 연구는 구체적 인맥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OSS가 국무부의 고위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을 몇 가지 지적했다. 즉 현지 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활동, 종전 직후 OSS의 해체(1945년 10월 1일 해체), 맥아더와의 불화, 하지의 급작스러운 한반도 투입 등 설득력 있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175) 워스는 고위결정자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강한 인종적 편견(racist doctrines)"을 견지했다고 보았다. Clarence N. Weems Jr., "Washington's First Steps Toward Korean-American Joint Action (1941-43)," 『韓國武裝獨立運動에 關한 國際學術大會 論文集』(社團法人 韓國獨立有功者協會, 1988), 294-295.

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인 충칭[重慶]에서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인 활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내한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의 조카인 에슨 게일(Esson M. Gale, 1884-1964)도 전쟁발발 직후 COI에서 일하면서 한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대일전에 활용하는 안을 제출했다.¹⁷⁶⁾ 이러한 정보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맥쿤과 워스는 태평양전쟁 초기인 1942-43년 미국정부가 대일전에 한인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¹⁷⁷⁾ 두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인들의 연합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채 확립되지 않은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맥쿤이 워스에게 보낸 아래의 서신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측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한국인들 사이의 단결성과 협력은 더 위험한 상태가 되었네. 새로운 파벌이 발생했고 오랜 상처가 다시 드러났으며 일반적인 혼돈 상태가 진행 중이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 가운데 만들어질, 진실로 좀 더 건전한(sounder) 정책이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강조: 필자)¹⁷⁸⁾

맥쿤은 이미 1942년부터 미국의 한인단체 승인문제와 관련하여 “현존

176) 게일은 1911-13년까지 상하이의 부영사로, 1914년부터 1937년까지 중국의 염전세를 다룬 상하이 염전국(Salt Revenue Administration)에서 일하면서 한국문제에 정통했다. 그는 이승만을 적극 지지했다. 아마도 삼촌과 이승만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의 부인은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헤론(John W. Heron, 1856-1890)의 딸이다. 그의 한인동원 계획은 충칭주재 미 대사 클라렌스 고스(Clarence E. Gauss)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는 1942년 8월 실망해서 중국을 떠났다. Ibid., 325-334.

177) 이승만은 미 육군 정보국(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약칭 MIS)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장인 프레스턴 굿펠로우(Preston M. Goodfellow)에게 1942년 10월 10일자로 한인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문서를 보냈다. OSS는 이것에 호응해서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Robert Fahs, “(영문해제) American Intelligence on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1941-1945,” OSS, xii. 한편 맥쿤의 해방 이전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은 안종철,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이태진교수 정년기념논문종합위원회, 『세계 속의 한국사』(태학사, 2009), 420-424 참조.

178) McCune to Weems, March 15, 1943,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4(국사편찬위원회, 1994), 478-479.

하는 어떤 단체를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통합된 한인 단체는 한국인들이 대일 활동을 효율적으로 개발, 실행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⁹⁾ 이것은 맥쿤의 일관된 입장인데 그는 미국 정부가 한인단체의 단결을 위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또 그는 한국인들이 “UN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미 당국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을 질타했다.¹⁸⁰⁾ 이는 랭던으로 대표되는 국무부 관리들이 한국인들의 분열성을 지적하는 주장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 측의 적극적 관심과 통합노력이 없다면 한인단체의 분열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다.

문제는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갈등에서 보듯이 이승만이 파벌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이었다. 워스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자유한국운동의 진보”(Progress of the Free Korean Movement)¹⁸¹⁾라는 글에서 이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맥쿤도 동의하면서 이승만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갈등하는 이면에는 중국에서 김구의 한독당 계열과 김원봉의 조선혁명당이 대립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¹⁸²⁾

맥쿤은 미주 한국인들의 대립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중 이승만 반대파들(전경무·김호·김용중)을 내심 지원했다. 그는 1942년 10월 하와이에 서 전경무·김호와와의 만남을 통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측 입장, 즉 임정승인을 고집하지는 않지만 임정승인을 통해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한국인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김구·김원봉·이승만이 협력할 가능성

179) (October 1942) Handwritten Notes by George M. McCune, OSS, Washington D.C.; RG 165 Entry 77 Box 2266 Folder 1, OSS, 5.

180) Ibid.

181) 이 보고서는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3(국사편찬위원회, 1994), 431-435에 수록.

182) McCune to C.F. Remer, March 31, 1943, 앞의 『한국독립운동사 자료』XXIV, 480. C. F. 레머(C. F. Remer)는 당시 OSS 극동담당 부장이었는데 1941년 가을, 미국외교협의회 연구모임에서 전후 일본의 군국주의를 파괴한 후 경제적으로 약화시켜서 미국 헤게모니를 강화하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油井大三郎, 『未完の占領改革』, 61-64; 안종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82-83.

이 있다는 점을 청취했다. 그는 이들 두 한국인들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평가하며 이들이 충칭을 방문해서 임정 활동을 조사하려는 계획에 찬성했다.¹⁸³⁾ 비록 이들의 충칭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맥쿤이 보기에 한인들의 연합과 임정(혹은 다른 연합체) 승인은 타당한 정책이었다.

1943년 5월에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한국문제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미 해군부 정보국(ONI) 주도로 미 정보당국 실무자 회의가 세 차례 개최되었다. 이 일련의 회합은 맥쿤과 워스의 한국인 통합 의견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회합에 육군부 정보국(MIS)의 ‘한국통’인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가 참석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는 1935-37년간 서울의 외국인학교의 교사 겸 교장대리를 지낸 인물이다.¹⁸⁴⁾ 맥쿤은 이미 한국인 연합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기에 이 회의에서 한인연합안의 추진을 기대했다. 맥쿤과 워스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여러 보고서에서 OSS는 1942년 중반부터 전쟁동원을 위해 미주 내 한인들의 통합을 건의하고 있었다.¹⁸⁵⁾

첫 번째 정보당국자 회의는 1943년 5월 7일에 열렸다. 이 회합의 사회

183) McCune to C. F. Remer, October 29, 1942, “Conversation with Korean Leaders,” RG 165 Box 2266 Folder 1, OSS, 2-4. 김용중이 맥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것은 워스의 보고서에도 나타난다. Weems to Robert B. Hall, April 10, 1943, 앞의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4, 485-486. 김용중은 1943년 11월 워싱턴에서 한국사정사를 설립하고 「한국의 소리(*Vocie of Korea*)」라는 월보를 발행했고 해방 후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에 대해서는 정병준, “김용중의 생애와 통일·독립운동,” 『역사문제연구』12(역사비평사, 2004) 참조.

184) 그는 1942-46년 2월 육군부 정보국에서 조사분석가로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해방후 한국에 재입국해서 경제정책에 관여했다.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103의 각주 82와 267의 각주 61 참조.

185) Situation Report No. 7, “Unification of Korean Independence Group, OSS Far Eastern Section,” June 15, 1942 『독립운동사 자료』XXII, 9; OSS R&A Report 41a, “Potentials of Korean Help against Japan,” 신복룡 편, 『한국분단사자료집』V(원주문화사, 1991), 정용욱, 같은 책, 102-103에서 재인용. 한인통합문제는 1942년 7월 미국무장관 코델 헐(Cordell Hull)의 연설 중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해당 국민들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에서도 탄력을 받았다.

자는 모임의 중요성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쟁수행에서 한국이 가진 유용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첫째, 미국이 한국 주변에서 언젠가 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둘째, 전후 “점령지역의 정치적 경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문제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물러간 후 발생할 “정치적 공백”을 채워줄 “우호적이고, 잘 짜여진, 잘 작동하는 현지의 조직”을 갖는 것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¹⁸⁶⁾ 참석자들은,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전쟁수행에 유용하며 미국이 무언가 “예비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과 하와이 거주 한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하였다. 예비적 조치는 바로 미국과 하와이에서 한인들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¹⁸⁷⁾ 이 회의에서 이승만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길수를 제거하고 동시에 이승만을 원로로 만들며 김원용·유일한·김용중 등 보다 젊은 층에게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부를 맡겨 한국인을 통합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 한길수와 이승만의 사실상 퇴진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운영진들을 통합의 구심점으로 한다는 안이 합의되었고 그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상부에 맡겼다.¹⁸⁸⁾ 이 자리에서 맥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키니도 이에 동의했던 것 같다.

두 번째 회의는 1943년 6월 7일에 개최되었다. 키니가 작성한 이 회합 내용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회의의 주 초점은 한길수의 처리문제였다. 한길수를 처리하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연방수사국(FBI) 소속인사(F. G. Tillman)는 그에게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¹⁸⁹⁾ 맥쿤은 한길수가

186) June 8, 1943, Memorandum for the File, “Conference of the Korean Situation,” RG 165 E 77 Box 2266 Folder 1, OSS, 12. 보고서는 미 정부가 “서반구에서 한인들의 활동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87) Ibid. 하와이는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으므로 미국과 별도로 다루어졌다.

188) Ibid., 13-14. 맥쿤은 이 회의 이후 워스와 이 문제에 대해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103-106.

속한 한인 집단도 한길수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의 대표적인 이경선과 현순도 그의 퇴진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참석자들은 이승만도 함께 ‘퇴진해야’ 한다고 보았고 앞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보다 젊고, 보다 유능한 한국인들이 더 크고, 효과적인 지도력”을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¹⁹⁰⁾ 맥쿤은 이 문제와 별도로 이미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인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도 아시아에서 “일본에 대한 흑색선전”과 “다른 첩보활동”에 한국인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¹⁹¹⁾

두 번째 회의에서 정보기관 간의 의견교환이 중요함을 확인한 후 세 번째 회의는 같은 해 6월 11일에 열렸다. 여기에는 각 부서의 좀 더 책임 있는 관리들, 즉 OSS 작전부(Operations Division)의 소령급 인사 호프만(Hoffman)과 국무부 극동국 부국장 로렌스 샬리스베리(Laurence E. Salisbury)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한인활용이 전제된 위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프만은 한인들을 군 생활에 적응시키는 것과 이들이 “단순한 사병” 자격에 대해 가질 불만사항을 지적하면서도 미주에서 훈련 받은 한국인들을 중국전선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측의 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¹⁹²⁾

외교문제에 대해 극동국의 샬리스베리는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는 미국 국무부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준다. 첫째, 1942년 7월의 국무장관 코델 헐(Cordell Hull)의 연설 중 “추축국 점령하에 있는 국가들의 자유획득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는 정책이 한국에도 적용될 것이지만 이 연설은 현지 주민들이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그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할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는 한국은 아시아의 중요한 일부 분이기 때문에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명확한 “의도와 태도”는 “보다 크

189) June 9, 1943, Memorandum for the Group, “Conference on Koreans and the Korean Situation,” RG 165 E 77 Box 2266 Folder 1, OSS, 15.

190) Ibid., 16.

191) Ibid.

192) June 18, 1943, Memorandum for the Chief, Japan Branch, “Conference on the Korean Situation held at the Navy Building,” RG 165 E 77 Box 2266 Folder 1, Ibid., 19.

고 포괄적인 언설”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였다. 세 번째는 중국과 소련이 한국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극동사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 “신중한 정책”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새로운] 상황에서 성취하기 어려운 약속(commitments)”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였다.¹⁹³⁾ 샬리스베리의 의견은 결국 임정승인이나 한국의 전후 즉시 독립안 등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였다. 이는 국무부가 한국인 통합과 전시 동원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 일련의 회담은 한국인의 이용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미국의 한인통합이나 임정승인 등의 정책 설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OSS는 미국의 정책설정을 위해 다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국무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⁹⁴⁾ 보고서의 ‘출처(Source)’는 OSS관리이고 ‘하위출처(Sub Source)’는 ‘한국인 애국자’로 되어 있다. OSS관리가 한국인과 면담한 후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 작성자는 OSS 워싱턴 근무자인 맥쿤으로 보인다.¹⁹⁵⁾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세 번째 정보기관 실무회의에 국무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한 샬리스베리의 입장과 충돌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회담에서 샬리스베리는 중국과 소련의 입장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약속인 임정승인이나 한국의 즉각 독립 등을 지지할 수 없다고 암시했는데,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국무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쟁 전략과 평화시의 외교는 “한국에 대한 명확하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통해 월등히 증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책에서 “우선으로 해두어야 할 것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미국

193) Ibid., 19-20.

194) “Korea and American Policy”(October 2, 1943),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Washington, D.C.; Date of Origin: September, 1943, (RG 165 E 77 Box 2266), Ibid., 21-27.

195) OSS자료 해제자인 로버트 파아(Robert Fahs)도 맥쿤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영문해제) American Intelligence on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1941-1945,” Ibid., xxi.

의 전후 이해는 이미 “손상(compromised)”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현학적(pedantic)”이고 “상상력이 떨어지는(unimaginative)” 정책 때문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¹⁹⁶⁾ 이 보고서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중국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따라, 이를 최대한 군사적으로 활용함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혁명을 단행하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희망을 허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야망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정당한 이해관계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¹⁹⁷⁾

중국정부의 전후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국을 적극 활용하면서 한국의 이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글은, 미국 당국이 “한국정부(a Korean Government)”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국인들의 분열과 경쟁이라는 특성을 내세운 것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한국인들의 분열을 지적하기보다는 (1) 한국인들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이고 군사적 가치”가 있으며 (2) 중국의 전시와 전후 정책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와 전후 평화를 침해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⁸⁾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해서 그들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좌절한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바로 한국인들 사이에 “분열(disunity)”을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한국인들을 “제국주의의 줄개(pawns)”로 제공하면서 대일전에서 한국인들의 활용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¹⁹⁹⁾ 당시 국무부 극동국의 인식, 즉 한국인들의 분열성 때문에 임정과 한국인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통념처럼 퍼졌던 점을 생

196) 앞의 “Korea and American Policy”(October 2, 1943), 22.

197) Ibid., 22.

198) Ibid., 23.

199) Ibid., 23-24.

각할 때, 오히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실패가 한국인들의 분열을 만든다는 주장은 정반대의 인과관계를 제시한 것이었다.²⁰⁰⁾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는데, 중국이 1941년 광복군의 활동을 제약하는 ‘9개 준승(準繩)’을 통해 임정에 간섭한 것과 전후 “수에즈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와 동경에 이르는 아시아 국가들의 동맹을” 주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²⁰¹⁾ 중국의 전후입장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동아시아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없으면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²⁰²⁾

보고서는 ‘후기’에서 한국망명정부의 승인문제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기했다. 그것은 망명정부가 한국 해방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독립된 한국의 정치조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선언할 지”와 관련된 문제였다. “명확한 입장”이라는 것은 (1) 전후 한국인들 다수의 동의없이, 계속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든가 “현재의 인사들로 행정체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포기하는 것, (2) 한국인들로 하여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했다.²⁰³⁾

웬스도 한국인 정부와 한국인을 전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위 보고서의 입장에 동의했다. 후일 자신과 OSS의 활동을 돌아본 연구논문에서 웬스는 전쟁 초부터 한미 동맹(alliance)을 수립했다라면 동아시아가 안정되어 해리 트루만(Harry Truman) 미 대통령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 일본에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

200) 당시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일반적 원칙, 즉 일본이 조선을 자신들의 한 지역으로 한층 강력히 “통합(integration)”한 정책을 비판하며 이는 “연합국에 의한 해방”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였다. Hugh Borton, “Korea: Internal Political Structur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I, 1944년 11월 5일자.

201) “Korea and American Policy”(October 2, 1943), OSS, 25.

202) 이 글의 작성자는 맥쿤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그가 박사학위논문에서부터 중국(일본)과 한국의 전통적 관계에 대해 깊은 이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George M. McCune, “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 Ph. D. Diss.(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41). 이 논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Jong Chol An, “Making Korea Distinct,” 169-174.

203) “Korea and American Policy”(October 2, 1943), OSS, 26-27.

장했다.²⁰⁴⁾ 정세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다는 워스의 주장을 잘 보여준다. 워스가 보기에 한국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전략은 1905년 일제의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 체결 시 미국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가 가진 인식, 즉 “한국인들은 자신들조차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1930-40년대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이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편견은 “구세대 아시아 전문가들”(Old Hands)사이에서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²⁰⁵⁾ 결국 당시까지 일본의 선전, 즉 한국인들이 ‘열등한 인종’이라는 주장에 미국 측 인사들도 상당수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워스는 임시정부 승인의 결립돌로 지적된 임정내부의 분파주의에 대해서, 사실상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2-44년간에 임정이 “상당한 기능적 통합”을 보여주었지만 오히려 미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²⁰⁶⁾ 이러한 지적 역시 임정승인에 대한 미국 측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나아가 그는 분파주의라는 것은 미국사와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매우 보편적인 것임을 지적했다.²⁰⁷⁾ 물론 워스도 당시 일본의 철저한 통제로 인해 한국인들이 일본에 도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1942년에 “전략가들”과 “목격자들”이 전쟁 발발 후 “독립운동의 잔여세력”이 “미국의 지도력”을 신뢰하고 일본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지

204) Clarence N. Weems Jr., “Washington’s First Steps Toward Korean-American Joint Action (1941-43),” 291.

205) 워싱턴 인사들뿐만 아니라 특히 중경의 미 대사였던 고스(Clarence E. Gauss)가 상당 기간 상하이 총영사로 활동했음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고 보았다. Ibid., 295 · 313.

206) 김구 측의 한국독립당과 김원봉 측의 민족혁명당계열은 중국 측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1942년부터 서서히 협력관계에 돌입했다. Ibid., 323.

207) 물론 그는 미국에 분파주의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지 않은 이유로 “서구의 정치문화, 미국의 헌법질서, 광대한 영토” 등을 지적했다. 사회, 문화적 원인을 지적하려고 한 점에서 ‘민족성’을 지적하는 입장과는 궤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있다. Ibid., 296.

적했지만 미국 관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²⁰⁸⁾ 미 국무부 상층부 인사들은 케일, 맥쿤, 워스, 키니 등 한국과 관련있는 정보분석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국무부의 신탁통치안 확정과 논리

미국은 중경임시정부의 승인을 거부한 상태에서 한국에 대해 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했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에서 발표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in due course)”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다는 것이 연합국의 공식적인 한국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국무부의 실무관리들은 사전에 통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의 한국관련 조항에 당혹했다고 한다.²⁰⁹⁾ 국무부는 1943년 10월 국무부 내 국간(局間) 지역위원회(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를 만들어서 전후 대일정책에 대한 내부조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한정책 발표로 자신들이 구상해온 전후 대일·대한정책 구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한국문제와 관련해서 백악관측이 당시 국무부 실무진들이 한국 내부사정에 기초해 작성한 ‘단일점령 구역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스탈린을 유엔체제에 끌어들이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현했다.²¹⁰⁾

한국관련 문제의 다양한 논의들은 카이로회담을 전후로 가속도가 붙었다. 이후 국무부 관리들은 신탁통치안의 합리화를 강구했다. 신탁통치 문제는 식민지에 대한 평가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일본선교사 출신의 국무부 극동국 일본과의 휴 보튼(Hugh Borton, 1903-1995)²¹¹⁾과 1944년 5월에

208) Ibid., 295-296. 이것은 중경현지에서 활동했던 케일의 한인동원계획에 대한 언급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마켓 선교사의 아들인 하워드(Howard F. Moffett)도 임시정부안을 승인했다. 당시 그는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Howard F. Moffett to Cordell Hull, 1942년 7월 6일(895.01/138), *RIAK, 1941-1944*.

209) Hugh Borton,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97-98.

210) “Korea Under American and Soviet occupation, 1945-47,” Arnold Toynbee, ed. *The Far East 1942-194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429-430, 각주 1번.

211) 보튼은 1928-31년간 웨이커 선교사로 일본에서 근무한 후 콜롬비아, 하버드를 거쳐

OSS에서 국무부로 이전한 선교사 아들 맥쿤으로 대표되는 국무부의 학자 관료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에서 신탁통치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전쟁 전 태평양문제연구회와 관련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 신탁통치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자.

국무부 정치국 ‘영토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rritorial Problems)’에서 휴 보튼은 1943년 초 한국관련 보고서들을 작성했다.²¹²⁾ 그는 보고서 작성 당시 랭던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근무한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았다.²¹³⁾ 이후 국무부 구조개편에 따라 1944년 11월 영토소위의 일부 기능이 ‘극동문제에 대한 국간 지역위원회(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로 이관되면서 영토소위의 T-Paper는 H-Paper로 수정, 흡수되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H-Paper의 주 작성자는 보튼 외에 1944년 5월 극동국에 합류한 맥쿤이었다. H-Paper는 국무부 내 한국소위원회에 제출되어 전쟁 막바지에 전후계획위원회(PWC)에 상정되었고, 국무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

1937년 라이덴대학에서 일본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콜롬비아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국무부 내에서 전후계획 수립에 동참했다. 국무부 사직 후 일본학 강의와 교과서 집필을 담당했다. 그의 생애와 저작에 대해서는 안종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97-99.

212) 이 보고서들은 1943년 4월부터 준비되었다. 문서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T-316 “Korea: Territorial and Frontier problems”(May, 1943); T-317 “Korea: Economic Developments & Prospects,”(May, 1943); T-318 “Korea: Internal Political Structure” (May, 1943)(“Korea: Internal Political Development,”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944년 11월 14일, 578-583에 수정 후 재수록); T-319 “Korea: Problems of Independence” (May, 1943) 등이다. 이 보고서들은 정용욱·이길상 편, 『대한정책』1권(돌베개, 1994)에 실려 있다. 이 문서들에 대한 분석은 안종철,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90-95.

213) 보튼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데 1930년대 랭던이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보낸 문서에 크게 의존했다고 한다. Hugh Borton,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123. 당시 영토소위원회의 인사들은 이후 한국문제 논의를 주도했다. 이들은 휴 보튼 외에 존 빈센트(John C. Vincent), 랭던, 메릴 베닝호프(H. Merrell Benninghoff) 등이다. 이들은 1943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한국점령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촉구했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NJ,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113-114.

되어 국무부-육군부-해군부 삼부조정위원회(SWNCC)에 제출되었다.²¹⁴⁾ 이 삼부조정위원회의 문서가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 되었다.

신탁통치방안은 해방 후 ‘외세간섭’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발과 미군정의 암묵적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전쟁기간 중 작성된 국무부 보고서들은 신탁통치에 대한 실무진 차원의 사고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국무부는 임정불승인과 신탁통치안을 전후 한국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으로 보았다. T-Paper와 H-Paper를 분석하면 국무부의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휴 보튼 작성의 T-Paper와는 달리 맥클이 작성한 H-Paper는 국무부 내에 있었던 약간 다른 목소리를 보여준다.²¹⁵⁾

국무부의 기본정책은 신탁통치를 한국에 실시한다는 것이었고, 그 근거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발발 후 천명한, 전후 식민지 통치지역에 신탁통치를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었다.²¹⁶⁾ 신탁통치안은 전후 ‘제3세계’에 적용될 중요한 원칙이었기에 국무부 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특수연구국(Division of Special Research)과, 1943년 1월에 특수연구국을 계승한 정치연구국(Division of Political Studies)이 다루었다.²¹⁷⁾

214) 국무부 내부 조직 정비는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1장 참조.

215) 맥클이 작성한 문서는 모두 1944년 11월 27일자로 제출되었는데 OSS에서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H-204, “Korea: Capacity for Independence: Literary and Education”; H-205, “Korea: Capacity for Independence: Participations of Koreans in Government”; H-207, “Korea: Capacity for Independence: Possibility of Adequate Harmony”; H-209, “Korea: Political Problems: Factors Determining Interval between Liberation and Independence of Korea”이다. 커밍스는 국무부내의 이런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으므로 해방직후 미군정이 “취한 조치는 사실상 경쟁하는 의견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선택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다른 의견을 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16-117.

216) 이는 1차 대전 직후 ‘위임통치령’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로 서양식민사에서 일정한 역사를 가진다.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2』, 238-246.

217) P-Min 22, 1942년 8월 15일 모임, P-Min 51, 1943년 4월 10일 모임, Records of Harley A. Notter, 1934-45, Box 55, 정용욱·이길상 편, 『대한정책』1, 국무부 전후기획 기구의

영토소위원회 T-Paper는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근거를 보여준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일본 통치하의 억압 때문에 “자치정부의 실질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²¹⁸⁾ 비록 중경임시정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이승만, 중국 김원봉 계열의 조선민족혁명당과 그 미주 지부인 중한민중동맹(한길수) 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지만, 식민지에서 한국인들이 주요직책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정치적으로 거세”되어 “국가경영의 모든 경험”이 박탈되었다고 보았다.²¹⁹⁾ 그러나 휴 보튼은 일본 통치의 강압성과 한국인들의 자치경험 부족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태생적 한계인 것처럼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국무부 고위관료들보다도 진전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소련에 체류한 한인들이 “자치행정의 상당한 경험과 정치적 목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²²⁰⁾

임정승인과 관련하여 휴 보튼은 비록 해외 한국인 단체가 국내보다 “정치적 의식”에서 “진보적”이지만, 만약 임정을 승인한다면 소련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국내적,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과도기를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키면 그것이 곧 ‘대서양현장’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된다. 소련이 중경임시정부 승인을 받아들일지 회의적이었으므로 신탁통치로 한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²²¹⁾

국무부 내부 문건이 언급한 신탁통치가 필요한 세 번째 요인은 경제문제이다. 식민지의 경제상황과 경제전망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는데 특히 관

변천은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23의 표 참고.

218) T-319, 정용욱·이길상 편, 같은 책, 402.

219) 비록 1931년, 1933년 지방자치제 선거가 일부 개정되어 일부 한국인들이 선출되었지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Ibid., 411-412. 1930년의 개정안은 府·指定面 자문기관을 의결기관으로 하고 임명제였던 면협의회를 새로 선거로 선출했다. 면협의회는 여전히 자문기관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368-371.

220) T-319, 정용욱·이길상 편, 『대한정책』1권, 408.

221) 휴 보튼은 미국이 비록 임정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방 후 일정기간 후 독립시킬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1898년 쿠바에게 했던 것과 같은 정책이었다. Ibid., 414.

심의 초점은 일제 패망 후 한국경제의 자립 가능성이었다. 먼저 농업문제에서 한국인들의 쌀 소비 격감과 토지소유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고, 산업 생산에서 1937년 이후의 엄청난 증가를 주목하였다. 특히 이 시기 광산, 수력, 화학, 수송 등의 영역에서 일어난 엄청난 진보를 인정했다.²²²⁾ 그런데 한반도의 산업은 일본과 관련해서 급속히 성장했으므로 해방 후 한반도가 독자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전후 한국은 일본과 평화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전후 한국경제가 일본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단위가 되기 전 과도기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한국이 해방 후 즉시 독립한다면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시설을 관리할 인물이 부족할 것이고, 한국과 세계 간에 “동등한 조건에서 무역과 자원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²²³⁾ 한국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개발회사(United Nations Development Corporation)”가 신탁통치 기구로부터 한국경제 재건을 위한 책임을 맡는 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²²⁴⁾

휴 보튼은 전후 한반도에서 실시될 신탁 통치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책임을 맡기보다는 “다국적 관리위원회(Supervisory Council)”하의 “국제행정 기구(Intern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가 그 통치를 감독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²²⁵⁾ 이는 한국이라는 시장에 어떤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조치였다. 전후 한국 주둔 연합군은 중국·미국·영국·소련(참전 가정)의 다국적군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군 사령관 주도하에 중앙행정을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분할통치보다는 “하나의 통치와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보

222) T-317, 같은 책, 391-392.

223) 만약 과도기가 없다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자산을 몰수해서 일본이 한국에 적대감을 갖게 되고 일본에 대한 한국물품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Ibid, 391-391.

224) Ibid, 391-392. 임정의 주요산업국유화론에 대한 정책이 휴 보튼같은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개연성은 대단히 높다. 임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소개는 T-319, 같은 책, 409-410.

225) T-319, 같은 책, 416-417.

았다.²²⁶⁾ 국무부 실무진의 한반도 단일통치 안은 일본의 항복과 소련의 참전이라는 상황에서 군사 우선주의 때문에 미국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신탁통치안은 미국의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은 한국정부 수립 이후로 넘김으로써 국무부 한국문제 전문가들의 전후계획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맥쿤이 작성한 한 보고서는 한국통치에 대한 과도기를 인정했지만 약간은 다른 논리적 궤도를 보여준다. 그는 일본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한국인들의 문자 해독률이 “한글은 약 45%”정도, “일본어는 13.9%”에 이르며, 1930년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성장세로 인해 비록 “독립적 체제를 위한 민주적 기반”은 다소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을 스스로 통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²²⁷⁾ 그는 한국인들의 분파주의는 사실 “거의 모든 망명독립 운동에 나타나는 분파주의”와 같은 것으로 비록 해방 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겠지만 “전개될 유리한 환경 하에서” 한국사회 내에 “통일을 위한 많은 강력한 힘,” 예를 들면 “동일한 유산, 인종, 언어, 전통에 의한 문화적 통일성”이 그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보았다.²²⁸⁾ 즉 분파주의도 한국인들의 독립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맥쿤은 이렇게 한국인들의 잠재적 힘을 우호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이 전후 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우선 내적으로는 “공무활동(civil service) 경험이 있는 적합한 인사”와 “민주정부형태에 충분한 대중의 경험”과 “근대한국경제를 경영할 훈련받은 인사들”이 부족한

226) “Korea: Occupation and Military Government”(PWC 125)(November, 1944).

227) H-204, 정용욱·이길상 편, 『대한정책』1, 497-501. H-205의 보고서는 다소 사실관련 서술에 중점을 두었는데 총독부 내 한국인들이 상위층에는 20% 미만, 중간층 이하에는 50%에 육박한다고 보았다. 전후 한국인들은 상위층 관료들을 “협력자들”로 배척해도 중간이하의 실무관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같은 책, 505-508.

228) 그는 한국인들의 분파주의는 “시대의 독특한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며 한국 왕정체제에서 특정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려는 외세의 음모에 의해” 더 강화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개인주의적 형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H-206, 같은 책, 516-517.

것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해방 후 일본 경제로부터 분리된 한국의 경제를 한국인들을 위해 재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맥쿤이 보기에 일제말기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²²⁹⁾ 아울러 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한국에 대한 야심이 문제였다. 즉 한국이 “주변국들의 이해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능력과 효율을 갖춘 정부”를 만들지 못하면 주변국들은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이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도 주변국들은 여전히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경쟁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극동의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 “효율적인 국제적 안전 기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²³⁰⁾

이러한 내외의 문제는 한국독립을 위해 결국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논리와 연결되었다. 맥쿤은 연합국 점령에서 독립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상정했다. 그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했는데 한국에 대한 관련국들의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독립을 위한 “잠정적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²³¹⁾ 비록 확정된 날짜는 정할 수 없지만 구체적 과정과 독립을 위한 필수조건 등을 한국인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고 맥쿤은 확신했다. 이는 극동국 휴 보튼 등의 신탁통치안과는 다소 다른 방안이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 중 일부는 미 정보기관에 한국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인독립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대일전에 적극 협력했다. 흥미로운 것은 서울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임정승인안을 지지하고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후 조선이 다시 선교지로 열리도록 기대하고 있었

229) Ibid, 518-520.

230) H-209, 같은 책, 520.

231) 그는 다른 가능성, 즉 즉시 한국의 독립날짜를 정하는 안, 독립 전 “일련의 과정”만 결정하는 안, 아무 것도 확정하지 않는 안, 언제 그 문제를 결정할지 공표하는 안 등을 검토하면서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bid, 521-524.

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전쟁이 미국에 유리해진 1944년 무렵부터 전후 조선 선교를 위해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어떤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돌아갈지, 현지교회와 선교사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H. H. 언더우드의 역할은 가장 중요했다.

전쟁은 선교사 2세들에게 미국 정부, 특히 정보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랭던처럼 식민지 시기 서울 총영사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교관들이 여전히 국무부에서 전후 한국문제에 대해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맥쿤과 워스 등으로 대표되는 선교사 2세들은 OSS활동을 통해 한국인들을 통합하거나 대일전에 한국인들을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워스는 미국이 입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상부기관이 이들의 한국인 통합안이나 활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섬세한 이해는 주목할 만하다.

제4장 해방 후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미군정 참여

1. 미군정의 기독교정책과 선교사들의 귀환

1) 연합국사령부 맥아더의 종교정책과 기독교

미국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항복에 즈음해 일본점령의 목표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일본의 국수주의와 군국주의를 제거해서 “다시는 미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둘째, “다른 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유엔헌장의 정신과 원칙에 반영된 대로 미국의 목표를 지지할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일본에 수립하는 것이었다.¹⁾ 그러한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일본군국주의의 추동력인 일본 종교, 특히 신도를 주목하였고 국가신도가 전쟁 수행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전후 일본에서 연합국 사령부 민간교육정보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이하 CI&E)에서 종교관련 업무를 담당한 종교과(Religions Section)의 수석연구원이었던 윌리엄 우다드(William P. Woodard, 1896-1974)는 이를 “국가신도 숭배(State Shrine Cult)”로 해석했다.²⁾ 전후 정책기획가들은 종교적 성격을 가진 국가신도가

1)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dated 29 August 1945) approved 6 September 1945 (이하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in F.C. Jones etc, *The Far East 1942-1946* (London etc: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Appendix 10.

전쟁기간 동안 국가의례로 국민들에게 강요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 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발표된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전후 일본에서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 가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³⁾ 연합국은 초기 대일 점령정책에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일본의 극단적 세력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고심했다. 포츠담선언의 내용을 반영한 미국의 초기 점령정책에 관한 아래 인용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종교적 예배의 자유는 점령 즉시 선포될 것이다. 동시에 극단적 민족주의 와 군사조직의 활동이 종교적 외피 속에 숨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인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⁴⁾

즉 종교자유를 구실로 기존의 국가신도적 특성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 를 봉쇄하려고 했다. 종교적 자유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바로 종교기관과 국가의 분리문제였다. 연합국사령부는 점령 직후인 1945년 12월 15일 ‘신 도지령(神道指令)’을 반포함으로써 국가신도를 국가의 통제로부터 분리시켰다.⁵⁾ 아울러 연합국사령부는 종교조직의 내부경영에 대한 국가의 간섭

2) CI&E의 책임자는 육군준장 켄 다이크(Ken R. Dyke)였고 종교과 과장은 윌리엄 번스(William K. Bunce)였다. William P. Woodard,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 and Japanese Religions* (Leiden: E. J. Brill, 1972), xi-xiii, 9. 우다드는 유니온신학교 졸업 후 미국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es) 선교사로 1921년 일본에 와서 1941년 전쟁발발 직전까지 선교사로 일했다. 1930-1935년간에는 식민지 한국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선교사업에 종사했다. 전쟁기간에는 미 해군에서 정보관련 일에 종사했고 종전 후 일본 미군정에서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미군정 종결 후 동경에서 1953년에 국제종교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s)를 창립했다. 워싱턴 주립대학(Washington State University)에 그의 문서들이 소장되어있다.

<http://nwda-db.wsulibs.wsu.edu/fndaid/a가:/80444/xv82095> 참고.

3) Woodard, *Ibid.*, Appendix A:1.

4)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in F.C. Jones etc, *The Far East 1942-1946*, 503.

5) 초기부터 신도를 종교화하려는 명확한 정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1945년 10월 6일 국무부 극동국 국장 존 빈센트(John C. Vincent)가 종교관련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종교정책이 확고히 세워지기 시작했다. William P. Woodard, *The Allied*

과 통제를 제거하기 위해,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취한 ‘종교단체법’(1939년 4월 8일 법률 제77호, 개정 1940년 3월 29일 법률 제25호)을 폐지하고 1945년 12월 28일 ‘종교법인령’을 새로 선포했다.⁶⁾ 종교법인령이 종교단체 설립의 과도한 자유를 허용한다고 생각한 미군정 측은 무분별한 종교단체의 설립을 통제하기 위해서 1951년에 ‘종교법인법’으로 수정했다. 미국의 종교관련 대일정책은 1947년 이후 냉전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형태에서 변하지 않고 인정을 받은 몇 안 되는 분야였다.

미국의 일본 점령통치에서 미국 군부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2차 대전의 전쟁 수행을 통해 강화된 군부의 위상을 반영한다.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에서 군부의 입장이 강화된 데에는 아시아와 워싱턴 간의 물리적 거리도 한몫 했다. 특히 현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령정책이 혼선을 빚었는데 이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욱 심했다.⁷⁾ 그러므로 외교사안을 취급하는 국무부만 아니라 대통령조차 점령통치를 담당할 군부의 영향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당시 태평양에서 영웅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가 동경에 설치된 연합국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이하 SCAP)의 최고사령관으로 전후 일본에 입국했다. 그러므로 독일점령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부분이 맥아더의 상징성과 지도력에 의해 전후결정이 이루어졌다.

동경의 맥아더와 서울의 존 하지(John R. Hodge, 1893-1963)⁸⁾는 군정을 통

Occupation of Japan, 14-15. 일본 신도 지도자들은 신도를 국가종교로 유지하려고 했다. 신도지령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Wilhelms H. M. Creemers, *Shrine Shinto After World War II* (Leiden: E. J. Brill, 1968), 45-53 참조.

6) 전전의 종교단체법에 대해서는 김승태 편역, 『종교정책』, 307-314 참조. 종교법인법에 대해서는 Creemers, *Ibid.*, 44-45, 54-55, 230-231 참조.

7) 일본점령에 대한 동경과 워싱턴간의 입장 차이와 점령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New York: Pantheon, 1967), 369-373.

8)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122-133; 하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용욱,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중심, 2003) 1-2장; James I. Matray, “Hodge Podge: American Occupation Policy in Korea, 1945-1948,” *Korea Studies* 19(1995), 18-19.

해 구 일본제국,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의 재가가 있어야만 민간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선교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선교사 귀환과 미군정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경과 서울의 종교정책, 특히 기독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울은 동경의 명령 하에 있었지만 사실상 독자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동경 연합국사령부의 입장과 서울의 미군정(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측의 입장을 구분해야 한다.

SCAP 총사령관 맥아더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는 선교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구 학계는 물론 한국 학계도 맥아더와 하지 등 SCAP 수뇌부의 종교적 역할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⁹⁾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일본이 신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종교 체제를 통해 일본제국 전체를 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종교 문제는 전후기획가들에게 전후 일본 사회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다. 아울러 적어도 1960년대까지 기독교가 미국문명의 핵심적 가치로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종교관이 구 일본제국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맥아더는 워싱턴 상급자들로부터 종교정책에서 두 가지 확고한 목표, 즉 ‘종교의 자유’와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정책지침으로 하달받았다. 그러므로 종교자유를 억압한 국가의례로서의 국가신도의 해체를 정책목표의 실현수단으로 생각했다.¹⁰⁾ 그러나 맥아더는 워싱턴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종교관을 일본에서 실천했다. 맥아더의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에 대한 명확한 선호와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

9) Lawrence S. Wittner, “MacArthur and the Missionaries: God and Man in Occupied Japan,”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40/1 (Feb. 1971); 최재건, “맥아더 장군의 전후 일본에서의 종교정책과 그것이 한국에 끼친 영향,” 『성결교회와 신학』 제12호(서울신학대학교 성결교회역사연구소, 2004) 정도가 있다. 최재건은 워트너의 연구에 기초해서 맥아더와 일본의 종교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맥아더의 인식이 당연히 한국의 미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한국 미군정과 선교사들의 관계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

10) Wittner, *Ibid.*, 78.

서 워싱턴의 당국자들이나 연합국사령부 직원들의 생각과 달랐다. 사실 미국 정부가 지시한 두 가지 정책목표를 실현한다는 것과 기독교를 우대한다는 점은 사뭇 다른 것이었다.

전후 SCAP의 CI&E아래에 있던 종교과는 국가신도의 해체와 종교자유 의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한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다.¹¹⁾ 종교과의 직원들은 모든 종교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려고 했으므로 정부가 어떤 종교에 구체적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과 근무자들이 기독교가 일본에서 성장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종교과 직원들의 성향에서 드러나는 점이다. 종교과 과장이었던 윌리엄 번스와 수석연구원 우다드 등 종교과 직원들은 전쟁 전에 선교사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또 CI&E의 상대역인 일본 문부성 사회교육국 종교과(후에 文部大臣 官房宗教課로 바뀜)의 자문관이자 연합군사령부와의 연락처인 동경대학교 교수 키시모토 히데오[岸本英夫, 1903-1964]는 국무부 극동국 일본과장 휴 보튼과 오랜 친구사이로 독실한 웨이커교도였다.¹²⁾ 이들은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일했다. 다만 국무부 극동국과 마찬가지로 CI&E 종교과 직원들은 “종교와 국가의 분리”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므로 맥아더가 특정종교, 기독교를 지원해주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¹³⁾

CI&E 종교과에서도 인정한 맥아더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의 사고와 정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⁴⁾ 맥아더는 어린 시절 성공회(Episcopal Church) 계통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성장해서도 매일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이었음에도 그는 특정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그

11) Wilhelmus H. M. Creemers, *Shrine Shinto After World War II*, 45-46; William P. Woodard,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Preface” 참조.

12) Hugh Borton,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232 · 236. 키시모토는 후일 신도를 종교로 인정해준 점에 대해 종교과 직원들의 공을 인정했다. Wilhelmus H. M. Creemers, *Shrine Shinto After World War II*, 57.

13) 그것은 맥아더의 기독교계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에 대한 종교과 직원들의 반발로 표출되기도 했다. William P. Woodard,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242-245.

14) *Ibid.*, 16.

러나 그는 역설적이게도 일본에서 연합국사령부의 CI&E를 통해 기독교를 강력히 지원했다.¹⁵⁾ 그가 기독교를 강력히 지지한 이유는 미국 문화의 기초에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기독교를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로 보았기 때문이다.¹⁶⁾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를 일본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다.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관련지어 사고하는 경향은 기독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이는 남한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에게도 볼 수 있는 점이다.

맥아더는 일본 점령기(1945-52) 동안 일본에서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나는 온갖 종류의 신학자가 되어야 했다”고 말하였고, 1964년 사망 직전에, 일본은 “물질적 행정지도만 아니라 영적 지도력을 필요로 했다”고 고백했다.¹⁷⁾ 1948년 초 미 국무부는 일본의 전후개혁 속도를 조절하고 내부 강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하여 연합국사령부와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부 정책실장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을 동경에 파견했다. 맥아더는 그와의 대화에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지도와 영감(inspiration)을 갈망”하였으므로 자신의 점령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일본인들에게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¹⁸⁾

연합국 총사령관으로 재직시 맥아더가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선교활동을 위해 1,000명의 선교사를 일본에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맥아더는 선교사들이 입국하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¹⁹⁾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인 가운데 일본어가 가능한 자에

15) Wittner, “MacArthur and the Missionaries,” 78-79.

16) Ibid., 83.

17)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Greenwich, Conn.: Fawcett Publications, 1965), 322 · 324[Lawrence S. Wittner, “MacArthur and the Missionaries,” 77에서 재인용].

18)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384.

19) 맥아더의 일본사회의 기독교화와 선교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Takemae Eiji,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NY and London: Continuum, 2002), 377-379 참조.

계만 입국이 허용된다는 조건을 교회관련 인사들에게는 예외로 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교파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명만 하면 이전에 일본 체류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선교사, 교사로 들어올 수 있었다. 만약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명서가 없다면 어떠한 미국 교육자도 일본에 입국할 수 없었다. 맥아더의 강력한 지원으로 일본에는 1947년 315명, 1948년 707명, 1949년에는 980명의 선교사들이 입국했고 1951년에는 입국 선교사가 2,500명 정도까지 늘어날 정도였다.²⁰⁾ 맥아더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로 들 수 있는 것은 남녀 공학의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의 설립이다.²¹⁾ 기독교 대학의 설립은 태평양전쟁 이전 라이샤워 등이 그토록 갈망했던 남자기독교 대학의 설립 안을 실현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라이샤워의 주도로 동경여자대학교가 1918년에 설립되었다. 그는 남자대학교도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창립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일본 문부성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²²⁾ 맥아더는 선교사들과 일본을 방문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환대했던 것이다.²³⁾

맥아더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기독교세의 성장은 그리 대단하지 못했다. 신자 수가 전전의 10만에서 1951년 당시 겨우 20만으로 증가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미군 점령하의 빈곤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일본인들이 일시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위해 기독교로 몰려왔을 가능성이 높았다.²⁴⁾ 게다가 이러한 일본의 기독교 성장세는 1951년 한국전쟁의 진행, 미국과의 강화조약 등을 기점으로 급속히 둔화되었다.²⁵⁾ 일본인들에

20) Wittner, "MacArthur and the Missionaries," 85-95.

21) Ibid., 86.

22) 동경여자대학교와 라이샤워의 관계에 대해서는 小楢山龍一, "帝國の「バチカン」から「キリスト・クラウン」としての東京女子大學" 참조.

23) 자세한 예들은 최재건, "맥아더 장군의 전후 일본에서의 종교정책," 63-64.

24) Wittner, "MacArthur and the Missionaries," 97.

25) 이 시기 기독교 성장은 일본사회의 서구화에 대한 관심과 미군정의 기독교 지지정책에 힘입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쓰이 켄[三井憲], "한·일 개신교 교회 성장의 비교연구"(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6-27.

계는 신도가 여전히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였으므로 기독교 개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일본의 기독교 성장세의 둔화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기독교 선교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한국에서는 해방직후 기독교인 수를 40만 정도로 잡고 볼 때 1950년대 중반에 100만을 훨씬 넘었다.²⁶⁾ 즉 10년 동안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기독교에 대한 정책과는 별도로 맥아더 사령부는 헌법을 통해 종교와 국가에 대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사령부는 전전의 일본 사회에서 종교와 국가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달았다고 판단하고 종교와 국가를 분리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일본헌법은 제20조와 89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별다른 유보조항을 달지 않았다. 그것은 전전 헌법 제28조에서 보장한 종교 자유가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라는 단서 하에서 보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훨씬 진전된 것이었다.²⁷⁾

2) 미군정사령관 하지의 종교정책과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국 귀환은 1945년 말 국무부에 대한 맥아더의 선교사 파견 요청과 관련이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동경 맥아더 사령부 휘하에 있던 한국의 미군정은 맥아더의 요청에 대한 국무부의 회답을 기다렸다. 국무부는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건설적 능력을 가지고 군정

26) 1957년도 『기독교연감』(대한기독교서회)에는 기독교 인구가 1,324,258명으로 나와 있다.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8에서 재인용. 해방 후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달리 일본은 급격한 정치적 변동을 겪지 않았고 기독교계의 지식인 위주의 운영과, 회사나 기업의 ‘유사공동체’로서의 역할 등이 일본 내 기독교 성장을 막았다는 미쓰이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미쓰이 켄, 같은 책, 49-59.

27) 전전 헌법 원문은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의 부록 참고. 현행 일본 헌법은 종교자유를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제정의 종교단체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정책 하에서 일할”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는데 수송수단의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²⁸⁾ 그러나 선교사들이 언제 귀환할지 여부는 한국 내부의 사정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기에 미군정 책임자 하지의 의사가 가장 중요했다.

하지는 태평양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려서 무공훈장을 받은 야전 장군으로 한국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민정담당 인사는 아니었다.²⁹⁾ 그는 한국 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에 누구를 활용해야 할 지 몰랐다. 한국인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가 처음부터 관대했다는 증거는 없다. 예를 들면 그는 1945년 9월 8일 인천에 환영 나온 이춘호·조병옥·백승규 등 연희전문학교 출신 기독교인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했다.³⁰⁾ 하지는 철저히 윗선의 명령에 따르는 군인으로서 당시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인 관료들을 해방 후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기에 점령 초부터 한국인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는 이후 국무부의 명령에 따라 일본인 활용 노선을 폐기했지만 한미 간의 초기갈등은 미 정부와 그가 얼마나 한국 현실에 무지했는가를 보여준다.³¹⁾

하지는 부임 초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선교사와 그 자녀세대 인사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하지가 이끄는 미 24군단이 한반도에 상륙한 직후 선교사 자녀인 조지 윌리엄스(George Z. Williams)³²⁾가 하지의 참

28) 국무부는 최종 입국과 관련된 결정권이 군부 명령계통을 따라 현지 사령관에게 주어 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The Acting Secretary to the Charge in China (Robertson), 1945년 9월 27일(895.01/9-254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 1945년 Vol. VI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1060.

29) 하지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인 오키나와에 있었기 때문에 주한 미군정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메트레이는 하지의 정책이 결국 남한 내 극우세력의 부상을 초래했고 한국전쟁으로 가는 배경이 되었으므로 트루만 대통령의 하지의 임명을 “심각한 실책”이었다고 혹평했다. James I. Matray, “Hodge Podge,” 17.

30) J. Ernest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 126.

31)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해방된 한국에서 기존 관료제(한국의 경우는 총독부)를 활용해서 잠정적으로 통치하는 간접통치방식을 정책으로 삼았으나 한국인들의 반대로 이 정책을 철회했다.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냉전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후마니타스, 2007), 60-62; James I. Matray, “Hodge Podge,” 21-23.

32) 윌리엄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었는데 해방 후 남한 정치를 ‘급진주의자’ 대

모진이 되었다. 감리교 계통의 공주 영명실업학교를 운영했던 프랭크 윌리엄스(Frank E. C. Williams, 1883-1962)가 그의 아버지이다. 아버지 윌리엄스도 비슷한 시기 급히 인도에서 한국으로 입국, 농무부에서 활동했다.³³⁾ 그러나 윌리엄스가 하지의 참모로 오게 된 것은 하지의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 대한 조연자가 부족했던 하지는 점차 전전에 한국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가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역임한 H. H. 언더우드와 제임스 피셔(James Ernest Fisher, 1886-1980)³⁴⁾를 1945년 10월과 1946년 1월에 각각 입국시켜서 미군정청의 인사와 교육관련 부문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45년 10월 26일에 입국한 언더우드는 선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입국한 인물로 당시 미 북장로교의 선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그만큼 해방 전부터 그의 비중이 미국인 사회에서 컸음을 보여준다. 그는 소령급 대우를 받는 민간인으로 군정장관 아치발드 아놀드(Archibald V. Arnold)의 참모이자 하지의 조연자가 되었다.³⁵⁾ 그들의 저서는 미군정 내 한국 관련 필수도서목록에 올랐다.³⁶⁾ 언더우드와

‘민주주의자’의 대결로 묘사했다.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196.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한선교사 총람』, 526.

33)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61.

34) 피셔는 미 남감리교 선교사로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연희전문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며 도서관장, 문과학장, 남감리교 조선연회 회원 등을 역임했다. ‘민주주의 교육이론’을 한국에 소개했고 해방 후 미군정에서 활동했다. 대표저작은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8)와 *Pioneers of Modern Kore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이다.

35) H. H. 언더우드는 1947년 10월 18일까지 미군정에서 군정장관, 미소공동위 자문관, 문교부 장관의 자문관 등을 역임한 후 다시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연회의 이사 겸 교수로 복귀했다. 1949년 3월 그의 부인이 좌익계 청년에게 암살당한 후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다. 그 후 1951년 2월에 부산에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미군정 하의 그의 활동은 “Horace H. Underwood to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1948년 1월 26일, HGU II (Yonsei University), Box 25 Folder 581 참고.

36) 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장교들에게 한국관련 저서 목록을 제공했다. 8개 정도 분야로 나누었는데 교육부분에서는 피셔와 언더우드의 책을 추천하였다. 이들 책은 식민지시기 영어로 저술된 한국교육에 관련된 거의 유일한 도서들이었다. 추천도서의 자

피셔는 공보부와 문교부에서 각각 일하면서 선교사와 그 자녀들이 미군정에서 활동하도록 적극 추천했다. 또 해방 전부터 내한활동을 했던 남장로교의 로버트 윌슨(Robert M. Wilson), 감리교의 아펜젤러(Henry D. Appenzeller) 등도 1946년 2월 초에 미군정에서 일하기 시작했다.³⁷⁾

하지는 차츰 선교사들의 가치를 확인하였고, 1945년 11월 미 국무부에 20명의 선교사들(10명은 기독교, 10명은 가톨릭)을 요청했다. 이들은 주로 긴급한 구호작업을 위해 보건후생부에 투입되었다.³⁸⁾ 이에 미국기독교 측은 각 기독교 교파 해외선교부가 1945년 10월 15일에 연합회의를 열어 한국에 선교사들을 함께 파견하기로 결정했다.³⁹⁾ 이는 당시 한국에서 요구되었던 구호와 선교활동을 위한 현지 예비조사가 개 교파별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45년 육군부는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맥아더, 하지 등의 동의하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 후 얼마동안 “군의 구호 프로그램에 협조하는” 안을 허락했다.⁴⁰⁾ 1946년 초 기독교 각 교파연합 선교사 10명이 입국했는데 다음은 이들의 명단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등 각 교파별로 학교, 의료, 교회 복구 등을 위한 선교사들이 내한했는데 이들은 모두 해방 이전 한국에서 장기간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세한 목록은 한준상,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미군정기 교육적 모순 해체를 위한 연구과제,” 『해방전후사의 인식 3』(한길사, 1987), 604-605의 각주 13 참고. 언더우드와 피셔의 도서에 대한 서평은 캐나다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콧(William Scott)이 *Korea Mission Field*의 1926년 9월, 1929년 6월 호에 각각 기고했다. 스콧은 이들의 일반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부분 동의했다.

37) 커어와 아펜젤러는 미군정에서 일하였다.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2월 16일, RG 140-18-? PCUSA.

38)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94.

39)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0월 22일, RG 140-2-28 PCUSA, 2. 한국관련 각 교파 해외선교부들의 협의회의 공식 명칭은 The Korea Committee of the Foreign Missions Conference였다.

40) Ibid.

【표 4-1】 각 교파 해외선교부 연합회 선정 파견 선교사

번호	이름(생몰년)	교파	주요활동(전전/전후)
1	Roscoe C. Coen (1893-?)	북장로교	연희전문에서 영어와 성서 강의(1933-1940)/ 선교사업, 영락교회 맹인선교 원조, 1948년 귀국
2	Archibald G. Fletcher (1881-?)	북장로교	대구 동산병원 원장(1910-1942)/세브란스, 동산병원 의료사업, 한국전쟁시 피난민 구호사업, 1952년 귀국
3	D. J. Cumming (1892-1971)	남장로교	광주 숭일학교 교장/ 농촌 선교사업, 교단 해외선교부 총무(1949-1962)
4	William A. Linton (1891-1960)	남장로교	전주 신흥학교 교장/ 신흥학교 교장, 대전 대학설립과 초대총장, 병으로 귀국
5	Arthur L. Becker (1879-1979)	감리교	연희전문 수학교육과 교수/ 연세대 이사, 부산대 초대 총장, 1948년 귀국
6	Bliss W. Billings (1881-1969)	감리교	연희전문 교수, 감리교신학교 교장/ 기독교세계봉사회 한국책임자, 1953년 은퇴
7	Anders K. Jensen (1897-1956)	감리교	경기지역에서 선교활동/ 서울에서 선교활동, 한국전쟁 초기 포로, 1956년 과로로 사망
8	Edward J O Fraser (1878-?)	캐나다	간도의 용정, 원산 등에서 교육선교/ 조선신학교 교수, 한국기독교연합회 (KNCC) 실행위원, 1954년 은퇴
9	Ralph S. Watts (?)	제7안식일	
10	Paul E. Haines (1895-?)	동양선교회 (성결교)	동양선교회 이사, 경성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교수, 「활천, 발행인/선교활동

출전: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2월 10일, 1946년 4월 9일, RG 140-2-28 PCUSA; 『내한선교사 총람』.

한편 하지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현지사정에 밝은 선교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⁴¹⁾ 이들은 언더우드와 피셔의 경우에서 보듯이 적극적으로 미군정 측에 조언을 제공한 경우부터 최소한 통역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군정에 관여했다.

하지는 맥아더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문명세계를 연결해서 사고한

41) 강인철, 같은 책, 168-172.

‘구시대’ 미국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가 1946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 미군정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보낸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정한 선례라든가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해나갈 때 우리 모두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다소 불운한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지극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도록 충고와 예시를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을 줄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성장하는 선교사 공동체(community)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작정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을 위한 광범위한 정보 원천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한 한국에서 살아온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강조: 필자)⁴²⁾

하지는 다른 곳에서도 “우리 미국인들은 모두 선교사들이다. 우리는 한국인들을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라는 목표를 가지도록 돕는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⁴³⁾ 이러한 언급은 미군정청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의 역할을 선교사들의 것에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임무가 보다 고귀한 것임을 선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선교사들의 존재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선교사 관련 인사들에게 의존했다. 그것은 아울러 미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맥아더처럼 하지도 기독교가 미국의 제3세계 활동에 매우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점령통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하지가 알고

42)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to All Members of the American Command in Korea (1946년 12월 21일), 『미군정기정보자료집 하지(John R. Hodge) 문서집(1945.6-1948.8)』3권(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139-140.

43) *Union Democrat*. 1948년 9월 4일자. J. Earnest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 133에서 재인용. *Union Democrat*는 해방정국에서 신흥우가 Fisher의 도움으로 만든 영자 신문이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선교사들의 입국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었다. 첫째, 미군들의 숙소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인 선교사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선교사들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어수선한 전후 사정으로 언제 선교사들의 귀환이 이루어질 지 확신할 수 없었다. 특히 전쟁을 겪으면서 주택과 생활여건이 혼란스러워진 남한의 상황 때문에 군정 당국은 선교사들의 재입국을 심각히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선교부가 1946년 초 언더우드에게 보낸 문서의 일단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당신의 확신, 즉 하지 장군이 선교사들의 귀환에 대해 동정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밀로 해 줄 것을 바랍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곳에 온 그의 대변자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은 선교사들의 귀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부가 현 주거지들을 선교사들에게 넘겨줄 것을 기대하지 말 것과 군부가 모든 주택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⁴⁴⁾

해외선교부는 군정 당국이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를 선교사들에게 내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미군정은 선교사 구내의 선교사 숙소들을 군정고위 관료들이 사용하게 했다. 북한의 경우도 평양의 서문 밖 북장로교 평양지부의 구내는 김일성의 숙소를 포함, 소련 군정과 조선노동당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⁴⁵⁾ 당시 미군정 측이 선교사 부지를 미군 주둔지로 사용한 점도 선교사들의 귀국을 어렵게 했다. 특히 학교 부지는 거의

44) J. L. Hooper to Horace H. Underwood, 1946년 2월 7일, RG 140-2-28 PCUSA.

45) 노동당 당사가 북장로교 선교사 부지 위에 세워졌고 김일성의 숙소는 여 선교사 마가렛 베스트(Margaret Best)의 숙소를 개조한 것이었다. 평양에서 선교사 구획이 북한 당국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95-101.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북진 시 평양의 선교사 구획은 미 제 5공군 숙소지역이 되었다. 마펫 선교사의 아들인 하워드 마펫(Howard F. Moffett)이 선발대로 평양에 들어가서 이 부지를 확보했다. Howard F. Moffett to John C. Smith (1950년 10월 25일). 이 편지는 김홍수에 의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5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202-204에 번역, 수록되었다.

대부분 미 전술군의 주둔지가 되었다.⁴⁶⁾

식민지기 서울 거주 일본인들을 위해 북장로교 선교사로 활동했던 윌리엄 커어(William Kern)의 경우는 당시의 주택 부족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는 1946년 1월 16일에 미국 군정청 관리로 남한에 입국했다. 그의 집은 미군정청(이전의 총독부) 건물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여러 명의 선교사/선교사 출신의 미군정 관료들이 함께 살아야 했을 정도로 주택 부족에 시달렸다.⁴⁷⁾ 그러므로 여선교사들이 남한에 들어오기는 어려웠다.

한편 미군정은 1945년 9월 25일자로 군정법령 제2호를 발표해서 재산 이전을 금지하는 적산(敵産)동결조치를 취했다.⁴⁸⁾ 이는 한반도 내의 재산을 함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한 조치였다. 그리고 12월에 발표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적산인 일본인들의 재산을 미군정 측이 본격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⁴⁹⁾ 1941년 12월 23일 발표된 일본의 적산관련법(칙령 제1178호; 법령 99호,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343호로 조선에 적용)에 의해 총독부 측의 관할로 넘어간 선교지부의 학교와 부지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군정의 관할로 넘어오게 되었다.⁵⁰⁾ 이 법령은 일본 정부와 기관, 국민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재산은 군정 측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일본 당국에 의해 ‘관리’된 선교부 재산은 일단 미군정 측에 귀속되었다.⁵¹⁾ 후일 선교사들이 귀국한 후 미군정 측은, 선교부 재산을 미군정

46)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Seoul and Tokyo, 1947, 1948)(이하는 HUSAFIK), Part III, ch. 9, 21-22; 이 책은 『주한미군사』1-4(서울: 돌베개, 1988)로 간행되었다.

47) 이 집에 살았던 선교사 관련 인사들은 루츠(북장로교), 워스(남감리교), 피셔(남감리교), 짐 레비(Jim Levie, 남장로교) 등이었다.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95.

48) “法令第二號-財産移轉禁止,” 『美軍政法令總覽』(서울: 韓國法制研究會, 1971), 121-122.

49) “法令第三十三號-朝鮮內所在日本人財産權取得에關한件,” 같은 책, 149-150.

50) “敵産管理法施行規則-府令 343號,” 『조선총독부관보』1941년 12월 29일자.

51) 법령 제33호의 핵심인 제2조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其의 기관 또는 其국민, 회사, 단체, 조합, 其정부의 기타기관 혹은 其정부가 조직 또는 취득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백금, 통화, 증권, 은행감정(勘定),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及 其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 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

측이 “관리”하고는 있지만 “법적 소유권(legal title)”은 여전히 선교부에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⁵²⁾ 그러나 선교부가 재산권을 바로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선교사들의 입국은 지연되었다.

선교사들의 귀국을 어렵게 한 둘째 이유는, 당시 남한 내의 엄청난 물가상승때문이었는데 이는 민간인 외국인들의 생활을 압박했다. 공식적인 환율인 1달러 당 15엔과는 별도로 암시장에서는 1달러가 100엔에 거래될 만큼 일본 엔화는 크게 평가절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공정 환율에 의지하여 살다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 때문에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암시장 환율로 달러를 교환하는 것이 다른 대안이었지만 이는 불법행위였으므로 발각 시 그 사람은 미국으로 추방될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미군부대의 “군표(military yen)”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⁵³⁾ 이것은 미군정 측의 민간인 외국인들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하였으므로 선교사들의 귀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므로 한국선교에 경험이 있던 30명 정도만이 여권을 발급받아 1946년 말까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 중 10명 정도가 장로교 계통이었다.

선교사들의 미군정 참여는 이들 선교사들의 인식과 활동을 미군정의 인식과 활동의 한 부분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도 상당기간 남한에서 선교사들과 미군정의 역할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전후 미군정과 미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한국에서의 역할이 긴

청이 그재산전부를 소유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일본인과 정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군정청 소속으로 옮겼다.

52) 1945년 12월 25일 전남 순천의 남장로교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학교를 관리해오던 미군 측을 미군정 법원에 고소했다. 이때 법률심의국은 미군이 학교를 “관리”하지만 소유권은 선교부에 있다고 해석했다. Opinion #1038, “Status of American Owned Property under Japanese Custody, Historical Development of Property Confiscation Theory”(1947년 5월 17일), 선교사계 재산에 대한 유사한 해석은 Opinion #1242, “States of Property of Presbyterian Mission Effect of Control of Japanese Enemy Alien Property Custodia,”(1947년 9월 13일). 『美軍政期情報資料集: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1946.3~1948.8)』(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301-303, 368-369.

53)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297;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64.

급구호와 ‘민주주의’수립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담당 총무 후퍼(J. L. Hooper)는 한 서신에서, 의료선교사 존 비거(John D. Bigger)가 미군정의 의료행정 자문관으로 1945년 12월 말에 부임하자 그의 활동이 선교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⁵⁴⁾

일제 말기 각 기독교 교파들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 선교사들의 귀국과 더불어 한국 기독교계도 각 교파별로 다시 복구되었다.⁵⁵⁾ 그런데 각 교파별 복구와 사업개시와는 별도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을 종교적 문제로보다는 민족적 문제로 이해했다. 예를 들면 1946년 9월 1일에 1천 명 이상의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로 사망한 주기철 목사 등 50명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집회의 분위기는 “민족은 자주독립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로 주먹을 쥐게” 하는 것이었다.⁵⁶⁾ 즉 일제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로 신사참배로 이해하면서 한국독립을 위해 교회의 역할을 자임하기 시작했다.

2.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미군정⁵⁷⁾

1)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와 언더우드의 활동

해방 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한국에 돌아갈 선교사들을 본격적으로 선정하기 시작했다. 재입국 선교사의 선정에는 과거 식민지 조선에서의

54)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2월 10일, RG 140-2-28, PCUSA, 5.

55) 김양선, 『한국기독교 해방10년사』(장로교총회, 1956), 43-61.

56) 이 집회는 장로교 측의 전인선(全仁善) 목사의 사회로 “서울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신사참배 거부한 순교자 추도식,” 『동아일보』, 1946년 9월 3일자. 이 주제는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른 글에서 논하고자 한다.

57) 선교사들의 귀환과 미군정에 대한 문제는 안종철, “미군정 참여 미국선교사·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기독교와 역사』, 30호(2009년 3월), 7-17에 일부 수록되어 있다.

활동과 건강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해외선교부는 해방 이후인 1945년 10월에 회의를 개최해서 해방 직전 확립해둔 선교사 파견 정책을 보완해서 확정했다.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선교사로 지정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선정되지 못하자 매우 실망했다.⁵⁸⁾ 해외선교부는 전쟁이 더 장기화되지 않아서 한국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더 많은 수의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미리 선정해 두었던 A그룹 10명에 6명을 추가했다. 그 기준은 “일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좀 더 대표적인 인물들”을 파견하는 것이었다.⁵⁹⁾

A그룹이 맡은 일은 한국인 기독교인들과 “영적인 친교와 결합을 새롭게 하는 것”과 “구호와 갱생”에 종사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한시적인 성격의 봉사”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⁶⁰⁾ 그러므로 A그룹만으로 한국선교부(Korea Mission)를 구성할 수 없었다. A그룹의 역할은 긴급실행위원회(Emergency Executive Committee)의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해서 “인사와 재정을 포함하는 영구적 성격의 활동”을 결정하고 해외선교부에 “추천할 일”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B그룹에 “추가될 선교사들”에 대해 “조언하는” 것과 함께⁶¹⁾ 현지를 방문하는 해외선교부 대표단과 선교사역을 위한 “계획협의회”를 개최할 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다.⁶²⁾

58) 대표적 인물로 1902년부터 1941년까지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신학을 가르친 콕안런(Charles A. Clark)은 1945년에 67세로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거부되었다. 부인이 젊을 때 두 아이를 한국에서 잃고 우울증 증세를 보인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Donald N. Clark, *Ling Dangerously in Korea*, 292-295. 콕안런의 아들 콕안전(Allen Clark)은 해방 후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로서 한국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활동했고 한국교회사에 대한 저서가 있다. 손자 클락(Donald N. Clark)은 텍사스의 한 대학(Trinity College)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59)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0월 22일, RG 140-2-28 PCUSA, 1.

60) Ibid.

61) Ibid, 1-2.

62) Ibid, 2. 현지 환율의 불안정성 때문에 긴급실행위원회가 현지 선교사들의 월급을 분기별로 결정하는 역할도 맡았다. J. L. Hooper to Horace H. Underwood, 1946년 2월 7일, RG 140-18-? PCUSA, 1.

초기 입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긴급 구호사업과 한국인 기독교인들과의 초보적인 접촉에 국한시킴으로써 해외선교부가 현지상황을 파악한 후 선교사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셈이었다. 이는 “현지교회(national church)가 지도력과 책임”을 더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⁶³⁾ 결국 해외선교부가 더 많은 실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30년대 중후반 신사참배와 교육사업 철수 논란 시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와 빚었던 충돌과정에서 해외선교부가 학습했던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선교부는 1945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A그룹의 선교사들과 회의를 개최해서 이들의 선교지 파송여부를 다시 확정했다.⁶⁴⁾ 플레처, 코엔은 각 교파 해외선교부 연합회 파견의 협력 선교사로 가장 먼저 발령을 받았고 후일 라이너가 여기에 합류해서 이들이 한국의 북장로교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⁶⁵⁾ 그룹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설립에 집중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즉 의료선교사 이외에도 평양신학교 교수라든가 연희전문학교 성경교수 등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들 명단은 앞서 언급한 【표 3-7】에 소개된 인물들에 추가된 인물들이다.

【표 4-2】 한국입국 A그룹 선교사 추가명단⁶⁶⁾

선교사 이름	활동지역	주요활동(전전/ 전후)
William N. Blair	평양	평양신학교 교수/ 대구 선교지부, 1947년 4월 소련군정 허락으로 평양방문
Henry W. Lampe	선천	남자고등성경학교 교장/ 청주 선교지부, 대한 기독교서회 이사, 1948년 10월 은퇴
Miss Edith G. Myers	평양	평양연합기독병원 간호사/ 입국 포기

63)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0월 22일, 2.

64) Ibid, 3.

65)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6년 4월 9일, RG 140-2-28 PCUSA, 1-3.

66) 해방 전 해외선교부에서 확정된 10명은 Edward Adams, John Bigger, Allen D. Clark, Roscoe C. Coen, Archibald G. Fletcher, Harold H. Henderson, Clarence S. Hoffman, Olga C. Johnson (여), Horace H. Underwood, Mrs. Frederick S. Miller(여)였다.

Stacy L. Roberts	평양	평양신학교 교장/ 1946년 사망
Harold Voelkel	안동	안동 성경학교 교사/ 안동, 서울 선교지부, 한국 전쟁 시 포로선교, 군목창설에 기여, 숭실대 교수
Harry A. Rhodes	서울	연희전문학교 교사/ 1년 후 귀국, 장로교 역사 편찬 위원

출전: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5년 10월 22일, RG 140-2-28 PCUSA

A그룹 구성원들 가운데 비거는 선교사 자격이 아니라 미군정의 의료행정 자문관으로 1945년 말에 들어와 보건후생부에서 일했고 에디스 마이어스(Edith G. Myers)는 한국입국을 포기했다.⁶⁷⁾ H. H. 언더우드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군정에서 일하기 위해 이미 1945년 10월 26일 입국했다. 그의 아들로 선교사 출신인 H. G. 언더우드도 1946년 5월에 입국, 문교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⁶⁸⁾ 또 A그룹에 속했던 엘라 샤록스(Ella J. Sharrocks)도 군정청에서 일하기 위해 군정관리 자격으로 1946년 초에 입국했으므로 A그룹에서 제외되었다.⁶⁹⁾ 비록 A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루츠와 커어(William Kerr)도 북장로교 선교사를 역임한 인물들로 이미 1946년 초부터 미군정에서 활동하였다.⁷⁰⁾

비거, 언더우드, 샤록스 등 미군정청에서 일하게 된 북장로교 선교사 3명을 제외하고 A그룹 16명의 사람들 중 7명이 1946년 차례로 한국에 돌아왔다. 그들은 플레처, 코엔, 램프, 애덤스(Edward Adams), 해롤드 빌켈(Harold

67)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2월 10일, 4-5. 비거는 1945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4월 22일까지 미군정에서 일한 후 한국 선교사로 남았다. 앞의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6년 4월 9일, 10.

68)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pp. 102-103. 다른 아들인 리처드(Richard F. Underwood, 1927-)도 미군정 하에서 하사관으로 활동했다. Horace H. Underwood to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 1948년 1월 26일, HGU II, Box 25 Folder 581.

69) J. L. Hooper to the Korean Mission, 1946년 4월 9일, 9.

70)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이들이 선교사로 돌아가 줄 것을 기대했다. J. L. Hooper to Horace H. Underwood, 1946년 2월 7일, Horace H. Underwood to J.L. Hooper, 1946년 3월 1일. RG 140-18-? PCUSA.

Voelkel), 로즈, 블레어(William N. Blair)였다. 뒤의 두 명은 이미 은퇴한 구성원으로 신사참배와 선교부의 교육기관 유지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이었는데 한국에 자문역으로 왔다가 1-2년 내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1930년대 말 교육철수를 강력히 주장한 이들은 해방 이후 남한 선교무대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들은 1946년 10월 2일 첫 모임을 한 후 매달 정기모임을 가졌고 로즈와 블레어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1948년 1월 북장로교 한국선교부가 재조직될 때까지 실행위원회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했다.⁷¹⁾ 이들도 군정청에서 근무했고 이후 증가한 11명의 북장로교 선교사들 모두가 미군정 자문역에서 통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다.⁷²⁾ 1947년 봄까지도 한국에 여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었지만 미군들이 떠나면서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여성을 위한 일이 필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선교사들의 입국도 허락되었다.⁷³⁾

당시 재개될 선교 활동, 즉 신학교, 병원, 의과대학 관련 시설의 수리와 관리를 위해 많은 미국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미 미군정 하에서 자문관으로 활동하던 언더우드도 새로 전개될 선교사업에서 맡은 역할이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입장에서 특히 중요했다. 언더우드는 해외선교부에 선교사업을 위한 송금절차와 환율에 대해 조언하는 등⁷⁴⁾ 선교사들이 귀환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해외선교부는 해방 직전부터 선교사들의 귀환을 준비하였지만 해방 후 일본과 한국의 어수선한 사정 때문에 언제 선교사들의 귀환이 이루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미국의 점령지인 남한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미

71) Rhodes and Campbell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28-29.

72) Ibid., 29.

73)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7년 3월 4일, RG 140-2-29 PCUSA, 1. 주로 A그룹 입국자들의 배우자들이 많았다. 미군은 1947년 7월 41,340명에서 점차 급감해서 1948년 3월에 20,000명으로 줄었다. 전술군과 군정요원 규모의 추이는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214의 표 4 참고.

74)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2월 16일, Horace H. Underwood to Friends, 1946년 3월 12일, RG 140-18-? PCUSA.

군정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군정당국의 입장 표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1946년 초에도 선교사들의 한반도 입국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선교사 파견에 대한 하지의 우호적인 평가와 송금문제의 해결 가능성 등 언더우드가 보내온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⁷⁵⁾ 언더우드는 군정장관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사역의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언더우드는 하지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해외선교부에 보고했다.

지난 연말 신탁통치문제를 둘러싸고 흥분이 고조되었을 때, 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온 종일 하지[장군]와 함께 일했습니다. 이 **고위 지휘관(high command)**은 선교사들과 기독교 활동에 대해 매우 친절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 도지사 등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기독교인이자 선교사계 학교와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볼 때 그러합니다. 수많은 우리 졸업생들이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의 정부를 “연희전문정부(Chosen Christian College government)”라고 부릅니다.(강조: 필자)⁷⁶⁾

다소 자신의 역할을 자랑한 측면도 있지만 언더우드와 하지의 관계, 연희전문 졸업생들의 미군정 관료로의 진출 등을 보여주는 내용이다.⁷⁷⁾ 아래의 인용문도 언더우드가 미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잘 보여준다.

저는 선교관련 일들에 시간을 할애해왔는데 주로 군정의 관방 재산관

75) 하지의 선교사에 대한 우호적 평가는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2월 7일, RG 140-18-? PCUSA, 2. 언더우드는 해외선교부가 다른 교파 선교부와 연합해서 송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2월 16일.

76)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일, RG 140-18-? PCUSA.

77) 점령 초기에 여전히 여자들이 입국하기에 매우 어려웠다. 언더우드는 하지와 면담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을 약속받기도 했다. Memorandum by Col. Hartshorn to Underwood, 1946년 3월 13일, RG 140-18-?. PCUSA.

리과(Property Custodian, General Affairs)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하지 장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는 또한 감리교인들, 구세군, 제 7 안식일, YMCA, 남장로교, 성결교 인사들과 협의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아울러 맹인사역, 세브란스, 연희전문(Chosen Christian College), 경신학교(J. D. Wells), YWCA 등등에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들은 저를 알고 제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게 왔는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맹인들을 위한 시설, 학교에 대한 보조금, 일본계 교회와 학교 재산에 대한 관리, 감리교 목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저는 민간인으로서 군대 체널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직접 상층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강조: 필자)⁷⁸⁾

위에 언급한 것처럼 언더우드가 다양한 교파의 기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견지해온 초교파적인(ecumenical) 입장과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었다.⁷⁹⁾ 한편 그는 하지에게 선교사들을 위한 충분한 거주지가 있으므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지에게서 미군이 선교사들의 부동산보다는 일본인들 것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답을 얻었다.⁸⁰⁾ 아울러 언더우드는 한국내에서 선교사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해외선교부가 미 국무부에 “모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다.⁸¹⁾ 그는 한국에서 병원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도 급선무로 생각해서 비거와 만나서 세브란스 병원의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병원의 문제점을 해외선교부에 보고하여 긴급자금을 얻어냄으로써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⁸²⁾

78)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일, RG 140-18-? PCUSA, 1.

79) 그의 아버지인 H. G. 언더우드는 교계의 협력을 위해 노력했었다. 그의 아들 언더우드는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 에큐메니칼(교파 간 통합) 운동을 선호했기에 그의 가족은 연합기관이었던 연희전문과 세브란스의전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손인수, 『원한경의 삶과 교육사상-H. H. 언더우드의 선교교육과 한국학 연구』, 294-297.

80)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일, 2.

81)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5일, RG 140-18-? PCUSA.

82)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일, 2, 주로 비거가 의료, 특히 장로교 계통의 병원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세브란스병원의 구체적인 문제는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2일, RG 140-18-? 1, “Board Action of April 2, 1946,” in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6년 4월 9일, RG 140-2-28 PCUSA, 4.

언더우드는 1946년 3월 15일, 군정청 재산관리과(Property Custodian, 1946년 4월 이후 관제처)로부터 선교부 소속의 재산을 관리하는 “장로교 선교부 재산관리관(Administrator of Presbyterian Mission Properties)”으로 위촉되었다.⁸³⁾ 그는 당시 남한의 북장로교 선교지부인 서울, 청주, 대구, 안동 지역 선교사 부지의 상황에 대해 해외선교부에 보고했다.⁸⁴⁾ 미군은 당시 적산으로 분류된 선교사 지부에 군인들이 주둔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었다. 미군이 무상으로 선교사 부지를 사용하던 것을 언더우드가 나서서 “대여(lease)”의 형태로 바꾸어서 선교사들이 돌아오기 전 “현지에서 얼마간의 엔화 수입”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했다.⁸⁵⁾ 워낙 한국 현지사정을 알기가 힘들었으므로 해외선교부는 언더우드가 안동 선교부 부지를 일시적으로 군부에 “대여”해 주는 것을 승인했다.⁸⁶⁾

그러나 해외선교부는 언더우드가 자신들을 대리해서 선교사 부지 문제를 처리한다는 인상을 받고 그것을 견제하려 했다. 또 언더우드가 부인(Ethel V. W. Underwood)을 해방 후 첫 여성 선교사로 파견시켜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해외선교부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⁸⁷⁾ 해외선교부는

83)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15, 20일, RG 140-18-?, PCUSA. 언더우드는 장로교 소속 재산만이 아니라 적산 중 종교법인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께 맡았다. 그리하여 불교사찰이었던 박문사(博文寺) 부지의 처리등에도 관계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 49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2(서울: 대한민국국회, 1999), 661.

84)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 연회전문 등의 선교사부지로 당장 4개에 40명, 1-2개월 내 6개의 집에 32명, 도합 72명이 거주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Horace H. Underwood to Dear Friends, 1946년 3월 12일, RG 140-18-? PCUSA의 Note 2.

85) 서울은 당장 선교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구와 청주는 “부분적으로” 미군이 사용하고 있으며, 안동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안동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바꾸었다. 대구와 청주에도 “대여”형식을 도입하려고 했다. 위의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3월 20일. 그의 아버지 언더우드도 구한말 상행위로 당시 미공사 알렌과 갈등을 겪었다. 아버지 언더우는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했듯이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했다. 선교사와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류대영, 『초기미국선교사 연구』, 211-241 참조.

86) J. L. Hooper to Horace H. Underwood, 1946년 4월 15일, RG 140-18-? PCUSA.

87) 언더우드는 해외선교부가 선교사들의 귀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4월 9일. 물론 그는 언더우드 여사의

해외선교부가 임명한 대표가 선교부 자산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했다. 해외선교부는 미군정에서 일하는 비거가 1946년 4월 22일자로 군정청 자문관 일을 사임한 후 한국에 남아 선교사로 일할 때, 한국에 있던 플레처, 코엔과 더불어 복장로교 선교사들을 당분간 대표하도록 했다.⁸⁸⁾

언더우드는 미군정청 민간관리와 선교사의 역할을 병행하면서 해외선교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하여 그는 해외선교부에 자신과 미군정 내 다른 선교사들의 지위에 대해 확답을 요청했다.⁸⁹⁾ 이에 대해 해외선교부는 전후에는 전시 하의 협력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⁹⁰⁾ 선교사들이 “선교대상국(mission fields)”에서 “정부요원(government agencies)”으로 일하기로 한다면 이들의 자격을 인정하긴 하되 “연금을 제외한 무급휴직” 상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⁹¹⁾ 아울러 그러한 “휴직(leave of absence)”도 “때때로 재검토”될 것이며 “무한정 지속”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⁹²⁾

귀환이 결정된 후 해외선교부에 이러한 판단에 대해 사과했다.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4월 18일, RG 140-18-? PCUSA. 언더우드의 부인 에텔(Ethel)은 1946년 7월에 한국에 돌아와 기독교 여성절제회와 연희전문 교수부인회를 이끄는 등 활발히 활동했지만 1949년 3월 17일 자택에서 ‘좌익’ 청년들에게 암살되었다. 언더우드는 그 여파로 1951년 2월 20일 부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손인수, 『원한경의 삶과 교육사상』, 111-141;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117-122.

88) J. L. Hooper to Horace H. Underwood, 1946년 4월 15일, PCUSA. 언더우드는, 해외선교부가 자신이 “권위를 남용(arrogating authority)”하고 “해외선교부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4월 9일, RG 140-18-? PCUSA. 한편 비거는 미군정에서의 근무를 연장했다.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5월 1일, RG 140-18-? PCUSA.

89) Horace H. Underwood to J. L. Hooper, 1946년 4월 9일, RG 140-18-? PCUSA.

90) “(전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전쟁활동을 돕고자 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고 정상적인 선교활동을 위해 극동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해졌기에, (선교사들의) 지위를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고 (선교사들의) 일에 대한 일반적 정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J. L. Hooper to Horace H. Underwood, 1946년 3월 22일, RG 140-18-? PCUSA.

91) J. L. Hooper to Horace H. Underwood, 1946년 4월 16일, RG 140-18-? PCUSA

92) Ibid.

2) 각 교파 선교부들의 복구와 미군정, 정부수립

선교부들의 복구와 미군정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귀환과 유사하게 감리교 선교사들과 관련인사들도 이 시기 군정 측과 긴밀한 관계 하에 속속 한반도에 입국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윌리엄스는 농무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윌리엄스도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하지의 부관 겸 통역관이 되었다. 곧명에서 OSS 장교로 근무하던 워스도 1946년 초 하지의 부관으로 합류했다. 또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의 아들 헨리 아펜젤러도 1946년 2월에 미국 무부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입국했다.⁹³⁾ 남감리교 선교사 출신 피셔는 언급한 대로 1946년 1월부터 미군정 관리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가 1945년 11월에 선교사 10명의 귀환을 요구한 것에 응해 감리교 측은 블리스 빌링스(Bliss W. Billings), 베커, 앤더스 쟈센(Anders K. Jensen) 세 명을 대표로 파견했다(【표 4-1】 참조). 10명 중 최초로 빌링스가 1946년 4월에 입국 후, 나머지 두 명과 로이드 스나이더(Lloyd H. Snyder, 1886-?)⁹⁴⁾ 등이 동년 여름에 입국했다. 그 후 1946-48년에 걸쳐 도합 45명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다.⁹⁵⁾ 본국 해외선교부의 지시로 감리교 한국선교부는 구성되지 않았고 해방된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혼선이 있었다.⁹⁶⁾ 아더 베커와 같은 노련한 선교사도 1년 만에 귀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감리교 선교사들은 한국

93) 이들의 입국에 대해서는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930-1960*, 161-162.

94) 스나이더(申愛道)는 프린스턴대학교 졸업 후 1908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입국 후 1915년까지 서울 YMCA에서 교사로 있었다. 1922년 재대한 후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장, 연회전문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40년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간 후 해방 후 다시 입국했다. 『내한선교사 총람』, 473.

95) Charles A. Sauer, *Methodists in Korea*, 162. 1946-1950년 감리교 입국 선교사들의 명단은 같은 책의 부록 D 참고.

96) Ibid., 173-175.

감리교단 측과 교섭을 통해 태평양전쟁 전 감리교 선교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다시 확보했다.⁹⁷⁾

호남지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귀환도 북장로교, 감리교 측과 유사했다. 가장 먼저 로버트 윌슨이 미군정 측의 “초대”로 1946년 1월 15일 서울에 도착한 직후 전국의 “나병환자 사역(leprosy work)”를 맡으면서 순천에 관련 본부를 세웠다.⁹⁸⁾ 그 후 1946년 7월 1일 윌리엄 린튼(William A. Linton)과 커밍이 입국, 각각 전북과 전남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둘러보았고 윌슨과 함께 선교부 조사위원회(survey committee)를 구성해서 해외선교부에 선교정책을 건의했다.⁹⁹⁾ 남장로교 측은 전쟁 이전의 자산을 다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군산의 부지는 일본인들에 의해 이미 팔렸고 학교부지는 불타 버렸다. 광주의 선교사 부지는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다.¹⁰⁰⁾

선교부 조사위원회는 1947년 2월 해외선교위원회 실행위원회를 대표하는 풀턴 등을 만나 전후 선교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비공식적 협력”을 하고 [지역 노회에] “비회원”으로 남을 것, 교육부분에서 “학교를 열지 않을 것,” 이미 개설한 학교에는 “가르침, 조언, 후일 가능하다면 재정보조” 등의 수단을 통해 협력할 것 등을 결정했다.¹⁰¹⁾ 해방 직후 호남지역은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띄며 선교사들의 주도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므로 귀환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와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¹⁰²⁾ 그것은 전쟁 전 남장로

97) Ibid., 172-173.

98)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173.

99) Ibid., 174.

100) 목표는 행인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Ibid.

101)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1946-1948*, 6-7; Brown[Ibid., 175에서 재인용].

102)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 굴복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호남지역의 교계 주도권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호남지역의 교회는 재정보조를 위해 현지 선교사들을 통하지 않고 미국교회와 직접 접촉하려고 했으므로 선교사들은 한국선교부 연례회의에서 그것을 강력히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Brown, Ibid. 176-179.

교 측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의 교육기관 지속에 대한 열망을 무시한 것과 전후 남장로교 소속 재산의 재확보에 대한 호남지역인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북장로교 측과는 대조적인 점이다. 평양을 제외하고 북장로교 관할지역에서 한국인들은 대체로 교육기관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조선에 돌아온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은 “미래에 [한국교회와] 공식적인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한국교회와 교회 관련 기관들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한다고 결정”해두었고 이에 해외선교부도 동의했다.¹⁰³⁾ 예를 들면 선교부는 해방 직후 정신여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여학교 재건위원회의 학교 재건 운동에 학교부지의 “일부(plant)”를 임시로 사용하도록 승인했다.¹⁰⁴⁾ 당시 정신여학교는 다른 북장로교파 선교사계 학교와 달리 ‘적산’이었으므로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재건을 위해 한국인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각 교파의 해외선교부는 한국장로교 총회와 한국선교부간의 협력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¹⁰⁵⁾

1947년 여름에는 각 교파 선교사들의 한국 귀환이 대체로 일단락되었다. 같은 해 7월 14일 이화여고 강당에서 각 교파 연합선교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장로교·감리교·성결교·구세군 등 각 교파 선교사들과 각 교파 해외선교부에서 파견한 대표, 그리고 각 교파의 한인대표자들이었다. 5일간 회의 끝에 한국선교의 방법을 각 교파 선교협의회에 맡기자는 것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북장로교 한국선교부는 한국교회에 “협조하는 것을 선교의 방법”으로 채택했다.¹⁰⁶⁾ 이 회의는 선교사 철수 이전 시기의 교파별 선교주의로 돌아간다는 선교사들의 입장을 보여준다.

각 교파의 선교부는 194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북

103) “Board Action of December 16, 1946,” in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7년 3월 4일, RG 140-2-29 PCUSA, 2.

104) Ibid, 2-3.

105) “Board Action of February 18, 1947,” Ibid., 2.

106) 김양선, 같은 책, 90-91.

장로교 해외선교부는 1947년 10월 22일자로 한국선교부를 재건할 것을 결정했다.¹⁰⁷⁾ 이에 따라 1948년 1월에 재조직된 북장로교 한국선교부는 31명의 구성원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해방 전과 비교할 때 현저히 줄어든 숫자였다. 비록 한국선교부 구성원 수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59년에는 71명까지 늘었지만 1920년대 한때 구성원들이 175명에 이르렀던 것을 회복할 수 없었다.¹⁰⁸⁾

아래 【표 4-3】의 명단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새로 구성된 선교부에 해방 전 교육사업에 종사한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즉 H. H. 언더우드 부부, 플레처 부부, 에드워드 애덤스 부부, 램프 부부 등은 모두 서울·대구·선천 등에서 신사참배문제로 논란이 있었을 때 교육사업에서 선교부의 철수를 반대했던 이들이다. 이는 적어도 해방 후 교육사업에서 한국선교부가 한국인들의 학교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3】 재조직된 한국선교부 명단(1948년 1월 21일)

선교지부	선교사	비고
서울	Roscoe C. Coen, Charles L. Phillips 부부, Horace H. Underwood 부부, Horace G. Underwood 부부, Archibald G. Fletcher 부부, John F. Genso 부부, Miss Jean Delmarter	총 12명
청주	Harry J. Hill 부부, Henry W. Lampe 부부, John T. Underwood, Mrs. Frederick S. Miller	총 6명
안동	John Y. Crothers 부부, George J. Adams, Miss Katherine E. Clark, Miss Olga C. Johnson, Harold Voelkel	총 6명
대구	Edward Adams 부부, Archibald Campbell 부부, Miss Gerda O. Bergman, Miss Edna M. Lawrence, Dewitt S. Lowe	총 7명

출전: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6월 21일, RG 140-2-29 PCUSA.

남장로교 측도 1948년 봄까지 29명의 선교사들이 호남지역에 돌아와서

107) "Board Action #47-1045, October 22, 1947" in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6월 21일, RG 140-2-29 PCUSA, 6.

108) Rhodes an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29-30.

활동하게 되었고 1947년 4월에 전주에서 첫 선교부 연례회의가 개최되었다. 1948년 봄 선교회는 전주·광주·목포·순천·군산 등 철수 이전의 5개의 선교지부를 다시 열었다.¹⁰⁹⁾ 해방 후 돌아온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숫자는 철수 이전의 반에 불과했기에 이전의 영향력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 선교사들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하는데 이후 1950년대 한국교계의 급속한 성장으로 선교사들의 역할은 감소되었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한국장로교 총회를 “교회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선교부가 “선교사업과 신학교교육에서 총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선교부의 계획을 총회 결정과 조화(coordinate)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¹¹⁰⁾

선교사들은 한국교계 갈등의 단층선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었다.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신학교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선 신사참배 반대파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 경남 진해(이후 부산)에 새로 고려신학교가 개설되었는데 학교는 신사참배 반대로 만주 봉천에 가 있던 박형룡을 교장으로 초빙해서 출발했다. 하지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한 인사들의 반대로 신학교가 인준을 받지 못해 박형룡은 서울로 떠나 총회 직속의 장로교신학교(현 서울 광진구 소재 장로교 통합측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다.¹¹¹⁾ 그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과정에서 일부 미국 정통파 장로교(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선교사들이 고려신학교를 지지하

109)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175-176.

110) “Board Action of September 21, 1948,” Harold H. Henderson (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2.

111) 출옥성도와 고려신학교의 관계, 박형룡의 해방 후 활동에 대해서는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344-355; George T. Brown, *Mission to Korea*, 178-179; 김양선, 같은 책, 149-165 참조. 박형룡이 고려신학교를 떠난 이유와 이후 장로교 교단분립문제에 대해서는 양낙홍, “박형룡의 고려신학교 사임 이유에 대한 재고,”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5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년 9월); 양낙홍, “1959년 한국 장로교의 분열과정,” 같은 책, 제23호(2005년 9월); 양낙홍, “1960년대 장로교 ‘승동측’과 ‘고신측’의 합동이 재분리에 이른 과정,” 같은 책, 제27호(2007년 9월) 참조.

게 되면서 반(反)선교사적 입장을 표방한 조선신학교와 대립했다. 총회의 신학교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았다. 김재준의 조선신학교 측은 후일 보수적 미국교파가 아닌 캐나다장로교 측의 지지를 받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¹¹²⁾ 해방 직후 장로교 측은 세 개의 신학교로 나뉘어졌고 선교사들도 그렇게 나뉘었다.

병원과 학교의 재건에는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의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므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의 영향력은 증가했다.¹¹³⁾ 그러나 선교부는 이미 조선의 중등학교 운영과 관계된 영향력을 태평양전쟁 이전에 상실했다. 그러므로 “선교부가 아닌 [한국]교회가 이들 학교들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았고 선교부는 조력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¹¹⁴⁾ 예를 들면 한국선교부는 경기노회 및 정신여학교 동창회와 함께 정신여학교 재건에 착수하면서 5,000달러의 긴급자금을 시설복구에 투자했다.¹¹⁵⁾

선교부는 고등교육기관인 연희대학교, 세브란스의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한국인 운영진과 “협력적 접근” 사역이라는 형식을 취했다.¹¹⁶⁾ 그리하여 이들 고등교육기관의 이사회는 한국교

112) 장로교 총회 측은 1947년부터 조선신학교(한국신학교) 측과 캐나다 선교회 특히 교수로 참여한 윌리엄 스콧에 대해 신학적 경향(‘성경무오류성’)을 근거로 강력히 비난했다. William Scott, *Canadians in Korea*, 208-219.

113) 강인철의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된 자원과 방식 면에서, 해방 이전에는 종교권력의 ‘직접적인’ 장악과 행사에 크게 의존했다면, 해방 이후에는 재정적 종속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방식에 주로 의존하는 변화를 보였다”는 평가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16. 한국인들의 미국 해외선교부 자급에 대한 의존과 선교사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고찰이 필요하다.

114)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3월 8일, RG 140-2-29 PCUSA, 2.

115) “Board Action of March 16, 1948,”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6월 21일, RG 140-2-29 PCUSA, 7. 투자된 자금은 해외선교부의 “재건기금(Restoration Fund)” 중 “시설복구(Rehabilitation of Plant and Equipment)”를 위한 항목에서 나왔다. 이 금액은 얼마 후 7,000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Board Action of November 16, 1948,” Harold H. Henderson(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6.

116) “Comments on Board Actions of February 16-17, 1948,” J. L. Hooper to the Korea

회가 파견한 대표와 선교부들이 함께 참여했다.¹¹⁷⁾ 그러나 선교부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학대학교에 엄청난 재정투자를 재개함으로써 해방이전에 버금가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당시 선교부는 “시설 복구기금”으로 25,000달러를 연희대학교에, 세브란스의학대학교에도 23,750달러라는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¹¹⁸⁾

한국교회와 각 기관에 대한 자금투자는 선교부 내에 “재건기금위원회 (Restoration Fund Committee)”가 구성됨으로써 좀 더 활발해졌다.¹¹⁹⁾ 이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각 선교지부의 성경학교들,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재정보조가 실시되었다.¹²⁰⁾ 해방 후 새로 추진된 사업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국 설립도 위원회의 재정지원 대상이었다.¹²¹⁾ 선교부는 해방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Mission, 1948년 3월 8일, RG 140-2-29 PCUSA, 2.

117) “Board action of April 20, 1948,”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6월 21일, RG 140-2-29 PCUSA, 7.

118) 연희대학교는 “Board Action of February 16-17, 1948,”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6월 21일, RG 140-2-29 PCUSA, 7; 세브란스 의학대학교에 대한 결정은 “Board Action of August 11, 1948,” Harold H. Henderson (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7.

119) 이 위원회의 각 지역 대표는 다음과 같다. H. H. Underwood(서울), Harry J. Hill(청주), J. Y. Crothers(안동), Archibald Campbell(대구), Edward Adams(위원장). “Board Action of June 30, 1948,” Harold H. Henderson (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6.

120) 주목되는 것은 환경직 목사의 영락교회와 대광중학교에 대해 엄청난 금액인 10,000달러와 20,000달러가 각각 지원되었다. 두 기관은 월남인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Board Action of June 30, 1948 and October 19, 1948,” Harold H. Henderson (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7-8; “Board Action of November 16, 1948,” Ibid, 2로 북한에 투자되기 위해 확보된 50,000달러가 남쪽에서 월남 기독교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던 것이다.

121) “Board Action of November 18, 1947: Establishment of Radio Broadcasting Station, Seoul, Korea,”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3월 8일, RG 140-2-29 PCUSA, 7. 이 라디오 방송국은 오늘날의 CBS이다. 또 시청각 자료 생산을 위한 사업에도 재정지원이 있었다. “Board Action of October 20-21, 1947,” J. L. Hooper to the Korea Mission, 1948년 6월 21일, RG 140-2-29 PCUSA.

재입국한 선교사들은 교회, 병원, 학교를 넘어서 미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선교사들과 군정장관이 매주 가진 협의회였다. 1946년 12월과 1947년 3월 미군정 측은 신교와 구교의 모든 가능한 선교사들과 협의회를 가졌고, 두 번째 회합 이후부터 6개월 동안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당시 군정장관인 아처 러치(Archer Lerch)와 간담회를 가졌다. 러치의 보좌관은 언더우드였으므로 간담회와 관련된 그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러치 군정장관의 때 이른 사망으로 간담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지만, 군정측이 선교사들을 우대하였음을 보여 준다.¹²²⁾ 게다가 선교사들은 군정 측의 손님자격으로 미군의 “군매점(Post-Exchange), 병원, 교통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¹²³⁾

선교사들과 대한민국 정부수립¹²⁴⁾

대개 선교사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물론 신생 대한민국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반공에 대한 이념과 더불어 신생 독립국에서 선교활동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대표적인 인사는 역시 H. H. 언더우드이다.

그는 미군정 내에서 자문관으로 적극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을 매우 우호적으로 보았다.

1948년 유엔위원단은 4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를 감독했습니다. 선출된 정부는 절대로 “꼭두각시 정부”라든가 미국에 의해 “세워진(set up)”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그 구성원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선거에서 자유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좀 더 옛날식(older) 민주주의의 모델이긴 합니다.¹²⁵⁾

122) Rhodes an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379-380.

123) Ibid. 380.

124) 이 부분은 안종철, “미군정 참여 미국선교사·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대한민국정부립,” 18-25에 일부 수록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공산주의자들과 그 동료 여행객들만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구성된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 이승만을 “전제군주”라고 보든가, 한국을 “경찰국가의 압제 하”에 있다고 “열렬히”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²⁶⁾

그에게는 1949년 3월, 부인 에델(Ethel V. W. Underwood)의 암살은 곳곳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communist agents)”의 소행이었다.¹²⁷⁾ 언더우드는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을 소련의 지령을 받는 존재로 보았으므로 한국전쟁의 궁극적 책임은 소련이 져야한다고 보았다. 그는 북한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와의 전쟁 속에서 언더우드는 한국의 재건을 위한 노력은 군사적 승리를 넘어 “영적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⁸⁾

H. H. 언더우드의 견해는 그의 친구인, 남감리교 선교사 출신으로 미군정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의 책임자로 일했던 피셔(J. Ernest Fisher)의 것과 유사했다. 그는 연희전문에서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언더우드와 함께 교수로 일했는데 미군정기에 한국인들의 인선과 ‘민주주의’교육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주로 미국식 시민적 자유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로 보면서 이 대척점에 ‘전체주의’가 서 있는 것으로 보았다.¹²⁹⁾ 피셔도 언더우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125) Horace H. Underwood(with a concluding chapter by Marion E. Hartness), *Tragedy and Faith in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51), 12. 이 글은 언더우드가 부인이 암살된 후 미국에 돌아가 있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은 미국이 전쟁 중인 한국을 도와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서문은 당시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한국관련 총무인 존 스미스(John C. Smith)가 썼다.

126) Ibid., 13.

127) 위와 같음.

128) Ibid., 42. 그의 민주주의 확보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ung H. Pak, “‘Not by Power nor by Might’: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Spiritual Wars in Korea, 1885-1953”(Columbia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6).

129) 피셔 민주주의론의 핵심은 사회 여러 기관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다양한 자유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제·어네스트 피셔, 『민주주의적 생활』(남조선과도

보호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¹³⁰⁾

그는 정부수립 후 정치교육과를 사임한 후 1948년 말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는 YMCA 총무(1920-1935)를 오랫동안 역임한 신흥우를 도와서 영자신문인 *Union Democrat*(「합중민보」)를 발간했다. 그는 정부수립 직후 이승만 대통령을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인물로 보았다. 즉 이승만의 선출은 “국민 대다수의 선택”이었던 것이다.¹³¹⁾ 그는 적어도 한국전쟁 직전까지 이승만이 반대자들을 탄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즉 이승만이 반대파들을 검거한 것에 대해서, 만약 캐나다가 공산주의 국가로 국경너머 “간첩들을 보낸다 면” 미국에도 “수많은 정치범들이 있을 것이라”고 응수할 정도로 이승만의 초기 정치체제를 옹호했다.¹³²⁾ 연희전문 교수를 역임한 이들은 대체로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단히 우호적으로 보았다. 아마도 애비슨과 헐버트는 이들의 의견에 동의했을 것이다. 이들은 미군정하에 일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 등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교사 관련 인사들 중 미군정과 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대체로 1920년대 후반에 조선 농촌에서 일하거나 미국에서 대공황을 목도했던 선교사 혹은 관련인사들에게서 이러한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1928년부터 1934년까지 함흥 YMCA에서 한국 농촌운동에 종사한 후, 미국에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수 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온 아더 번스(Arthur C. Bunce)이다. 그는 해방 후 미군정에 미 국무부의 경제담당관으로 와서 남한의 경제정책과 미국의 원조문제를 담당했다. 그는 남한 경제가

림시정부 여론국, 1947), 1-4.

130) 같은 책, 54. 피셔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일반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131) J. Ernest Fisher, *Pioneers of Modern Korea*, 218-219.

132) *Ibid.*, 220-221.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경에서 대북 심리전관련 일에 종사했다. 이 무렵 이승만에 반대했던 흥사단 인사들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후일 이승만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Ibid.*, 225-227.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 미국이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미소공동위에 파견되어 끝까지 ‘중간파’ 중심의 좌우합작을 통해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대한민국 건국 후 그는 미국 경제협조처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ECA)의 한국지부장을 맡았다.

그는 북에서 소련이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므로 그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그가 보기에 북한에서는 남쪽보다 “무거운 쌀 공출 프로그램” 때문에 쌀의 “높은 암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배급도 매우 자의적인 “정치에 기초”하고 있었다.¹³³⁾ 그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한 연합국의 신탁통치 실시만이 “좌파와 우파의 독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¹³⁴⁾ 아울러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지배를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한 사회의 개혁을 통해서 소련의 노동자·농민층에 대한 인기를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이해와 위신”은 미국이 한국에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¹³⁵⁾

번스는 여운형 암살 이후에 좌우합작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을 때 유엔 한국위원단의 활동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또 건국 전후에 이승만을 통해서도 남한 내 개혁이 이루어져서 “북한군이 봉기해서 역겨운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멋진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¹³⁶⁾

133) 그는 러시아인들이 북한을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1947년 2월 24일(895.00/2-2447), *RIAK, 1945-1949*, 2.

134) 그는 유엔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실패를 고백하거나 러시아 측을 당황시키는 조처”가 됨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위의 문서, 3.

135)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1947년 7월 12일 (895.00/7-1247), *RIAK, 1945-1949*, 3-5.

136) Arthur C. Bunce to James Penfield, 1948년 1월 20일 (895.00/1-2048), *RIAK, 1945-1949*

이에 비해 국무부 극동국 한국과장과 버클리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조지 맥쿤(George M. McCune)은 번스보다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부터 그는 남북의 갈등을 통해 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 남북 점령 당국의 “공동보중”아래에서 “중간과적인(middle-of-the road) 한국 임시정부”를 설립하자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¹³⁷⁾ 그는 번스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미소공동위에서의 입장, 즉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임시정부’구성을 위한 협의대상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한반도의 공산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¹³⁸⁾ 그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U. N. Temporary Commission to Korea, UNTCOK)이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될 새 정부에 “중도파”를 수용하도록 권고한 점을 중시했다.¹³⁹⁾ 또한 그는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연석회의”를 주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화해”보다는 “노골적인 전투(open conflict)”를 포함한 “깊은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보았다.¹⁴⁰⁾ 번스와 맥쿤은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소련에 의한 북한에서의 전체주의적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선교사들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정부수립 당시 양측에서 오간 축하전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한국선교부를 통해 이승만에게 정부탄생의 축전을 전달했다.¹⁴¹⁾ 이는 남장로교와 감리교 등 다른 교파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국가수립에 대한 열망에 대해 이승만은 정부수립 후 미국 오하이오(Ohio)주에서 개최된 각 교파 해외선교부 연합회의에 다

에 첨부된 Arthur C. Bunce to Edwin M. Martin, 1948년 1월 17일, 5-6.

137) George M. McCune, “Post-War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The Journal of Politics*, 9(November, 1947), 623.

138) George M. McCune, “The Korean Situation,” *Far Eastern Survey*, 17/17 (1948), 201.

139) *Ibid.*, 199.

140) *Ibid.*, 202.

141) Harold H. Henderson(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Greetings to President Syngman Rhee,”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1.

음과 같은 전문을 보냈다.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본인은 [오하이오] 콜럼버스(Columbus)의 해외선교회 연합회의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60여년 전에 시작된 개신교 선교사회는 영적 힘의 근원을 매우 강력히 조직해주어서 지난 40년 동안의 박해 동안, 특히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에서 보듯이, 교회가 생존하고 번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날기독교의 영향력은 국가의 사회적·정치적 삶 도처에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심지어 비기독교인들도 일찍이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들을 보내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발달의 영역에서 지원과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다양한 인도적 활동을 진행하는데 모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¹⁴²⁾

이승만은 정부수립과 더불어 선교사들의 한국 내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여기서도 자신의 오랜 화법, 즉 개신교와 한국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주장을 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지난 40년간 한국은 일본에 의해 사라지다시피해서(black out) 심지어 [한국의]고통 받는 이들에게 박애주의적이며 인도적인 도움조차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 연료, 의료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 건너 있는 기독교 국가(Christian lands) 친우들의 자애로운 마음에 호소합니다. 많은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북 간의 경제적 분단입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련의 훈련을 받은 붉은 군대(Red Army)는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위협합니다.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한국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멸절시키려 하고 있고 영적·지적인 각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¹⁴³⁾

142) Harold H. Henderson(Acting Secretary) to the Korea Mission, "President Syngman Rhee's Message to the Korean Missions Conference," 1948년 12월 1일, RG 140-2-29 PCUSA, 1.
143) Ibid.

그러므로 이승만에게는 신생 대한민국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면서 곧 개신교계의 위기였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개신교 인사들의 장례식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신생 대한민국 탄생의 숨은 공로자들인 언더우드 부인의 암살(1949년 3월, 연희대학교장), 외무부와 공보처의 고문으로 활약한 윤병구의 사망(1949년 6월, 정부장), 험버트의 극적인 한국방문과 뒤 이은 죽음(동년 8월, 국장),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구 아기였던 엘리스 아펜 젤러의 ‘순교’라 할 수 있는 이화여대 예배도중의 죽음(1950년 2월, 사회장)에 대한 반응은 단적인 예들이다.¹⁴⁴⁾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부터 시작된 선교사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은 정부의 훈장수여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¹⁴⁵⁾

선교사들과 한국인 엘리트

선교사들은 당시 미국 문화의 중요한 수입통로가 되었다. 선교사들과 한국인 엘리트들의 관계는 더욱 긴밀했는데, 선교사들은 미국 유학파들을 적극 추천해서 미군정에 불러들였고, 미국은 남한에 진주하면서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지도세력을 형성하려는 구상을 갖고 왔다고 의심될” 만큼 미국 유학 출신자들을 우대했다.¹⁴⁶⁾ 식민지 시기 미국 유학생 대부분이 기독교를 통해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졌기에 그들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에 우호적인 인물들이었다. 미군정에 등용된 미국 유학파들의 예를 든다면 이묘묵(하지의 수석 통역 겸 비서관), 정일형(인사 행정처장), 하경덕(과도입법의원), 오천석(문교부), 이훈구(농림부장), 지용은, 조병옥(경무부장), 이

144) 이승만의 이들 장례식에 대한 조사(弔詞)와 반응은 “深甚한 弔意 李大統領談,” 『동아일보』 1949년 3월 20일(언더우드 부인); “이승만 대통령, 윤병구 장례식에 조사,” 『서울신문』 1949년 6월 25일;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 험버트 박사를 문병,” 『경향신문』 1949년 8월 5일; “험버트 박사 서거,” 『경향신문』 1949년 8월 7일; “李大統領 偉勳을 欽慕 女史 別世에 弔意,” 『동아일보』 1950년 2월 24일 등 참고.

145)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385-388.

146) 정일형, 『오직 한길로: 항일·반독재 투쟁사』(울지서적, 1991), 149.

용설(보건위생부), 고헌경(문교부), 유억겸(문교부장), 최순주(조선은행장) 등 대부분 기독교계 인사들로 연희전문 관련인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의 전쟁수행에 중요한 동원인력들이 되었다. 예를 들면 박희도가 운영했던 「東洋之光」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국인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미영 타도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박희도·백낙준·신홍우·전필순·이용설·정춘수·정인파·김인영·최동·한석원·양주삼·윤치영·윤일선·이훈구·박인덕·최순주 등이었다.¹⁴⁷⁾ 이들은 영미권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과 해방 후 미군정에 참여한 인사들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말기 엘리트들의 미군정 참여문제는 한국인들 사이에 매우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없다.

미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는 하지의 통역이자 고문(顧問) 역할을 담당했던 연희전문 교수 이묘묵(李卯默, 1902-1957)¹⁴⁸⁾이다. 그는 평안도 출신으로 공주 영명학교를 졸업했으며 미국 시라큐스(Syracus)와 보스턴(Boston) 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친 후 귀국, 연희전문에서 교편을 잡았다.¹⁴⁹⁾ 그는 1945년 9월 12일부터 하지의 수석 통역관으로

147) 「東洋之光」, 1942년 2월호에 실려 있다. 이 글은 최원규 엮음, 『일제 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청아출판사, 1988), 291-340에 재수록 되었다. 이 좌담회에 대한 분석은 다른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만 이들이 일제의 강제에 의해 동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대개 영미의 자본주의, 그리고 선교사들의 조선인들에 대한 권위주의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148) 이묘묵은 평안남도 중화군 출신이다. 해방 후 *The Korea Times*를 창설했고 미군정의 한국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단정 수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UN한국 단장과 주영 특명전권 공사 등을 역임했다.

149) 김상태는 이묘묵이 미주에 있을 때 홍사단원이었으므로 평안도 인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는 연희전문의 교수로 학내 교수진 주택에 살면서 언더우드와 매우 긴밀히 연락하였고 기호지역의 한국인 엘리트들과 함께 활동했다. 언더우드 가족에게 태평양전쟁의 발발을 알려준 인물이 바로 이묘묵이다. 그는 사망 전까지 이승만 행정부에서 계속 일했다.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80. 이묘묵의 미군정 발탁에 대해 유창한 영어실력과 영명학교 출신의 윌리엄스 소령의 추천설, 조선 총독 아베의 1급 보좌관 오다 야스마(小田安馬)의 추천설이 있다. 김상태, “근현

활동하기 시작했다. 다른 예는 미군정청에서 인사행정처장으로 활동한 정일형(1904-1982)인데, 그도 평안도 출신으로서 감리교 계통의 광성학교와 연희전문에서 수학 후 미국에 건너가 드류(Drew) 대학에서 미국 남부 지역의 농촌사회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감리교신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다가 일제의 반대로 교수직을 사임한 후 태평양전쟁기 은둔생활을 했다.¹⁵⁰⁾ 초기 미군정하에서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직책이었던 인사행정처장이 되었다. 정일형 자신이 언급한 대로 자신이 인사행정처장에 임명된 것은 “미군정에 참여한 연희전문학교의 미국인 교수들과 선교사들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⁵¹⁾ 즉 언더우드와 피셔 등과 관계가 있었다. 이묘묵과 정일형은 둘 다 평안도 출신으로 서울에서 사회활동을 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고위직에서 활동했다.

1946년 당시 미군정 내 50명 정도의 한국인 고위관료 가운데 35명 정도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1948년 건국 시 제헌의회 의원 190명 가운데 38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 13명 정도는 목사였다.¹⁵²⁾ 미군정과 협력한 인사들 가운데는 북에서 내려온 서북지역 출신들도 많았다.¹⁵³⁾ 이

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113-114.

150) 정일형은 황해도 안악군 장연면 출신으로 해방 전 감리교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박사논문이 1930년대 미 남부의 농촌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문제에 관련된 YMCA인사들과 친화성이 있었다. 미군정에서 인사 행정처장을 역임했고 정부수립 후 유엔외교 활동에 종사했지만 이후 이승만과 거리를 두었다.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서울 중구(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3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민주당 신당 창당 주역(1955)이었고 제2공화국의 초대 외무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줄곧 야당생활을 했다. 평남 도민회, 이북 5도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서북 지역의 대표인사였다. 첫 여성 변호사였던 이태영이 그의 부인이고 정대철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이 그의 아들이다. 그의 활동은 정일형, 같은 책 참고.

151) 언더우드, 피셔 등의 추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같은 책, 149.

152) Rhodes an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Vol. II, 381. 조만식의 측근이었던 김동원 장로가 국회 부의장이 되었고 이승만의 세번째 부통령이 함태영 목사였다는 사실도 기독교인들의 한국정치와 깊은 관계를 보여준다. 류대영, “함태영,” 『한국사 시민강좌』 제43집(일조각, 2008) 참조. 강인철의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국가기구 내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인구대비 과대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인철, 같은 책, 175-190.

153) 이들에 대해서는 김상태,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 174-266에 정리된

들은 소련의 북한점령통치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월남해서도 반공활동을 전개했으며 미군정 측의 소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¹⁵⁴⁾ 미군정은 여러 통로를 통해 소련군정의 폭압적인 정책과 이에 따른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의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¹⁵⁵⁾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평안북도 신의주의 대표적 기독교 지도자로 제1교회와 제2교회를 담임했던 윤하영, 한경직 목사가 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미국측에 서신을 보내어 공산주의를 강력히 비판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45년 9월 26일자 연합군 사령부에 보낸 편지에서 신의주 자치위원회에 가해진 소련점령군의 압력과 “공산주의자들이 위원회와 언론 등을 장악”한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¹⁵⁶⁾ 두 사람은 편지를 보낸 직후인 동년 10월 남한으로 내려와 미군정의 조언자들이 되었다.

미군정하에서만 아니라 제1공화국 당시 고위관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승만의 기독교정책은 미군정의 기독교 정책과 유사했으며 특히 이승만은 선교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그들을 각별히 대접했다. 이승만의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지원은 1950년대 한국에서 기독교가 사실상 “국가종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¹⁵⁷⁾

서북지역 인사 목록 참조.

- 154) 월남 기독교세력은 반공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한국전쟁도 민족내부 모순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 즉 국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다. 김상태, 같은 논문, 124-138; 강인철, 같은 책, 261-274.
- 155) 북한에 대한 소련의 초기 점령정책은 와다 하루끼, “소련의 對北韓政策 1945-1946,” 『분단전후의 현대사』(일월서각, 1983). 소련의 김일성에 대한 지지는 1945년 11월에 발생한 신의주 학생의거사건에서부터 두드러졌다.
- 156) H. Merrell Benninghoff to the Secretary of State, “Soviet Activity in Northern Korea,” 1945년 10월 1일(740.00119/ 10-145)의 첨부물. 『대한민국사 자료집: 주한미군 정치고문 문서』18(국사편찬위원회, 1994), 28-31. 둘 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고 신사참배요구에 굴복했다. 윤하영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2,000명 신도를 가진 신의주 제일교회의 목사였고 1939년 장로교 총회장이 되어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연회와 세브란스의전을 계속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하영, 광진근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1939년 9월 15일), 『신사참배 II』, 414. 해방 후 한경직과 함께 사회민주당을 창당했고 월남 후 충북지사를 역임했다. 한경직은 신의주에서 고아와 노인들을 위한 시설(保隣院)을 감독했고 월남 후 영락교회 목사로 활동했다.
- 157) 김홍수, “기독교인 정치가로서의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 출판

해방 직후 한국에 설립된 미군정은 군정통치를 위해서 선교사들의 정보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재입국한 선교사들은 주택부족과 물가폭등 때문에 미군정 측의 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재입국한 선교사들은 예외 없이 통역에서부터 미군정의 핵심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에 종사했다. 미군정에 관여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H. H. 언더우드와 피셔 등 연희전문 교수 출신들을 들 수 있다. 맥아더, 하지와 마찬가지로 언더우드는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연관성을 상당히 강조한 인물이었다. 그는 선교사들의 재입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과 한인들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해줌으로써 미군정 점령 초기에 군정측에 현지에 대한 정보와 한국인 인맥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부, 2006); 강인철, 같은 책, 172-173.

결론

이 책에서는 한반도에서 변혁기인 1930~40년대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일제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대응,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대일전 협력, 해방 후 미군정에 대한 협력활동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제는 영미의 협력을 얻으면서 ‘한국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에 서구문화를 상징하는 기독교와 선교사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식민지 시기에도 기독교 선교는 지속되었다. 기독교 각 교파의 해외선교부는 ‘정치적 불개입’ 즉 ‘정치적 중립’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일제 측과의 충돌을 피했다. 다만 선교사들은 일제의 한국민족운동에 대한 잔인한 탄압에 대해서는 “잔인함에 대해서는 중립은 없다(No Neutrality for Brutality)”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¹⁾ 대체로 각 교파 해외선교부와 미 국무부 극동국의 정치 불개입 정책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다.²⁾ 그러나 1931년 ‘만주침략’ 이후에는 일제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써 선교사들과 일제 당국 사이에는 긴장이 조성

1) J. V. Berger to State Department, 1919년 7월 29일(895.00/646), *RIAK, 1910-1929*

2) 구한말 미 국무부는 한반도 내 선교사들의 정치개입을 우려, 서울주재 실(Sill)공사에게 정치 불개입을 강조하는 “회람”을 미국인들에게 돌리도록 했다. 1897년 5월 11일자로 발표된 회람공문(enclosed in Sill to John Sherman, May 15, 1897), *Dispatches from United States Minister to Korea, 1883-1905. File Microcopies of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Washinton, D. C.(No. 134, rolls 1-22)*,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112-113에서 재인용.

되었다. 이 책의 제1부는 그러한 과정을 추적했다.

제1장에서는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한국에 강요된 신사참배 문제의 배경과 이에 대한 선교부의 반응을 다루었다. ‘만주사변’ 이전에 한국에서 신사참배가 논란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과 일본인 지식인들은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에서 전쟁이 확산되면서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군국주의를 지탱하는 사상적 동력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신사참배 문제는 보수적 신학을 견지했던 선교사들에게는 큰 신앙적 도전이었다. 그러나 1930년 대 초 선교사들과 총독부 측의 타협에서 보듯이 총독부의 고위 관료가 군부 측의 신사참배 강요라는 강경한 입장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다. 이 점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지 못한 부분이다. 비록 1935-1936년에 걸쳐 평양 송실재단 학교들의 일부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반대로 출국을 당하기도 했지만 1936년 중반까지는 일제의 선교사들에 대한 유화책이 지속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일본 내에서 군부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일제는 중국에서 전쟁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자신들의 지배권 내에서 ‘황민화’ 정책을 위해 신사참배를 모든 학교에서 강요했다. 대만식민지에서 총독부가 영연방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중등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이것이 식민지 한국에 파급되어 왔다. 식민지 간의 이러한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찰이 요구된다. 또 총독부 내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려고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제 외곽단체들의 움직임이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정책을 선도하고 있었다는 점은 대만과 한국 식민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일제 파시즘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이 어떤 세력이었고 총독부와 어떤 관계였는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신사참배 강요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다. 이에 조선선교부는 교육사업의 철수를 결정했다. 상당수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종교 양심상 신사참배를 거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

지고 있었지만 신사참배 때문에 선교부가 교육기관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인식했다. 이와 함께 수많은 한국인들이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선교사계 학교를 인수하려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철수와 학교폐쇄라는 입장은 한국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한편 선교사들 내의 갈등은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를 반대하는 교육선교사들과 찬성하는 선교사들 간의 입장 차이로 나타났다. 후자는 주로 전도사업에 종사하는 인물들이었다. 초기에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도 조선선교부의 교육사업에서 철수라는 강경한 입장을 지지했다. 남장로교 측도 교육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는데 만약 철수과정 중에 신사참배가 강요된다면 그 즉시로 학교폐쇄를 단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호주장로교 측은 초기 대응에 혼선이 있었고 감리교, 캐나다장로교, 일본의 기독교계 모두는 철수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2장은 교육사업 철수를 둘러싸고 진행된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었다. 선교부의 교육철수 안은 당시 서울과 동경의 외교관들도 관심을 기울인 중요한 문제였다. 대체로 외교관들은 종교 문제에 국무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사참배의 종교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들은 선교사들이 가능하면 일제 측과 타협하면서 학교를 경영하기를 원했으므로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선교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 내 교육선교사들, 일본 내 미국 선교사들은 사실상 미 외교관들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 점은 이 연구가 밝힌 중요한 사실들이다. 이는 미국인들 내의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전후 아시아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 반영되었을 것을 암시한다. 미국의 전후 아시아정책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교사들의 교육철수 결정에 대해 한국인들은 학교가 일제 당국에 의해 그대로 폐쇄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리하여 각 지역별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교부를 통해 해외선교부가 교육기관을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교육기관 지속 요구에 대해 교육기관 운영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지지를 보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한국인들을 전시체제 하에 통제하고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열망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했다. 그러므로 일제 측은 한국인들의 교육기관 인수경영 안을 지지했다. 일제의 정책은 ‘다수파’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썩기’로 기능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 일제의 반선교사 정책과 전시 한국인 동원에 대한 정책, 교육 선교사들의 한국인들의 인수경영 안에 대한 지원 등이 이 시기 학교운영 문제에서 매우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 점은 신사참배 문제가 단순히 일제와 한국인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소수파’에 속했던 H. H. 언더우드, 쿤스, 헨더슨 등 교육선교사들은 ‘기독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제와 타협하면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든가 아니면 한국인들에게 인계하려고 했다. 이들은 오랜 학교운영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선교부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조선선교부에 위원단을 파견해서 선교부의 의견을 파악하려고 했다. 언더우드는 미국에 돌아가 한국인들의 학교인수 요구에 대한 열정을 해외선교부 측에 전달하면서 해외선교부의 선교정책을 바꾸려고 했다. 해외선교부는 한국 거주 선교사들을 직접 불러서 의견을 들으면서 언더우드 등이 주장한 교육인수 안을 지지하게 되었다. 해외선교부의 입장은 한국 거주 선교사들 다수의 반대에 직면하여 평양의 학교폐쇄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부 수정된 형태로 나타났다. 해외선교부는 교육기관을 한국인들에게 인도하는 방안을 대체로 지지하면서 때로는 조선선교부 전체 회의에 교육기관 철수를 다시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선교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실망한 일부 선교사들은 북장로교를 탈퇴해 더 ‘보수적인’ 교파 선교회로 옮겨가기도 했다. 이들은 해방 후 다시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서 한층 보수적인 교단을 후원했다. 이렇게 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는 교육기관 철수 안을 두고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결국 신사참배문제를 겪으면서 ‘소수파’

가 북장로교 조선선교부를 주도하게 되었다. 앞으로 신사참배와 교육사업 철수를 두고 발생한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미국 내 교파정치에서 어떤 과장을 일으켰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제2부의 제3장은 신사참배 논란 이후부터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까지 선교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지를 다루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 측의 반영·반미 정책은 교육선교사들의 교육기관 지속에 대한 희망과는 달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교육기관을 접수하게 했다. 1940년 무렵 동아시아에도 전운이 드리워지자 미국 선교사들은 더 이상 선교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때 국무부는 자국민들의 철수를 ‘권고’했으므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1940년 11월에서 이듬해 초에 걸쳐 한반도를 떠났다. 일부 선교사들은 일제에 의해 ‘추방’되었다. 결국 교육기관 운영에 참여한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잔류파 선교사들과 미국으로 떠나가는 선교사들은 서로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인 1942년 6월초에야 적성국 국민 교환이라는 명목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전쟁 발발 후 국무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주 내 한국인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임정승인과 조선인들에 대한 전쟁물자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무부는 내부입장을 정해두고 있었지만 가장 최근까지 한반도에 거주한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의 정보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얻고자 했다. 그러므로 국무부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에게 한인들의 일제에 대한 저항, 독립운동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귀국하는 선교사들은 귀국하는 함상에서 한반도에 대한 정보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 일제의 한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 일제에 대한 한국인 저항의 어려움, 해외 한인지도자들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 정보는 국무부의 임정불승인과 신탁통치 안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교사들의 정보가 미 정보당국이 여러 경로로 수집한 정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귀국 후에도 일부 선교사들은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정보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아울러 귀국한 선교사들 중 일부는 한인 독립운동가들, 특히 이승만과 관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선교사들의 미 정보당국과의 협력 관계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식민지하에서 견지해 온 철저한 ‘정교분리’를 넘어서 ‘기독교’와 미국의 ‘민주주의’의 확산을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이는 선교사들의 해방 후 미군정과의 협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도 전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종전 후 한국에 입국할 선교사들을 선정해두었다. 선교부는 해방 후 변화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면서 이전과 달리 한국인 교회와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해 두었다.

제4장에서는 선교사들의 한반도로의 귀환과 미군정에서의 협력문제를 다루었다. 일본과 남한의 연합국 사령부와 미군정 측은 점령정치의 유지를 위해 선교사들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책임자였던 맥아더와 하지는 둘 다 ‘민주주의’와 기독교 선교를 구별하지 않았다. 선교사들 중 일부는 선교사 자격이 아니라 미군정 자문관 자격으로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입국했다. H. H. 언더우드로 대표되는 일부 기독교 선교사들은 해방 후 미군정을 통한 전후 복구사업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것과 선교사업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군정 측과 궤를 같이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해외선교부도 군정에 참여한 선교사들의 활동이 선교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언더우드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들은 미 군정청에서 활동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선교사들의 입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한 선발전의 노력의 결과 1948년 초 각 교파 조선선교부는 다시 구성되었다. 북장로교 선교부는 전쟁으로 폐쇄해진 교회와 기독교 관련 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개시했다. 선교부는 교회와 학교 이외에도 라디오 방송국, 시청각 사업, 월남인들에 대한 지원 등을 새롭게 시작했다. 해외선교부가 전쟁 기간 동안 확립해 둔 한국교회와 ‘협력적 관계’ 수립이라는 정책이 기

독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앞으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방 후 월남인들이 한국기독교계를 주도해온 점을 생각할 때 북장로교 선교부의 월남기독교인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보다 깊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³⁾ 그것은 해방 후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사회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식민지하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1, 2세들의 자녀들은 미군정과 함께 한국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미군정에 참여했던 선교사 관련 인사들 중 일부는 일찍부터 ‘소련의 영향’ 하에서 북한에서 진행되는 사회개혁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남한 단정 안을 지지했다. H. H. 언더우드 부자는 그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이와 달리 일부 젊은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인들의 열망을 한층 섬세하게 인식하면서 미군정이 직면한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했다. 그리하여 한국의 토지개혁 등 사회개혁과 미국의 남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여기에는 번스와 맥쿤 등이 해당될 것이다. 민주주의 외양만을 갖춘 미군정과 이후의 남한정부가 선교사관련 인사들 중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남한의 민주주의는 ‘반공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불과했다. ‘자유주의자들’이 과연 미군정에서, 혹은 미국의 대한정책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더 논하려고 한다. 이 주제는 일본 미군정에 몸담았던 다른 인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 선명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다만 미군정이 남긴 교육제도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유산은 후일 산업화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남한 내 ‘민주주의’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

이 책은 앞으로 더 생각해야 할 주제들을 던져준다. 첫째, 선교사를 포함한 서구인들의 정체성 문제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20대 후반과 30대 초

3) 해방 후 보수적 기독교의 중심에 월남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중심, 2007), 9-12장 참조.

반 미국을 떠나 30-40년 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사회에 많은 애정을 가졌다. 그러나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는 한국에 동화되겠다는 의식을 지니지 않았다. 그들은 선교지부에서 자신들만의 공간에 머물면서 한국인들과 제한된 접촉을 했다. 이 점은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거점인 평양, 선천, 강계, 안동 등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양의 선교사 구역(【부록 2】 참조)은 평양성 외곽의 북서쪽에 위치하면서 한국인들의 생활공간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였고 미국의 중산층 문화를 그대로 유지했다.

둘째로 이들 서구인들의 경험을 어떻게 한국사회와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승만·여운형·김규식·김구·백낙준·이훈구·함태영·박형룡·김활란·임영신 등 20세기 한국의 엘리트들이 선교사들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살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주제이다. 한국인 엘리트와 선교사들의 밀접한 관계는 많은 예들이 있다. 예로서, 조지 맥쿤의 조사(助事)로 있다가 미국 유학 후 연희전문학교(연세대학교)의 교수·총장을 역임한 백낙준, 찰스 클라크 선교사의 조사로 일했던 여운형과 함태영,⁴⁾ 언더우드의 집안에서 자라, 그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한 김규식, 아펜젤러의 총애를 받은 이승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이들도 있었는데 윤치호는 대표적인 경우이다.⁵⁾ 그런 비판적인 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1920년대 한 어린이가 과수원의 과일을 절도한 사건과 관련, 어린이의 이마에 염산으로 글자를 새긴 한 선교사(C. A. Haysmeir)의 잘못이 그 무렵 반선교사 논쟁에 이용되었다는 것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⁶⁾

셋째는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이다. 일제강점기 선교사들은 대개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선교활동에 종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4)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120.

5) 윤치호는 영미인들의 위선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것이 일제 측의 전쟁에 협력한 부분적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16-43』, 1940년 3월 18일, 5월 3일과 1941년 12월 8일, 11일, 26일과 43년 1월 1일자 등 참조.

6)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94.

선교사 관련 인사들이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군정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들은 미군정의 시설을 사용하며 미군정 당국과 정기적인 회동을 했다. 이들이 당국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의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암시한다.⁷⁾

넷째, 한미관계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선교사들과 그들 자녀들의 해방 후 역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이들은 해방 후 교육과 의료기관에서 일하면서 한국사회와 관련을 맺었다. 언더우드 집안, 클라크의 아들과 손자(Allen D. Clark와 Donald N. Clark), 맥쿰의 자제(George M. McCune, Shannon McCune), 마펫의 아들 형제(Samuel H. Moffett, Howard F. Moffett), 윌리엄 쇼(William E. Shaw)의 아들과 손자(William Shaw, William Shaw Jr.) 등을 들 수 있다. 각 기독교 기관과 관련해서 이들의 역할을 보다 깊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 중 과반이 여성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할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내한선교사들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어떤 위치에 놓여있었는지, 그것이 한국인 엘리트 여성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 등이 추적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받고 해외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⁸⁾ 이들이 한미관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역할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⁹⁾ 당시 이들은 주로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인 여성들과 달리

7) 강인철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는, “종교와 다른 영역의 분화”라는 세속화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종교의 탈정치화 내지 사사화(私事化)”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 - 시민사회 1945-1960』, 226-230.

8) 일제시기 미국 유학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병준,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유학과 근대경험,” 『이화사학연구』39집(2009. 12).

9) 김활란, 임영신, 박인덕 등 교육계에 종사한 한국인 여성 엘리트들은 영어권에서 자신들의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이것은 한미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Helen Kim (Edited by J. Manning Potts), *Grace Sufficient: The Story of Helen Kim by Herself* (Nashville, TN: The Upper Room, 1964); Louis Yim(Editorial Help of Emanuel H. Demby), *My Forty Year Fight for Korea* (New York: A. A. WYN, Inc., 1951); Induk Pakh, *September Monkey*(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남성중심의 사회질서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한국인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도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경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국근현대사 속의 서구인들의 위상과 한국인들의 대외접촉의 역사상(像)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신문-잡지

「동아일보」, 「매일신보」, 「기독신보」, 「조선일보」

The Korean Mission Field, 1931~1941(Seoul: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The Korean Student Bulletin, 1922~1940(국가보훈처, 2000).

2) 정부 기록 및 미 외교문서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기독교편, 1910-1945』(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국가보훈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재미한인자료』(국가보훈처, 200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주한미군정치고문문서』18·19(국사편찬위원회, 199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23~25(국사편찬위원회, 199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편, 『구한말조약 회찬』상중하(국회도서관, 1965).

대한민국국회,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1~5(대한민국국회, 1999).

『미군정법령총람』(한국법제연구회, 1971).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하지(John R. Hodge) 문서집(1945.6-1948.8)』3권(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법무국·사법부의 법해석 보고서(1946.3-1948.8)』(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외무성 편찬,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東京: 原書房, 1965).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I-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35집).

정용욱·이길상 편,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집』1권(돌베개, 1994) 중 “Records of Harley A. Notter, 1934-45.”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관보』
 _____, 『施政三十年史』(朝鮮印刷株式會社, 1940).
 _____ 官房文書課 編纂, 『諭告·訓示·演述總覽』(朝鮮行政學會, 1941).
 _____ 警務局 편(김봉우 역), 『日帝植民統治秘史』(청아출판사, 1988).
 岡久雄 (學務局長 鹽原時三郎 序), 『朝鮮教育行政』(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40).
- U. 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the U. S. Armed Forces in Korea,”
 Manuscript on the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 Seoul and Tokyo, 1947, 1948[『주한미군사 1~4』(돌베개, 1988)].
- U. S. State Department, RG 59, Decimal File 895,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10-192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Scholarly
 Resources Inc., 1962, 9 microfilm Rolls.
- U. S. State Department, RG 59, Decimal File 895,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30-193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Scholarly
 Resources Inc., 1986, 2 microfilm Rolls.
- U. S. State Department, RG 59, Decimal File 895,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0-1944*.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Scholarly
 Resources Inc., 1986. 3 microfilm Rolls.[『미국무성 한국관계 문서,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0-1944』I~IV(원주문화사, 1993)].
- U. S. State Department, RG 59, Decimal File 895,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1945-1949*.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Scholarly
 Resources Inc., 1986. 12 microfilm Rolls.
- Records from NARA, RG 332, U. 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서울대
 도서관 소장(<http://e-archives.snu.ac.kr>).
- U. S. State Department,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 VI), 1946 (Vol. VIII), 1947(Vol. VI), 1948(Vol. VI).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1971, 1972, 1974.

U. 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Unpublished Research Papers, 1947-1950(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3) 선교사 및 기독교 관련 자료

김홍수 엮음,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105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문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32집)

이만열 엮음,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 II-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문서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자료총서 제36집).

富坂キリスト教ヒンター編, 『日韓キリスト教關係史資料 II, 1923-1945』(東京: 新教出版社, 1995).

Federal Council of Missions in Korea, *The Korea Missions Year Book*(Seoul, Korea: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8, 1932).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Board of Foreign Missions, *Korea Mission Reports 1911-1954*(Department of History, Presbyterian Church (U. S. A), Philadelphia, Pennsylvania/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사본)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북장로교 해외선교부) 1931-47년 조선 관련.

Horace G. Underwood II Papers,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관.

Oak, Sung-Deuk ed. *Sources of Korean Christianity 1832-1945*(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_____ ed. *Selected Materials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1886-1950*(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Seoul Press, *Politics and Religion in Chosen: Attitude of the Government Towards Christianity*(Seoul: The "Seoul Press" Office, 1920/ 半井清, 『朝鮮の統治と基督教』, 京城: 朝鮮總督府, 1921).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Seoul: YMCA Press, 1934/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자료총서 27).

Charles A. Sauer, *Within the Gate*(Seoul: YMCA Press, 1934/ 자료연구회 옮김, 『은자의 나라 문에서: 감리교 선교 50주년 기념자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4) 사전류

김승태·박혜진 편, 『내한선교사 총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1988).
戰前期官僚制研究會 編, 秦郁彦 著, 『戰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東京: 東京大出版會, 1981).
『日本近現代史研究事典』(東京: 東京堂出版, 1999).
白井勝美, 高村直助, 鳥海 靖, 由井正臣 編, 『日本近現代人名辭典』(東京: 吉川弘文館, 2001).

5) 회고록, 일기, 대담, 여행기 등 개인기록

김상태 편역, 『윤치호일기 1916-1943: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 시기』(역사비평사, 2001).
김우진, “나의 학창시절과 광복군 활동,”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삶』(한성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7).
미야타 세스코 해설·감수(정재정 역),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혜안, 2002).
서우드 홀, 김동열 옮김, 『닥터 홀의 조선회상』(좋은 씨앗, 2003).
안이숙, 『죽으면 죽으리라』(신망애사, 1968).
오천석, 『외로운 성주』(교육과학사, 2001/초판 1975).
長空自敍傳出版委員會, 『長空 金在俊 自敍傳-凡庸記』(도서출판 풀빛, 1983).
張利郁, 『나의 回顧錄』(샘터, 1975).
정일형, 『오직 한 길로: 항일·반독재 투쟁사』(울지서적, 1991).
趙炳玉, 『나의 回顧錄』(민교사, 1959/재판 1986).
平南民報社, 『古堂曹晩植』(三省印刷株式會社, 1966).
Blair, William N., *Gold In Korea*.(New York: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46/ 김승태 옮김, 『정금같은 신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 Borton, Hugh, *Spanning Japan's Modern Century: The Memoirs of Hugh Borton*. (New York etc.: Lexington Books, 2002).
- Grew, Joseph C., *Ten Years in Japan: A Contemporary Record Drawn from the Diaries and Private and Official Papers of Joseph C. Grew*(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44).
- Kenan, George F., *Memoirs 1925-1950*(New York: Pantheon, 1967).
- Kim, Helen(김활란), *Grace Sufficient: The Story of Helen Kim*(Nashville, TN: The Upper Room, 1964).
- Noble, Harold J(Frank Baldwin ed.), *Embassy at War*(Seattle&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5).
- Pak, Induk(박인덕), *September Monkey*(New York: Harper & Brothers, 1954).
- Reischauer Edwin O., *My Life Between Japan and America*(New York and Tokyo: Weatherhill Inc., 1986).
- Sands, William F., *Undiplomatic Memories: The Far East 1896-1904*(New York: Whittlesey House, 1930).
- Underwood, Horace G (Michael J. Devine ed.), *Korea in War, Revolution Peace: The Recollections of Horace G. Underwood*(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주장돈 역,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Underwood, Horace H., *Tragedy and Faith in Korea*(New York: Friendship Press, 1951).
- Underwood, Lillias H., *Underwood of Korea*(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8/연세대학교 출판부 재간, 1983).
- Yim, Louise(임영신), *My Forty Year Fight for Korea*(New York: A.A. WYN, Inc. 1951).

2. 연구논저

1) 단행본

- 강위조, 서정민 옮김, 『한국기독교사와 정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_____,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중심, 2007).
-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구대열, 『한국국제관계사연구 1: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역사비평사, 1995).
- _____, 『한국국제관계사연구2: 해방과 분단』(역사비평사, 1995).
- 국학연구원 편,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푸른산, 1990).
-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 _____,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다산글방, 1994).
- _____, 『한말·일제강점기 선교사 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年史』(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56).
- 김원용, 『재미한인 50년사』(하와이국민회, 1959 / 해안, 2004 재간).
- 김운태,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통치』(박영사, 1998/개정판).
-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_____,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_____, 『미국종교사』(청년사, 2007/ 종교문화총서 7).
- 류영익, 『한국근현대사론』(일조각, 1990).
- _____, 『한국인의 대미인식: 역사적으로 본 형성과정』(민음사, 1994).
- 막스 베버, 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문예출판사, 1988).
- 미야다 미츠오[宮田光雄], 김효전 역,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제도를 통한 정신』

- (교육과학사, 1992).
- _____, 양현혜 역, 『국가와 종교-유럽정신사에서의 로마서 13장』(삼인, 2004).
- 미야다 세쓰코[宮田節子], 이형량 역, 『朝鮮民衆과 ‘皇民化’政策』(일조각, 1994).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연세대출판부, 1993/ 1982 개정판).
- 박용권, 『국가주의에 굴복한 1930년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역사』(그리심, 2008).
-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총신대학교 출판부, 1992).
- 박용규,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 한부선 평전』(그리심, 2004).
-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후마니타스, 2007).
-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혜안, 2004).
- _____,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 체제인식과 대응』(혜안, 2005).
- _____,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혜안, 2005).
- 백낙준, 『한국개신교회사 1832-1910』(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George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 사와 마사히코[澤正彦], 『일본기독교회사』(대한기독교서회, 1969/개정신판, 1995).
- 서영일, 장동민 옮김, 『박윤선의 개혁신학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서정민,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 기독교회와 민족국가 관계론 연구』(한울, 2000).
-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 _____, 『원한경의 삶과 교육사상-H. H. 언더우드의 선교교육과 한국학연구』(연세대학교 출판부, 1991).
- 『수피아 90년사』(수피아여자고등학교, 1997/<http://www.speer.hs.kr>의 pdf파일).
- 『숭실대학교 100년사 1권 평양숭실 편』(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 『崇義 100年史 1903-2003』(學校法人 崇義學園, 2003).
- 스즈키 케이후[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研究』(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 신성학교 동창회, 『神聖學校史』(고려서적, 1980).
- 아베 히로시[阿部 洋] 편, 『해방 후 한국의 교육개혁』(한국연구원, 1987).

- 연세대 출판위원회 편, 『진리와 자유의 기수들』(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 『연세대학교 100년사 1 연세통사(상)』(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창립 120주년 기념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양현혜 · 이규태 역,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소화, 2002).
-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 II』(도서출판 kmc, 1994/2005 재판).
- ____ 외, 『기독교와 한국역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유신순, 신승하 외 옮김, 『만주사변기의 중일외교사』(고려원, 1994/고려대학교 중국학 총서 15).
- 윤병석 · 윤경로 편, 『안창호 일대기』(역민사, 1995).
- 이근삼, 최재건 · 원성현 역, 『기독교와 신도국가주의의 대결』(생명의 양식, 2007).
- 이리에 아키라[入江 昭], 강성환 역, 『일본의 외교』(푸른산, 1995).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지식산업사, 1981).
- ____,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____,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지식산업사, 1991).
- ____,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두레시대, 1998).
- ____,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____, 『한국기독교 의료사』(아카넷, 2003).
- 이원범 역, 『천황제국가의 성립과 신흥종교』(소화, 2002).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 2000).
- ____ 외,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까치, 1995).
- ____ 외,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태학사, 2001).
- ____ 외,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서울대 출판부, 2003).
- 이혜숙, 『미군정기의 지배구조와 한국사회-해방 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선인, 2008).
- 이호우, 『초기 내한 선교사 곽안련의 신학과 사상』(생명의 말씀사, 2005).
- 『인물로 본 숭실 100년』1-2(숭실대학교, 1992).
-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주의 연구』(혜안, 2001).
-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 전상인, 『고개속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와 역사사회학』(전통과 현대, 2001).

-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7).
- 『정신 120년사』(정신여자 중·고등학교, 2006, <http://www.chungshin.or.kr>)
-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대출판부, 2003).
- _____,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중심, 2003).
- 췌. 어네스 피쉬, 『민주주의적 생활』(남조선과도림시정부 여론국, 1947).
- 최원규 엮음, 『일제 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청아출판사, 1988).
- 친일문제연구회 엮음, 『조선총독 10인』(가람기획, 1996).
- 하라 마코토, 서정민 역, 『전시하 일본기독교사』(한들출판사, 2009).
- 하세가와 마사야스, 최은봉 역, 『일본의 헌법』(소화, 2000).
-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89,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한국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 加藤玄智, 『神道の宗教發達史的研究』(東京: 中文館書店, 1935).
- 中村政則, 『象徴天皇制への道-米國大使クルーと其の周辺』(東京: 岩波新書, 1989).
- 高橋哲哉, 『靖國問題』(東京: らくま新書, 2005).
- 村上重良, 『天皇制國家と宗教』(東京: 日本評論社, 1986).
-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台灣總督府と帝國日本』(東京: 三元社, 2008).
- 油井大三郎, 『未完の占領改革: アメリカ知識人と捨てられた日本民主化構想』(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9).
-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의近代: 미션스쿨의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東京: 社會評論社, 2006)/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 『미국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Baird, Richard H.,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Private Print, 1968).
- Bergen, Doris L., *Twisted Cross: The German Christian Movement in the Third Reich*(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 Brown, Arthur J., *The Mastery of the Far East: Th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and Japan's Rise to Supremacy in the Orient*(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복간).
- Brown, George T., *Mission to Korea*(Board of World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U. S., 196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4 재간).
-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김자동 역,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_____,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Clark, Charles A.,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0/박용규 · 김춘섭 역,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대한기독교서회, 1994).
- Clark, Allen D., *Avison of Korea: The Life of Oliver R. Avison, M.D.*(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79).
- _____, *A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2).
- Clark, Donald N.,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Norwalk, CN: EastBridge, 2003).
- Creemers, Wilhelmus H. M., *Shinto Shrine After World War II*(Leiden: E. J. Brill, 1968).
- Dower, John W., *Empire and Aftermath: Yoshida Shigeru and the Japanese Experience 1878-1954*. Cambridge(MA: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at Harvard University, 1979).
- Fairbank, John K. ed. *The Missionary Enterprise in China and America*(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Fisher, James Earnest,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Columbia University Press, 1928).
- _____, *Pioneers of Modern Korea*(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77).

- Hardacre, Helen, *Shinto and the State, 1868-1988*(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Hogan, Michael J. and Paterson, Thomas G. eds., *Explaining the History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 Holtom, D. C.,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A Study of Present-Day Trends in Japanese Religions*(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 1943 개정).
- Jansen, Marius B., *The Making of Modern Japan*(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Jones, F. C., *The Far East 1942-1946*(London · New York ·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 Kennan, George F., *American Diplomacy*(Expanded Edi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원판 1951).
- Kerr, Edith A. and Anderson, George,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889-1941*(Australian Board of Missions, 1970).
- Lee, Hoon K.,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New York: 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and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of New York, 1933).
- Longfield, Bradley J.,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Fundamentalists, Modernists, and Moderates*(New York etc: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McCune, George M., *Korea Today*(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 Marsden, George M.,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ing of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London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Matray, James I.,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 Rhodes, Harry A. and Campbell, Archibald ed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Vol. II, 1935-1959*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65/대한예수교장로회, 1984 재간).

- Sauer, Charles A., *Methodists in Korea 1930-1960*(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1973).
- Scott, William. *Canadians in Korea: Brief Historical Sketch of Canadian Mission Work in Korea*(Board of World Mission, 1975).
- Takemae Eiji,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2002).
- Tsurumi, E. Patricia, *Japanese Colonial Education in Taiwan, 1895-1945*(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 Underwood, Horace H., *Modern Education in Korea*(NY: International Press, 1926).
 _____, (with a concluding chapter by Marion E. Hartness), *Tragedy and Faith in Korea*(New York: Friendship Press, 1951).
- U. S. Arm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2권(연도 미상/돌베개, 1988 간행).
- Weems, Clarence N.,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 1(New York: Hillary House Publishers Ltd., 1962).
- Wells, Kenneth M.,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0).
- Woodard, William P.,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1945-1952 and Japanese Religions*(Leiden: E. J. Brill, 1972).

2) 연구논문

- 가브리엘 콜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전후 처리문제,” 브루스 커밍스 외, 『분단 전후의 현대사』(일월서각, 1983).
- 고정휴, “歐美駐劄韓國委員會의 初期 組織과 活動, 1919-1922,” 『역사학보』 제 134 · 135집(1992년 9월).
- _____, “A. J. 그라단제브와 『현대한국』,” 『한국사연구』 제126호(2004년 9월).
- _____, “식민지시대 미국 지식인의 한국문제 인식-태평양문제연구회(IPR)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58권(2005년 12월).
- 권영배, “日帝下 私立各鐘學校의 指定學校 昇格에 관한 一研究,” 『朝鮮史研究』

- 제13집(2004년 10월).
- 권태역, “동화정책론,” 『역사학보』 제172집(2001년 12월).
- _____, “1920, 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사론』 제53집(서울대 국사학과, 2007년).
- 김낙년, “식민지기 조선 공업화에 관한 제 논점,” 『경제사학』 제35호(2003년).
-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朝鮮神宮 건립과 운영,” 『한국사론』 제50집(서울대 국사학과, 2004년).
- 김상태, “1920-30년대 동우회 · 흥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 제28집(서울대 국사학과, 1992년).
- _____,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년).
- _____, “일제하 개신교 지식인의 미국 인식-신흥우와 적극신양단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58권(2005년 12월).
- 김승태, “일제 말기 한국기독교계의 변질 · 개편과 부일협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4호(2006년 3월).
- 김지민, “해방 전후 랭던의 한국문제인식과 미국의 정부수립정책,” 『한국사연구』 제119호(2002년 12월).
- 김창록, “日本에서의 西洋 憲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研究: 『大日本帝國憲法』의 制定에서 『日本國憲法』의 ‘出現’까지”(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김홍수, “기독교인 정치가로서의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노치준, “일제하 한국장로교회 총회 통계에 대한 연구,”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문학과 지성사, 1992).
- 류대영, “기독교와 선교사에 대한 고종의 태도와 정책(1882-1905),”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3호(2000년 9월).
- _____, “초기 한국교회에서 ‘evangelical’의 의미와 현대적 해석의 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5호(2001년 8월).
- _____, “함태영,” 『한국사시민강좌』 제43집(일조각, 2008년).
- 류영익, “서양인에 의한 한국학의 효시,” 『한국사시민강좌』 제34집(일조각, 2004년).

- 미쓰이 켄[三井憲], “한·일 개신교 교회성장의 비교연구”(서울대학교 국제지역 석사학위논문, 2001년).
- 민경배, “3·1運動과 外國宣教師들의 關與問題,” 『동방학지』 제59호(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년 9월).
- 박혜진, “서울지역 미 북장로회 선교부의 교육사업 철수와 학교 인계 연구: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2호(2010년 3월)
- 방기중, “일제하 李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 『역사문제연구』 제1호(역사문제연구소, 1996년).
- _____, “일제하 李勳求의 韓國土地制度史論,” 『동방학지』 제127호(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년 9월).
- _____, “미군정기의 농업문제와 토지정책,” 『농지개혁 연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서정민, “평안도 지역 기독교사의 개관,”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집(1994년 12월).
- 신기욱, “농지개혁의 역사사회학적 고찰,” 『농지개혁 연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안드레 슈미드, 김지민 역, “오리엔탈 식민주의의 도전: Anglo-American 비판의 한계,” 『역사문제연구』 제12호(2004년).
- 안유림,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단체 법인화 정책,”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1호(2009년 9월).
- 안종철, “윤산온의 교육선교 활동과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3호(2005년 9월).
- _____,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역사학보』 제189집(2006년 3월).
- _____, “‘한국병합’ 전후 미일 간 미국의 한반도 치외법권 폐지교섭과 타결,” 『법사학연구』 제36호(2007년 11월).
- _____, “3.1운동과 선교사 그리고 미국의 대한정책,”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3집(2007년 12월).
- _____, “격동기(1900-1950) 서양인들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한 추적: Donald N. Clark, Living Dangerously in Korea: The Western Experience 1900-1950,”

- 「한국근현대사연구」제48집(2009년 3월).
- _____, “미군정참여 미국선교사·관련 인사들의 활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기독교와 역사」제30호(2009년 3월).
- _____, “문명개화에서 반공으로: 이승만과 개신교의 관계의 변화, 1912-1950,” 「동방학지」제145집(2009년 3월).
- _____, “미국 제도권 한국학의 탄생과 미국의 대한인식,”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세계 속의 한국사』(태학사, 2009).
- _____,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미국무부의 대응, 1931-1937,” 「한국사연구」제145호(2009년 6월).
- _____, “중일전쟁 발발 전후 신사참배 문제와 평양의 기독교계 중등학교의 동향,” 「한국문화」제48호(2009년 12월).
- 양낙홍, “1959년 한국 장로교의 분열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제23호(2005년 9월).
- _____, “박형룡의 고려신학교 사임 이유에 대한 재고,” 「한국기독교와 역사」제25호(2006년 9월).
- _____, “1960년대 장로교 ‘승동측’과 ‘고신측’의 합동이 재분리에 이른 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제27호(2007년 9월).
- 윤선자, “일제하 조선천주교회의 법인화 과정,” 「복약사론」제4집(1997년).
- _____, “일제하 종교단체의 경제적 기반 확보 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24집, (2003년 3월).
- 이광린, “평양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제10집(1999년 3월).
- 이리에 아키라, “알타체제의 붕괴와 냉전의 출현,” 부르스 커밍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일월서각, 1983).
-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사론」제1집(서울대 국사학과, 1973년).
- _____, “韓末 基督教과 관련된 外勢依存의 問題(1)-宣教師의 勢力擴大 과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제61집(1989년 3월).
- _____, “韓末 歐美 諸國의 對韓 宣敎政策에 관한 研究-선교사들의 한국정치상황에 대한 자세와 관련하여,” 「동방학지」제84집(1993년 6월).
- 이영호, “국호영문표기, Corea에서 Korea로의 전환과 의미,” 「역사와 현실」제58권(2005년 12월).

- 장세영, “태평양전쟁기 미국 전략첩보국(OSS)의 대한반도 정보전”(서울대학교 의교학과 석사논문, 2005).
- 전상인, “미군정기 농업문제와 토지개혁,” 홍성찬 편, 『농지개혁 연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 정병준, “김용중의 생애와 통일·독립운동,” 『역사문제연구』 제12호(역사비평사, 2004).
- _____,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유학과 근대경험,” 『이화사학연구』 제39집(2009년 12월).
- 조선혜, “1941년 ‘만국부인기도회사건’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5집(1996년 9월).
- 주익중, “일제하 한국의 식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공업화,” 『경제사학』 제35호(2003년).
- 주진오, “한국사학계에서 바라본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5호(2001년 3월).
- 최병택, “1925-1935년 서울지역 基督教 勢力의 社會運動과 그 歸結,” 『韓國史論』 제45집(서울대 국사학과, 2001년).
- 최재건, “맥아더 장군의 전후 일본에서의 종교정책과 그것이 한국에 끼친 영향,” 『성결교회와 신학』 제12호(2004년).
- _____, “Underwood 대학설립의 차별성-延禧 장립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제12집(2006년).
- 한궁희, “1935-37년 日帝의 ‘心田開發’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론』 제35(서울대 국사학과, 1996년).
- 한준상,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미군정기 교육적 모순 해체를 위한 연구 과제,” 『해방전후사의 인식 3』(한길사, 1987).
- 허 은, “美國의 對韓 文化活動과 韓國社會의 反應-1950년대 美國政府의 文化活動과 知識人의 對美認識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홍석률, “중립화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제12호(2004년).
- 駒込武, “1930年代台灣におけるミッション・スクール排撃運動,”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7』(東京: 岩波書店, 2002).

- _____, “朝鮮における神社参拜問題と日米関係-植民地支配と『内部の敵』,” 『帝國の戦争經驗』(東京: 岩波書店, 2006/岩波講座 4: アジア・太平洋戦争).
- 小檜山ルイ, “在日長老派宣教師書翰に見る日本ミッションと朝鮮ミッションの関係,”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紀要』64(東京: 東京女子大學, 2003).
- _____, “帝國のリベラリズム- |ミッドガル・グラウンド|としての東京女子大學,” 駒辺武・橋本伸也 編, 『帝國と學校』(京都: 昭和堂, 2007).
- 須崎慎一, “日本型ファシズムへの道をめぐって-在郷軍人政治組織=明倫會・皇道會の検討,” 藤原彰・野澤 豊 編, 『日本ファシズムと東アジア』(東京: 青木書店, 1977).
- 細谷千博, “ジョージ・サンソムと敗戦日本: 一『知日家』外交官の軌跡,” 『中央公論』91월호(東京: 中央公論社, 1975).

- An, Jong Chol, “Making Korea Distinct: George M. McCune and His Korean Studie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7(2004): 155-192.
- Baldwin, Roger N., “Our Blunder in Korea,” *The Nation* 165(1947): 119-121.
- Bunce, Arthur C., “The Future of Korea,” Part I & Part II, *Far Eastern Survey*, 13/8, 10(1944): 67-70, 85-88.
- Clark, N. Donald, “History and Religion in Modern Korea: The Case of Protestant Christianity,” in *Religion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1997).
- Eckert, Carter J., “Total War,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Change in Late Colonial Korea,” in Peter Duus,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Wartime Empire, 1931-194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3-39.
- McCune, George M., “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1800-1864”(Ph. D. Dissertation a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41).
- _____, “Russian Policy in Korea, 1895-1898,” *Far Eastern Survey*, 14/19 (1945): 272-274.
- _____, “Occupation Politics in Korea,” *Far Eastern Survey*, 15/3 (1946): 33-37.
- _____, “Korea: The First Year of Liberation,” *Pacific Affairs*, 20 (1947): 3-17.
- _____, “Post-War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The Journal of Politics*,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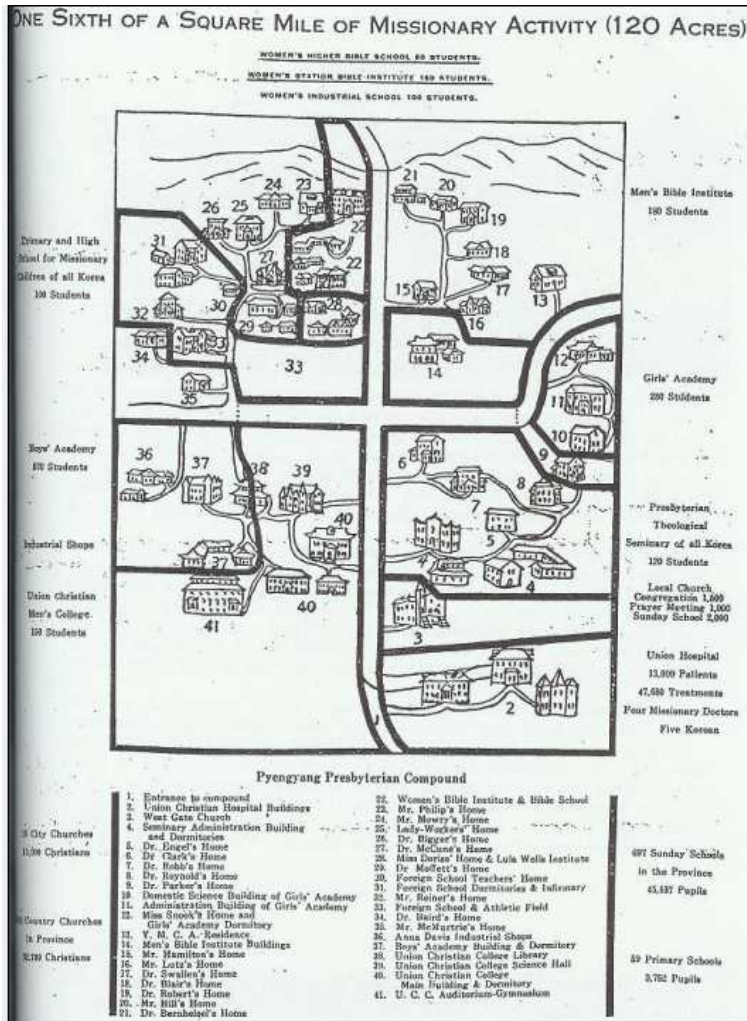
- (1947): 605-623.
- _____, "The Korean Situation," *Far Eastern Survey*, 17/17 (1948): 197-202.
- McCune, Shannon, "Land Redistribution in Korea," *Far Eastern Survey*, 17/2 (1948): 13-18.
- Matray, James I., "Hodge Podge: American Occupation Policy in Korea, 1945-1948," *Korean Studies*, 19 (1995): 17-38.
- _____, "Bunce and Jacobs: U. S. Occupation Advisors in Korea," in Bonnie B. C. Oh ed.,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2002).
- Michell, Jr., Charles C., "Land Reform in South Korea," *Pacific Affairs*, 22 (1949): 144-154.
- Pak, Jung H., "'Not by Power nor by Might': American Missionaries and the Spiritual Wars in Korea, 1885-1953"(Columbia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2006).
- Weems, Benjamin, "Behind the Korean Election," *Far Eastern Survey*, 17/12 (1948): 142-147.
- Weems Jr., Clarence N., "Washington's First Steps Toward Korean-American Joint Action(1941-1943)," 「한국무장독립운동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논문집」(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 협회, 1988).
- Wilbur, C. Martin, "Memorial for George M. McCune," *The Far Eastern Quarterly*, 9/2 (1950): 185-191.
- Wittner, Lawrence S., "MacArthur and the Missionaries: God and Man in Occupied Japan,"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40/1 (Feb., 1971): 77-98.
- Yi, Tae-Jin. "Was Korea a 'Hermit Nation'?" *Korea Journal*, 38/4 (Winter, 1998): 5-35.

【부록 1】 20세기 전반 한국관련 미 외교관료

서울 미영사· 대사	주일 미대사	국무장관	대통령 및 비고
Thomas Sammons (1905-1910)	Lloyd Griscom(1903-05), Luke E. Wright(1906-07)	Elihu Root(1905-09), Robert Bacon(1909)	Theodore Roosevelt (1901-1908)
Scidmore (1910-1914)	Thomas O'Brien (1907-11), Charles P. Bryan(1911-12), Larz Anderson(1913)	Philader C. Knox (1909-1913)	Howard Taft(1909- 1912)
Ransford S. Miller(1914-1918)	George Guthrie (1913-17)	William J. Bryan (1913-1915), Robert Lansing(1915-20)	Woodrow Wilson (1913-1920)
Leo Bergholz (1918-1919.11)	Roland Morris (1917-20)	Robert Lansing (1915-20)	위와 같음
Ransford S. Miller (1919. 12-1931)	Charles B. Warren(1921-22), Cyrus Woods(1923-24), Edgar Bancroft(1924-25), Charles MacVeagh(1925-28), William Castle Jr.(1930)	Bainbridge Colby(1920-21), Charles E. Hughes (1921-25), Frank B. Kellogg(1925-29)	Warren G. Harding (1921-23), Calvin Coolidge(1923-28)
John K. Davis (1931-1936)	W.Cameron Forbes(1930- 32), Joseph C. Grew (1932-1942)	Henry L. Stimson (1929-33), Cordell Hull(1933-44)	Herbert Hoover (1929-1932), Franklin Roosevelt (1933-1945)
Gaylord Marsh (1936-1940)	위와 동일	Cordell Hull (1933-44)	위와 같음
Harold B. Quarton (1940-1942)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같음
공백 (1942-45)	공백	Edward R. Stettinius, Jr. (1944-45)	Harry S. Truman (1945.4.12-1953)
미군정 외사국 (1945-48)	미군정 외사국	James F. Byrnes(1945 -47), George C. Marshall(1947-49)	위와 동일
John Muccio (1948-53)	미군정 외사국, Robert D. Murphy (1952-3)	Dean G. Acheson (1949-53)	위와 동일

* www.state.gov, en.wikipedia.org, 국무부 895.00 자료 참조.

【부록 2】 평양지역 기독교 구역(선교사 거주지, 학교, 교회 등)



* Richard H. Baird,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Personal Copy, 1968)

【부록 3】 해방 전후 한국 관련(군인, 미국 관료, 교육자) 주요 선교사 및 2, 3세 명단과 활동/ Family Name 순.

이름/ 생몰년	한국 체제기간	교파/ 지역(부모)	직위와 활동(해방전/ 후)
Edward A. Adams / 1895-1965	1921-1942, 1948-1963	미 북장로교 /황해도 재령, 대구	대구성경학교 교장/ 미 연합장로회 선교부 총무, 대구 계성중고등학교 이사, UNKRA(한국재건위)위원, 연세대·세브란스 이사, 계명기독대학 초대이사장
Henry D. Appenzeller / 1889-1953	1917-1941, 1948-1953	미 북감리교/ 서울	감리교 선교사, 배재학교 교장/ 기독교세계구제회 한국책임자(한국전쟁 시), 배재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
Alice R. Appenzeller / 1885-1950	1915-1940, 1946-1950	미 북감리교 /서울	감리교 선교사, 이화학당 교사, 이화여자전문학교 초대 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및 명예총장
John D. Bigger / 1881-1959	1911-1942, 1945-1950	미 북장로교 /강계, 평양	강계, 평양 등의 의사/ 미군정 의료 자문관
Arthur L. Becker / 1879-1978	1903-1941, 1946-1948	미 북감리교 /평양, 서울	송실·연희전문 교수, 연희전문 설립이사/ 연세대 과도이사회 이사, 부산대 초대 총장
Arthur C. Bunce / 1901-1953	1928-1934	캐나다장로교/ 함흥	YMCA지도자, 아이오와주립대학 경제학 부교수 / ECA(미 경제사절단 단장)
Allen Clark / 1908-1990	1933-1973	미 북장로교/ 서울, 평양	기독교문서 선교회/ 아들은 Donald N. Clark로 현 텍사스의 Trinity College의 한국학 교수
James E. Fisher / 1886-1980	1919-1935	미 남감리교/ 서울	콜롬비아대 박사, 연희전문 문과과장 및 도서

			관장, 민주주의 교육이론 소개/ OSS근무 후 미군정 공보처장, 미소공위 정치자문역, 한국전쟁시 심리전 담당
Edwin W. Koons / 1880-1947	1903-1941	미 북장로교/ 재령, 서울	경신학교 교장/ 2차 대전시 한국인들에게 라디오방송
Dexter N. Lutz / 1890-	1921-1940	미 북장로교/ 평양	숭실전문 교수(농과)/ 군정청의 농업 자문관
George M. McCune / 1908-1948	1908-1921, 1930-1932	미 북장로교 /평북 선천, 평남 평양	버클리대 박사, OSS 극동부/ 국무부 극동국 한국과장, 버클리대 한국사 교수
Evelyn McCune / 1907-현재	1907-1926, 1930-1932	미 북감리교/ 평양, 서울	버클리대 석사, 맥클린부인/ 버클리대 한국사 강사, 국무부
Shanon B. McCune / 1913-1993	1913-1925, 해방 후 방문	미 북장로교 /선천, 평양	클라크대 박사, 육군성근무/ 플로리다대 교수·총장, 오키나와 행정장관
Samuel H. Moffett / 1916-현재	1951-1981	미 북장로교 / 평양	예일대 박사(교회사)/ 장로회 신학대 교수, 연세대, 숭전대 등 이사, 아세아연합신학원 원장
Howard F. Moffett / 1917-	1948-1976	위와 동일	1948년 의료선교사로 부임, 한국전쟁 시 공군 장교, 대구 동산병원 이사장(1949-1976)
Edith G. Myers(여) / 1907-	1932-1940, 1945-1954	미 북장로교/ 서울, 평양	북장로교 선교사, 세브란스 및 평양 연합기독병원 간호사/ 미군정청 보건 자문관
Harold J. Noble / 1903-1953		미 북감리교 /평양, 서울	버클리대 박사, 오리건대 교수, 한국 유엔단 자문위원, 미 대사관 1등서기관

Ella J. Sharrocks(여) /	1926-1941	미 북장로교/ 평양, 선천, 강계 등	북장로교 선교사, 세브 란스의전 간호학 교수, 간호과장/ 미군정청 보 건 자문관
William H. Shaw/ 1922-1950		미 북감리교/ 평양, 대전	미군정청에서 해군창설 관여, 한국전쟁 인천상 륙작전 중 낙번리에서 사망. 아들(William R. Shaw)은 하버드대 박사 로 한국 법역사 연구.
Roy K. Smith / 1885-1957	1911-1942, 1945-1950	미 북장로교/ 서울, 대구, 평양 등	북장로교 선교부 소속 의사/ 미군정청 의료 자 문관, 대구 동산병원장
Horace H. Underwood/ 1890-1951	1912-1942, 1945-1951	미 북장로교 / 서울	뉴욕대 박사, 연희전문 총장/ 군정장관 고문 및 미군정 교육 자문관, 각 종 기독교단체 이사
Horace G. Underwood / 1917-2004	1939-1942, 1946-2004	미 북장로교/ 서울	북장로교 선교사, 미 해 군 대위/ 미군정 교육 자 문관, 서울대 교무처장, 정전협상 수석통역, 연 희전문 이사
John T. Underwood / 1919-1995	1946-	미 연합장로교/ 청주,광주	미 연합장로교 선교사, 청주 성경학원, 호남신 학교 교수
Richard F. Underwood/ 1927-	1957-	미 연합장로교/ 서울	한국전쟁 휴전회담 통 역, 미 연합장로교 선교 사, 한미재단 대표, 서울 외국인학교 교장
Clarence N. Weems Jr. / 1907-	1909-1923, 1928-1929, 1946-	미 남감리회/ 개성, 원산	OSS 활동, 미군정청 고 문관, 조지 와싱턴대 교 수
Benjamin B. Weems / 1914-1986	1939-1940, 1947-1974	미 남감리회/ 개성, 원산	서울외국인학교 교장/ 미군 복무, 미소공동위, 미국의소리 방송, 정신 문화연구원 교수
Frank E. C.	1906-1941,	미 북감리회/	공주 영명학교 교장/ 미

Williams / 1883-1962	1945-1953	충남 공주	군정청 농업정책 고문
George Z. Williams / 1907-	1906-1941, 1945-1953	미 북감리회/ 충남 공주	하지의 참모

*『내한선교사 총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Harry A. Rhodes and Archibald Campbell,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in the USA*, Vol II. 1935-1959(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84), 기타 외교문서 참조.

찾아보기

연구총서 ㉔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군정

초판 인쇄 2010년 5월 28일
초판 발행 2010년 6월 4일

발행인 김흥수
지은이 안종철
펴낸곳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7-1 그린빌 B동 101호
전화번호 2226-0850 / 팩스 2226-0849

www.ikch.org
등록 1991년 5월 27일 제3-351호

978-89-85628-67-2 93230 **값 15,000원**

파본은 구입하신 서점이나 연구소로
연락주시면 그완하드립니다.